議政白書

제 2 집 [제2대 전반기]



蔚山廣域市北區議會

제 2 집

議 政 白 書

- 제2대 전반기-

(1998. 7. 1 ~ 2000. 7. 6)



蔚山廣域市北區議會



▲본회의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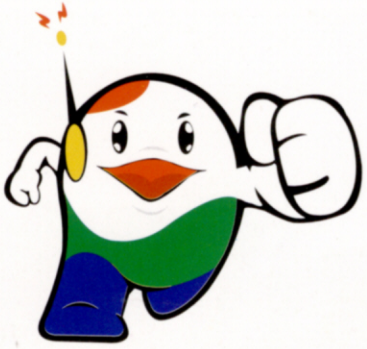
▲소회의실 전경

우리구의 마크



- 녹색부분 : 산, 육지-자연
- 파랑부분 : 바다 - 자연
- 주황색원 :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공단
- 의　　미 : 전체적으로 산과 바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과 산업중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지역발전의 모습을 의미

우리구의 캐릭터



차돌이

- 컨　　셉 : 든든한 북구, 달리는 북구, 아이디어 북구
- 형　　태 : 돌고래
- 의　　미 : 강한 생명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젊고 높은 지능의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화 하여 반짝이는 아이디어, 새로운 탄생,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의미

구화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구목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서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구조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제2집 의정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주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우리 북구가 신설 자치구로 첫발을 내디딘지도 어언 3년이 지났으며 제2대 북구의회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과 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협조로 성원해 주신 12만 구민여러분과 신설구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2대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오신 의장단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구청장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민원해결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구민의 뜻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음을 스스로 반성해 보며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정사에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과 미력이나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의정백서를 통하여 주민여러분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의정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기좋은 내 고장 북구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0.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진한걸

『의정백서』 발간을 祝賀하며…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지방화시대의 기초를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의정백서 제2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발전이 있으며, 그것을 거울 삼아 내일을 열자는 당당한 포부가 설 수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북구의회의 살아 숨쉬는 영광과 시련의 극복 과정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며, 냉철한 자세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지역의 사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또한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열어가는 북구의회를 재조명하고 밝은 미래의 발전적인 과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12만 구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세계 속으로 웅비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번 발간하는 의정백서가 우리 구민들의 구정참여와 관심으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1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조 승 수

열정이 깃든 의정백서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물론 이 축하의 말씀은 제가 얼마전까지 북구의회 의장으로 봉직했던 특별하고도 영광스런 인연이 있었기에 그 의미는 더더욱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울산지역 의회 가운데서도 탁월한 의정활동을 해 온 지방의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신설구이기에 비록 구세(區勢)가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구세가 열악하다고 해서 의원들의 활동 또한 미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설구의 열악한 재정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힘쓴 의원님들의 노고는 다른 지방의회의 그 어떤 활동보다도 눈부시고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구정의 투명한 감시를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지난 2년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회의 활동과 노력들에 더해 의원 개개인의 피땀어린 정성과 열정이 깃든 의정백서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10년여, 그 동안 일어났던 적지 않은 긍정적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이번 의정백서는 분명 우리 지역민과 지자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나큰 희망의 징표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오늘 펴낸 이 의정백서의 한 줄 한 줄에 담긴 피와 땀처럼, 오래도록 북구민을 위한 참다운 의정활동을 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여년의 지방의원 활동 끝에 이렇듯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저 자신 또한,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지면을 빌어 엄숙히 맹세합니다.

끝으로 북구의회 의장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국회로 옮겨온 제게 이렇듯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북구의회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하며, 부족한 발간축사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 10.

국회의원 윤 두 환

의장단

의 장



윤 두 환(송정동)
재임 : 1998. 7. 7 ~ 2000. 2. 21

의 장



박 춘 환(농소3동)
재임 : 2000. 2. 22 ~2000. 7. 6

2000. 2. 21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송정동 윤두환의장의 사직원이 처리되어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음.

부의장



박 춘 환(농소3동)
재임 : 1998. 7. 7 ~ 2000. 2. 21

부의장



진 한 걸(양정동)
재임 : 2000. 2. 22 ~ 2000. 7. 6

■ 의 원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 소	전 화
농소1동	 운영위원장 김 수 헌 ('57. 11. 15)	학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농소 새마을금고 상무 역임 • 농소 청년회장 역임 • 농소1동 청소년지도위원회장 • 농소자율방범대장 • 농소1동 새마을지도자 • 농소 새마을금고 감사	(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37번지 (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40-1	자)295-4231 사)295-4232 F)295-4455 휴)011-837-4231
농소2동	 강 혁 진 ('61. 10. 1)	학력 • 부산 소년의집 기계공업학교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1대 대의원 • 재울부산 소년의집 기계공업학교 동문회장 역임 • 울산참여자치연대 살맛나는 아파트 만들기 시민모임 운영위원 • 울산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1 현대글로리아 APT 1/1209	자)298-7612 사)280-6845 휴)018-562-3850
농소3동	 박 춘 환 ('52. 1. 11)	학력 • 농서초등학교 졸업 • 농소중학교 졸업 • 학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 울산배구협회이사 • 농서초등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역임 • 농소중학교 육성회 회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농소3동 청년회장 • 농소3동 체육회 부회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쌍용아진4차 404/1301 (사)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계구획 정리지구 27B 12N	자)286-8324 사)282-5229 휴)018-584-7374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 소	전 화
강동동	 박 광 식 ('55. 11. 15)	학력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경력 • 제24회 행정고등고시합격 경남도청 기획관리실, 내무국 근무 •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 기산식품 대표	(자)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35번지 (사)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75-1	자) 298-6677 사) 298-2490 휴) 011-569-7474
효문동	 류 재 건 ('61. 2. 5)	학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용인대학교 졸업 경력 • 울산광역시 유도협회 이사 • 동울산 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 효문동 환경정화위원회 회장 • 효문동 동정자문위원 • 연암초등학교 운영위원 • 효문동 방위협의회 위원 • 재성종합상사 대표 • 무룡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80-6 (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17-2 무룡신협	자) 288-0203 사) 288-2922 287-5060 휴) 017-558-8931
송정동 (2000. 2. 21 의원사직)	 윤 두 환 ('55. 3. 5)	학력 • 울산과학대학 졸업 • 울산산업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국제인권연맹 울산지부특별위원 • 울산포럼 위원 • 초대 북구의회 부의장 역임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역임 • 북구 축구연합회장 • 북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제16대 국회의원	(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71-1 (사)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644-15 북부신협	자) 288-4507 사) 282-6790~1

선거구	성 명	학력 및 경력	주 소	전 화
송정동 (2000. 6. 8 보궐선거)	 김 진 영 ('64. 10. 11)	학력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엔진노동조합 대의원 역임 • 현대엔진노동조합 4대 부위원장 역임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직전문위원 • 송정초등학교 21회 동기회장 •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 송정동 청년회 총무 • 현대중공업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41-7번지 HomePage http://kjy.labor.co.kr	자)298-8793 사)230-7339 휴)018-592-1003
양정동	 진 한 걸 ('53. 11. 15)	학력 • 미국 TRINITY UNIVERSITY 노동정책과정 수료 경력 • 현대자동차 노사위원 역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초대 부위원장 • 울산지역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 • 제2대 울산시 의원 역임 • 울산광역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 현대자동차 사원 숙소 202호 (사)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	자)942-8063 사)219-3185 휴)011-860-9025
염포동	 윤 종 오 ('63. 8. 14)	학력 • 부산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총무부장 역임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실장 역임 • 현대그룹 총연합 조직국장 역임 • 울산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울산핵발전소반대공동집행위원회 사무국장 • 현대자동차 재직중	(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23-5 기산빌라 102/402 (사)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46-5	자)287-8670 사)288-6006 휴)011-857-0814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 윤두환 의장 개원사



▲ 개원기념(본회의장)



▲ 제2대 의회 개원 기념식



▲ 개원기념 시루떡 자르기



▲ 내빈에게 인사(현역의원)



▲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본회의장)



▲ 임시회 개회식 (본회의장)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소회의실)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소회의실)



▲ 증인선서중(소회의실)



▲ 서류검정 · 확인(소회의실)



▲ 강동 주유소 주유기 검사('99)



▲ 도로포장공사 확인('98)



▲ 정자 어선 수리소 확인('98)



▲ 울산공항실태조사(소음측정)



▲ 울산공항실태조사(주민여론수렴)



▲ 대구 · 동구의회 방문 실태조사



▲ 부산 김해공항 실태조사



▲ 항공기 조종사 협회 방문 조사



▲ 까르푸 개소관련 교통현황파악



▲ 농소 화훼단지 현황파악



▲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실태파악



▲ 정리해고 반대성명서 발표



▲ 핵발전소 반대 가두행진



▲ 핵발전소 반대 서명운동



▲ 의원 간담회(의장실)



▲ 동행정 실태파악(송정동)



▲ 국회의원 배지전달(당선기념, 윤두환 전의장)



▲ 6.8보궐선거 김진영(송정동) 당선의원선서



▲ 구 · 군 의회의원 친선 체육대회

目　次

■ 발간사

■ 축간사

■ 제2대(전반기) 북구의회의원 일람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45

제2절 의회연혁 47

제3절 의회일반현황 49

1. 제2대(전반기)의회 원구성 49
2. 의회기구 56
3. 의원현황 56
4. 의회예산현황 57
5. 의사당시설현황 58
6.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58
7. 신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59
8. 의회의 권한 60
9. 의회의 지위 61

제4절 구정일반현황 62

1. 지역여건 62
2. 구정현황 62
3. 구민생활 63

4. 동별 인구·면적 현황 65
5. 울산광역시 구·군 일반현황 66

제2장 의회운영현황

제1절 집회현황 69
1. 의회대별 집회현황 69
2. 연도별 집회현황 69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70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71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72

제3장 회의개최사항

제1절 제11회 임시회 107
1. 개최배경 107
2. 의사일정 107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07
제2절 제12회 임시회 108
1. 개최배경 108
2. 개 회 사 108
3. 의사일정 11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12
□현대자동차대량해고사태와 관련한 결의안 11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114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16
□울산광역시북구5,000명미만과소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7
제3절 제13회 임시회 120
1. 개최배경 120
2. 개 회 사 120
3. 의사일정 12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2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23
○ 행정조직개편 추진상황 123
○ 강동해안 관광개발 추진계획 124
○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125
○ 환경미화원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 125
○ 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 126
○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127
○ 강동 해안지역 포장마차 철거대책 128
○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129
제4절 제14회 임시회 131
1. 개최배경 131
2. 개 회 사 131
3. 의사일정 13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3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136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39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4
제5절 제15회 임시회 147
1. 개최배경 147
2. 개 회 사 147
3. 의사일정 14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5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5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15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54
○지역현황파악 및 주요업무보고 154
제6절 제16회 임시회 156
1. 개최배경 156
2. 개 회 사 156
3. 의사일정 15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58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5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60
○한국까르푸(주)울산점 개소관련 업무추진상황 160
제7절 제17회 정기회 162
1. 개최배경 162
2. 개 회 사 162
3. 의사일정 16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69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41호) 169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52호) 17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4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77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78
제8절 제18회 임시회 180
1. 개최배경 180
2. 개 회 사 180
3. 의사일정 18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82
□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 18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84
○한국까르푸(주)가사용승인관련 교통대책등 추진상황 184
제9절 제19회 임시회 187
1. 개최배경 187
2. 개 회 사 187
3. 의사일정 18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191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9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3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196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198
제10절 제20회 임시회 201

1. 개최배경 201
2. 개 회 사 201
3. 의사일정 20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04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66호) 20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5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 207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 209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12
제11절 제21회 임시회 215
1. 개최배경 215
2. 개 회 사 215
3. 의사일정 217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19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9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21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222
제12절 제22회 임시회 224
1. 개최배경 224
2. 개 회 사 224
3. 의사일정 22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2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27
○'98년도및'99년도각종사회단체등정액업무·임의보조금지급 등에

대한관리현황 227
○ 우수기재해대책및업무추진상황 228
제13절 제23회 임시회 230
1. 개최배경 230
2. 개 회 사 230
3. 의사일정 23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34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4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39
제14절 제24회 임시회 242
1. 개최배경 242
2. 개 회 사 242
3. 의사일정 244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45
□울산공항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245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4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46
○ 제2단계지방행정구조조정업무추진계획 246
○ 농소천곡동979-1번지소재축사관련업무추진상황 247
○ 청사관련업체선정및계약관계업무추진상황 247
○ 공공근로사업예산집행사항등업무추진상황 248
제15절 제25회 임시회 250
1. 개최배경 250

2. 개 회 사 250
3. 의사일정 25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53
□울산공항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253
제16절 제26회 임시회 255
1. 개최배경 255
2. 개 회 사 255
3. 의사일정 256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57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57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8
제17절 제27회 임시회 261
1. 개최배경 261
2. 개 회 사 261
3. 의사일정 263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64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 264
제18절 제28회 임시회 267
1. 개최배경 267
2. 개 회 사 267
3. 의사일정 269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7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74

제19절 제29회 정기회 277
1. 개최배경 277
2. 개 회 사 277
3. 의사일정 27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8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8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85
제20절 제30회 임시회 288
1. 개최배경 288
2. 개 회 사 288
3. 의사일정 290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29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298
□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298
제21절 제31회 임시회 300
1. 개최배경 300
2. 개 회 사 300
3. 의사일정 30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304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04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308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08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11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3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15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316
제22절 제32회 임시회 320
1. 개최배경 320
2. 개 회 사 320
3. 의사일정 322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323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23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32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329
○2000.7.1의약분업관련업무추진상황 329
○과수재배(배)냉해피해상황 330
○구제역대책및예산집행업무추진 331
제23절 제33회 임시회 333
1. 개최배경 333
2. 개 회 사 333
3. 의사일정 335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336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 336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40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43

제4장 행정사무감사

'98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1절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47

1. 감사개요 347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348
3. 감사자료제출 요구현황 349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349

제2절 '98행정사무감사 결과 352

1. 감사실시 개요 352
2. 감사실시 경과 353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357

제3절 '98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368

1. 시정요구사항 현황 368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69

제4절 '98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389

1. 건의사항 현황 389
2. 건의사항 처리결과 390

'99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

제5절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14

1. 감사개요 414
2.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415
3. 감사자료제출 요구현황 416
4. 감사실시 방법 및 일정 417

제6절 '99행정사무감사 결과 420
1. 감사실시 개요 420
2. 감사실시 경과 421
3. 주요 감사실시 내용 424
제7절 '99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439
1. 시정요구사항 현황 439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440
제8절 '99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461
1. 건의사항 현황 461
2. 건의사항 처리결과 462

제5장 행정사무조사(울산공항실태)

제1절 울산공항관련 행정사무조사 사항 481
1. 행정사무조사 배경 481
2. 행정사무조사 개요 481
제2절 울산공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482
1.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482
2. 실태조사 계획서 482
3. 특별위원회 실태조사 의사일정 483
제3절 울산공항 현황 485
1. 울산공항 기본현황 485
2. 울산공항 약사 485
3. 울산공항 시설현황 486
4. 울산공항 운송현황 486
5. 울산공항 연도별 수송실적 487

6.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 방문 면담 내용 487
제4절 주민피해 실태조사 488
1. 제1, 2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88
2. 제3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90
3. 제4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91
4. 제5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92
5. 제6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93
6. 제7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493
7. 불편사항 설문조사 실시 496
8. 공항소재에 따른 피해사항 498
9. 항공기 소음 동별 피해실태사례 499
제5절 기타 실태조사 500
1. 항공기장 면담 500
2. 공항관련 법률분석 501
3. 항공법 적용대상지역 업무처리 절차 502
4. 타 시·도 피해대책 활동사례 502
5. 울산공항 문제점(조종사협회 자료) 511
제6절 실태조사 검토 및 분석 514
1. 소음측정 및 분석결과 514
2. 공항주변의 피해실태 분석 514
3. 울산공항 문제점 분석 515
제7절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517
1. 공항입지의 문제점 517
2. 공항시설의 문제점 517
3. 지역주민정서의 문제점 518

4. 항공법의 문제점 518
5. 개선대책 519
제8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회신내용 520
제9절 전국 공항현황 522

제6장 예산결산심의사항

제 1절 '98제2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27
제 2절 '97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531
제 3절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536
제 4절 '99세입 · 세출예산안 539
제 5절 '98제3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45
제 6절 '99제1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48
제 7절 '99제2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51
제 8절 '98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555
제 9절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559
제10절 2000세입 · 세출예산안 561
제11절 '99제3회세입 · 세출추경예산 571
제12절 '99제4회세입 · 세출추경예산 573
제13절 2000제1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77
제14절 2000제2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581

제7장 기타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589

1. 구정질문 현황 589
2.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590
제2절 4분 자유발언 615
제3절 진정 · 건의서 처리사항 620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632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632
2.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방안 추진 634
3. 한국까르푸(주) 가사용 승인관련 업무추진 637
4.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 건의 639
5. 북구청사 건립추진 640
제5절 주요의정활동일지 648

〔附 錄〕

1. 역대 의장단 명단 679
2. 초대의원 명단 680
3. 초대의원 사진 681
4. 북구지역 역대의원 명단 682
5. 역대 구청장 명단 683
6.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683
7. 역대 전문위원 명단 683
8. 구청 간부공무원 명단 684
9. 사무과직원 명단 688
10. 지방선거현황(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689
11. 문화재 현황 693



일반현황

○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제2절 의회연혁

○ 제3절 의회일반현황

○ 제4절 구정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 도호부로 승격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하상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리,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농소·강동면→울주군 편입)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 1출장소 40개동, 중·남구)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 설치

○ 1991. 1. 1 :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군, 도·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구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신설〉 → 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 → 9개동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동·효문동 → 효문동 → 8개동

제2절 의회연혁

□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 ○ 1952. 4. 25 : 초대 읍·면의원 선거(56명)
- ○ 1956. 8. 8 : 제2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0. 12. 19 : 제3대 읍·면의원 선거(50명)
- ○ 1961. 9. 1 : 울산읍·면의원 해산

□ 울산시 승격 이후

- ○ 1991. 3. 26 : 울산시의회의원 선거(50명)
- ○ 1991. 4. 15 :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
  - 임기 : '91. 4. 15 ~ '95. 6. 30
- ○ 1992. 7. 12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중·남·동구 각 1명)
- ○ 1993. 7. 10 :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동구 1명)

□ 울산시·군 통합 이후

- ○ 1995. 1. 10 : 울산시·군 통합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 1995. 6. 27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5. 7. 11 :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60명)
  - 임기 : '95. 7. 1 ~ '98. 6. 30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97. 7. 15 ~ '98. 6. 30

- ○ 1997. 7. 15 :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72명)
- ○ 1998. 3. 1 :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 1998. 6. 4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1998. 7. 7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98. 7. 1 ~ 2002. 6. 30
- ○ 1998. 10. 1 : 인구과소동 폐치분합 진장·효문동→효문동
- ○ 2000. 2. 21 : 송정동의원 사직(7명)
- ○ 2000. 6. 8 :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제3절 의회일반현황

1. 제2대〈전반기〉의회 원구성

□ 집회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7월 1일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집회일시는 '98년 7월 7일 09시30분으로 공고하였음.

□ 본회의장 의석 배정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

□ 의장단 선거(제1차본회의)

'98년 7월 7일 09시30분에 개회된 제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진한걸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윤두환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윤두환의원, 부의장에 박춘환의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8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구 분	1 차	2 차	3 차(결선)
의 장	윤두환 4표 진한걸 3표 무 효 1표	윤두환 4표 진한걸 3표 무 효 1표	윤두환 5표 진한걸 3표
부의장	김수헌 1표 박춘환 3표 박광식 2표 류재건 1표 무 효 1표	박춘환 5표 박광식 3표	--

○ 의장은 다수득표를 얻어 윤두환의원이 당선되었음.

○ 부의장은 과반수를 얻어 박춘환의원이 당선되었음.

□ 개원식

○ 개원식은 '98년 7월 7일 11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의원 8명과 조승수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개원식 순서

- 개 원 식
- 국민의례
  - ·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 제창
  -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개 원 사 (의 장)
- 축 사 (구청장)
- 폐 식

○ 개 원 사(윤두환 의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 김기현 강북교육청장님, 김성보 초대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이때 희망찬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를 개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91년 30여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제2기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3기 지방의회가 문을 열면서 우리 북구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함께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1만 구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북구의 주민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지역발전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역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지방화가 국가경쟁력의 바탕이며, 세계화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신설 구로서,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 환경,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이 열악하며 문화, 복지시설도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북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21세기 울산의 중추적인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의회가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북구의회의 전 의원은 구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적 협력자로서,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구민 중심이 되도록 의회에 주어진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촉진과 많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될 수 있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주민대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전적 능동적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중지를 모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경제위기로 사회 곳곳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업대책 및 근로자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하반기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과 앞날에 건승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윤 두 환**

○ **축 사**(조승수 구청장)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초대민선 울산광역시 북구 출범에 이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11만 북구구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오늘 성대하게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전에 있었던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은 최근의 IMF사태로 인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확산 파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 행정력을 총력 집중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북구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울주군과 중구의 일부를 합쳐 구성된 자치 단체이며, 신설 구로서 도로, 교통, 상하수시설,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북구발전 21C 위원회를 구성하여 북구발전을 앞당겨 나아갈 계획입니다.

의회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구민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속에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종 공약사항에 대해서 11만 구민의 욕구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가 성심성의를 다하겠으며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임과 동시에 구정의 감시자인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발전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의사결정의 장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의회를 통해 구민의 의사가 집행부에 빠짐없이 전달되고 이러한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가 올바른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화와 협력의 기반이 굳건히 다져질 때 우리 북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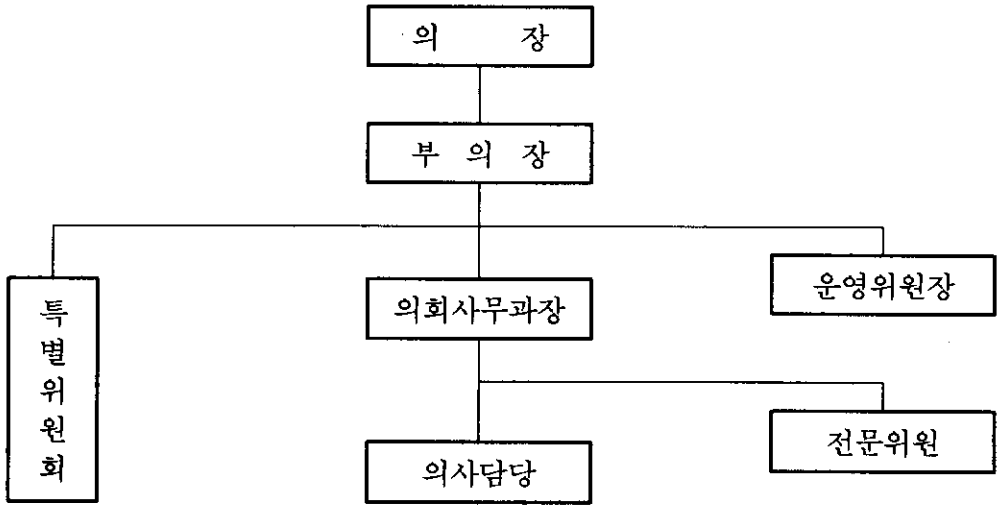
끝으로 오늘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원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7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조 승 수**

2. 의회기구



3. 의원현황

□ 의원정수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8	1	1	1	1	1	1	1	1

□ 직업별

직업별 / 의원수	농 업	상 업	회사원	금융업	기 타
8	2	1	4	1	

□ 학력별

학력별 / 의원수	독학	국졸	중졸	고졸	대재	대졸
8				4	2	2

□ 연령별

연령별 / 의원수	35세미만	35-40	41-45	46-50	51-55	56-60
8		4	2	2		

□ 성 별

의원수	계	남	여	비고
8	8	8		

4. 의회예산(당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1998년도	611,519	475,079	136,440
1999년도	515,833	376,393	139,440
2000년도	623,408	436,056	187,352

5. 의사당 시설현황(임대청사)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5-9

○면적 : 북구청 7층 346㎡ (105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108.1(32.7)	
소 회 의 실	73.1(22.0)	
의 장 실	45.2(13.6)	
부 의 장 실	29.1(8.8)	
의원(전문위원)실	27.1(8.2)	
의회사무과사무실	63.4(19.1)	

6. 사무과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원	현원	비 고
계	11	11	
5급(사무과장)	1	1	
5급(전문위원)	1	1	
6급(의사담당)	1	1	
7급(행 정 직)	3	3	
9급(행 정 직)	1	1	
기 능 직	4	4	운전원1, 필기원1, 속기원2

7. 신청사 의사당 시설현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1-1

○면적 : 북구청 신청사 5층 1,083.71㎡(327평)

· 신청사 건립 중(1999. 8. ~ 2001. 5.)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	비 고
본 회 의 장	205.88(62.2)	
방 송 실	31.50(9.5)	
소 회 의 실	108.00(32.6)	
의 장 실	70.47(21.3)	
부 의 장 실	60.95(18.4)	
부 속 실	41.50(12.5)	
의 원 사 무 실	172.23(52.0)	2인1실 4개
의 원 휴 게 실	108.00(32.6)	
사 무 과 사 무 실	117.25(35.4)	
전 문 위 원 실	43.06(13.0)	
문 서 고	30.00(9.0)	
준 비 실	26.30(8.0)	
패 키 지 실	10.60(3.3)	
방 청 석	57.97(17.5)	

8. 의회의 권한

○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는 통제권으로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음.

○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

(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 청원처리권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건의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9.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제4절 구정일반현황

1. 지역여건

- ㅇ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기능적 구분
- ㅇ 주민생활 및 의식이 도시·농촌적 요소 공존
- ㅇ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2000. 6. 30.현재)

□ 면 적

- ㅇ 행정구역 —— 157.22㎢
- ㅇ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미지정)
121.74㎢	9.91	0.7	9.2	101.57	0.36

※개발제한구역 80.41㎢(51%)

□ 인 구

가 구	총 인 구 수			외국인 등록수
	계	남	여	
36,042세대	119,987명	62,328	57,659	460

□ 행정조직

ㅇ 기 구

구 분	본 청	보 건 소	동
현 황	3국 1실 12과 51담당	1보건소(4담당)	8개동

○ 공 무 원

계	본 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376명	252	11	28	85

○ 예산(당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1998년도	37,973	35,586	2,387	37.2%
1999년도	39,428	37,803	1,625	35.4%
2000년도	39,298	37,774	1,524	39.1%

3. 구민생활(2000. 6. 30.현재)

□ 보건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료시설		생활보호대상자(세대/명)			1일쓰레기 수거량 (수거율)	1일분뇨 수거량 (수거율)
		기관	병상수	소계	거택	자활		
개소 1,473	개소 271	64	164	312/564	209/355	103/209	119ton (100%)	57ton (88.4%)

□ 지역경제

경 지 면 적				공장등록 종업원수	금융기관 (지점수)
소 계	전	답	과수원		
2,850ha	1,006	1,710	134	421개업체 42,740명	35개소

□ 도시건설

도 로				주 택	상 수 도			하 수 도		
연장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률	1일 급수량	1인당1일 급수량	보급률	총인구	보급인구	보급률
km 367	% 18.19	km 197	% 94.61	29,693 95.6%	ton/일 28,900	191 ℓ	% 66.6	명 119,987	54,234	45.2 %

□ 교 통

자 동 차				
소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4,516대	25,829	2,905	5,491	291

□ 교 육 (개소/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21개소 / 21,727명	10 / 13,906	5 / 4,618	4 / 2,970		2 / 233

4. 동별 인구 · 면적현황

(2000. 6. 30. 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인구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22	27	119,987	
농소1동	16.02	4 (2개동중복)	17,112	농소라는 말은 고려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 말이며, 아파트단지가 많고 농촌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있는 **공단배후의 주거지역**임.
농소2동	10.98	3 (2개동중복)	23,467	
농소3동	30.31	5	22,579	
강동동	60.61	9	5,258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천혜의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효문동	16.29	4	16,394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많은 **효문국가공단**이 있음.
송정동	10.75	2	13,578	큰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임.
양정동	6.72	1	11,994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있고, **3,700여평의 체육공원**이 있음.
염포동	5.54	1	9,605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인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와 부산포등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강관, 현대정공 회사가 있음.

5. 울산광역시구·군 일반현황(2000. 6. 30.현재)

□ 인구·면적현황

구 분	면 적(㎢)	인 구 (명)			외 국 인 등록수(명)
		계	남	여	
계	1,056.1	1,033,241	529,937	503,304	3,335
중 구	37.0	230,312	117,842	112,470	319
남 구	71.4	331,324	169,009	162,315	653
동 구	35.6	188,512	97,677	90,835	893
북 구	**157.2**	**119,987**	**62,328**	**57,659**	**460**
울주군	754.9	163,106	83,081	80,025	1,010

□ 재정규모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울산광역시	839,415	588,189	251,226	65.4%
중 구	57,705	51,725	5,980	37.9%
남 구	83,480	76,640	6,840	64.9%
동 구	43,222	41,065	2,157	50.1%
북 구	**51,127**	**48,792**	**2,335**	**42.1%**
울 주 군	130,067	121,976	8,091	66.9%

제2장



의회운영현황

○ 제1절 집회현황

○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제1절 집회현황

1. 의회대별 집회현황

구분	연도	정 기 회		임 시 회		합 계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제1대	소 계	1	35	9	25	10	60
	'97	1	35	4	11	5	46
	'98			5	14	5	14
제2대 (전반기)	소 계	2	70	21	100	23	170
	'98	1	35	6	31	7	66
	'99	1	35	11	45	12	80
	2000			4	24	4	24

2. 연도별 집회현황

연도	정기회		임시회		합 계		법정회기일수
	회수	회기	회수	회기	회수	회기	
계	3	105	30	125	33	230	
'97	1	35	4	11	5	46	연 80일 (정기회 35일이내)
'98	1	35	11	45	12	80	〃
'99	1	35	11	45	12	80	〃
2000			4	24	4	24	〃 (정례회 35일이내)

3. 회기별 소집요구 및 집회현황

회 기	회 별	소집요구인	집회공고일	집회기간	회기
제11회	임시회	구청장	'98. 7. 1	'98. 7. 7	1
제12회	〃	김수헌의원외2인	'98. 7. 8	'98. 7.14~ 7.21	8
제13회	〃	진한걸의원외2인	'98. 8.26	'98. 9. 1~ 9. 3	3
제14회	〃	박광식의원외2인	'98. 9.18	'98. 9.24~ 9.30	7
제15회	〃	박광식의원외2인	'98.10.20	'98.10.26~11. 4	10
제16회	〃	김수헌의원외2인	'98.11.13	'98.11.19~11.20	2
제17회	정기회		'98.11.19	'98.11.25~12.29	35
제18회	임시회	김수헌의원외2인	'99. 1.19	'99. 1.25~ 1.26	2
제19회	〃	김수헌의원외2인	'99. 2.11	'99. 2.19~ 2.25	7
제20회	〃	진한걸의원외2인	'99. 3.23	'99. 3.29~ 3.30	2
제21회	〃	진한걸의원외2인	'99. 4.20	'99. 4.26~ 4.30	5
제22회	〃	박춘환의원외2인	'99. 5.19	'99. 5.25~ 5.26	2
제23회	〃	박춘환의원외2인	'99. 7.20	'99. 7.20	1
제24회	〃	박춘환의원외2인	'99. 8.17	'99. 8.23~ 8.26	4
제25회	〃	박광식의원외2인	'99. 8.26	'99. 9. 1~ 9. 4	4
제26회	〃	김수헌의원외2인	'99. 9.22	'99. 9.30	1
제27회	〃	김수헌의원외2인	'99.10. 2	'99.10. 8~10.16	9
제28회	〃	김수헌의원외2인	'99.11. 2	'99.11. 8~11.15	8
제29회	정기회		'99.11.19	'99.11.25~12.29	35
제30회	임시회	김수헌의원외2인	2000. 2. 3	2000. 2.12~ 2.21	10
제31회	〃	박광식의원외2인	2000. 3.22	2000. 3.28~ 4. 3	7
제32회	〃	강혁진의원외2인	2000. 5.15	2000. 5.22~ 5.23	2
제33회	〃	류재건의원외2인	2000. 6.21	2000. 6.27~ 7. 1	5

제2절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제2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전반기>('98.7.1~2000.7.6) '98~2000년도

회수	기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합계		170	242	10	2	99	9	3	4	0	13	9	93
소계	'98년도	66	82	3	1	37	4	0	2		5	2	28
제11회	'98. 7. 7	1	2										2
제12회	'98. 7.14~ 7.21	8	12			6			1		1		4
제13회	'98. 9. 1~ 9. 3	3	4								1		3
제14회	'98. 9.24~ 9.30	7	17	1		13							3
제15회	'98.10.26~11. 4	10	13		1	2	1		1		1	1	6
제16회	'98.11.19~11.20	2	6			1					1		4
제17회	'98.11.25~12.29	35	28	2		15	3				1	1	6
소 계	'99년도	80	118	5	1	45	4	3	1	0	6	4	49
제18회	'99. 1.25~ 1.26	2	5					1				1	3
제19회	'99. 2.19~ 2.25	7	8			3			1				4
제20회	'99. 3.29~ 3.30	2	11			6		2					3
제21회	'99. 4.26~ 4.30	5	16	1		8						2	5
제22회	'99. 5.25~ 5.26	2	4								1		3
제23회	'99. 7.27~ 7.27	1	19			14	1						4
제24회	'99. 8.23~ 8.26	4	6								1		5
제25회	'99. 9. 1~ 9. 4	4	4	1									3
제26회	'99. 9.30~ 9.30	1	7			3						1	3
제27회	'99.10. 8~10.16	9	9		1	2	1				1		4
제28회	'99.11. 8~11.15	8	11	1		2					2		6
제29회	'99.11.25~12.29	35	18	2		7	2				1		6
소 계	2000년도	24	42	2	0	17	1	0	1	0	2	3	16
제30회	2000. 2.12~ 2.21	10	9			3					1		5
제31회	2000. 3.28~ 4. 3	7	19	1		12			1			2	3
제32회	2000. 5.22~ 5.23	2	7			2					1		4
제33회	2000. 6.27~ 7. 1	5	7	1			1					1	4

제3절 안건별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 제11회임시회: '98. 7. 7~7. 7(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의장·부의장 선거	'98. 7. 7 의장직무대행 연장의원	○제2대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의 장: 윤두환의원 당선 ○부의장: 박춘환의원 당선	'98.7.7 선 거

2. 제12회임시회 : '98. 7. 14~7. 21(8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2	현대자동차대량 해고사태와관련 한결의안	'98. 7. 8 김수헌의원외 2명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 해고사태에 정부 차원의 중재단 긴급구성 ○노·사 양측은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제시로 협상에 임할 것. ○노·사 양측은 실업인원 및 향후 실업대책 등 재원확보에 총력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팀 구성등	'98.7.14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구 구세조례중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반영 ○표준세율을 적용할 세목에 대하여 세율을 명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반영	'98.7.21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확대 -"60제곱미터이하인"→"85제곱미터이하인"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98.7.21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정보공개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금액으로 함. ○수수료 신설 -문서, 사본, 열람, 복제 등 수수료	'98 7.21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폐기물관리법, 령, 규칙개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한 지침" 시달로 제정코자 함.	'98.7.21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주차요금의 경감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50% – 경승용차 주차요금 경감:50% – 자동차 부제 운행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20% ○제20조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정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정 – 기본요금 30분, 초과 10분이내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	'98.7.21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98. 7. 16 구 청 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 – 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	'98.7.21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9	울산광역시북구 5,000명미만과 소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98. 7. 16 구 청 장	○동 폐치·통합동 : 진장동, 효문동 ○통합 후 동명칭 : 효문동 ○통합 후 동사무소 소재지 : 북구 연암동 966번지(현 효문동사무소)	'98. 7. 21 의견서채택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8. 7. 10 구 청 장	○2대 의회 개원 따른 업무현황 보고·청취	'98.7.14~7.21 전부서 실시

3. 제13회임시회 : '98. 9. 1~9. 3(3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8. 8. 28 구 청 장	○계속된 장마에 따른 하계 방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진계획 ○행정조직개편 추진상황 ○공공체육 시설물관리 및 이용활성화 대책 ○강동해안관광개발 추진계획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환경미화원 일용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 ○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 ○'98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강동 해안지역 포장마차 철거대책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업무 추진실적	'98.9.1~9.3 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외 4개과

4. 제14회임시회 : '98. 9. 24~9. 30(7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1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98. 9. 4 구 청 장	○조례제명변경: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98.9.1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4 구 청 장	○행정절차법(법률제5241호, '96.12.31)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1조의 제목"(청문)"을 "(의결진술등)"으로 개정	'98.9.30 원안가결
13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4 구 청 장	○위탁징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66% 상향조정	'98.9.30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4 구 청 장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전면 개정	'98.9.30 원안가결
15	울산광역시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4 구 청 장	○행정절차법(법률제5241호, '96.12.31)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3조의 제목"(청문)"을 "(의결진술등)" 으로 개정	'98.9.30 원안가결
1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 ○사무직원 정수 조정 : 11명 → 10명	'98.9.30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7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실·과조정 -통·폐합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환경관리과 -신 설 : 도시교통과 신설 ○과명칭변경 : 건설도시과 → 건설과 ○국소관 분장사무 대강을 조정	'98.9.30 수정가결
18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동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란 중 진장동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효문동의 관할구역을 진장동, 명촌동, 효문동, 연암동 일원으로 조정	'98.9.30 원안가결
19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진장동 관련사항을 삭제조정	'98.9.30 원안가결
20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국가직 정원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정원 증가 -집행기관 : 369명, 의회 : 10명	'98.9.30 수정가결
2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보건소 위치를 조례에 명시 ○보건지소 폐지(농소 강동 보건지소)에 따른 보건지소 설치 규정 삭제 ○보건소 직제규칙에 있는 분장사무를 조례에 명시	'98.9.30 원안가결
22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 9. 15 구 청 장	○교통이 발달되고 주민이용율이 낮은 일부 보건진료소 폐지 -폐지대상 : 상안, 매곡 보건진료소	'98.9.30 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25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 9. 16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42,654,199천원 - 세출삭감 : 일반315,823천원 특별1,800천원 ○확정예산액 : 42,654,199천원	'98.9.30 수정가결
2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9. 18 구 청 장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 숙박비 인상조정 -당초(1야당) 19,500원 → 22,000원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조정	'98.9.30 원안가결

5. 제15회임시회 : '98. 10. 26~11. 4(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27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 9. 2 구 청 장	○세입결산액 : 25,834백만원 ○세출결산액 : 20,150백만원 ○세계잉여금 : 5,684백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승인심사)	'98.11.4 원안승인
24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98. 9. 16 구 청 장	○지출사업건수 : 벼멸구 긴급방제외 12건 ○지출결정액 : 93,017,710천원 ○지출액 : 89,710,390천원 ○불용액 : 3,307,32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승인심사)	'98.9.30 원안승인
28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8. 10. 19 김수헌외2명	○규칙의 본문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함.	'98.10.29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2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10. 19 김수헌외2명	○제2조 제①항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회기 중에 공휴일 포함되어도 현지조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98.10.29 원안가결
31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 10. 24 구 청 장	○종전에는 자금출납원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하던 것을 앞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가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임.	'98.10.29 원안가결
32	구정질문의건	'98. 10. 24 김수헌의원	○구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	'98.10.26 질 문
3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98. 10. 26 구 청 장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예방, 진료, 재활에 이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구축 ○2016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토대마련	'98.10.26 수정가결
34	울산광역시북구관내단위(회원)농협합병촉구결의안	'98. 11. 3 강혁진외 5명	○북구관내 단위농협(강동,농소)합병 권고 ○중앙관계부서에서는 인근지역 단위농협 상호간 합병을 할수 있는 특별법 제정 및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98.11.4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현황파악	'98. 10. 23 구 청 장	○전동사무소 업무현황보고·청취(동사무소 출장) ○참석 : 총무국장, 건설과장, 담당과장	'98.10.30 ~ 11.3 전동사무소

6. 제16회임시회 : '98. 11. 19~11. 20(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36	울산광역시북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8. 11. 14 구 청 장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구성 : 25인이내 -위원장 : 구청장 위촉 -위 원 : 구청장위촉 또는 임명	'98.11.20 상정→심의보류 '98.12.26 (제5차)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8. 11. 12 구 청 장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 업무추진사항	'98.11.19 지방세과외 3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	'98. 11. 의장제의	○감사기간 : '98.11.26~12.2(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98.11.20 원안가결

7. 제17회정기회 : '98. 11. 25~12. 29(3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37	구정질문의건	'98. 11. 20 진한걸의원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에 관한 질문 ○북구 실직자 고용 창출 대책에 관한 질문 ○작고 강한 지방정부구현건에 관한 질문 ○복식회계제도 실시에 관한 질문 ○북구 특산품 특화사업에 관한 질문	'98.12.18 (제4차) 질 문
38	'99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 11. 20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39,428,806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수정심사) - 심사기간 : 1998.12.4 ~ 12.17 - 세출삭감 : 일반1,226,684천원, 특별6,754천원 ○확정예산액 : 39,428,806천원	'98.12.18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39	'99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98. 11. 20 구 청 장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 80,787천원 ○재해대책기금 : 40,131천원 ○재난관리기금 : 7,167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수정심사)	'98.12.18 수정가결
41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98. 11. 25 구 청 장	○차입금액 : 880,000천원 ○차입선 : 환경관리공단 ○차입금 신청기간 : '98.12 ~ '99.5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이자율 : 연 7.5%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 1,115,900천원	'98.11.18 부 결
42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11. 25 구 청 장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 ○휴직명령 기간 및 효력에 대하여 보완 및 신설	'98.12.19 원안가결
43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11. 25 구 청 장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정년 연장제 폐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위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 함. ○휴직대상, 기간, 효력등 휴직제도의 미비점 보완	'98.12.19 원안가결
44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8. 11. 28 구 청 장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구청장 소속하에 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등 6개사항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포함 12인이내	'98.12.26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45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11. 28 구 청 장	○종전 농소2동 사무소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4-4번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15"로 개정	'98.12.19 원안가결
46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98. 11. 28 구 청 장	○기금의 용도 : 공공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경제 능력없는 민간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이주비 융자 등 ○기금의 융자 :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 등	'98.12.18 원안가결
47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 12. 14 구 청 장	○현재 구본청, 직속기관, 동으로 나누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구관련조례 통합운영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설치규정 신설 ○통합조례설치로 인한 관련조례 폐지(보건설치관련)	'98.12.26 수정가결
48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8. 12. 14 구 청 장	○관련 상위법규 개정삽입 :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신설 ○정원의 총수 표기방법 개선 ○의회사무과 명칭표기 개선	'98.12.26 원안가결
4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8. 12. 14 구 청 장	○조례 제명 변경 ○전문위원 근거 명확화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98.12.26 원안가결
50	울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8. 12. 14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	'98.12.26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51	'98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8. 12. 14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45,613,554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수정심사) - 심사기간 : 1998.12.21~12.24 - 세출삭감 : 일반46,590천원 ○확정예산액 : 46,613,554천원	'98.12.26 수정가결
52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98. 11. 25 구 청 장	○차입금액 : 353,000천원 ○차 입 선 : 환경관리공단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이 자 율 : 연 7.5%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 530,652천원	'98.12.19 원안가결
5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 12. 23 구 청 장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 감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감면	'98.12.28 원안가결
54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 12. 23 구 청 장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잡종재산 매각대금 20년이내 연4% ○천재지변의 경우→대부료 납부기간 유예 ○폐천부지 3,300㎡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98.12.28 원안가결
55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 12. 23 구 청 장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범위 확대 ○1개 차량에 직원 약간인을 두고 운용토록 개정 ○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	'98.12.28 원안가결

8. 제18회임시회 : '99. 1. 25~1. 26(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57	구정질문의건	'99. 1. 21 윤종오의원	○북구청 발주 각종 공사계약에 관한 질문 ○울산 자활센타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 ○염포동 미도아파트 향후 대책관련 질문	'99.1.25 (제1차) 질 문
58	울산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	'99. 1. 25 김수헌의원외 2명	○울산지방경찰청이 설치됨에 따라 전국에서 북구가 가장 높은 치안수요 ○치안관할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자치구인 북구지역 내 경찰서 설치 촉구 건의	'99.1.25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9. 1. 23 구 청 장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 등 추진현황(도시교통, 건축, 지적) ○임시청사관리 및 신축청사 업무추진현황(총무과)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지역경제과)	'99.1.25

9. 제19회임시회 : '99. 2. 19~2. 25(7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60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99. 2. 11 구 청 장	○설립기관의단위:구본청,보건소,의회기구 ○매년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기관장협의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지정	'99.2.20 심의보류 '99.3.30 수정가결
61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9. 2. 11 구 청 장	○수탁자의 자격, 위탁계약, 운영비보조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 폐지	'99.2.20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62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 2. 11 구 청 장	○〈현행〉 통-4~8반 〈개정〉 4~15반 〈수정〉 4~20반 ○〈현행〉 반 30가구이내 기준 〈개정〉 30가구 기준	'99.2.25 수정가결
63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2. 11 구 청 장	○불용품소요조회 기준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99.2.20 원안가결
64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99. 2. 11 구 청 장	○차입규모 〈당초〉 5,500백만원 → 〈변경〉 8,100백만원 금회차입 〈당초〉 2,750백만원 → 〈변경〉 4,050백만원 이율 연3% 상환조건 2년거치10년균분상환	'99.2.25 원안가결
65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99. 2. 22 윤종오의원외 2명	○핵발전소 유치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에 핵발전소 유치계획 철회 촉구	'99.2.25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9. 2. 13 구 청 장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99.2.19 ~ 2.25 전부서보고

10. 제20회임시회 : '99. 3. 29~3. 30(2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6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99. 3. 22 구 청 장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차입하여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함. ○금회 차입요구액 : 527백만원(3년거치 7년균등상환)	'99.3.30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68	울산광역시북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 3. 25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99.3.29 원안가결
69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3. 25 구 청 장	○가정용 쓰레기봉투 5ℓ 용량란 신설 ○기존 10ℓ 쓰레기봉투 사업장용 범위확대 ○봉투의 크기에 있어 내용물 규격을 조정	'99.3.30 부 결
70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3. 25 구 청 장	○직제변경 및 계제폐지에 따라 "건설도시과 치수계장"을 "건설과 재해대책업무 담당주사"로 변경	'99.3.30 원안가결
71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3. 25 구 청 장	○울산 중부경찰서 → 울산광역시북구 관할 경찰서로 특정 ○육군 제7765부대 →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로 특정	'99.3.30 원안가결
72	현대자동차(주) 본사울산유치건의안	'99. 3. 25 류재건의원외 2명	○21세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자동차(주) 본사가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촉구 및 건의	'99.3.29 원안가결
73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	'99. 3. 25 진한걸의원외 2명	○울산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징적인 문화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자동차 국제박람회 행사개최 건의	'99.3.29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9. 3. 26 구 청 장	○한국까르푸(주)가사용 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산업건설국)	'99.3.30 보고

11. 제21회임시회 : '99. 4. 26~4. 30(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74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 4. 20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46,148,070천원 ·삭감액 : 세출 → 777,609천원 ○예산확정액 : 46,148,070천원	'99.4.30 수정가결
76	울산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안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 적용	'99.4.26 원안가결
77	울산광역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 분납가능	'99.4.26 원안가결
78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업장 및 법16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규정 삭제	'99.4.26 원안가결
79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에서 위탁재활용개시 5일 전까지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완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규정 삭제	'99.3.30 원안가결
80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은익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 제출 의무를 폐지 ○행정재산의 허가조건 중 사용허가표시 부착조건 폐지	'99.4.26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81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개정)융자금 대부 신청시 동정자문위원 중 5명의 연대보증 → 3명의 연대보증으로 완화 ○(수정)마을의 경우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2명으로 수정	'99.4.26 수정가결
82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양수기대부시 동장경유 규정을 삭제 ○양수기 관리소홀에 따른 반환 또는 시정명령규정 완화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	'99.4.26 원안가결
8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99. 4. 22 구 청 장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예납관련조항 삭제	'99.4.26 원안가결
8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99. 4. 22 구 청 장	○북구청 신청사 건립 취득(건물) - 건립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827㎡ - 건립기간 : 1999. 7. ~ 2000. 12 - 건립장소 : 북구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99.4.29 원안가결
85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99. 4. 29 구 청 장	○북구와 한국주택은행의 협약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발생의 경우 국민 주택기금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한 보증채무부담행위	'99.4.29 원안가결
	구정질문의건	'99. 4. 23 김수헌의원	○북구청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	'99.4.26 (제1차) 질 문
	구정질문의건	'99. 4. 23 박광식의원	○21C 북구발전마스터플랜에 관한 질문 ○북구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제의안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	'99.4.26 (제1차) 질 문

12. 제22회임시회 : '99. 5. 25~5. 26(2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8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 5. 19 김수헌의원외 2명	○출석일시:'99.5.25~5.26(2일간) ○출석사유: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	'99.5.25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9. 5. 18 구 청 장	○'98년도 및 '99년도 각종사회단체등 정액·임의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관리현황(문공,총무,사복,환위,농수,도시교통과) ○우수기 재해대책 및 업무추진현황(건설과)	'99.5.25 (제1차)
			○'99년도 지역개발사업예산 업무추진현황(지경,농수,건설,도시교통과) ○하절기 방역대책 업무추진현황(보건소)	'99.5.26 (제2차)

13. 제23회임시회 : '99. 7. 27~7. 27(1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87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 6. 18 구 청 장	○'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직접 그 제한을 하고 있어 폐지	'99.7.27 원안가결
88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6. 18 구 청 장	○가정용 쓰레기봉투 용량중 5ℓ를 신설 ○기존 10ℓ봉투 사업장까지 사용범위를 확대	'99.7.27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89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9. 6. 18 구 청 장	〈개정〉 ○관계법령 개정으로 전면개정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및 분뇨수집운반비 조정 (인상) 기본요금 11,045원 → 15,209원(37.7%) 초과요금 772원 → 1,062원(37.6%) 수집운반비 177원 → 201원(13.6%) 〈수정〉 ○수집운반비 201원 → 177원(현행대로) ○기본요금 15,209원 → 11,045원(현행대로) ○초과요금 1,062원 → 772원(현행대로) ○(별표3)가축제한지역 일부신설	'99.7.27 수정가결
90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99. 7. 9 구 청 장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와 판매인의 결격 요건 폐지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제로 전환함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을 허용하던 것을 폐지함 ○판매수수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하향 조정함	'99.7.27 원안가결
91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9. 7. 9 구 청 장	○융자 신청시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 추천제를 폐지 ○특별회계의 기금의 세입에 있어 "기부금" 삭제	'99.7.27 원안가결
92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99. 7. 9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	'99.7.27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9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99. 7. 10 구 청 장	○취득 소재지 : 연암동 361-1번지 토지(대)591.6㎡ 취득가격 : 153,100천원 활용계획 : 공용 청사부지 활용계획으로 취득 ○처분 소재지 : 효문동 335-4번지 토지(유지)2,087㎡ 처분사유 : 공유재산의 매각지침중 법규에 의한 매각(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용지로 승인된 지역)	'99.7.27 원안가결
95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9. 7. 22 구 청 장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인장업에 관한 위임사무 폐지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일부제외 - 포장, 폐기물, 1회 용품 등의 사용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단속 - 건축법 제 72조 규정의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 무허가 건축물 단속	'99.7.27 원안가결
96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9. 7. 22 구 청 장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의 동 권한위임방식을 "구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구사무위임조례와 상치됨으로 "구사무위임 규칙으로 정하여"를 삭제하고자 함.	'99.7.27 원안가결
97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99. 7. 22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 폐지	'99.7.27 원안가결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th></tr>
<tr><td>98</td><td>울산광역시북구
지역의료보험운
영지원을위한조
례폐지조례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td><td>'99.7.27
원안가결</td></tr>
<tr><td>99</td><td>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쓰레기수
집·운반및재활
용촉진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지정, 배출 방법 등에 대하여 "농소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td><td>'99.7.27
원안가결</td></tr>
<tr><td>100</td><td>울산광역시북구
쓰레기감량및자
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동사무소 기능전환 제1단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농소1동 사무중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td><td>'99.7.27
원안가결</td></tr>
<tr><td>101</td><td>울산광역시북구
수방단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에 따라 수방단원 조직 편성에 있어 동장의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본인의 동의로서 임명 및 위촉 가능
○수방단원이 될수 없는 자 : 20세미만자→17세미만 하향조정</td><td>'99.7.27
원안가결</td></tr>
<tr><td>102</td><td>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 조정(신설)
<table><tr><th>현 행</th><th>개 정</th></tr><tr><td>·1필지 300원</td><td>·1필지 300원
·년도별 100원 추가
·열람 200원</td></tr></table></td><td>'99.7.27
원안가결</td></tr>
<tr><td>103</td><td>'99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td><td>'99. 7. 22
구 청 장</td><td>○예산요구액 : 50,232,278천원
증감 : 4,048,208천원</td><td>'99.8.10
철회요구에
의한 반려</td></tr>
</table>

14. 제24회임시회 : '99. 8. 23~8. 26(4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06	울산공항실태에 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99. 8. 21 김수헌의원외 2명	○울산공항 개항이후 이용객이 계속 증가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실태를 조사하여 해결방안 강구	'99.8.23 원안가결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위원(6명) : 김수헌, 강혁진, 박광식, 류재건, 진한걸, 윤종오의원	'99.8.23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9. 8. 20 구 청 장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업무추진현황(기획감사) ○농소천곡동 979-1번지 소재 축사관련 업무추진 현황(농림수산과, 건설과)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관련업무 추진현황(건설과) ○청사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관계 업무추진 현황(총무과)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추진 현황(지역경제과)	'99.8.23 ~ 8.26 보 고

15. 제25회임시회 : '99. 9. 1~9. 4(4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05	'99.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 8. 18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51,222,914천원 ○삭 감 : 세출 548,005천원 ○확정예산액 : 51,222,914천원	'99.9. 4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울산공항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류재건위원장	○조사기간 : '99.9.1~11.20 ○조사기관 : 울산공항, 시, 구청, 공항관련 부처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 류재건, - 간 사 : 강혁진 - 위 원 : 김수헌,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 전문위원 : 이차호 - 사무직원 : 서준영	'99.9. 4 원안가결
11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 9. 27 구 청 장	〈개정〉 ○문화공보실, 시민과 폐지 ○민원봉사과 신설 ○자치행정과 신설 〈수정〉 ○기획감사실→기획공보실로 변경 ○민원봉사과→민원지적과로 변경	'99.9.30 수정가결
	구정질문의건	'99. 9. 30 김수헌의원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사후관리점검표 작성 등에 관한 질문 ○상안교개통 및 잠수교 긴급복구공사에 관한 질문	'99.9.30 (제1차) 질 문

16. 제26회임시회 : '99. 9. 30~9. 30(1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1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 9. 27 구 청 장	○정원 379명 → 365명(△14명) 집행기관정원 : 368명 → 354명(△1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99.9.30 (제1차)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14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9. 27 구 청 장	○공영주차장 관리의 위탁운영에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 ○주차요금 경감에 경자동차(800cc)로 확대적용 ○모범납세자 1년간 주차요금 100%감면 신설	'99.9.30 원안가결

17. 제27회임시회 : '99. 10. 8~10. 16(9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08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 9. 1 구 청 장	○세입결산액 : 48,559,179천원 ○세출결산액 : 34,620,699천원 ○세계잉여금 : 13,938,480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승인심사)	'99.10.16 원안승인
109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 9. 21 구 청 장	○외국인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창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지원대책을 강구함. ○대부료 징수 당해 토지 평정가격 1000분의10으로 사전징수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시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특례규정 적용배제 ○대부료 및 사용요율 → 20% 범위내에서 적용	'99.10.8 원안가결
110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9. 9. 27 구 청 장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지역의 지정기준,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지역 지정절차와 해제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 ○선도계획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정	'99.10.8 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15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	'99. 10. 4 구 청 장	○지출사업건수 : 염포동 편입경비 외 10건 ○지 출 승 인 액 : 420,697,000천원 ○지 출 액 : 271,510,140천원 ○이 월 액 : 73,863,450천원 ○불 용 액 : 75,323,41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승인심사)	'99.10.16 원안승인

18. 제28회임시회 : '99. 11. 8~11. 15(8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17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10. 16 구 청 장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시 6월의 이행기간을 정해 청결유지토록 조치명령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환경부 예규를 준용 불필요한 과태료관련 사항을 삭제	'99.11.11 수정가결
118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 11. 1 구 청 장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구에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365명 ⇒ 372명 집행기관의 정원 : 354명 ⇒ 36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99.11.11 원안가결
119	'99.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 11. 8 구 청 장	○'99예산액 : 52,153,400천원 ○기정예산액 : 51,222,914천원 - 증 : 930,486천원	'99.11.11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99. 11. 5 구 청 장	○북구청사 건립추진현황(11:00업무보고) ○'99.8.23 착공 후 공사 진척현황(10:00 현장방문) ○북구청 구금고지정 업무추진현황	'99.11.12 총무과 지방세과 보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	'99. 11. 13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류재건	○조사기간: '99. 9. 1 ~ 11. 14(75일간) ○보고서 내용 : 보고서 참조(75페이지) ○조사된 주요문제점 및 조치할 사항 ①울산·경주·포항·대구 등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립 이전 ②울산공항 자체 레이다(Radar)시설 설치 ③활주로 확장 또는 미끄럼 방지시설 (Gooving) 설치(500피트 활주로 연장 효과) ④울산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 (Clearance Delivery) 주파수 변경 ⑤공항 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Light) 설치	'99.11.15 원안가결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99. 11. 15 의장제의	○주체 : 본회의 ○기간 : '99.11.26 ~ 12. 2	'99.11.15 원안가결

19. 제29회정기회 : '99. 11. 25~12. 29(35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	'99. 11. 20 구 청 장	○계획기간:'98~2002(5개년 단위)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 ○과거('98~'99)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2개년(2001~2002)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	'99.11.25 (제1차) 보 고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22	2000년당초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 11. 20 구 청 장	○요구예산액 : 39,237,461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수정심사) - 심사기간 : '99.12.4~12.18(15일간) - 심사내역 : 세출 감882,571천원 ○확정예산액 : 39,237,461천원	'99.12.20 수정가결
12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99. 11. 20 구 청 장	○각종 기금의 통합 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대처 ○수입계획:221,489천원 ○지출계획:221,489천원	'99.12.20 원안가결
126	'99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 12. 15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53,860,433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심사(수정심사) - 심사기간 : '99.12.20 ~ 12.23(4일간) - 심사내역 : 세입 증4,603천원 세출 증511천원 감10,260천원 ○확정예산액 : 53,865,036천원	'99.12.24 수정가결
127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0 구 청 장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명칭 관할구역란 중 보건소 상안진료소를 삭제	'99.12.27 원안가결
12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99. 12. 14 구 청 장	○북구 천곡동 421-2번지 대지 966㎡을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기부함에 따라 공공청사부지 활용으로 취득	'99.12.27 원안가결
13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3 구 청 장	○경조사별 휴가일수(제24조제1항 관련) 개정안 :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3일 수 정 :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5일	'99.12.27 수정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34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3 구 청 장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명시 -"공공안전의"→"청사관리 등에서 공공안전의"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 단축 - "7일" → "3일"	'99.12.27 원안가결
128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0 구 청 장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전액면제, 다음 3년 동안 50%경감"	'99.12.27 원안가결
132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0 구 청 장	○국민건강증진법위반등에 대한 과태료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부과기준 개정 -법 제9조제3항(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위반자 ⇒ 삭제	'99.12.28 원안가결
129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0 구 청 장	○수산업에 관련한 민원신청의 수수료 징수 기준마련 ○수수료율은 종전의 해양수산부령에 정한 금액으로 함.	'99.12.28 원안가결
130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 12. 20 구 청 장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행정질서법(과태료)이 법령 위배됨에 따라 규제 폐지	'99.12.28 원안가결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99. 12 의장제의	○실시기간 : '99.11.25~12.2(7일간) ○감사주체 : 본회의 ○감사지적사항 : 시정-28건, 건의-29건	'99.12.29 원안가결

20. 제30회임시회 : 2000. 2. 12~2. 21(10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35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0. 1. 27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	2000.2.14 원안가결
137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2. 10 구 청 장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의무 신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 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000.2.14 수정가결
13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2. 11 김수헌의원외 2명	○회의수당지급 용어조정 : 회의수당 → 회기수당 ○종전 회의수당 회의출석시에 지급 →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조정 의정활동비 : 월35만원 → 월55만원 회기수당 : 출석일수 1일 5만원 → 7만원 ○국외여비조정 : 일비 각 등급별 10달러, 숙박비 10%인상	2000.2. 14 원안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9. 2. 13 구 청 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전실·국·소·과보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 사직의건	2000. 2. 12 윤두환의원	○제16대 국회의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선거일전 60일)	2000.2.21 가 결
	의장보궐선거의건	2000. 2. 12 의장제의	○의장(윤두환)의원 사직 처리로 궐위된 의장 선거 - 의장당선 : 박춘환(2차투표) ○현 부의장(박춘환)이 의장 당선으로 부의장 선거 - 부의장당선 : 진한걸(1차투표)	2000.2.21 (제8차)

21. 제31회임시회 : 2000. 3. 28~4. 3(7일간)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39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0. 3. 4 구 청 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시설 등에 관한 규정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등 근거 마련	2000.3.29 원안가결
140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2000. 3. 4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상징물, 캐릭터, 구기의 지정 및 상징내용	2000.3.29 원안가결
14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1국 설치 및 실과조정 - 총무국 : 총무, 자치행정, 지방세, 민원봉사과(4과)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위생, 환경미화과(4과) - 도시개발국 : 도시교통, 건설, 농림수산, 건축과(4과) ○실과 명칭 변경 - 기획공보실 → 기획감사실, - 민원지적과 → 민원봉사과	2000.3.28 원안가결
14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제1항) - 당초 : 2000년 7월 31일까지(2차연도) - 변경 : 2001년 7월 31일까지	2000.3.28 원안가결
143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2조) - 당초(3) : 각 국장, 기획공보실장 - 변경(5) : 각 국장, 기획공보실장, 안건제출 부서과장, 여성과장(1)단, 여성과장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청장이 임명	2000.3.28 원안가결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44	울산광역시북구 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북구소식지 발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소식지 게재 자료수집, 취재, 원고청탁에 필요한 명예기자를 선정, 다양한 소식을 전달	2000.3.28 부 결
145	울산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감사청구 주민의 수 설정 : 200명 이상	2000.3.28 원안가결
146	울산광역시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장학생 자격 :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중·고교생 자녀중 새마을 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 ○장학금 지급 : 매학기별 지급 ○장학금 예산 : 구비 50%, 시비 50%	2000.3.29 원안가결
147	울산광역시북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신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의 임기 : 2년	2000.3.29 원안가결
148	울산광역시북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감면 범위 확대 ○지정문화재 재산, 종토세 면제 : 전액 ○영리목적 노외주차장 재산, 종토, 사업소세 면제규정 삭제	2000.3.29 원안가결
149	울산광역시북구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1 구 청 장	○음식물쓰레기 가열건조 수분함량 : 75% → 25%미만 ○발효건조 수분함량 : 75% → 40%미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 무이행계획 신고 기간 : 7일 이내 → 30일 이내로 연장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 하향 조정하여 재활용 용이	2000.3.28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50	200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 3. 21 구 청 장	○예산요구액 : 43,299,555천원 - 심사기간 : 2000.3.29 ~ 4.1(4일간) - 심사내역 : 일반회계 세출 감182,264천원 ○확정예산액 : 43,299,555천원	2000.4.3 수정가결
	구정질문의건	2000. 3. 22 진한걸부의장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에 관한 질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구에 관한 질문 ○지역 산업공동화에 관한 질문	2000.4.3 (제7차)
	구정질문의건	2000. 3. 29 윤종오의원	○환경미화원의 결원 대책에 관한 질문 ○쓰레기 봉투값 단일화에 대한 질문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 계획 철회에 관한 질문	2000.4.3 (제7차)
15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000. 3. 22 김수헌의원외 2명	○정기회를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 - 1차 : 7월 7일 - 2차 : 12월 1일 집회토록 함.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2차정례회 :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2000.4.1 원안가결
153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2000. 4. 3 윤종오의원외 2명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의 철회와 대우자동차 공기업화를 강력히 촉구. ○기획예산처, 산자부, 국회산자위, 대통령비서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결의안 이송	2000.4.3 원안가결

22. 제32회임시회 : 2000. 5. 22~5. 23(2일간)

의안 번호	안 건 명	제출일 및 제출(발의)자	주요골자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154	울산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000. 4. 25 구 청 장	○통·반장의 위촉방법 개선 - 동장위촉→동장위촉 또는 주민선출 당해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통·반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통·반장의 해촉사유 추가 :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	2000.5.22 수정가결
155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000. 4. 25 구 청 장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위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법률가등 5~10인이내 위원으로구성 ○조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여부를 물어 조정안을 수락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2000.5.22 수정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2000. 5. 18 구 청 장	○2000.7.1의약분업 관련 업무추진현황 ○과수재배(배) 냉해피해 업무보고 ○구제역대책 및 예산집행 업무추진현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업무추진현황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현황	2000.5.22 ~ 5.23 보 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0. 5. 18 의장제의	○의원: 윤종오의원 ○공인회계사, 김선익, 서상길	2000.5.22 원안가결

23. 제33회임시회 : 2000. 6. 27~7. 1(5일간)

<table>
<tr><th>의안
번호</th><th>안 건 명</th><th>제출일 및
제출(발의)자</th><th>주요골자 및 사전심사</th><th>심의결과</th></tr>
<tr><td>157</td><td>200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td><td>2000. 6. 19
구 청 장</td><td>○예산요구액 : 51,126,743천원
- 심사기간 : 2000.6.28 ~ 6.30(4일간)
- 심의내역 : 일반회계 세출 감172,703천원
○확정예산액 : 51,126,743천원</td><td>2000.6.30
수정가결</td></tr>
<tr><td>158</td><td>행정구역(경계)
조정에따른구의
회의견청취의건</td><td>2000. 6. 20
구 청 장</td><td>○조정규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현 재</th><th colspan="3">조정후</th></tr>
<tr><th>면적</th><th>세대수</th><th>인구</th><th>면적</th><th>세대수</th><th>인구</th></tr>
<tr><td>창평동
(농소1동)</td><td>5.63
(14.90)</td><td>386
(4,953)</td><td>1,207
(17,082)</td><td>5.61
(14.88)</td><td>389
(4,956)</td><td>1,212
(17,087)</td></tr>
<tr><td>송정동
(송정동)</td><td>4.50
(10.79)</td><td>230
(3,745)</td><td>737
(13,534)</td><td>4.52
(10.81)</td><td>227
(3,742)</td><td>732
(13,529)</td></tr>
</table>
○조정대상 및 내역
<table>
<tr><th>지역명</th><th>편입되는동</th><th>편입받는동</th><th>필지수</th><th>면적</th></tr>
<tr><td>창평천
일 원</td><td>송정동
(송정동)</td><td>창평동
(농소1동)</td><td>26</td><td>33,263</td></tr>
<tr><td></td><td>창평동
(농소1동)</td><td>송정동
(송정동)</td><td>28</td><td>54,681</td></tr>
</table></td><td>2000.6.28
심의보류

2000.7.10
재심의,의견
제시(의결)</td></tr>
<tr><td>159</td><td>2000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결의건</td><td>2000. 6. 26
구 청 장</td><td>○신청사 증축
- 당초 : 지하 1층, 지상5층 연면적
12,983.15㎡(3,927평)
- 변경 :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3,725.27㎡(4,154평)
- 증감내용 : 옥상층(증축) 752.12㎡
○구민회관 건립
- 신청사 부지내 구민회관 건립 3,101㎡</td><td>2000.6.28
(제2차)
심의보류

2000.6.30
(제4차)
원안가결</td></tr>
<tr><td></td><td>의장·부의장
선거의 건</td><td>2000. 6. 27
의장제의</td><td>○제2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 의장 : 진한걸의원 당선(1차투표)
- 부의장: 박광식의원 당선(3차투표)</td><td>2000.7.1
선 거</td></tr>
</table>

제3장



회의개최사항

- 제 1 절 제11회 임시회
- 제 2 절 제12회 임시회
- 제 3 절 제13회 임시회
- 제 4 절 제14회 임시회
- 제 5 절 제15회 임시회
- 제 6 절 제16회 임시회
- 제 7 절 제17회 정기회
- 제 8 절 제18회 임시회
- 제 9 절 제19회 임시회
- 제10절 제20회 임시회
- 제11절 제21회 임시회
- 제12절 제22회 임시회
- 제13절 제23회 임시회
- 제14절 제24회 임시회
- 제15절 제25회 임시회
- 제16절 제26회 임시회
- 제17절 제27회 임시회
- 제18절 제28회 임시회
- 제19절 제29회 정기회
- 제20절 제30회 임시회
- 제21절 제31회 임시회
- 제22절 제32회 임시회
- 제23절 제33회 임시회

제1절 제11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구청장

나. 개회일시 : '98. 7. 7 09:30

다. 회　　기 : '98. 7. 7 ~ 7. 7(1일간)

라. 부의안건

○ 의장·부의장선거(직무대행 연장의원)

○ 제2대의회 개원식

2. 의사일정

제1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7. 7. 7~7. 7(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7. 7 (화) 09 : 30	1	1. 의장·부의장 선거 2. 제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제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집회보고 · 연장의원 사회
11 : 00		개원(개회)식	

3.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제1장 제3절 "제2대전반기의회원구성"참조

제2절 제12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8. 7. 14 10:00

다. 회　　기 : '98. 7. 14 ~ 7. 21(8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구청장제출)
- ○ 현대자동차대량해고사태와관련한결의안(김수헌의원외2명 발의)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개원 이후 첫 집회인 제12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7월15일 10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북구가 신설 자치구로 새롭게 출발한 지 첫돌을 맞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했던 우리 북구가 어엿한 자치 구로서 독자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1만 북

구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청사건립 및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등 시급한 당면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11만 구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 건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임시회)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포함한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환경문제, 민생문제 등을 내실있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가 가려운지를 항상 찾아다닐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대 의회 첫 회기에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 7. 14~7. 21(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7. 14 (화) 10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1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업무보고)	소회의실
'98. 7. 15 (수) 10 : 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8. 7. 16 (목) 14 : 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8. 7. 17 (금) 10 : 00		(제 헌 절)	
'98. 7. 18 (토) 10 : 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7. 19 (일)		(일 요 일)	
'98. 7. 20 (월) 10 : 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98. 7. 21 (화) 10 : 00	6	1. '97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보 건 소 ○ 의회사무국	소회의실

— 당일의사일정 —

○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본회의('98. 7. 21)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안) 〈보건소〉
3.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 〈산업건설국〉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총무사회국〉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국〉
6.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사회국〉
7.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총무사회국〉
8. 울산광역시북구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총무사회국〉
9.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 속〉
    ○ 의회사무국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현대자동차대량해고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의안번호 제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8. 7. 8(김수헌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8. 7. 14(제1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사태가 울산경제는 물론 우리 나라 경제에 끼치는 절대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회사는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고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동부, 울산지방노동부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북구청과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11만 구민을 대표하여 채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정부차원에 중재단을 긴급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설 것.

○ 노·사 양측은 고용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제시로 협상에 임할 것.

○ 노·사 양측은 실업인원 및 향후 실업대책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

○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

○ 회사는 구체적 내용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감원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

○ 노조는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전향적 양보로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사태가 울산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 경제에 끼치는 절대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98년 7월 13일 오전 노·사 양측을 방문, 회사는 정리해고신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여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울산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실업의 고통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더많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현대자동차 대량감원은 하청기업의 연쇄정리해고로 이어지고 그 파급력은 구매력감소, 지역상권붕괴, 울산경제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외 사회불안에 따른 각종 범죄증가 등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북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노측은 3차파업을 앞둔 시점에 노·사 양측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협상에 임하고 정부도 구체적 안을 가지고 중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11만 북구주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결의안을 채택한다.

- 아 래 -

-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해고사태의 심각성을 적시하여 정부차원의 중재단을 긴급 구성하여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노·사 양측은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근로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

- 노·사 양측은 기 발생한 실업인원 및 향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는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 노·사 양측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상호 극단적 주장을 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 회사는 일방적 통보식이 아닌 더욱 구체적 내용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추가 하청 이관을 자재하는 등 감원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한다.
- 노조는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부분에 대해 전향적 양보로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대다수 구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98. 7. 1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7. 16(구청장)

○ 심의일자 : '98. 7. 21(제12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97. 7. 19)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추진을 위한 지침

(환경부) 시달.

○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조성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처리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처리기준)의 위임규정과 환경부지침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을 제정하므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강혁진 의 원	○공동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토록 되는지?	김 연 수 환경미화 과 장	○조례13조2항에 보면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설치 하도록 할 계획임.
윤종오 의 원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서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 규격이 작은 규격도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의향은?	김 연 수 환경미화 과 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에서 20ℓ까지 제작할 계획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7. 16(구청장)

○ 심의일자 : '98. 7. 21(제12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하므로써 보건시책 효율과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조)

○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본 조례제정사항은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구민보건향상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회의소집 할 때 꼭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박 혜 경 보건소장	○그렇지 않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 울산광역시북구5,000명미만과소행정동폐치분합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7. 16(구청장)

○ 심의일자 : '98. 7. 21(제12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인구 5,000명 미만 과소행정동 폐치 추진계획이 '98. 6. 27 울산광역시에서 통보됨에 따라 향후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함.

○ '98. 5. 31 현재 인구 1,472명인 진장동을 의원 선거구역이 같은 인근 효문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진장동 인구 1,472명 세대 502세대 면적 5.85㎢이며 지역특성으

로는 전역이 녹지지역으로 사방농경지로 도시속의 농촌마을이며 관할법정동은 진장, 명촌동임.

○ 인근 효문동으로 통합시 인구 16,156명, 가구 4,956, 면적 16.27㎢이며, 통합후 동사무소는 북구 연암동 966번지 현 효문동사무소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리,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면에서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예상됨.

○ 21세기 자치시대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거구가 동일한 진장동을 통합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통합된 후 진장동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제반 문제점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류재건 의 원	○폐치분합에 따른 정부의 방침으로 조치가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창구제라도 했으면 하고, 버스노선 없어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대책은?	김 기 열 총무사회국 장	○국가시책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치하고 이동민원실 운영 정도로 직원 상주시키고 버스노선 관련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류재건 의 원	○동사무소 직원이 상주를 하려면 인건비 문제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유 병 태 총무과장	○효문동 직원으로 T/O조정만 민원실 요원으로 더 해주면 가능함. ○별도의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고 폐치되는 진장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동이 섭섭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모든 시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박춘환 의 원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유 병 태 총무과장	○폐치분합에 따른 결정을 할 때, 2002년까지 잠정적으로 동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하겠다는, 정부에서 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전환을 해서 한다는 방침임.

5) 심의결과 : 의견서 채택

종합의견서

대상지역	진장동 → 효문동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인구 5,000명미만의 과소행정동 폐치분합에 있어, 진장동을 폐지하고 효문동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리, 지형적 여건은 물론 행정서비스 이용면에서도 시간, 경제적으로 주민생활에 심히 불편함이 예상되나,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거구가 동일한 진장동과 효문동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 통합되는 진장동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폐치되는 진장동에 정규직원 1명을 배치시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제증명서류관련 발급신청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명촌동 주민을 위한 명촌동을 경유하여 효문동사무소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등 주민편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7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제3절 제13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진한걸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8. 9. 1 10:30

다. 회　　기 : '98. 9. 1 ~ 9. 3(3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덧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는 가을의 문턱 9월을 맞아 제13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숨가쁘게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7일 제2대 북구의회가 희망을 갖고 개원하여 힘찬 출발을 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방자치제도의 일천함으로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에는 많은 태생적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2대 북구의회는 확고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공공복리증진과 균형있는 도시개발 등 11만 구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조화롭고 활기찬 새 북구 건설의 성숙한 주민자치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로 인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과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우리 지역 소재 현대자동차 노·사 문제가 공권력 개입이란 극한 상황을 피하고 노·사 합의로 해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사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회복되기를 11만 북구주민을 대표하여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실·국별 당면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 9. 1~9. 3(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 회 식)	본회의장
'98. 9. 1 (화) 10 : 30	1	1. 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보건소 소관 -계속된 장마에 따른 하계방역 대책 ○ 기획감사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진계획 - 행정조직개편 추진사항 ○ 문화공보실 - 공공체육시설물관리 및 이용 활성화대책 - 강동해안 관광개발추진계획	소회의실
'98. 9. 2 (수)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총무과) - 환경미화원 일용직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총무과) - 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방안 (지방세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9. 3 (목) 10 : 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지역경제과) – '98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건설도시과) –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건설도시과) – 강동 해안지역 포장마차 철거대책(건설도시과) –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건설도시과) – 불법건축물현황 및 단속업무 추진실적(건축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행정조직개편 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1(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과로 조정

○ 정원조정현황 : 424명(현)→398명(26명감축)

○ 2국2실12과1의회(국)1소50계에서 3국2실12과1의회(과)1소55담당으

로 행자부 승인 요청

○ 동 사무장제도 폐지에 따른 6급 정원의 감축 문제점

○ 진장동 폐지에 따른 일용직에 대한 대처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유보정원을 2000년 말까지 인정

○ 일용직에 대해 최대한 구제방법 강구 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강동해안 관광개발 추진계획]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1(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문화공보실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2) 주요내용

○ 문화관광부 계획시달 : '98. 5. 4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 권역별 자료조사 보고 : '98. 5. 14

○ 문화관광권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군)현황자료 제출 : '98. 6. 9

○ 문화관광권 개발에 따른 공청회 : '98. 7. 28

○ 우리 구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99~2003)보고 : '98. 8. 11

○ 스위스체파스사 강동 현지 방문 : '98. 8. 16 12:00~ 8. 17 13:00

○ 스위스체파스사와 협의된 것은 없고 10~11월쯤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임.

3) 주요 시정 및 조치사항

○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담당 소관과 하고 준비를 병

행, 추진 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2(제1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총무과

○ 보 고 자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과장 유병태

2) 주요내용

○ 제2단계 사업추진일정

- 신청자 접수 : '98. 7. 10~7. 25(15일간)
-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98. 8. 13 14:00
- 선발확정자 사업투입 : '98. 8. 17~12. 31

○ 추진상황

- 참가자격 : 신청일 현재 실업자, 일용근로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개인별 실태조사 결과와 기본자료를 종합하여 우선 순위자로부터 대상 선정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탈락된 사람들이 행정의 불신을 갖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 생산성 있는 사업장 선정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공근로 포기인원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미화원·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책〕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2(제1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총무과

○ 보 고 자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과장 유병태

2) 주요내용

○ 일용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현황

- 총인원 : 20명
- '98. 6월말까지 퇴직인원 : 8명(단순사무보조원)
- '98. 7. 1~12월말까지 퇴직예상인원 : 12명(단순사무보조원 : 6명, 환경미화원 : 6명)

○ 퇴직금지급 및 부족액 현황 : 179,600천원

○ 부족사유

-당초 예산 편성후 예상치 못한 퇴직사유 발생으로 퇴직금 부족

○ 환경미화원 정년불가(58세→61세)로 퇴직자 발생(6명)

○ 진장동 폐치분합에 따른 일용직 채용 해제자 발생(2명)

○ 농소1동, 강동동 청사관리 일용 퇴직(2명)

○ 예상치 못한 장기근속 일용직(수로원)퇴직자 발생(2명)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인사관리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일용직 퇴직금에 재편성토록 조치 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입감소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2(제1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지방세과

○ 보 고 자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지방세과장 박용국

2) 주요내용

○ 세입감소 현황

-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건설경기 불황,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등록세의 거래관련 세수는 전년도 대비 42.4% 감소
- 기업체의 조업단축, 인원감축, 임금삭감, 중소기업부도 등 주민세, 사업소세의 소득관련 세수는 전년도 대비 35.8% 감소
- 그러나 재산세, 종토세등 보유관련 세수는 과표의 현실화 접근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

○ 세수 증대 방안

- 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기간 : '98. 9. 1~9. 30(1개월간)

○ 목표액 : 117백만원(총체납액 585백만원중 20%)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교부금 산정방법 교부내역 자료 제출 요망

○ 세수발굴에 대한 연구·검토 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3(제13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 해당부서 : 건설도시과

○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2) 주요내용

○ 재해예방사업 추진

- 긴급하수도 보수 : 염포동 외 11개소
- 하수도 준설 : 명촌 진장동 외 13개소(L=2.40㎞, Q=220㎥)
- 하천제방준비 : 동천강제방 외 7개소 L : =32.4㎞
- 하상정비 및 준설 : 호계천외 2개소 L : =1.94㎞, Q=9,129㎥

○ 호우피해사항 및 조치사항

- 양정새마을 아파트 절개지 붕괴(토사붕괴 0.27ha) : 응급복구완료
- 동천강 시례잠수교 파손(B=4m, L=50m) : 잠수교 통행차단 및 가설도로 설치 협의중(진도건설)
- 천곡동 441-6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침수(1.2ha) : 응급복구완료
- 신현동 국도 31호선 도로법면사태(L=50m B=40m H=3.0m) : 응급복구완료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상안잠수교 붕괴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 요망

○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 조치 요망

○ 효문배수장 집중호우시 상시 인력 투입 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강동 해안지역 포장마차 철거대책]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3(제13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 해당부서 : 건설도시과

○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2) 주요내용

○ 현　황 : 피서철마다 반복적 발생 5차에 걸쳐 구청과 동 합동으로 강

제철거를 실시하였음.(22동 영업중)

○ 문제점 : 매년 피서철마다 불법 포장마차가 난립하고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10만원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보통 식품을 현장에서 제조 판매는 불가하므로 단속 철저

○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엄정한 법집행 확립

○ 전업유도 및 자진철거를 독려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8. 28(구청장)

○ 보고일자 : '98. 9. 3(제13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 해당부서 : 건설도시과

○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2) 주요내용

○ 복구사업시 예산확보 노력

- 복구사업비 시비 지원건의 : 6회('97. 8. 1~'98. 8)
-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 1회('98. 3)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감정의뢰 : '97. 11. 6
- 보상금 지급통지 : '97. 12. 10
- 보상금 지급완료 : '98. 5. 20

※ 보상금 지급내역

· 필지수 : 20필지 · 면적 : 7,881㎡ · 금액 : 508,985천원

○ 실시설계 : '97. 9. 8~10.16

– 사업비 : 19,000천원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본 건의 여러 가지 문제는 과거 경상남도 울산군 시절부터 발생된 문제로 차후 상세한 내용은 파악토록 하고, 진입로 개설토록 업무추진 철저

제4절 제14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광식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8. 9. 24 10:30

다. 회 기 : '98. 9. 24 ~ 9. 30(7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13건(구청장 제출)

○ '98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과 박봉태 강북교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제14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와 지방화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큰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 기반마저 연약한 현실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대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좀더 주민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의원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당직제란 북구의회 전 의원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의회 사무실에 상주하여 찾아오는 주민을 만나고 민원상담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여러분께서 의회에 나오시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대표로서 신성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과 박봉태 강북교육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 9. 24~9. 30(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9. 24 (목) 10 : 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4. 제1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5. '98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 〈계속〉 ○ 예산안 심의 ◆ 기획감사실 소관 ◆ 문화공보실 소관 ◆ 총무사회국 소관 — 총무과	소회의실
'98. 9. 25 (금) 10 : 00	2	1. '98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심의 ◆ 총무사회국 소관	소회의실
'98. 9. 26 (토) 10 : 00	3	1. '98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심의 ◆ 산업건설국 소관 ○ 현장확인	소회의실
'98. 9. 27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9. 28 (월) 10 : 00	4	1. '98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예산안심의 ◆ 산업건설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계수조정	소회의실
'98. 9. 29 (화)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 (〃) (〃) (〃) (총무사회국) (〃) (〃)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9. 30 (수)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소회의실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산업건설국) (〃)
		5. '98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액의결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98. 9. 29)

1. '98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 속〉 ○ 계수조정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
5.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6.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7.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무사회국〉
8.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9.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 〃 〉
10.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당일의사일정 -

○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본회의('98. 9. 30)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 속〉	〈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 〃 〉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5.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6.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총무사회국〉
7.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8. '98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수정안심의 ○ 계수조정	〈기획감사실〉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0.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총무사회국〉
11.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12.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국〉
13.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
14. 울산광역시북구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 건 소〉
15. '98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액의결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9. 15(구청장)

○ 심의일자 : '98. 9. 30(제14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치구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토록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의회사무과"로 개편하고 우리 구의 감축비율(10.6%)을 적용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

·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조정 : 10명 → 1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상위관련법규의 개정 및 지침에 의한 기구 및 정원조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으나 의회의원수를 기준으로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조직개편사항임.

○ 주요수정사항을 보면 사무직원정수 "10명"을 "11명"으로 조정 관련법규에 부합하게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기구나 인원감축은 기본원칙이 적어도 힘에 의해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축이 됐는지 설명 요망.	강 석 희 기획감사실 장	○선정기준이 직원 감축이 아니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며, 기본원칙은 그 직렬의 최하위직 직원 1명 감축시 자체 실·국장 회의상에서 여러번 협의를 하였음.
진한걸 의 원	○직원 45명은 자연감소나 얼마전에 의회사무국장님처럼 대기발령식으로 처리하는지?	강 석 희 기획감사실 장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현행과 같음) **10명**	제3조(현행과 같음) **11명**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9. 15(구청장)

○ 심의일자 : '98. 9. 29~9. 30(제14회임시회 제5, 6차본회의)

○ 수정안발의 : '99. 9. 29(김수헌의원외 2명)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의 정비 방향에 따라 신설 및 명칭변경된 기구와 그 사무분장 대강을 조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실·과 조정
  - · 통·폐합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환경관리과
  - · 신　　설 : 도시교통과 신설
- 과 명칭 변경 : 건설도시과 → 건설과
- 국 소관 분장사무 대강을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구·군조직개편안 승인('98. 9. 1 울산광역시장)등 상위관련법규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부합되며,

○ 광역·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기능 배분을 감안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된 것으로 보며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강혁진 의 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전담 분야는?	강 석 희 기획감사 실 장	○도시분야에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개발분야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음.
김수헌 의 원	○도시교통과 같으면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직과장이 있는지?	강 석 희 기획감사 실 장	○현재 없음.
진한걸 의 원	○지적과도 통·폐합을 해서 얼마든지 운영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한 견해는?	강 석 희 기획감사 실 장	○지적도면 대장이라든지 상당히 일이 많음.
윤종오 의 원	○청소업무를 위탁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강 석 희 기획감사 실 장	○위탁할 경우에는 과까지 필요없으니까 지금의 직제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음.

5) 수정안 발의 : '99. 9. 29(김수헌의원외 2명)

○ 제안설명요지

가. 수정이유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업무성격이 다른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고 부서업무량이 비대하여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로 분리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나. 수정주요골자

○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로 분리

○ 총무국의 재난관리업무를 산업건설국으로 이관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7)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총회사회국) ① 총무사회국에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총무사회국은 서무, 인사, 자치행정,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와 지방세정업무, 민원실운영 및 민방위, **재난관리**, 생활보호, 노인·아동청소년,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 및 환경보전대책, 오수·분뇨처리**, 폐기물 처리, 재활용,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회사무국) ① _____ _____, **〈삭 제〉** _____,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_____ _____ _____ **〈삭 제〉**, _____ **환경보전대책, 오수·분뇨처리, 보건·위생**, _____ _____ _____
제4조(산업건설국) ① 〈생략〉 ② 산업건설국은 지역경제진흥, 상거래질서,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와 농수산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에 관한 사무,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풍수해 방지**에 관한 사무, 도시 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교통대책수립·조정에 관한 사무, 건축, 주택행정, 광고물,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산업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풍수해 방지 및 재난관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보건소에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실과란중 "위생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별표2 동에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실과란중 "지역경제과"를 "농림수산과"로,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건설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_____ _____ _____ _____ "**환경위생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_____ _____ **〈삭 제〉** _____ _____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9. 15(구청장)

○ 심의일자 : '98. 9. 30(제14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기구조정 및 정원감축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주요골자

○ 국가직 정원 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

○ 정원관리기관 변동(집행기관)

– 개정전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동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관별 정원을 집행기관으로 통합하고 인력감축에 따른 정원 조정

○ 의회기관

–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개편에 따른 인력감축 1명

○ 정원 : 424 → 379명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98. 6. 18 행정자치부) 승인 등 상위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에 369명 → 368명으로 1명 감축

○ 의회사무과의 정원 10명 → 11명으로 증원

○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일부 수정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북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69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0명 총 계 : 379명	제2조(정원의 총수) _____ _____ 1. 집행기관의 정원 : 368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 총 계 : 379명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9. 15(구청장)

○ 심의일자 : '98. 9. 30(제14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의 보건소 폐지에 따라 전문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소 위치 조례에 명시

○ 보건소 폐지(농소, 강동보건지소)에 따른 보건소설치규정 삭제

○ 보건소 직제규칙에 있는 분장사무를 조례에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역보건법 제7조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는 동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음.

○ 주민활용이 낮은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의 보건지소의 폐지는 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9. 15(구청장)

○ 심의일자 : '98. 7. 21(제14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교통량이 발달된 지역과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교통이 발달되고 주민이용률이 낮은 일부 보건진료소 폐지

※ 폐지대상 : 상안, 매곡 보건진료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시·도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 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보건소를 폐지코자하는 본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부합되며 당분간 주민불편은 있겠으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두환 의 원	○폐지된 법이 지금 시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중구청에 공무협조하여 진장·명촌주민들에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강 석 희 기획감사실 장	○그렇게 하겠음.

5) 심의결과 : 부결

제5절 제15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광식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8. 10. 26

다. 회　　기 : '98. 10. 26 ~ 11. 4(10일간)

라. 부의안건

- ○ 구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등에 관한 구정질문(김수헌의원)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구청장 제출)
- ○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외 1건(구청장 제출)
- ○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관내단위(회원)농협합병촉구결의안(강혁진의원외 5명 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제15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구신설이후 처음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북구의회의원의회의수당에관한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지역현황 파악을 위해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으며, 제2대 의

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제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바쁘신 중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익을 제공하고자 의회민원상담실을 개소하여 2주간 운영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평과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상담실 운영과정에서 "국장 허락없이는 의원들과 면담에 응하지 말라"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 지시를 내리는 집행부 모국장의 처사는 지난 제14회임시회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심의 중 정회시의 망언 등과 연계하여 볼 때, 관련공무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 부족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로, 11만 구민과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차후의 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어야만 할 때입니다.

최근 의회와 집행부가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지만 온고이지신이라는

옛말처럼 지난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수레의 두 바퀴가 서로 잘 돌아가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동반자적 협력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 10. 26~11. 4(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0. 26 (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김수헌의원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본회의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98. 10. 27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98. 10. 28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98. 10. 29 (목) 10 : 00	2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소회의실
본회의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98. 10. 30 (금) 10 : 00	3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10:00 농소1동, 농소2동 14:00 농소3동)	동사무소 회 의 장
'98. 10. 31 (토) 10 : 00	4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10:00 강동동)	동사무소 회 의 장
'98. 11. 1 (일)		(일 요 일)	
'98. 11. 2 (월) 10 : 00	5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10:00 효문동, 14:00 송정동)	동사무소 회 의 장
'98. 11. 3 (화) 10 : 00	6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10:00 양정동, 14:00 염포동)	동사무소 회 의 장
'98. 11. 4 (수) 10 : 00	7	1. '97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소회의실

- 당일의사일정 -

○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98. 10. 29)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결산안 심사, 예비비 심사

- 당일의사일정 -

○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98. 11. 4)

1. 울산광역시북구관내단위(회원)농협합병촉구결의(안)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8. 10. 19(김수헌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8. 10. 29(제1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의회회기를 결정함에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기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뿐 아니라,

○ 구조조정으로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시점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예산절약에 의회가 솔선수범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회의수당지급에 있어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도 현지조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0. 26(구청장)

○ 심의일자 : '98. 10. 26(제1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 북구 제2기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및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며,

○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여 보건의료기관의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예방, 진료,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2016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토대 마련

3)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두환 의 장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건의 계획은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었는지?	박 혜 경 보건소장	○금년에 계획을 하였으나 진료소 잠정폐쇄 상태가 되다보니까 인력을 앞당겨서 보건소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박춘환 의 원	○현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직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박 혜 경 보건소장	○구조조정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다른 구민을 위한 보건시책은 전혀 할 수 없고 방문하는 민원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진한걸 의 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구에서 감당해야 할 예산을 사전조율을 했는지?	박 혜 경 보건소장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사업과 예산이 몇억원씩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계획대로 예산과 인력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계획서 6쪽 1)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정비 가. 공공보건 기관정비 ③ 보건진료소 정비 • 기간 : 보건진료소를 '99년까지 전부 폐소 • 대상 : 14개소 • 추진내용 : 의료취약지역의 의미가 없는 보건진료소 2개소(매곡, 상안)는 '99년까지 폐쇄 조치하고 2개소(신명, 어물)는 2000년까지 폐쇄 조치하여 방문 보건사업과 이동 순회진료소를 활성화시켜 이에 대체함. ④ 구강보건사업 확대	계획서 6쪽 1)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정비 가. 공공보건 기관정비 ③ 삭 제 ③ 구강보건사업 확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역현황파악 및 주요업무보고]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8. 10. 23(구청장)

○ 보고일자 : '98. 10. 30 ~ 11. 3(제15회임시회)

○ 해당부서 : 전 동

○ 보 고 자 : 해당 동장

2) 주요내용

○ 기간 : '98. 10. 30 ~ 11. 3

○ 대상 : 전동 (현지출장)

○ 집행부참석 :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해당동장

○ 주요보고 사항

– 기본현황, 예산현황, 특수시책, 지역현안 및 문제점, 주민건의 사항 등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건의사항처리 : 농소1동 방어진방향 노선 증차 등 11개항

○ 기타문제점 및 처리요구사항 : 농소1동 소규모 도로 포장사업은 행정직영 방안 검토 등 25개 사항

○ 건의사항 및 기타문제점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급관서 및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건의 요구하여 처리함.

제6절 제16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8. 11. 19 10:00

다. 회　　기 : '98. 11. 19 ~ 11. 20(2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
- ○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건(의장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16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정기회를 며칠 앞두고 시급한 당면 현안문제인 농소3동의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소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교통체증 및 주차난과 환경문제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해 보고,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의하며, '98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마무리로 예산낭비나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이면 제2대 북구의회 첫 정기회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 정보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집행부 행정감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되어 11만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 11. 19~11. 2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1. 19 (목) 10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한국까르푸(주)울산점개소관련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 총무사회국(지방세과, 환경위생과) ○ 산업건설국(도시교통과, 건축과) ○ 현장확인(농소3동)	소회의실
'98. 11. 20 (금) 11 : 00	2	1.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조례(안)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추진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1. 14(구청장)

○ 심의일자 : '98. 11. 20(제16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이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2의건국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25인 이내

– 위원장 : 구청장위촉

– 위 원 : 구청장위촉 또는 임명

3)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조례라는 것이 다 필요하고 그에 따른 당위성이나 명분도 다 있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예산만 낭비인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강 석 희 총무과장	○중앙 추진위원회에서 발굴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 없음.
김수헌 의 원	○어떤 사업에 대해 목적의식이나 계획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윤 성 태 총무사회국 장	○개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전체 구민들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큰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운동의 근본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기존있는 위원회들이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위원회설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김 연 수 환경미화과 장	○각종위원회가 많음으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폐해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혁·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한국까르푸(주)울산점 개소관련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98. 11. 12(구청장)

○ 보고일자 : '98. 11. 19(제1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 보 고 자 :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건축과장 유병옥

2) 주요내용

○ 한국까르푸(주) 지방세 추정액 현황

– 추정세액 : 63,317천원

• 면 허 세 : 675천원

• 재 산 세 : 31,853천원

• 종 토 세 : 3,731천원

• 사업소세 : 27,058천원

○ 오수처리현황 : 현수미생물처리법

○ 까르푸 건축허가 사항

- 위　　치 : 상안동 322-9
- 건 축 주 : 한국까르푸(주)
- 연 면 적 : 41,034.82㎡
- 부지면적 : 12,522㎡
- 구조 및 층수 : R/C조, 4층1동(지하1)
- 용　　도 : 판매시설
- 허가일자 : '98. 2. 4
- 착공일자 : '98. 2. 9
- 사용승인신청 : '98. 11. 6

○ 까르푸 현지확인 실시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개점시 교통대란 등으로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의 수용사항인 서동에서 농소3동간 4차선도로 개설 후 까르푸가 개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 강구 요망

제7절 제17회정기회

1. 개최배경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나. 개회일시 : '98. 11. 25 11:00

다. 회　　기 : '98. 11. 25 ~ 12. 29(35일간)

라. 부의안건

- ○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 등에 관한 질문(진한걸의원)
- ○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구청장제출)
-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 '99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안(구청장제출)
-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구청장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35일간의 회기로 제17회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제2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줄곧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땀흘려 일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경제위기와 실업사태, 집중호우 등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화합하고 동참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에 21세기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각종 조례안 및 민생관련 안건을 비롯한 주요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구정질문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구민을 위한 의회 민원실을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제2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정기회로서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의 및 주요 구정현안을 다루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하여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 북구지

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 11. 25~12. 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1. 25 (수)		(개 회 식)	본회의장
11 : 00 개회식직후	1	1.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제안설명 : 구청장 ·예산안회부
'98.11.26(목) ~ '98.12.2(수)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실 시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3 (목) 10 : 30	2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본회의장 소회의실
'98.12.4(금) ~ '98.12.16(수) (13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예 산 안 심 사)	소회의실
'98. 12. 17 (목) 11 : 00	3	1. '99년도세입 · 세출예산(안)〈계속〉	소회의실
'98. 12. 18 (금) 10 : 30	4	1. '98년도제3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2. 구정에관한질문 ○ 진한걸의원	본회의장
'98. 12. 19 (토) 10 : 30	5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 12. 20 (일)		(일 요 일)	
'98.12.21(월) ~ '98.12.23(수) (3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98추경예산안심사)	소회의실
'98. 12. 24 (목) 10 : 00	6	1. '98년도제3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 (안) 〈계속〉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25 (금)		(공 휴 일)	
'98. 12. 26 (토) 10 : 30	7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 12. 27 (일)		(일 요 일)	
'98. 12. 28 (월)	8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 12. 29 (화) 11 : 00	9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종 무 식)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 11. 25~12. 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18 (금) 10 : 00	3	1. '99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3.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구정에관한질문 ·진한걸의원	본회의장 (12:00 오찬)
		5. 울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따른 지방채발행의결의건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19 (토) 09 : 30	4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 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11 : 00 결의대회)
'98. 12. 20 (일)		(일 요 일)	
'98.12.21(월) ~ '98.12.23(수) (3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98추경예산안심사)	소회의실
'98. 12. 24 (목) 10 : 00	5	1. '98년도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본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소회의실
'98. 12. 25 (금)		(공 휴 일)	
'98. 12. 26 (토)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27 (일)		(일 요 일)	
'98. 12. 28 (월)	7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 12. 29 (화) 11 : 00	8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종 무 식)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 12. 26~12. 2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26 (토) 10 : 30	5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본회의장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 12. 27 (일)		(일 요 일)	
'98. 12. 28 (월)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98. 12. 29 (화) 11 : 00	7	1. '98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종 무 식)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안번호 제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1. 25(구청장)

○ 심의일자 : '98. 12. 18(제17회정기회 제3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 및 환경부 기예 13310-134('98.3.26)호에 의거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을 차입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 차입금액 : 880,000천원
  ('98년도 : 353,000원, '99년도 : 527,000천원)
- ○ 차 입 선 : 환경관리공단(환경부)
- ○ 차입방법 : 증서 차입채
- ○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분기납)
- ○ 이 자 율 : 연 7.5%(분기납)
- ○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 1,115,900천원
  (원리금 : 880,000천원, 이자 : 235,900천원)
-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방법 :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영개발(조합측에서 시공회사 선정하여 공사 시공)
- ○ 융자금 지급에 따른 채권 확보방안 : 농공단지 전 필지(120필지 80,032평)에 대한 북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 후 융자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2 및 제7조.
- ○ 달천농공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농공단지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중앙부처의 재정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인 증서차입채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농공단지 전 필지에 근저당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경남은행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김 태 오 지역경제 과 장	○설정되어 있으나 7만3,200평을 90억원으로 해서 48억원 대출을 받은 상태로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면 시가 120억정도로 평가 받을 수 있음.
김수헌 의 원	○90억원이나 120억원이나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지 않은가?	김 태 오 지역경제 과 장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음.
윤두환 의 장	○전 필지를 담보로 하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가?	김 태 오 지역경제 과 장	○달천농공단지조합과 협의중임.
김수헌 의 원	○지방채발행은 환경부장관의 승인후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는 승인을 받았지만 '99년도의 것은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성 태 경 기업지원 담 당	○'99년도 것은 아직 승인을 받지는 않았고, 본 건은 '98년도 것에 대한 의결의 건임.
김수헌 의 원	○그렇다면 '98년도 것만 올려야지 '99년도 것까지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김 연 수 환경미화 과 장	○'98년도 것은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고 '99년도 것은 앞으로 추진할 종합적인 계획임.

5) 심의결과 : 부결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에관한의결의건

(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2. 19(구청장)

○ 심의일자 : '98. 12. 19(제17회정기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36조 및 환경부 기예 13310-134('98.3.26)호에 의거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융자금을 차입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차입금액 : 353,000천원

○ 차 입 선 : 환경관리공단(환경부)

○ 차입방법 : 증서 차입채

○ 상환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분기납)

○ 이 자 율 : 연 7.5%(분기납)

○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 530,652천원

(원리금 : 353,000천원, 이자 : 177,652천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방법 :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영개발(조합측에서 시공회사 선정하여 공사 시공)

○ 융자금 지급에 따른 채권 확보 방안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 1,538평에 대한 북구청장 명의로 1순위로 근저당설정 후 융자금 지급토록 경남은행과 조합간에 협의 중에 있으며, 만약 1순위가 안될 경우 총 상환액 상당의 부지를 2순위로 근저당설정 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6조,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2 및 제7조.

○ 달천농공단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농공단지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를 중앙부처의 재정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인 증서차입채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달천농공단조성공동화사업협동조합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가?	강 한 원 산업건설 국 장	○관여할 수 없음. 다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 시설자체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박춘환 의 원	○운영지침과 금리와 상환조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 태 경 기업지원 담 당	○3년 7년 균등상환은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것임. 그리고 금리는 지침상 5.5%가 IMF로 금리가 인상되어 7.7%가 됨. 금리는 변동금리임.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수질환경보존법에는 기금 융자조건은 연5.5%로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확정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성 태 경 기업지원 담 당	○약정은 변동금리로 되어 있음.
윤두환 의 장	○변동금리가 맞는가?	강 한 원 산업건설 국 장	○금리는 7.5%로 확정금리이고 조건의 변경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2. 14(구청장)

○ 심의일자 : '98. 12. 26(제17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기구조정시 여러 개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의 지적이 있고,

○ 많은 조직법규를 한꺼번에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규칙 개정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어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구본청, 직속기관, 동 등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1개로 통합운영코자 금번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

칙에 의거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현재 구본청, 직속기관, 동으로 나누어져 운용되고 있는 기구 관련 조례 통합운용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설치규정 신설

○ 통합 조례설치로 인한 관련조례 폐지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

○ 보건진료소 폐지 및 기구 경과조치

– 상안, 매곡보건진료소 폐지

– 신명, 어물보건진료소 2000년 12월 31일로 폐지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과 제4조 제3항과 제5항 및 제102조 내지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지역보건법 제7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의 규정

○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전국의 통일성을 통한 행정의 낭비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생산적인 행정능률과 명확한 책임 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부의장	○상안진료소를 신명·어물진료소와 같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폐쇄할 의향은?	이 동 훈 기획감사실 장	○이번에 폐지후 보건소에서 출장진료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상안지역은 버스가 하루 한 대정도 다니는, 아직 외진 지역으로 상안진료소의 폐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임.	이 동 훈 기획감사 실 장	○다시 검토하겠음.
강혁진 의 원	○상안지역은 아직 도시화가 안된 지역으로 이곳의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이 뒷걸음치는 것이 아닌가?	김 종 구 기획정책 담 당	○상안·매곡진료소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직 의사 한 명을 지원 받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음.
윤두환 의 장	○상안·매곡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직급은?	이 문 걸 기획정책 담 당 자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별정6급임.
박광식 의 원	○부칙 제3항의 전면삭제 해도 괜찮은가?	이 문 걸 기획정책 담 당 자	○가능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안) 부칙 ③ (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신명, 어물 보건진료소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안)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안) 부칙 ③ 〈삭 제〉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안) 별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개 정 안			수 정 안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1번지	북구일원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신명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53-6번지	강동동 신명대안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어물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8번지	강동동 당사어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상안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695-3번지	농소3동 상안,천곡 시례,가대 달천

□ 울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1. 28(구청장)

○ 심의일자 : '98. 12. 26(제17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우리구의 각종행정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구청장 소속하에 둠.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 포함 12인 이내

○ 규제신고센타 설치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근거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 구민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개성과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선진 북구행정의 확립과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행정규제정책을 종합 검토·조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종 구 기획정책 담 당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 12. 14(구청장)

○ 심의일자 : '98. 12. 26(제17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단체별로 의회관련기구조례 명칭이 제각기 다양하게 되어 있어 조례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 지금까지 조례상 근거가 미약했던 전문위원관련조문을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전국 통일)

(현행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 전문위원 근거 명확화

(현행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관련 규정 통합운영 → 전문위원 관련 조문 별도 명시로 명확히 규정)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에 2중 규정 →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도 정원조례에 통합규정하고 본 조례에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및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 행정의 전국 통일성과 공정성, 명확한 근거의 명문화로 행정낭비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생산적인 행정능률과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8절 제18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1. 25 10:30

다. 회　　기 : '99. 1. 25 ~ 1. 26(2일간)

라. 부의안건

- ○ 북구청발주각종공사계약등에관한질문(윤종오의원)
- ○ 울산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김수헌의원)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일간의 일정으로 기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18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해 IMF관리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우리의 땀이 많으면 많을수록

IMF한파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일 뿐만 아니라 새 천년의 시작을 앞둔 갈림길에서 우리는 인류문명의 흐름을 조망하고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역사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국까르푸(주) 울산점 개점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까르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수차례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지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이 예견되었던 인근 도로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1. 25~1. 26(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 25 (월) 10 : 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 ○ 윤종오의원	본회의장 (12 : 30간담회)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 추진현황(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회의실
'99. 1. 26 (화)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임시청사관리 및 신축청사 업무추진 현황(총무과) ○ '9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지역경제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의안번호 제58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1. 25(김수헌의원)

○ 심의일자 : '99. 1. 26(제1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지방경찰청의 설치됨에 따라 관내 3개 경찰서의 인력과 기구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경찰서의 증설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이라는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촉구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의 배후주거단지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면적이 중구·동구지역보다 5배나 넓은 지역으로 치안수요가 광범위함.

○ 울산공항이 소재하고 있고 효문국가공단, 달천농공단지, 진장유통단지조성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천혜의 관광지역인 강동해안은 울산의 관광명소이며 계속 개발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난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설치된 신설 자치구로서 현재 치안 관할지역이 중부, 동부경찰서로 행정과 치안이 이원화되어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건 의 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안수요를 보이는 울산지역에 연내 울산지방경찰청 설치는 울산의 오랜 치안과제를 해결하고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조치로 울산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지방경찰청 설치와 함께 관내 3개경찰서의 인력 및 기구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관할 경찰서도 일부 증설되야 함은 극히 당연한 필요조건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을 염원하는 오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당위성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의 관할 경찰서 증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지역에 경찰서가 설치되야 함으로 11만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북구지역 경찰서 증설 당위성-

○ 울산 북구는 울산의 배후주거단지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면적이 중구·동구지역보다 5배나 넓은 지역으로 치안수요가 광범위함.

○ 울산공항이 소재하고 있고 효문국가공단, 달천농공단지, 진장 유통단지조성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천혜의 관광지역인 강동해안은 울산의 관광명소이며 계속 개발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음.

○ 울산 북구는 지난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설치된 신설 자치구로서 현재 치안 관할지역이 중부, 동부서로 행정과 치안이 이원화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1999년 1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 등 추진상황〕

1) 보고현황

○보고서 제출 : '99. 1. 18(구청장)

○보 고 일 자 : '99. 1. 25(제1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해 당 부 서 : 도시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 고 자 :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축과장 김환조, 지적과장 김실근, 건축관리담당 박규영

2) 주요내용

○임시사용승인관련 사항

- '97. 9. 25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 '98. 12. 1 설계변경허가(부지면적 835㎡를 추가 확보하여 건폐율을 64.2%에서 59.94%로 조정)

※조건사항 :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사용승낙 득한 부지 합병조치

- '98. 12. 2 임시사용승인 (기간 : '99. 12. 31까지)

○주차장 확보 현황

- 법정대수 : 231대 - 확보대수 : 885(지하1층, 지상3층, 4층, 옥상)

○개점시 문제점

- 까르푸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 아파트단지 일원 도로가 기부채납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단속애로.
- 휴일 등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초래

○향후추진대책

- 추가주차장 확보촉구 : 한국까르푸, 아진건설
- 셔틀버스 운행(직원용) 촉구 : 한국까르푸
- 버스, 택시승강장 조기설치로 주민불편해소 : 한국까르푸
- 아파트단지 일원 도로의 기부채납 후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버스노선 재조정 건의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치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o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2월 2일 가사용승인한데 대하여 유감 표명, 향후 유사한 사례발생 근절 조치
- o 까르푸 주차문제 해결 위한 주차장 확보에 회사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바람.
- o 구청과 중부경찰서, 아진건설대표, 까르푸측과 간담회시 합의사항 이행촉구
- o 현재 개설중인 서동아진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시청과 해당부서에 촉구건의 요망

제9절 제19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2. 19 14:00

다. 회　　기 : '99. 2. 19 ~ 2. 25(7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구청장 제출)
- ○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안(구청장 제출)
- ○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윤종오의원외 2명 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봄기운이 약동하는 우수를 맞아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IMF관리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숨가쁜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 나라를 투자적격 대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춘추오패 중 한 사람인 진나라 문공이 패업을 이룬 후에도 유랑시절 밥그릇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과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기차게 시작될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사업이 시작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되어 예산 낭비나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루어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구청사 건립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서 의회나 집행부 모드 한마음이 되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2. 19~2. 25(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2. 19 (금) 14 : 0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1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소회의실
'99. 2. 20 (토)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 속〉 ○ 보건소	소회의실
'99. 2. 21 (일)		(일 요 일)	
'99. 2. 22 (월) 14 : 0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9. 2. 23 (화) 10 : 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2. 24 (수) 14 : 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99. 2. 25 (목)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 당일의사일정 -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2. 19~2. 25(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2. 23 (화) 10 : 30	4	1.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9. 2. 24 (수) 14 : 00	5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99. 2. 25 (목)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2. 11(구청장)

○ 심의일자 : '99. 2. 20(제1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의 규정중 대부분의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 폐지코자 하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탁자의 자격

-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 법인
- 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 법시행규칙 규정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위탁계약 :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체결.

○ 운영비 보조

- 시설비, 시설종사자인건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위탁계약의 해지 : 수탁계약자 자격상실, 위탁계약 위반.

○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

○ 본 조례에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관리…'에서 '보육료' 다음에 '기타수입'이 빠져 있으며,

○ 부칙규정에서 항 또는 조를 구분할 때는 5개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 이상일 때는 조로 구분함으로 제1조, 제2조를 항으로 수정되어야 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수탁자의 결정은 울산광역시북구보육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의 해지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의 해지 부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없는가?	김 찬 수 사회복지과 장 (직무대리)	○계약해지사항이 계약서안 11조에 8개 항목으로 나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당연 계약해약이 되므로 불필요함.
윤종오 의 원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임의적 해석할 요지가 많은데 '수탁자 결정 및 계약의 해지시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김 찬 수 사회복지과 장 (직무대리)	○가능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제정안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① (생 략) ②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자격등) ① 본문과 같음 ② _____ **수탁자를 결정 및 해지시에는** _____
제5조(운영비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수탁자는 제1항의 **보조금과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운영비등) ① 본문과 같음 ② 본문과 같음 ③ _____ **보육료 및 기타수입을** _____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안 부칙 ① (본문과 같음) ② (본문과 같음)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2. 11(구청장)

○ 심의일자 : '99. 2. 25(제19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신택지 형성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별 거주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존 통·반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통의 반수를 4개 반 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의한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통·반 조정의 효율성을 기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 현재 관내 동별 통·반 실태는 1개 통이 최소 2개 반에서 최고 20개 반까지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통·반 조례를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본 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부의장	○통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설치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1개 반을 30가구로 해서 4개반에서 15개반을 1개 통으로 함으로 가장 큰 통은 450세대 정도이나 형편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음.
박춘환 부의장	○반을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2개 통이 되는 곳도 있어 불합리한데, 20개 반까지를 1개통으로 할 수는 없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가능함.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현재 통장임기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통장이 계속 연임을 함으로 인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검토하겠음.
김수헌 의 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통이 많이 줄어드는데 형평을 생각해서 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의 여론에 밀려 더 줄일 수 있지만 못한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앞으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조정하겠음.
강혁진 의 원	○아파트의 경우 자치회장과 통장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마찰이 잦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잘 검토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의향은?	강 석 희 총무과장	○연구하겠음.
류재건 의 원	○자연부락의 경우 넓은 지역으로 통장이 할 일이 많은 반면 아파트에서는 좁은 지역으로 통장이 할 일이 비교적 적음. 이런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맞게 행정을 집행할 것을 당부함.	강 석 희 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할 것임.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현행·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2조(생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기준)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설치기준)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주민주거 형태에 의한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제3조(개정안과 같음)
1. 통은 4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1. 통은 4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	1. 통은 4개반 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2. 11(구청장)

○ 심의일자 : '99. 2. 25(제19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청사 신축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채발행 변경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명	차입규모	차입내역 '98의결 승인건	차입내역 '99의결 승인건	차입선	자금의 종류	이율	상환조건	상환재원
북구청사 신축사업	당초:5,550 변경:8,100	2,750	1,300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	연3%	2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구비 (울산광역시 보조금)

○ 차입기간 : '99. 1. 1~2000. 12. 31(2년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재정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7조

○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청사건립의 재원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진한걸 의원	○기존 승인된 27억5,000만원은 2년 거치해서 구비로 상환하는가?	강석희 총무과장	○시보조금으로 상환함.
진한걸 의원	○시보조금을 받은 것은 있는가?	강석희 총무과장	○있음.
박춘환 부의장	○청사기금지방채발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액수에 대해서도 시에서 책임을 지는가?	강석희 총무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시에서 책임짐.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98년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55억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차입금액은 81억원이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	강 석 희 총무과장	○한도액이 늘어나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음. 집행부의 잘못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의안번호 제65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2. 22(윤종오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9. 2. 23(제19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지역의 현안사항인 핵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 반대입장을 본회의에서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반대사유

–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가 반대하고 있으며 울주군민도 65% 이상 반대함.

– 산업자원부의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과 울주군의 독단적 원전유치결정은 정책결정에 신중치 못한데 대해 유감임.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거나 사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책없이 추가 건설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함.

- 우리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현재 자동차 단지가 있어 핵 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공산품 이미지 저하와 어패류, 해조류의 생산격감으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대형참사의 우려가 상존함.

○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 경주시에 핵발전소 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원자력 발전소 유치반대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우리울산지역의 핵심현안인 서생지역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북구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울산리서치 여론조사결과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가 반대하고 있으며, 울주군민도 65%이상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등 울주군의 원전유치는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의 문제임을 입증한 결과이며 산업자원부의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과 울주군의 독단적 원전유치 결정은 정책결정에 신중치 못한 매우 위험천만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건설의 세계적 추세는 '79년 미국의 드리마일, '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 이후 폐쇄하거나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로, 사양화 되어 가고 있으며, 건설 및 운용비용 증가,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없는 계속적인 추가건설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북구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안을 끼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부품단지가 들어서 있어 방사능 누출을 포함한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공산품 이미지 저하와 어패류, 해조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이고 대형참사의 우려도 계속적으로 상존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월 3일 울산시의회 반대결의를 시작으로 중구의회, 동구의회의 반대결의와 특히 울주군의회의 반대결의는 울산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올바른 결정으로 환영하며, 정부와 한전은 우리실정에 맞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현재 가동중인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의 온배수로 영향권에 있는 강동지역의 어민피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전유치계획을 단호히 반대하고,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산업자원부, 한전, 울주군에서는 핵 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9년 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제10절 제20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진한걸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3. 29 10:30

다. 회　　기 : '99. 3. 29 ~ 3. 30(2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구청장 제출)
-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안(구청장 제출)
- ○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류재건의원외 2명 발의)
- ○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진한걸의원외 2명 발의)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봄기운이 온 누리에 약동하는 이때 제20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지난밤 세계1위인 브라질 대표팀과의 축구에서 우리의 승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그동안 서생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원전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경쟁의 단위와 주체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바야흐로 지방이 세계화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지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 그리고 에너지를 결집시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도출해 내야만 합니다.

일본의 규수지역은 철광·석탄이 중심산업이었으나 점차 사양화되자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반도체·자동차산업을 재빠르게 유치하여 지방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대자동차의 본사 및 자동차 국제박람회 울산 유치를 건의하게 되었으며, 이는 12만 북구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자동차 본사 및 자동차국제박람회 울산유치건의(안)과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

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3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3. 29~3. 3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3. 29 (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2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4.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 5.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	본회의장
		6.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현황	소회의실
'99. 3. 30 (화)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계속〉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 지방채발행의결의건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안번호 제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3. 22(구청장)

○ 심의일자 : '99. 3. 30(제2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36조 및 환경부기예 13310-134('98.3.26)호에 의거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차입하여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달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 차입금 880백만원, 금회 요구액 527백만원

○ 상환조건 3년거치 7년 균등상환(분기납)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방법 :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공영

개발

○ 융자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 : 사업시행자인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1순위로 주거래 은행인 경남은행 병영지점에서 경남은행 지급보증서(579,700천원)를 발행받아 융자금 지급토록 할 계획임.

○ 지방채발행승인근거 : 행정자치부재경 13320-152('99.2.18)호에 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달천농공단지의 조속한 완공으로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와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 농공단지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수종말 처리시설비를 환경부의 재정융자를 받기 위한 지방채이며,

○ 열악한 북구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3. 25(구청장)

○ 심의일자 : '99. 3. 30(제2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소량의 생활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신규제작하고, 봉투의 용도를 일부 개선하고,

○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가정용 쓰레기봉투 5ℓ용량란 신설

o 기존 10ℓ 쓰레기봉투를 사업장용으로 사용토록 범위 확대

o 봉투의 크기에 있어 내용물규격을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o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크기 및 용도, 사양, 공급,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안이며,

o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생활의 실천으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의 원	o10ℓ봉투가격이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10원 차이가 나는데, 가정용을 사업장에 사용하면 규제나 적발할 수 있는지?	김 종 열 환경미화과 장	o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려움.
윤두환 의 장	o공동주택만 비싼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좀 낮지만 사업장은 엄청나게 더 비싸며, 20ℓ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용은 처리비가 12원인데 사업장용은 64원인 대책은?	윤 성 태 총무사회국 장	o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별도로 업무보고 하겠음.

5) 심의결과 : 부결

□ 현대자동차(주)본사울산유치건의안(의안번호 제72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3. 25(류재건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9. 3. 29(제2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지역 주민의 숙원인 현대자동차(주) 본사울산유치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의안 채택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자동차(주) 본사가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주)에 촉구 건의하고자 함.

- 기업체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 강구 바라며 관련법률 개정 및 업무의 지방이양·위임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확고한 정책과 기업체의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세제감면과 금융제도, 지역의 정보화, 통상정책 등 기업 자율적활동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 기업의 지방경영 활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환경여건 조성, 범시민 공감대 확산, 기업체의 확정방침 유도 등 다각적인 이전 대책 수립으로 지속적인 유치운동을 확산 전개할 것이며,
- 현대자동차에서도 현장중심의 경영과 투자증대, 지역밀착 경영방침과 책임경영체계로 전환하여 본사 이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건의(안)

날로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과 창의가 보장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전환기에 국가의 재도약을 기약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지원 확정방침과, 현대자동차 이계안사장의 본사 울산이전의 의견표명에 즈음하여, 주력공장이 울산 북구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12만 북구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주)에 다음과 같이 본사의 울산유치를 강력히 촉구건의하오니 원만한 실무 협상을 통하여 본사가 울산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체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재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 바라며 관련법률 개정 및 업무의 지방이양·위임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2.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확고한 정책과 기업체의 실천의지가 필요하며 세제감면과 금융제도, 지역의 정보화, 통상정책 등 기업자율활동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3. 기업의 지방경영 활동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환경여건조성, 범시민 공감대 확산, 기업체의 확정방침 유도 등 다각적인 이전 대책

수립으로 지속적인 유치운동을 확산 전개할 것이며,

4. 현대자동차에서도 현장중심의 경영과 투자증대, 지역밀착 경영방침과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본사이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바라며.

이러한 지방화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무역의 활성화, 생산과 고용증대, 금융의 역외유출 방지, 산업정보·기술혁신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재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며, 21세기 울산의 전략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중앙과 지방, 기업체와의 공조체계 확립으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본사가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12만 북구민들의 확고한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3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3. 25(진한걸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9. 3. 29(제2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1세기를 지향하는 울산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징인 문화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자동차 국제박람회 행사개최 건의안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은 한국의 산업화, 공업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전국 7대 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으나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가 없음.

○ 국제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하여 울산의 이미지 형성과 애향심, 공동체 의식고취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현대자동차가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특화하여 자동차 국제박람회를 유치 또는 개최하여 산업문화가 접목된 종합축제로 울산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 경주~부산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등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살린 지역특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촉구 건의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자동차국제박람회행사개최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울산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상징적인 문화 이미지 형성으로 국제화,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한국의 산업화, 공업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전국 7대 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니다만, 급격한 도시화로 다소 불균형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국제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하므로써 우리 울산의 이미지 형성과 애향심, 공동체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의 비엔날레, 경주의 문화엑스포, 대전의 과학엑스포 등 타 도시의 성공사례도 많이 있으며, 국제적인 자동차회사로 성장한 현대자동차가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특화하여 가칭 「자동차 국제 박람회」를 유치 또는 개최하고 자동차 역사관, 학술세미나, 특별강연회, 자동차 경주대회, 기타 이벤트를 연계 개최하므로서 자치단체에서의 외교통상, 기술정보교환, 특산품세일즈 등 산업관광 자원화 및 산업과 문화가 접목된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자동차의 본고장이라는 울산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홍모하므로서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또한 경주, 부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살린 지역특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촉구 건의합니다.

1999년 3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2. 11(구청장)

○ 심의일자 : '99. 2. 20(제19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재심의일자 : '99. 3. 30(제2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1998.2.24, 제5516호) 공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직장내 직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 유도하여 구민에 참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함.

나. 주요골자

○ 설립기관의 단위 :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기구

○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 :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임용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함.(필요에 따라 임시협의 개최)
-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음.
- 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인정하지 아니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

○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 제공과 업무능률향상,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며,

○ 전 공직사회의 성숙한 대화와 타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 각 개별 법령에서 공무원의 특수성과 또한 가입범위 및 금지 공무원 등 제한규정이 많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당초심의)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강혁진 의 원	○전체 직원중 몇 퍼센트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나?	강 석 희 총무과장	○현원 391명중 가입예상 인원 261명으로 약 65%임.
윤종오 의 원	○가입금지 보직이 너무 많아 인사발령으로 회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은데 보완조치가 있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한곳에 1년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보제한이 있어 문제될 것 없음.
윤종오 의 원	○전보제한이 있다고는 하나 인사권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다소 문제가 있음. 효율적으로 인사해야 할 것임.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의 원	○노동조합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강 석 희 총무과장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력체임.
강혁진 의 원	○단체교섭권은 있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없음.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단체임.
박춘환 의 원	○회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조항은 있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조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1절 제21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진한걸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4. 26 10:30

다. 회　　기 : '99. 4. 26 ~ 4. 30(5일간)

라. 부의안건

- ○ 북구청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구정질문(김수헌의원)
- ○ 21C 북구발전마스터플랜 등에 관한구정질문(박광식의원)
- ○ 울산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구청장제출)
- ○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안(구청장제출)
- ○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안(구청장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에 생동감이 넘치며 희망찬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 제21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주간 시 종합감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수헌의원, 박광식의원의 구정질의와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과 '9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전 의원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 동구의회와 강릉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관내 공항 소음피해 지역으로서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항관련 조사특위 활동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 관계 등 공항관련 의견교환으로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공항주변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당면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4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4. 26~4. 30(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4. 26 (월) 10 : 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2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4. 구정에 관한 질문 ○ 김수헌 의원 ○ 박광식 의원 5. 제2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6.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8.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3.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무사회국 — 지방세과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보건소	소회의실
'99. 4. 27 (화) 10 : 30	2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무사회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99. 4. 28 (수) 13 : 00	3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99. 4. 29 (목) 10 : 30	4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3.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99. 4. 30 (금) 11 : 00	5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액의결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4. 22(구청장)

○ 심의일자 : '99. 4. 26(제2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금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수를 완화하여 융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정자문위원중 연대보증완화.

(현행 5명 → 3명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와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동정자문위원 중 5명에서 3명으로 보증인을 줄이는 사항임.

○ 보증인을 동정자문위원으로 한정한 것과 보증인수에서도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일반금융기관 및 여타 조례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개정안에서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인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개정안은 '동정자문위원 중 3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의 경우는 일반인임으로 가구는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강 석 희 총무과장	○가구의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이 아닌 인적담보 2명으로 하겠음.
윤종오 의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마을의 사업을 한다고 공동으로 돈을 빌린 사례가 없는데 조례 자체가 필요한가?	강 석 희 총무과장	○농촌지역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박춘환 부의장	○만약 자기 마을에 공공사업을 하려는데 동정자문위원이 1명 밖에 없으면 다른 마을 동정자문위원이 보증을 해야하는데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소득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임.
김수헌 의 원	○2항에 마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가구일 때는 2인 이상 연대보증으로 바꾸면 되겠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가능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현행·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④(생 략)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중에서 3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마을의 경우에는 주민 3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4. 22(구청장)

○ 심의일자 : '99. 4. 29(제21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7. 7.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 개청에 따라 신청사(건물)를 건립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북구청사 건립

○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건립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827㎡(3,880평)

○ 건립기간 : '99. 7월~2000. 12월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

○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북구청사건립을 위하여 '97년 7월 12일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시 부지매입 49필지 49,220㎡는 기 의회 의결되었으며,

○ 청사건립에 따른 건축연면적 12,827㎡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건으로서 원만한 청사의 조기건립을 위해서 본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의안번호 제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4. 29(구청장)

○ 심의일자 : '99. 4. 29(제2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와 한국주택은행의 협약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대손발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기 위함.

○ '99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주채무자	채 무 액	이 율	상 환 조 건	비 고
360세대	2,700백만원	연 3%	2년 정기상환 (1회연장가능)	1세대 750백만원 이내 융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침

○ 도시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의 융자지원은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계층에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없겠는가?	김 환 조 건축과장	○1순위가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독거노인세대, 2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3순위가 실직세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제22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춘환부의장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5. 25 10:30

다. 회　　기 : '99. 5. 25 ~ 5. 26(2일간)

라. 부의안건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오월에 제22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사회단체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과 사후관리 및 우수기 재해대책 등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2대 북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 및 신설구의 정착을 위하여 1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북구의 지역

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역대책 및 장마철 재해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5. 25~5. 26(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5. 25 (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4.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o '98년도 및 '99년도 각종사회단체등 정액·임의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관리현황 – 문화공보실 – 총무사회국(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 산업건설국(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소회의실
'99. 5. 26 (수)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o 우수기 재해대책 및 업무추진현황 – 산업건설국(건설과) o '99년도 지역개발사업예산 업무추진현황 – 산업건설국(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o 하절기 방역대책 업무추진현황 – 보건소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8년도 및 '99년도 각종사회단체 등 정액업무·임의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관리 현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9. 5. 18(구청장)

○ 보고 일자 : '99. 5. 25(제2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 부서 :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 보 고 자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총무과장 강석희외 4명

2) 주요내용

○ 정액보조금지급현황

구 분	건수	금액(천원)	내 용
계	55	1,690,985	
총무과	43	270,056	새마을운동북구지회(분기지급), 동새마을협의회(분기지급), 동새마을부녀회(분기지급),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분기지급), 동바르게살기위원회(분기지급), 동자율방범대, 북구이동도서관(분기지급), 민주평통자문위원회(분기지급).
사회복지과	12	1,420,929	장애인복지시설, 동자원봉사회, 북구보훈4단체, 노인회북구지회, 울산자활지원센타.

○ 임의보조금지급현황

구 분	건수	금액(천원)	내 용
계	24	88,828	
문화공보실	4	16,500	해변영화축제, 북구주민센터, 울산민주시민회, 정월대보름달집살이행사추진.
총무과	1	14,115	울산광역시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사회복지과	16	46,065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농소읍전몰군경유족회, 보훈3단체전적지순례, 울산동광학교, 북구복지센터, 울산YWCA, 북구주민센터, 울산여성회,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현대자동차수지침연구회, 북구교육문화센터.
환경위생과	1	2,000	자연보호북구협의회
농림수산과	1	8,178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도시교통과	1	1,970	북구교통지도대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의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북구지역발전 기여도에 의한 지급 확행.

○ 지급 후 사후정산이 미비함으로 사후정산 철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우수기 재해대책 및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9. 5. 18(구청장)

○ 보고일자 : '99. 5. 25(제22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건설과

○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건설과장 김영태.

2) 주요내용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 양정동 새마을 아파트 뒤 옹벽 뒤 법면

○ 법면붕괴 현황 : 13동 뒤 절개지(1991), 8동과 9동사이 절개지 (1998.8.17), 9동과 상가동 사이 절개지(1998.8.18)

○ 해소대책 추진상황

- 공공근로사업추진 : 7~8동 사이 법면의 추가방책선 구축완료 후 마무리

○ '99 재해대비 방재시설물 정비등 보고

○ 재해대책비 확보 현황

(단위 : 천원)

계	시설장비	비축 물자비	행 정 비	비 고
471,253	453,000	2,380	15,873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우수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철저

○ 재해발생 예상지역 조기 발견하여 피해발생 최소화

제13절 제23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7. 27 10:30

다. 회　　기 : '99. 7. 27 ~ 7. 27(1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구청장 제출)
-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9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성하의 계절에 제23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제2대 북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땀흘려 일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12만 구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북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12만 구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54건의 조례안 등 총 1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행정 흐름을 살펴보면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없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하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 대책 등 민생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7월 2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7. 27~7. 27(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7. 27 (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건 4. 제2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총무과〉 6.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지방세과〉 7.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8.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환경위생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0.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1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교통과〉 12. 울산광역시북구북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14.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15. 울산광역시북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16.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 17.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교통과〉 1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적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6. 18(구청장)

○ 심의일자 : '99. 7. 27(제2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쓰레기봉투 용량에 대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 용량의 규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가정용 5ℓ 봉투를 신설

○ 가정용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10ℓ봉투의 사용범위를 사업장까지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

○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 쓰레기봉투 용량을 다양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의 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의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가?	김 종 열 환경미화 과 장	○일반단독주택용 70원에서 10원 올려서 80원, 공동주택용은 100원에서 20원 내려서 80원이 된 것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6. 18(구청장)

○ 심의일자 : '99. 7. 27(제2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을 재규정하고, 과태료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를 준용토록하여 과태료적용을 합리화하며, 또한 오수·분뇨수집·운반의 처리수수료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료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 가능토록 하였고, 영업구역 범위안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음.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

○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요금기준 마련

○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정하였으며, 일부 제한지역내 가축 사육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및 분뇨수집운반비

구 분	오수처리설 청소요금		분뇨수집 운반비	비 고
	기본(0.75㎥)	초과(매0.1㎥당)		
현 행	11,045	772	177	
조 정	15,209(37.7%)	1,062(37.6%)	201(13.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8조와 축산법 제2조

○ 오수처리시설요금 37.7%와 분뇨수집운반비 13.5%의 대폭적인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 현실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차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남구는 보류, 중구는 현행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한 의견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타구는 작년도에 상정해서 검토가 부족하다 해서 보류된 상태임.
윤종오 의 원	○우리구는 어떻게 할 의향인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8년간 미인상과 한국통계업무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타구와 맞추기 위해서 상정했음. '98. 6. 29일에 북구 물가협의회는 울산광역시의 용역 의뢰한 결과대로 하되, 의회에서 원가계산을 정확히해서 결정하라는 단서를 붙여도 가능할 것임.
류재건 의 원	○37.7%는 상당한 인상임. 이것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검토후 적정선을 잡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업체에서는 만년적자라고 하고 있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타구와 협의 후 같은 인상률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타구와 협의한 적은 없음.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에서 적정수준을 결정해 줬으면 함.
김수헌 의 원	○우리구 업체의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이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없음. 단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서 적자라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음.
박춘환 의 원	○조례 제7조 5항의 "중대한 위해"란 무엇을 말하는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예를 들면 전염병의 발생을 들 수 있음.
김수헌 의 원	○제한지역에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부칙 제2항에 있음
진한걸 의 원	○일부제한지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은 구체적으로 나왔는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없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에 제정되어야 함.
김수헌 의 원	○천곡동 962번지 소류지 상류부분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수동, 수성부락을 제외한 호계동 전역, 신천동 전역을 일부 제한 지역으로 하는 것은 수정 가능한가?	신 동 욱 환경위생과 장	○가능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table>
<tr><th>개 정 안</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1〉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table><tr><th>부과기준</th><th>수집 · 운반비</th><th>처리비</th></tr><tr><td>18ℓ당</td><td><u>201원</u></td><td>(생 략)</td></tr></table>비고 : (생략)
〈별표2〉
오수처리시설 청소 요금기준
<table><tr><th>구분</th><th>부과기준</th><th>청소료
(오니의수집
운반비포함)</th><th>처리비</th></tr><tr><td>기본요금</td><td>0.75㎥</td><td><u>15,209원</u></td><td>(생 략)</td></tr><tr><td>초과요금</td><td>매0.1㎥당</td><td><u>1,062원</u></td><td>(생 략)</td></tr></table>비고 : (생략)</td><td>〈별표1〉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table><tr><th>부과기준</th><th>수집 · 운반비</th><th>처리비</th></tr><tr><td>18ℓ당</td><td><u>177원</u></td><td>(생 략)</td></tr></table>비고 : (생략)
〈별표2〉
오수처리시설 청소 요금기준
<table><tr><th>구분</th><th>부과기준</th><th>청소료
(오니의수집
운반비포함)</th><th>처리비</th></tr><tr><td>기본요금</td><td>0.75㎥</td><td><u>11,025원</u></td><td>(생 략)</td></tr><tr><td>초과요금</td><td>매0.1㎥당</td><td><u>772원</u></td><td>(생 략)</td></tr></table>비고 : (개정안과 같음)</td></tr>
<tr><td>〈별표3〉
가축사육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
<table><tr><th>구 분</th><th>부 과 기 준</th></tr><tr><td>양정동</td><td>○ 양정동전역(율동, 심청골 제외)</td></tr><tr><td>염포동</td><td>○ 염포동 전역(심청골 제외)</td></tr></table>2. 일부제한지역
<table><tr><th>구 분</th><th>부 과 기 준</th></tr><tr><td>강동동
송정동
효문동</td><td>○ 정자동 전역
○ 화봉동 전역
○ 효문동 전역(율동 제외)
○ 진장동 전역
○ 명촌동 전역</td></tr></table></td><td>〈별표3〉
가축사육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
<table><tr><th>구 분</th><th>부 과 기 준</th></tr><tr><td>양정동</td><td>○ 양정동전역(율동, 심청골 제외)</td></tr><tr><td>염포동</td><td>○ 염포동 전역(심청골 제외)</td></tr><tr><td><u>농소3동</u></td><td><u>○ 천곡동 962번지 소류지 상류지역</u></td></tr></table>2. 일부제한지역
<table><tr><th>구 분</th><th>부 과 기 준</th></tr><tr><td>강동동
송정동
효문동

농소1동</td><td>○ 정자동 전역
○ 화봉동 전역
○ 효문동 전역(율동 제외)
○ 진장동 전역
○ 명촌동 전역
○ 호계동 전역(수동, 수성제외)
○ 신천동 전역</td></tr></table></td></tr>
</table>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7. 10(구청장)

○ 심의일자 : '99. 7. 27(제2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울산광역시북구의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변경에 대하여 지방지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 득

- 소 재 지 : 북구 연암동 363-1번지 토지(대) 591.6㎡
- 취득가격 : 153,100천원(조성원가)
- 용 도 : 화봉택지지구(공용의 청사시설 결정지)
- 활용계획 : 공용청사부지 활용계획을 취득

○ 처 분

- 소 재 지 : 북구 효문동 335-4번지 토지(유지) 2,087㎡
- 용 도 : 공장부지(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
- 처분사유 : 공유재산의 매각지침중 법규에 의한 매각(산업입지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장용지로 승인된 지역)

○ 북구의 경우 광역시의 기타 구에 비해 현 동사무소 중 일부(농소2·3동, 효문동)가 무상임대 또는 협소하여 향후 증가될 행정수요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용청사부

지로써 취득코자 하며,

- ○ 효문동 335-4번지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처분절차(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등)에 따른 내부절차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공유재산의 처분시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바,
- ○ 효문동 335-4번지를 처분하고, 연암동 361-1번지를 취득함이 양질의 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
- ○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부지는 공공청사로 지정된 것인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지정되어 있음.
김수헌 의 원	○매입가격은?	강 석 희 총무과장	○평당 200만원 정도로 예상됨.
김수헌 의 원	○사용 목적은?	강 석희 총무과 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음
김수헌 의 원	○위치가 좋아서 동사무소 자리로 적당할 것 같으며, 동사무소를 하기전에 보건소로 사용할 의향은?	강 석 희 총무과장	○보건소 건립은 검토했으나 조립식건축물 건설비 2억7,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50만원, 이사비용 6,000천만원 정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도이며 전체 비용이 4억 800만원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감.
류재건 의 원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으면 승인해 줄 수 없지 않은가?	강 석 희 총무과장	○토지개발공사가 구청에서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하겠다하여 구체적 사용목적을 수립 전에 의회에 상정한 것임.
박춘환 의 원	○매입후 다시 매각은 가능한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가능함
김수헌 의 원	○매입후 다시 매각은 승인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됨.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강 석 희 총무과장	○매입 후 구체적 사용목적을 의회에 보고하겠음.
류재건 의 원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할 것을 결정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용목적없이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	강 석 희 총무과장	○매입 후 활용계획을 보고하겠음.
김수헌 의 원	○안의 '주문'에 매각금액이 1억7,000만원이고, 매입은 2억5,000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강 석 희 총무과장	○1억7,000만원은 공시지가고 감정가격은 2억 5,000만원 정도임.
김수헌 의 원	○1억원정도 차액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공유재산 취득에 사용할 것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4절 제24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춘환부의장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8. 23 10:30

다. 회　　기 : '99. 8. 23 ~ 8. 26(4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공항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수헌의원외 2명 발의)
- ○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처서를 맞아 제24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외 4건의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사적으로 큰 고비가 많았던 20세기도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과거의 정책수단이나 접근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주의나 폐쇄주의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우리의 큰 과제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구에 걸맞는 행정체질 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구민 삶의 질 향상, 지역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더더욱 심기일전하여 새 천년의 비전을 구민에게 보여주고 누구나 와서 살기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8. 23~8. 26(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8. 23 (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울산공항실태행정사무조사의건 4.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4.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업추추진현황	소회의실
'99. 8. 24 (화)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관련업무 추진현황 – 현장확인 ○ 농소 천곡동 979-1번지 소재 축사 건립관련 업무추진 현황 – 현장확인	소회의실
'99. 8. 25 (수) 14 : 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청사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관계 업무추진현황	소회의실
'99. 8. 26 (목) 10 : 0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추진현황 – 현장확인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공항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의안번호 제106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8. 21(김수헌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99. 8. 23(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공항은 70년 11월 20일 개항하여 현재 하루 36편이 운항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계속 증가로 항공기 운항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대구공항 및 강릉공항 관할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고 자료조사 한 것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민원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사범위 : 울산공항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조사위원회 : 울산공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8. 23(의장 제의)

○ 심의일자 : '99. 8. 23(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 울산공항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

나. 주요골자

○ 특별위원회위원으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진한걸의원, 윤종오의원 이상 6명으로 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 업무추진계획)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9. 8. 20(구청장)

○ 보고일자 : '99. 8. 23(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문화공보실장 박원희, 지적과장 김실근

2) 주요내용

○ 2개 실·과 폐치(문화공보, 지적과)

○ 1개 실·과 증설(주민자치과)

○ 인원조정

- 행자부 지침 : 27명

- 구·군 협의안 : 3명 - 행자부조정승인 : 14명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지적과폐치 재검토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농소 천곡동 979-1번지 소재 축사관련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보고서 제출 : '99. 8. 20(구청장)

○보고일자 : '99. 8. 24(제2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2) 주요내용

○ '99. 2. 2 농지전용허가신청 (환경위생과 의견조회)

○ '99. 2. 12 허가

○ 축사건축 :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

○ 건축허가 : 적법함

○ 마을주민들과 중재하여 민원최소화 처리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정화구역적용 사항 적정성 재검토하여 조치요망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사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관계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보고서 제출 : '99. 8. 20(구청장)

○보고일자 : 99. 8. 25(제24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해당부서 : 총무과

○보 고 자 :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회.

2) 주요내용

○ 건축공사 도급계약 현황

– 계약일 : '99. 8. 13

– 착 공 : '99. 8. 23

- 준 공 : 2001. 5. 23

○ 계약자 : 대림산업(주)외 3개 업체

○ 계약금액 : 9,499,700천원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하도급 계약시 직불 방안 검토

○ 하도급자가 공사비 지급을 받지 못하여 공사지연사례 발생 방지 철저

○ 공사감독 철저로 공기내 완공 추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사항등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99. 8. 20(구청장)

○ 보고일자 : '99. 8. 26(제24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 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보 고 자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2) 주요내용

○ 단계별 사업 추진기간

- 98년도 : 1단계 : '98. 5. 1 ~ 8. 14
  2단계 : '98. 8. 17 ~ 12. 31
- 99년도 : 1단계 : '99. 1. 11 ~ 3. 31
  2단계 : '99. 4. 6 ~ 6. 30
  3단계 : '99. 7. 12 ~ 9. 30
  4단계 : '99. 10. 11 ~ 12. 31

○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 '98년도 예산액 : 27억 (집행 22억5천만원)
- '99년도 예산액 : 43억 (집행 30억)

○ 단계사업별 사업수 및 인력투입 현황

- '98년 : 261개 사업장 1,323명
- '99년 : 616개 사업장 2,679명

○ 우수사례 및 특이사항

- '98년 공공근로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울산광역시)
-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수상(청장2회, 지역경제과장2회)
- '99년 상반기 공공근로우수사업장 선정(행자부장관 표창)
- 공공근로건설 사업단 구성 운영
  - 구성일시 : '99.4.1(발대식개최 : 농소화훼단지)
  - 구성인원 : 공공근로자 30여명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사업분야별 세부사항 작성 제출 요망

○ 재료비 투입하여 예산잔액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제15절 제25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광식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9. 1 10:30

다. 회　　기 : '99. 9. 1 ~ 9. 4(4일간)

라. 부의안건

○ '99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울산공항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류재건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2. 개회사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5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온과 함께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여름 땀방울이 황금들녘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을 낳는 등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남부지역도 적지 않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지역이 별 피해가 없

었던 것은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경쟁의 주체로 전면에 부각되면서 우리의 할 일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게 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와 편익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구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12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핵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북구의회 의원 두 분이 천리행군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9. 1~9. 4(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9. 1 (수)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5.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총무사회국, 기획감사실) ○ 세출분야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소회의실 (산회후 공항특위회의)
'99. 9. 2 (목) 10 : 30	2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건소 ○ 총무사회국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99. 9. 3 (금) 10 : 30	3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산업건설국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99. 9. 4 (토) 11 : 00	4	1.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액의결	소회의실

- 당일의사일정 -

제2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99. 9. 4)

1. 울산공항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 계수조정
   - ○ 총액의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공항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심의경과

-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9. 4(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류재건 위원장)
- ○ 심의일자 : '99. 9. 4(제25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 울산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원해소 및 중·장기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 조사기간 : '99. 9. 1~11. 20(80일간)
- ○ 조사대상기관 : 울산공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중앙관련부처
- ○ 조사범위 : 울산공항 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 등

○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칭	위원장	간 사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울산공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류재건	강혁진	김수헌,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이차호	서준영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6절 제26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9. 30 10:30

다. 회　　기 : '99. 9. 30 ~ 9. 30(1일간)

라. 부의안건

○ 각종도급공사하자관리및사후관리점검표작성등에관한구정질문(김수헌의원)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6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정질문 및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항공기 소음측정 등 울산공항실태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회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정확한 조사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지난 추석연후 중에 수확을 앞둔 들녘에 때아닌 태풍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연일 쓰러진 벼세우기에 앞장서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9. 30(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9. 30 (목) 10 : 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2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 ㅇ 김수현의원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7.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8.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 9.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9. 27(구청장)

○ 심의일자 : '99. 9. 30(제2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확정된 정원 14명 감축에 대하여 구에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379명 → 365명(△14명)

○ 집행기관의 정원 368명 → 354명(△14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과 보완사항, 구·군의 제2단계 구조조정 재협의안 확정 사항

○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정원 감축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임.

○ 우리구의 감축인원 총 14명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연차별로 각각 감축조정하게 되며, 또한 초과 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9. 27(구청장)

○ 심의일자 : '99. 9. 30(제2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1개 실·과 감축계획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기구를 폐지 내지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종전의 문화공보실 및 총무사회국의 시민과를 폐지하고, 산업건설국의 지적과에 시민과의 일부 사무를 흡수하여 "민원봉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으로 두고

○ 종전의 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의 일부 사무를 관장토록하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추진 지침과 보완사항"과 구·군의 2단계 구조조정 재협의안 확정사항

○ 행정기구조정은 우리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구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북구의 미래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문화공보실이 없어지면서 공보가 기획감사실로 흡수되는데 공보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보의 기능을 강화할 의향은 있는가?	이 수 석 부구청장	○공보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감함. 비록 기획감사실로 공보기능이 흡수되나 중요한 기능으로서 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조직을 이끌겠음.
윤두환 의 장	○기획감사실은 기획공보실로 하고 우리구 지적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원봉사과는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달리하고 민원지적과장을 복수직에서 지적직, 단순직으로 집행부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견해는?	이 수 석 부구청장	○명칭변경에 동의하며 민원지적과장을 특별한 상황변화시 의회의 사전협의를 하여 변경할 수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적직, 단순직으로 하겠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공보실**을 둔다.
제5조(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① 총무사회국에서는 총무과·자치행정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5조(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① ____ ____ **민원지적과**·____ ____ ____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1~7〈생 략〉	1~7〈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2조 〈생 략〉	제2조 (다른조례의 인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기획감사실"을 인용한 경우 "기획공보실"을, "기획감사실장"을 인용한 경우 "기획공보실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3조〈개정안 제2안과 같음〉

제17절 제27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10. 8 10:30

다. 회　　기 : '99. 10. 8 ~ 10. 16(9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구청장 제출)

○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 '99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제27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비롯한 당면한 각종 안건심의와 공항실태조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업을 뒤로 한 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로운 일천년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명사적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 도래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세기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벗어나 새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시작된 여러 가지 사업들 뿐만 아니라 한 세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잘 마무리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 25일부터는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심고있고 효율적인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10. 8~10. 16(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0. 8 (금)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98결산검사 결과보고(검사위원)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5. 제2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6.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7.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	소회의실
본회의 산회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99. 10. 9 (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99. 10. 10 (일)		(일 요 일)	
'99.10.11(월) ~10. 13(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0. 14 (목) 10 : 30	2	○ 울산공항 실태조사 현장활동 — 시례동, 매곡동 소음측정 및 여론수렴	소회의실
'99. 10. 15 (금) 10 : 30	3	○ 울산공항 실태조사 현장활동 — 구 진장동사무소 등 주민여론 수렴	소회의실
'99. 10. 16 (토) 10 : 30	4	1.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98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9. 27(구청장)

○ 심의일자 : '99. 10. 8(제2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9. 2. 5 청소년보호법시행(시행 '99. 7. 1)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지역의 지정에 있어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청소년 통행금지 등 지역지정에 있어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지역의 제한시간 제정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지역지정절차와 해제 절차 마련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있어 별도의 선도계획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 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3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 3항에 근거

○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시급성은 없으나 향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제한구역에 청소년이 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것임.
김수헌 의 원	○향후 3년안에 북구내에 이런 지역이 발생될 소지가 현재추세에서 볼 때 없는 것 같으면 필요한 시점에 하면 되지 않는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두환 의 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 굳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므로 부결로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제정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의결과 : 부결

제18절 제28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99. 11. 8 10:30

다. 회　　기 : '99. 11. 8 ~ 11. 15(8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구청장 제출)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 제의)
- ○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제28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요구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현장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공항실태조사를 위하여 항공기 소음측정, 주민 여론수렴 및 피해조사, 김해·사천·여수·김포공항 소재 의회 및 공항방문 등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울산공항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항주변의 소음피해가 어는 정도인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참으로 황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전 의원이 지역정서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 삭감하였는데도 이미 수차례 올린 예산안을 또 올리는 처사는 행정처리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회와 불협화음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중앙에는 다 쓴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주민의 의사와 의회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란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일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 정책심의에 협조 내지는 조력하는 기관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의 지방자치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다는 좌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양 기관이 서로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며 힘을 합쳐 나갈 때만이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1월 25일이면 20세기의 마지막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감사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 정보획득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발전 도모 및 공공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집행부 행정감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되어 12만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9. 11. 8~11. 15(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1. 8 (월) 10 : 30 개회식 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본회의장

제3장 회의개최사항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개회식직후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4.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5.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세입분야(총무사회국, 기획공보실) ○ 세출분야 – 기획공보실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9. 11. 9 (화) 10 : 00	2	1.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건소 ○ 산업건설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99. 11. 10 (수) 14 : 00	3	1. '99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 종합의결 2.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소회의실
'99. 11. 11 (목) 10 : 30	4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99. 11. 12 (금) 10 : 0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북구청사 건립추진현황 (10 : 00→현장방문, 11 : 00→업무보고) ○ 북구청 구금고지정 업무추진현황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1. 13 (토) 10 : 30	6	1. 현장활동(99감사, 2000예산심의등 업무 추진)	
'99. 11. 14 (일) 10 : 30	7	1. 현장활동(99감사, 2000예산심의등 업무 추진)	
'99. 11. 15 (월) 14 : 00	8	1.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 2.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본회의장

- 당 일 의 사 일 정 -

제2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99. 11. 11)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
2.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3. '99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4. '99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 종합의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

1) 심의경과

-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0. 16(구청장)
- ○ 심의일자 : '99. 11. 11(제2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9. 2. 8 법률 제5,865호 개정 공포된 폐기물 관리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조례·규칙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대하여 폐지 내지 완화하여 규제의 길을 대폭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시 6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사유중 조례위반 행위시 취소요건을 삭제하였음.

○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자에 대한 실효성 없는 업무보고, 관계대상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쓰레기봉투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보고 및 관계대장을 작성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환경부예규를 준용토록하여 불필요한 과태료관련 사항을 삭제

○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시 징수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생활폐기물을 열거된 품목중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고 있으나 품목적용의 혼란을 주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6조 3항, 제7조 3항, 제13조 3항, 제15조 2항, 제16조 1항,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4조 1항~4항, 환경부예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울산광역시폐기물에관한조례및규칙정비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규제 등도 완화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의 다양화로 추가되는 대형 폐기물 품목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쓰레기무단투기가 유원지, 도심지, 빈공터에도 부지기수로 자행되고 있는데 청결에 대한 조치명령항을 만들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땅에 대한 재산세를 냈을 때는 그 속에 무단투기예방과, 관리 감독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쓰레기가 타인에 의해 투기되어 행정에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쉽게 승복이 되겠는가?	김 현 옥 환경미화과 장	○상당히 애로점이 있음.
윤종오 의 원	○조항에는 과태료를 삭제한다하더라도 조례만 삭제되는 것이지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 현 옥 환경미화과 장	○환경부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중으로 되어 있음.
김수헌 의 원	○제4조 2항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없앴으면 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 2(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결유지명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 2(삭 제)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1. 1(구청장)

○ 심의일자 : '99. 11. 11(제2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구에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하여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승인된 정

원 7명에 대하여 구에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 365명 → 372명

집행기관의 정원 : 354명 → 36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103조 ①항 및 ②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①항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99. 10. 1)에 근거하여 적법함.

○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신규채용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7명 정원이 늘어남으로 정원총수를 개정하여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인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8명중 1명은 농소3동에 별정7급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명은 시에 신규채용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구에 발령을 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공항실태조사결과보고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1. 13(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장 류재건)

○ 심의일자 : '99. 11. 15(제28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주요골자

○ 조사기간 : '99. 9. 1~11. 14(75일간)

○ 조사보고서 : 75쪽

3)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

※ 제5장 행정사무조사 참조

제19절 제29회정기회

1. 개최배경

가. 집　　회 :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나. 개회일시 : '99. 11. 25 11:00

다. 회　　기 : '99. 11. 25 ~ 12. 29(35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구청장 제출)
- ○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99제4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 ○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장제의)

라. '99행정사무감사실시

- ○ 기　　간 : '99. 11. 26~12. 2(7일간)
- ○ 실시주체 : 본회의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35일간의 일정으로 20세기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29회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주요 구정현안을 다루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 계승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예산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정기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9. 11. 25~12. 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1. 25 (목) 11 : 0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 3.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5.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99.11.26(수) ~12.2(목)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실 시	소회의실
'99. 12. 3 (금) 11 : 00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회의장
'99.12.4(토) ~12.18(토) (15일간)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활 동 (예 산 안 심 사)	소회의실
'99. 12. 19 (일)		(일 요 일)	
'99. 12. 20 (월) 11 : 00	3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본회의장
'99.12.20(화) ~12.28(화) (15일간)	4	○ '99년도 결산추경(안) ○ 조례안 등 각종안전 ○ 감사결과서 작성 협의	소회의실
'99. 12. 29 (화) 11 : 00	3	1.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종 무 식〉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9. 11. 25~12. 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2. 20 (월) 14 : 30	3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3. '99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본회의장
'99. 12. 21 (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 12. 22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 12. 23 (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소회의실
'99. 12. 24 (금) 10 : 30	4	1. '99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99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작성협의의건	소회의실
'99. 12. 25 (토)		(공 휴 일)	
'99. 12. 26 (일)		(일 요 일)	
'99. 12. 27 (월)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총무과〉 3.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9. 12. 28 (화) 10 : 30	6	1.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 2.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수산과〉 3. 울산광역시북구북구도로복원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 4.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건축과〉	소회의장
'99. 12. 29 (수) 11 : 00	7	1. '99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본회의장

- 당일의사일정 -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99. 12. 27)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총무과〉
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
4.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중조례안 〈총무과〉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2. 20(구청장)

○ 심의일자 : '99. 12. 27(제29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상안진료소는 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1차 구조조정시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정원감축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명칭 관할구역란중 보건소 상안진료소를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및 부칙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 상안진료소는 조례상으로만 존재하며 사실상 폐쇄되었으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의 원	○초과인원은 상안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상안진료소는 2000년 이후 어물·신명을 같이 없앤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별정직은 없애고 진료소는 있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꼭 그런것은 아님.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상안진료소 건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주민들이 원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이 있음.
	○철거하고 농협에서 건물이 만들어지면 영농기계수리센터로 한다니까 옆의 건물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와 협의하겠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2. 14(구청장)

○ 심의일자 : '99. 12. 27(제29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쌍용아진건설(주)로부터 기부코자 한 재산에 대하여 북구로 등기조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 부 자 : 남구 달동 44블럭 6놋트 아진건설(주) 대표 엄재석

○ 기부재산 : 천곡동 421-12번지 대지 966㎡

○ 기부사유 :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기부

○ 취득가격 : 202백만원정도(인근지 421-2번지)

○ 활용계획 : 공용청사부지 활용계획으로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공용청사 부지활용을 위하여 쌍용아진건설(주)로부터 기부받아 북구재산으로 등기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의 원	○주민들이 나중에 유치원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98년 8월 27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1000세대 이하는 의무적으로 유치원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00세대 이상으로 법이 바뀌어서 유치원을 안 지어도 됨.
윤두환 의 장	○유치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어야 하며, 주위에 유치원이 몇 개 있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주위에 유치원이 3군데,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4군데 있는데, 쌍용아진에서는 민간에게 분양을 하려해도 할 사람이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해서 북구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임. 그래서 유치원부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을 시켜놨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법이 바뀌었으면 아진앞으로 놔둬도 되는데 구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서 상 호 건축2담당	○법이 바뀌기 전에 관에서 유치원을 지으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 보니까 짓는 금액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결론이 나옴. 그런 와중에 2000세대로 법이 바뀌고 관에서 유치원을 지으라 했을 경우 손해가 되니까 입주민이 원하면 입주민에게 주고 아니면 관에게 주겠다는 것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12. 23(구청장)

○ 심의일자 : '99. 12. 27(제29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자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

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 ○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 퇴직준비 휴가대상을 확대
- ○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의무화와, 육아시간 허용, 경조사시 특별휴가 대상을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육아시간 1시간을 허용한다는데 이동시간도 포함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이동시간에 관한 것은 없고, 1시간 내에 육아를 돌보고 오라는 뜻임.
윤종오 의 원	○별표3의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 사망 휴가가 5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3일로 하면 안 되는가?	강 석 희 총무과장	○당초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이라고 돼 있는데 애매하니까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조정할 수도 있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외증조부모와 외조부모는 3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5일로 하면 어떻겠나?	강 석 희 총무과장	○가능함.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수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제20절 제30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김수헌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2. 12 11:00

다. 회　　기 : 2000. 2. 12 ~ 2. 21(10일간)

라. 부의안건

-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구청장 제출)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헌의원외 2인 발의)
-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윤두환의장 제출)
- ○ 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0년도 업무전반〉 (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새천년 새해 첫 회기인 제30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게나마 구민 여러분 올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각 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

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올해는 새 천년의 원년으로서 모든 구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새 시대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12만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2월 1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2. 12~2. 21(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2. 12 (토) 11 : 0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2000. 2. 13 (일)		(일 요 일)	
2000. 2. 14 (월)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 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공보실	소회의실
2000. 2. 15 (화) 10 : 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2000. 2. 16 (수) 10 : 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2000. 2. 17 (목) 10 : 3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2. 18 (금) 10 : 3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2000. 2. 19 (토) 10 : 3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2000. 2. 20 (일)		(일 요 일)	
2000. 2. 21 (월) 10 : 30	8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보 건 소 ○ 의회사무소	소회의실

- 당일의사일정 -

제3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2. 12~2. 21(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2. 16 (수) 10 : 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2000. 2. 17 (목) 10 : 3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2000. 2. 18 (금) 10 : 30	6	1. 현장활동 ○ 호계시장 재건축 현장확인 및 주민설명회 참석 등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2. 19 (토) 10 : 30	7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산업건설국	소회의실
2000. 2. 20 (일)		(일 요 일)	
2000. 2. 21 (월) 10 : 30	8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 ○ 보 건 소 ○ 의회사무소	소회의실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3. 의장보궐선거의건	본회의장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2. 10(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2. 14(제3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9. 2. 8 법률 제5,865호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조례·규칙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재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시 일정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10,000~30,000원이하 → 50,000원이하)을 상향조정하고 구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 같은법 제63조 3항, 환경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 소명자료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였고 신고 포상금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기 때문에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상위법이 통과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내용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에서 성실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더 주게 되니까 토지소유주나 건물주에게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기 바람.	김 종 우 총무사회국 장	○조치하겠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다가 폐지한 이유는? ○이 부분은 살려 놓는 것이 좋겠고, 뒤에 보면 "소명자료 또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단투기를 했는데 소명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겠는가?	김 종 우 총무사회국 장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니겠느냐 해서 뺐음. ○그런 사항에 대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음.
김수헌 의 원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 국민의 책무"라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주고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농소는 도농지역이고 5월부터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수거기간이 도농통합지역의 공동주	김 현 옥 환경미화과 장	○포상금은 확실하게 행위자가 발견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주는 것으로 현재도 지급하고 있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택의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못맞추면 지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밤에 불법투기를 하고 갔을 경우 피해는 땅주인에게 돌아옴. 상위법은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잘못됐다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임. 불법투기를 해서 농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지급하는가?		
	○밤에 폐기물이 몰래 밭에 버려져서 구청에 신고가 됐을 때 원인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법에 의해 땅지주가 치워야 되는가?		○이미 법령이 입법화 돼서 시행단계에 있고 조례를 맞추는 것인데, 이 조례가 규정이 돼도 선결요건은 관이 처리를 하고,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객지에 있어서 불법투기를 감시·감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 소명자료를 받고 가능하면 땅주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춘환 부의장	○건축쓰레기나 폐기물 불법투기를 했다고 통지가 와서 가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 봉투에 안넣고 검은 봉투에 넣어 버린 산업폐기물인데, 주인은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투기가 되어 있었다고 소명자료를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 종 우 총무사회국 장	○제4조2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미 조항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봄. 왜냐하면 제4조2의1항의 규정에 의해 긴급을 요하는 것은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10일 이내도 될 수 있고, 2일 이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말미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봄.
진한걸 의 원	○불법처리신고 포상금지급규정을 바꾼 근본 이유는?	김 현 옥 환경미화과 장	○작년에 환경부에서 과태료 금액의 80%선에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과태료가 10만원에 8만원은 너무 많고, 3만원은 너무 적고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5만원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 것임.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진한걸 의 원	○민간인에게 5만원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원이나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기존 포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세워 나갔으면 함.	김 현 옥 환경미화 과 장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박춘환 부의장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적으로 좀더 조목조목 만들어서 소명자료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토지·건물의 청결상태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명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제4조의2(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자료 또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 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서 삭제)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윤두환)의원사직의건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2. 12(윤두환의원)

○ 심의일자 : 2000. 2. 21(제30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주요골자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일(2000. 4. 13)전 60일까지 의원사직서 제출

3) 심의결과 : 사직허가

□ 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2. 12(의장 제의)

○ 선거일자 : 2000. 2. 21(제30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2) 주요골자

○ 의장(윤두환)의원 사직처리로 궐위된 의장 선거

○ 현 부의장(박춘환)의원이 의장 당선으로 부의장 선거

○ 선거결과

– 의장당선 : 박춘환(2차투표)

– 부의장당선 : 진한걸(1차투표)

제21절 제31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박광식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3. 28 10:30

다. 회　　기 : 2000. 3. 28 ~ 4. 3(7일간)

라. 부의안건

- ○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등에 관한 구정질문(진한걸 부의장)
- ○ 환경미화원의 결원 대책 등에 관한 구정질문(윤종오 의원)
-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구청장 제출)
- ○ 200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먼저 어제 강동 달골마을 산불진화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의 및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천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

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과 정보위주의 신질서가 등장하여 국가와 지역간 무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며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천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기반 확대와 지방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조화,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자치가 정착되어 나갈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민생활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자율과 참여에 기초한 창조적이고 경쟁력 있는 성숙한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실시됩니다. 4·13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생안정과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박 춘 환**

3. 의사일정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3. 28~4. 3(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 28 (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4.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5.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 7.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공보실〉 8.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생에관한조례안 〈기획공보실〉 9.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기획공보실〉	소회의실
2000. 3. 29 (수) 10 : 30	2	1.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 3.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자치행정과〉 4.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 6.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미화과〉 7.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 속〉 ○ 세입 – 총무사회국(지방세과), 기획공보실 ○세출 – 기획공보실	
2000. 3. 30 (목) 10 : 30	3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 속〉 ○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2000. 3. 31 (금) 14 : 00	4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 속〉 ○ 산업건설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0. 4. 1 (토) 10 : 30	5	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안) 2.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2000. 4. 2 (일) 11 : 00	6	1. 예산안심의관련 현장 확인	소회의실
2000. 4. 3 (월) 10 : 30	7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구정에 관한 질문 ○ 진한걸부의장	본회의장

- 당 일 의 사 일 정 -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2000. 4. 3)

1.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2. 구정에관한질문
   - ○ 진한걸 부의장
     - –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대책 등에 관한 질문
   - ○ 윤종오 의원
     - –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 등에 관한 질문
3.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속
   - ○ 종합 심의의결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4(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3. 29(제3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 중 운영중단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함.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함
-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
-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
-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
-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10인 이상 25인 이내)
-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
- 동장자문위원회의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항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준칙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류재건 의 원	○주민자치센터 준비가 안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예산부분은 행자부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문위원회, 동장, 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 종 우 총무사회 국 장	○재정형편이나 주민자치센터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음.
박춘환 의 장	○주민자치센터로 바뀜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김 태 오 자치행정 과 장	○제4조에 문화여가기능에 취미교실운영, 생활체육시설제공 등 즉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한 것을 확대를 한다고 보면 됨.
		김 종 우 총무사회 국 장	○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견은 위원회에서 표출되고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서 하므로 그 의견이 99% 반영된다고 보면 됨.
김수헌 의 원	○인력관계는 작년 시작할 때 보다 어떻게 되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 과 장	○한 명이 더 늘어남.
박춘환 의 장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종 우 총무사회 국 장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다른 점은 동정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동정에 대한 자문기관이고,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관임. 제11조에서 규정이 돼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극적으로 강구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장과 청장은 강구를 해야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 놨음.
진한걸 부의장	○프로그램 하나도 운영하기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야기되는 여러가지의 역기능들을 현 체제에서 운영할 때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김 종 우 총무사회국 장	○현재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미비한 시설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음. 그리고 우선 대안으로 필요하다면 회관이나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짓기 전이라도 기능별로 나누어서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에 차질없도록 수행하겠음.
진한걸 부의장	○이번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2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김 종 우 총무사회국 장	○지방문예회관에 지원하는 것임.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와 예술의 공간임.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3. 28(제3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북구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상징물, 캐릭터, 구기의 지정 및 사용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하여 북구의 이념과 비젼을 설정 이를 시각화시켜 일관된 규격과 모양 및 게양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상징물, 캐릭터, 구기의 지정 및 상징내용

○ 상징물의 규격과 모양, 작도법, 사용승인·변경·제한 및 관련사업 등

○ 상징물 : 마크, 캐릭터(차돌이), 구조(산까치), 구화(참나리), 구목(느티나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이며

○ 실·국·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3. 28(제3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국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1국 신설로 구민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국 설치 및 실과조정

- 총 무 국 : 총무, 자치행정, 지방세, 민원봉사과(4과)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위생, 환경미화과(4과)
- 도시개발국 : 도시교통, 건설, 농림수산, 건축과(4과)

○ 실과 명칭 변경

- 기획공보실 → 기획감사실
- 민원지적과 → 민원봉사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실·국·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승인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 1개국을 증설하여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개발국을 두어 각가 4개과를 관장, 기존 기획공보실과 민원지적과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 시·구의 명칭과 통일하여 민원 불편해소와 행정기관간의 형평을 유지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5급이상 정원 29명, 현원 29명으로 4급이 1명 증원되니까 8급 1명을 줄였다는 것인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앞으로 5급이상이 30명이 되고 8급이 84명이 되는 것임.
김수헌 의 원	○5급중에 4급 진급대상자 한사람 시청으로 보내고, 8급을 그대로 두면 최소한 적은 인원속에서도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5급 1명을 대기발령 시켜놓고 또 4급 1명을 더 받고, 8급을 줄이는 것은 인사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대기발령 5급에 대해서 시에 이번 국장 인사발령 때 5급 1명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고, 8급 관계는 굳이 8급이 아니라도 정원내에서 인원을 직급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직급이든 조정은 해야됨.
김수헌 의 원	○4급이 1명 늘어나는데 그럼 8급을 줄이지 말고, 5급이 현재 대기발령으로 있으니까 5급에서 1명 줄이면 안되는 것인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그렇게 되면 정원이 없어지게 됨.
박춘환 의 장	○8급은 과원이고 7급은 결원인데, 어떤 급수는 연도를 훨씬 넘어도 진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이것은 자체에서 7급이 담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승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조례로 늘려도 안되는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전체 인원을 100%로 봤을 때 7급 10%, 8급 1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정원으로 정해놨고, 또 승진소요연수가 됐는데도 못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위의 직급으로 상향조정하지는 못함.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현재 8급 중에 7급으로 진급할 최저 연한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없음.
박춘환 의 장	○정원이 8급은 어차피 안 맞고 9급은 정원이 작아도 충원을 할 수 있으니까 9급을 줄였다가 하는 것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그렇게 되면 일이 그만큼 번거로워짐.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3. 28(제3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2차연도의 정원 적용기간을 조정하는 정원 조례안의 부칙을 정비하고, 효율적 정원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제1항)

– 당초 : 2000년 7월 31일까지(2차연도)

– 변경 : 2001년 7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1항의 2000년 7월 31일까지를 2001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 2차연도 4명의 인력감축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1(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3. 28(제3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에 추친하고 있는 시책, 주요업무, 의회 의정활동,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구 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북구소식지 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 소식지 게재 자료수집, 취재, 원고청탁에 필요한 명예기자를 선정, 다양한 소식을 전달

○ 기사 제공 원고가 채택된 구민 및 명예기자에 대해 실비보상

○ 소식지 광고 게재 근거 규정을 두어 경영수익을 도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2항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 북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근거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강혁진 의 원	○북구소식지를 하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 계획인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게재할 계획임.
강혁진 의 원	○인터넷이 다 되어 있어서 구정소식지는 결론적으로 휴지조각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학생들이나 젊은층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 4~50대 이상의 주민들은 인터넷을 볼 기회가 적다고 봐짐. 그래서 구민들의 명예기자가 돼서 편집도하고 생활지식이나 정보를 실어줌으로 새로운 차원의 소식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임.
진한걸 의 원	○가장 핵심요체는 정말 주민들에게 읽혀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서 있는지 에 대한 확신에 대해 의원들 쪽에서는 여러 가지	김 종 열 기획공보 실 장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만약 잘되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안될 경우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짐.		
김수헌 의 원	○차라리 이 예산에 다른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끔 교육장을 더 개설해서 각 동마다 구정소식지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함.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인터넷 활용자가 많을 때는 인터넷으로 북구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보다 소식지를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봄.
진한걸 의 원	○매월 발행하는 것보다 분기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분기보다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됨.
김수헌 의 원	○만약 하게 되면 장비를 사서 자체공무원으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지금 계획은 편집·인쇄를 모두 외주로 계획하고 있음.
박춘환 의 장	○정보가 다른 매체에 비해 한달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종 열 기획공보실 장	○물론 월간지라서 시장성에 있어서 늦은 감은 있겠지만 구민들이 알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소식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인정보라든지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함.

5) 심의결과 : 부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3. 22(김수헌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2000. 4. 1(제31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99. 8. 31 법률 제60002호) 및 같은법시행령('99. 12. 31 대통령 제16672호)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정기회를 정례회로 매년 2년 개최

— 제1차 : 7월 7일

— 제2차 : 12월 1일에 집회토록 함.

○ 제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제2차정례회 :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118조 및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19조4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정례회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1차정례회 7월 7일, 제2차정례회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의안번호 제153호)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4. 3(윤종오의원외 2명)

○ 심의일자 : 2000. 4. 3(제31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고되며 자동차산업 자체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21세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고자 함.

㉮ 국가의 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의 철회와 대우자동차 공기업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 정부는 국민경제와 국익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국익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애국적 행위임을 확신하고 이를 관철키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 정부는 국가경제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기업화를 위한 올바른 해결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 결의하여 기획예산처, 산자부, 국회산자위, 대통령비서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이송하고자 함.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특 별 결 의 안

울산경제가 벼랑끝으로 떠밀리고 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한국자동차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고되며 자동차산업 자체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울산경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북구는 물론이고 100만 울산시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울산지역사회 전반의 정치, 문화, 교육 등의 일대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해외에 매각하는 일은 재고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단기간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자본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며 국익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으며 매각 정책 반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생존권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 줄 것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정책의 철회와 대우자동차 공기업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과 총생산,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자치하는 산업으로써 직접적인 연관 효과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산업의 꽃"이라고 한다.

고용측면을 볼 때에 총 취업인구의 7%(167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미국, 일본 12~13%), 수출은 전체산업의 8%('98년), 무역수지는 전체 23%(98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에 대우·쌍용자동차의 처리문제는 국민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해외매각 행위는 자동차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업체 모델의 단순한 조립하청기지 역할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감축이 예상된다. 생산감소는 직접적으로 고용불안을 일으켜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산업과 같은 기간산업 해외매각정책은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산업을 포기한 나라와 포기하지 않은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을 포기한 영국은 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으나 70년대부터 자동차 업체들을 해외에 매각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영국 국적의 자동차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량에 있어 한국(세계 4위)에 훨씬 못미치는 세계 8위의 자동차생산국이 되었다. 또한 스웨덴은 90년 GM이 Saab지분 50%를 인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GM이 인수하고 부터 생산량은 같은데 고용은 절반이하로 줄어 들었다. 르노, 포드, 폭스바겐 등 모든 외국 업체들의 형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동차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이탈리아 피아트는 정부가 36%의 지분을 갖고 육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르노가 부실화되자

공기업화 했고, 독일은 폭스바겐이 부실화되자 니더작센주가 인수하여 대주주가 됨으로써 공기업화 한 바 있다. 또 크라이슬러의 경우 79년도 도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채권은행, 지방정부, 협력업체의 지분참여, 노동자들의 양보로 회생시킨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매각하지 않고 공기업화를 통해 회생을 시도한 모든 사례들은 성공하였으며 해당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이미 78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IMF체제에 놓여 있던 당시의 외자유치 정책을 정부가 고집할 이유는 없어졌으며, 이제는 국민경제와 국익을 우선에 놓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국익과 국민경제를 살리는 애국적 행위임을 확신하고 이를 관철키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기업화를 비롯한 올바른 해결대안을 즉각 수용하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12만 북구주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00년 4월 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제22절 제32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강혁진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5. 22 10:30

다. 회　　기 : 2000. 5. 22 ~ 5. 23(2일간)

라. 부의안건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구청장 제출)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32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4·13 총선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업무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중에는 의회에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800년된 아파트나 자연친화적인 도로, 관광산업의 육성, 완벽한 사회복지제도, 선진시민의식 등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의식부터라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잘 적응하며 선진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창조적이며 경쟁력 있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6·8지방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남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안정과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박 춘 환**

3. 의사일정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5. 22~5. 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5. 22 (월) 10 : 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직후	1	1.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제3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본회의장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2000. 7. 1 의약분업관련 업무추진현황(보건소) 6.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차행정과〉 7.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건축과〉	소회의실 (12 : 00간담회) (14 : 00설명회)
2000. 5. 23 (화) 10 : 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 과수재배(배) 냉해피해 업무추진현황(농림수산과) ○ 구제역 대책 및 예산집행현황(농림수산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 ○ 자원봉사센타 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	소회의실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4.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5. 22(제3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실정과 통·반조례가 서로 맞지 않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반설치 조례를 현실과 맞게 개정하고,

○ 통·반장 위촉시 일부지역의 경우 지원자의 경쟁이 심하여 위촉에 따른 주민불만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통·반장에 대한 위·해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통·반장의 위촉방법 개선

– 동장위촉 → 동장위촉 또는 주민선출

당해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통·반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 통·반장의 해촉사유 추가 :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 적법함.

○ 검토의견으로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선으로 선출된 경우와 불신임 된 경우, 위·해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직선의 방법 등 주요사항이 누락되었고 아파트관리규약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반장은 당해 통 또는 반 관할 구역내의 거주하는 2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해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자를 통장 또는 반장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따라 **〈삭 제〉** 선출되었을 경우, _____

□ 울산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4. 25(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5. 22(제3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가 도시화, 서구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변하여 왔으며,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전체주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련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없어 쌍방이 만족스런 합의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어려웠으나, 구조례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위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가 등 5~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참고인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할 수 있으며, 분쟁관련 서류의 열람, 공동주택 및 단체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법인, 단체, 기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여부를 물어 조정안을 수락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적법함.

○ 검토의견으로 공동주택관련분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함.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7조의 전문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분쟁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좀더 적극적인 권장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인가?	김 환 조 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 대학교수나 판검사, 변호사들이 위원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 살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로 주로 관리업체와 입주민간의 문제점, 관리비용, 입주자 대표, 선임문제 등 구청장에게 민원에 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임.
김수헌 의 원	○다양한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김 환 조 건축과장	○사업승인도 하지만 사후관리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음.
김수헌 의 원	○제7조에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환 조 건축과장	○1년이나 2년 단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필요한 사람만 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초빙해서 할 때 전문위원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로 별도로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상식적으로 전문위원이라면 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조건을 받는 것으로, 위원중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다른 법을 다 따져봐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환 조 건축과장	○이번에 위원중에 2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사안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2명만 전문위원으로 하자는 뜻임.
진한걸 의 원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재정의 적정규모를 제출했는지, 안했는지가 핵심으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중에서 하는 것보다 위원이 아닌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본래의 기능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닌지?	김 환 조 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을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불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것임.
김수헌 의 원	○해당 동 의원들이 그 동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고, 판사가 판단하듯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기 보다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병 규 도시개발 국 장	○얼마든지 가능함.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중요한 것은 '위원'중에서 한다는 것은 빼고 별도로 전문가를 둔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김 병 규 도시개발 국 장	○그렇게 수정도 가능함.
박춘환 의 장	○제9조제3항 분쟁이 일어나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지?	김 병 규 도시개발 국 장	○날짜는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5) 심의결과 : 수정가결

6)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법률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중 2명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9조(조정의 신청) ①~②(생략)	제4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_____ _____ **하되, 해당 동 구의회의원** **공동주택의** _____ _____ _____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전문위원) ① _____ 연구를 위하 여 **〈삭 제〉** 전문위원을 ② ~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조정의 신청) ①~②(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_____ **14일** _____
제10조(주장의 확인 및 조사) **구청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통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이나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주장의 확인 및 조사) **〈삭 제〉** 위원회는 _____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2000. 7. 1 의약분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0. 5. 18(구청장)

○ 보고일자 : 2000. 5. 22(제32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해당부서 : 보건소

○ 보 고 자 : 보건소장 박혜경

2) 주요내용

○ 의약분업 목적 : 전문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약화사고 예방

○ 업무추진현황

– 의약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실시

-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2000.4월 구성) : 보건소장 등 관계자 10명
- 의약분업협력회의 간담회 개최 : 1회
- 홍보물 배부현황 : 포스터 외 4종 6,570매

○ 문제점

- 의료계의 분업참여 기피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분업 준비작업에 애로가 있음.

○ 대책 및 기대효과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초기에 오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의약분업 협력화의 운영 철저

○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절차 안내 철저

○ 교육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 시행초기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과수재배(배) 냉해피해 상황〕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 : 2000. 5. 23(구청장)

○ 보고일자 : 2000. 5. 23(제32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 보 고 자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 주요내용

○ 개요 : 2000. 4. 11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2.9℃까지 떨어져 배 개화시기인 배꽃에 냉해피해가 발생함.

○ 배 재배현황 : 187가구 107ha

○ 배 냉해피해발생 상황(피해율 기준)

• 30%이하 : 43ha, • 30~50%이상 : 23ha,

• 50~80%이상 : 40ha • 80%이상 : 1ha • 총면적 : 107ha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제7조(피해액산정 및 피해조사요령)에 의거 배 냉해피해 정밀조사 결과보고(시)
- 농림부, 시에서 배 냉해피해 보고 회신에 따라 자치단체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여부 검토

※ 농림부에는 냉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농업재해지역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음.

- 재해관련 국가지원이 없을 경우 구에서 농약대 지원대책 계획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차기 연도를 위한 과수원 약제 살포지도 추진

○ 피해농가 지원 방안검토 등

[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제역 대책 및 예산집행 업무추진)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2000. 5. 18(구청장)

○ 보고일자 : 2000. 5. 23(제32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해당부서 : 농림수산과

○ 보 고 자 :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 주요내용

○ 개 요 :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구제역이 2000.3.26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하여 충남 홍성, 충북 충주 등지로 전파됨에 따라 질병의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 추진

- 우리구 가축사육 현황

구분 / 동별	합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농가수	462	74	47	161	133	13	29	5	-
두 수	7,407	554	669	1,694	3,849	309	241	91	-

○ 방역대책 업무추진현황

-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부구청장(대책본부장)등 20명

○ 구제역 공동방역단 구성 운영(2000. 4. 6)

○ 마을진입로 간이소독시설 설치 운영(27개소)

○ 주요국도변 진입차량 소독 실시

○ 구제역 방역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 예산 확보액 : 108,836천원(시비 52,991, 구비 55,845)
- 집 행 액 : 37,318천원(시비 17,209, 구비 20,109)
- 미 집 행 액 : 71,518천원(시비 35,782, 구비 35,736)

3) 주요시정 및 조치사항

○ 생석화, 구연산, 뉴크린맥스 등 약품 농가 및 동사무소에 보관되는 경우 없이 소독 철저

○ 담당 직원의 수시 농가 확인하여 관내 구제역 예방 활동 철저

제23절 제33회임시회

1. 개최배경

가. 소집요구 : 류재건의원외 2명

나. 개회일시 : 2000. 6. 27 10:30

다. 회　　기 : 2000. 6. 27 ~ 7. 1(5일간)

라. 부의안건

- ○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 ○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구청장 제출)
- ○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 제의)
- ○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 제출)

2. 개회사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의,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및 각종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8 송정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첫 등원하게 되신 김진영 의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지역구는 물론 우리 북구전체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6·8 지방보궐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업무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사업인 통일문제가 많은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램이지만 혹시나 국가안보에 긴장감이 풀리지나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안보 유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로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장단 구성과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북구의회 의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주역이 되고, 구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 협력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변함없는 수고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박 춘 환**

3. 의사일정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0. 6. 27~7. 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6. 27 (화) 10 : 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2.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4.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5. 구정에 관한 질문 ○ 김수헌 의원	본회의장
		6.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 속〉 ○ 세입 — 총무국(지방세과), 기획감사실 ○ 세출 — 보건소, 기획감사실	
2000. 6. 28 (수) 10 : 30	2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 속〉 ○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의건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6. 29 (목) 10 : 30	3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 속〉 ○ 도시개발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소회의실
2000. 6. 30 (금) 10 : 30	4	1.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 속〉 ○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계수조정 ○ 종합심의의결	소회의실
2000. 7. 1 (토) 10 : 30	5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본회의장

- 당 일 의 사 일 정 -

제3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2000. 6. 28)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
   ○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총무과〉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1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20(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6. 28(제3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심의일자 : 2000. 7. 10(제34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하천 직강 공사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동의 경계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정규모

구 분	현 재			조 정 후		
	면 적	세대수	인 구	면 적	세 대 수	인 구
창평동 (농소1동)	5.63 (14.90)	386 (4,953)	1,207 (17,082)	5.61 (14.88)	389 (4,956)	1,212 (17,087)
송정동 (송정동)	450 (10.79)	230 (3,745)	737 (13,534)	4.52 (10.81)	227 (3,742)	732 (13,529)

○ 조정대상 및 내역

지역명	편입되는 동	편입받는 동	필지수	면적
창평천 일원	송정동 (송정동)	창평동 (농소1동)	26	33,263
	창평동 (농소1동)	송정동 (송정동)	28	54,68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적법함.

○ 검토의견으로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경계를 일직선으로 함이 행정효율이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당초심의)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김수헌 의 원	○법률상, 제도상 비닐하우스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을 못짓도록 돼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 ○농지만 있는데 행정상 예산 들여서 서류 바꾸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상 련 동정담당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 있음. ○옛날부터 거주의 자유라 해서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숙식을 할 수도 있게끔 시설이 돼 있음.
김진영 의 원	○일정부분 동의는 하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주민들과 합의가 된 근거자료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이번에 직강공사를 해서 농소와 송정동 표시가 확연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김수헌 의 원	○땅 지주들과 의논을 해봤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직접 확인은 못했음.
김수헌 의 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명인지?	이 상 련 동정담당	○24필지 정도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임.
의 장 박춘환	○송정동 도로 밑에는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도면이 잘못된 것 같음.
윤종오 의 원	○염포동에 대해서 염포동 땅인데 양정동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보고 있는데 염포동 땅이 맞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맞음.
윤종오 의 원	○그렇게 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염포동에 행정 편의상 똑바로 하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음.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답답한 것이 그쪽 주민들이 반대할 것은 뻔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어떤 형태든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의향이 없는지?	김 태 오 자치행정과 장	○정리하기가 곤란하나 연구는 해 보겠음.

○ 질의·답변요지(재심의)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류재건 의 원	○염포·양정간 논란이 됐던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강 종 철 총무국장	○그 지역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설득력과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조정안에 못 올렸음.
김수헌 의 원	○현재 도면이 7호국도 위까지만 그어 놨는데, 밑부분도 직강공사를 하면서 하천으로 편입됐으면 그 부분까지 잘라서 할 의향은 없는지?	이 상 련 동정담당 강 종 철 총무국장	○아직 도면 정리가 안됐음.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까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5) 심의결과 : 의견서 채택

종 합 의 견 서

대상지역	송정동(송정동) → 창평동(농소1동)

○ 하천정비공사로 일단의 토지가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어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형상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천을 경계로 동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금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창평동 7호 국도 서편 울산공항 확장으로 변경된 하천부분 1207-8, 1209-1, 1210-1, 1211-1번지 등에 대하여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창평천 경계로 하여 동천강까지 금번 행정구역 조정시 같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0년 7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6. 26(구청장)

○ 심의일자 : 2000. 6. 28(제3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재심의일자 : 2000. 6. 30(제33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2000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공용(북구)청사 건물증축,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신청사 증축

– 당초 : 연암동 1081-1번지 북구신청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983.15㎡(3,927평)

- 변경 : 연암동 1081-1번지 북구신청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3,735.27㎡(4,154평)
- 증감내용 : 옥상층(증축) 752.12㎡
  ※ 사업예산은 당초 지하1층에 건립 예정인 체력단련실 공간변경 예산으로 건립되므로 변경없음.

○ 구민회관 건립

- 연암동 1081-1번지 신청사부지내 구민회관 건립 3,101㎡
- 건립금액 : 50억원(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20억)
  ※ 변경사항이 없으면 신규건립으로 의결요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물분만 예산확보, 예산상 부지확보 곤란으로 신청사 부지 선정

○ 활용계획 : 공용청사예비공간 확보 및 구민회관으로 활용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관련법규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검토의견으로 신청사 증축 752.12㎡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위치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의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윤종오 의 원	○지하층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갑자기 넓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강 석 희 총무과장	○당초에 10억원을 확보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예산으로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규격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되었음.
윤종오 의 원	○건물은 지을 때 같이 지으면 효율적인데, 굳이 위에 안 짓고도 실·과 재배치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예산들여서 짓는 이유는?	강 석 희 총무과장	○증축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이에 올라온 부분이 현재까지 비어 있는 공간으로 여기에 칸을 막아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것임.
진한걸 부의장	○227평에 3억원이면 평당 1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지?	김 영 범 건 축 2 담 당 자	○설비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벽이나 칸막이, 천장공사 등 본 청사에 대한 건축공사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잡힘.
박춘환 의 장	○증축을 안하고 227평을 만들면 골조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김 영 범 건 축 2 담 당 자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감.
김수헌 의 원	○재정만 허락한다면 꼭 여기에 안짓고 다른 곳에 지어도 관계는 없는지?	김 종 우 총무국장	○일반교부금은 재정보전 차원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은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쓸 수 없음.

5)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 심의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6. 27(의장 제의)

○ 선거일자 : 2000. 7. 1(제33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2)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 주요골자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2조(정수 : 의장·부의장 각 1인, 무기명투표, 임기 2년)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선거방법)

○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 제2대의회 후반기 : 2000. 7. 7 ~ 2002. 6. 3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선거사무 및 투표방법 : 감표위원 1명 선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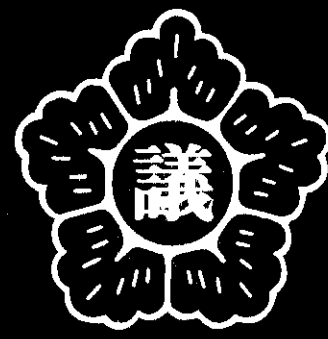
나. 투표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3) 투표결과

구 분	의 원 명	1차	2차	3차	비고
의장선거	진한걸	8	·	·	1차당선
부의장선거	박광식	4	4	4	3차연장 의원당선
	류재건	4	4	4	

※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투표

제 4 장



행정사무감사

○ 제1절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제2절 '98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3절 '98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 제4절 '99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제5절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제6절 '99 행정사무감사결과

○ 제7절 '99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 제8절 '99 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제1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98.11.26~'98.12.2(7일간)

다. 감사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윤두환

○ 부 의 장 : 박춘환

○ 의　　원 : 전의원

○ 전문위원 : 이차호

○ 사무직원 : 하헌주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 고
		직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 청 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황재영	
	○총무사회국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총무과	총무과장	강석희	
	•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강함순	
	• 시민과	시민과장	임정순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채석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농림수산과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직무대리
	• 건설과	건설과장	김영태	
	•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건축과	건축과장	유병옥	
	• 지적과	지적과장	김실근	
	보건소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3. 감사자료제출 요구현황

○ 제출요구 현황(제15회임시회, '98. 10. 29)

계	공통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179(건)	12	12	8	66	63	11	7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고
'98.11.26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98.11.27 (금)	10:00	〃	○총무사회국 • 총무과 • 지방세과 • 시민과	
'98.11.28 (토)	10:00	〃	○총무사회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98.11.29 (일)	10:00	현장	○현장확인 • 전부서	
'98.11.30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산업건설국 • 건설과 • 도시교통과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고
'98.12.1 (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98.12.2 (수)	10:00	〃	○ 보건소 ○ 산업건설국 • 건축과 • 지적과 ○ 총무사회국 • 사회복지과 ○ 의회사무과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방식

○ 선서장소 : 소회의실

○ 선서방법 : 실·국·소단위 실시

○ 선 서 문 : 별첨

- 서명 날인후 제출

라. 기타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98. 11. 26~'98. 12. 2(7일간)

- 출석장소 : 소회의실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 현지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제2절 '98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써 구민의 풍요로운 삶의 보장과 생산적이고 성숙된 구정을 확립코자 함.

나. 감사기간 : '98.11.26 ~ '98.12.2(7일간)

다. 감사실시대상기관

기 관 명	대상 실·국·사업소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두환	박춘환	김수헌 강혁진 박광식 류재건 진한걸 윤종오	이차호	하헌주

나. 감사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98.11.26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98.11.27 (금)	10:00	〃	○총무사회국 • 총무과 • 지방세과 • 시민과	
'98.11.28 (토)	10:00	〃	○총무사회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98.11.29 (일)	10:00	현 장	○현장확인 • 전부서	

구 분 /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98.11.30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산업건설국 • 건축과 • 건설과	
'98.12.1 (화)	10:00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98.12.2 (수)	10:00	〃	○보건소 ○산업건설국 • 도시교통과 • 지적과 ○총무사회국 •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과	

다. 감사방법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인 원	참고인출석 인 원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192	18	4	192
공 통 사 항	12			12
기획감사실	12	1		12
문화공보실	8	1		8
총무사회국	68	7		68
산업건설국	73	7	4	73
보 건 소	12	1		12
의회사무과	7	1		7

마. 현지확인감사

일 시	현지 확인 감사 내용	장 소
'98.11.29 (1일간)	① 소방도로 예정지(염포76-2번지)	염포동
	② 염포 미도아파트 재해위험지	염포동
	③ 소방도로 예정지(양정464-1번지)건축물 현황 〈양정초등학교 후문〉	양정동
	④ 양정동 사무소앞 소방도로상 건축물	양정동
	⑤ 미포국가공단	효문·연암
	⑥ 신현~어물간 도로공사 현장	강동동(신현)

일 시	현지 확인 감사 내용	장 소
	⑦ 금천교	강동동(어물)
	⑧ 간이조선수리소	강동동(어물)
	⑨ 신현~당사간 도로공사현장	강동동(신현)
	⑩ 매곡 마동 소교량 수해피해지 현장	농소1동
	⑪ 매곡 괴정 소교량 파손지 현장	농소1동
	⑫ 약수 오리미들 농로확·포장 공사현장	농소2동

바.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0	25	35
공 통 사 항	2	2	
기획감사실	7	4	3
문화공보실	5	2	3
총무사회국	26	8	18
산업건설국	17	8	9
보 건 소	3	1	2

3.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전 실·과·소)	[공통사항] 1. 예산 집행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사업비 5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국·시비 집행내역 7. 5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일반업무추진비 지출내역(204-01, 204-03) 9. 특수활동비 지출내역(205-01, 205-02) 10. 일반·특별회계 채권 관리현황 11. 각종기금 운영현황 12. 특별회계 자금수급 및 배정내역	
기획감사실	1. 구청장 선거공약과 공약이행 실적현황 2. 소송업무 추진내역 3.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4. '98년도 부서별 각종자료 인쇄 구입현황 (자료명, 인쇄부수, 금액, 인쇄업체, 배포) 5. 풀 보조금 집행내역 6.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7. 예비비 지출내역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명부, 구성근거, 회의수당 지급등) 9. 일용인부 관리현황 10. 공공시설 관리체계현황 11. '98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내역 12. '98행정위반자 고발현황 및 회시결과	
문화공보실	1. 관광시설계획(마스터플랜, 재원확보방안) 2. 체육행사 참여선수단 격려내용 3. 체육지원 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4.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 실태현황 5.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현황 7.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처리현황 8. 농소 체육공원 추진사항	
총무사회국 총 무 과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 2. 구청장 초도순시시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3.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500만원이상) 4.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 5. 임시청사 관리 현황 및 관리비 부담내역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포함) 6. 공무원자녀 학자금대부 관련현황 (기금조성내역, 관리현황 등)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총무사회국 총 무 과	7.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 8. '98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지급대상선정, 지급내역, 보조금정산, 사후점검 관계서류 9. '98국민운동 추진계획서 10. 주민대학 운영실적 11. 북구관내 무주 재산현황 12. 국·공유재산 대부, 임대, 불하현황 13. 공유재산 건물점유 실태현황 14. 관사 관리현황 15. 동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10.30일 기준) 16.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운영현황 17. '97.7.15이후 북구공무원 인사 발령현황 (승진, 전보, 전입, 전출, 퇴직, 개인별 부서이동 횟수현황 등) 18. 공무원 징계현황 19. '98년 북구청직원 복무현황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휴직 등) 20. 휴일근무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21.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22. 북구청 도서구입비 내역(새마을이동도서관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총무사회국 총 무 과	포함) 23. 북구관내 자연부락과 통반현황 24. 북구청사 설계공모당첨업체 관련현황	
지방세과	1.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현황(100만원이상) 2.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내역(건당 100만원이상) 3. 체납세 징수 실적현황('93년도이후 세목별 작성) 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내역 5. 사치성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 6.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현황 7. '98자금수급계획 및 배정내역 8.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내역(일반회계) 9. 결손 처분현황 및 내역(건당 10만원 이상) 10. 체납자 거소 불명현황	
시 민 과	1. '98민원 처리현황(월별) 2. 팩스민원발급 및 신청후 미수령현황 3. 지역, 직장 민방위대 교육 시설현황 4. 민방위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 5.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6. 교육훈련 불참자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7. 공익근무 요원현황 및 관리실태	
사회복지과	1. 북구관내 결식 학생현황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사회복지과	2. 소년, 소녀가장 지원 실적현황 3. 임시적 생계곤란자 부식비 및 양곡 지급내역 4.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5.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현황 6.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현황 7.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현황 8. 부녀복지지원 사업현황	
환경위생과	1. 각 마을 공동우물, 약수터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현황 및 관계서류 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실시여부 및 지적사항처리 관계서류 3. 각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사항 및 관계서류 4. 염포(현·중) 소각장 행정지도현황 5.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사항 및 현황 6. 부정 불량식품 수거 검사처리내역 7. 유통식품 수거 및 처리내역 8. 오염물질 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 9. 하천 오염행위 단속결과 10. 정화조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결과 11.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체육공원, 그린공원, 정자해변) 12. 이·미용업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내역 13. 항공기 소음관련 업무 추진현황 및 대책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환경미화과	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 관련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음식물 쓰레기 처리지도 단속실적 4.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 5.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 6.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장려금 지급현황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1. 주유기 탱크로리 만료점검결과 2. 주거밀집지역 가스업소 시외각 이전 행정지도현황 3. 주택밀집지역 고압선 통과 지역현황 4. 북구관내 도시가스 공사후 배관도면 관리현황 5. 농소 호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 대책 등 보고 6.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실적현황 7. 북구관내 업종별 실직자현황 8. 농소3동 까르푸 고용추진현황 9. 공공근로사업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현황 (1, 2차 사업대상지, 사업비, 고용인원 등) 10.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11. 실직자 직업훈련 실적현황과 재취업현황 및 자격증 획득률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12.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선정시 적격자 선정확인 증빙서류 확인내역 13. 가스 체적제 추진 실적현황 14. 가정용 석유판매소 지도단속 실적	
농림수산과	1. 농업관련시설 및 투자 사업현황 2. 농업분야 지원 사업현황 3. 축산분야 지원 사업현황 4. 수산분야 지원 사업현황 5. 수산관련 인·허가현황 6. 수산관련 민원발생 및 해결방안 7. 북구관내 농지전용현황 8. 농어민 후계자 지원 사업현황 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현황 10. 산림식재 계약체결 내역과 식재 증빙사진 및 현재 생육 실태현황 11. 임도개설 계획 및 추진현황 12. 농지거래허가 신청현황 13. '96~'97년 강동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14. 정자어촌계 산하 구획어업 및 정치망 어장도면 15. 정자항 항만도면 16. 8개 어촌계 제출 구획어업 어구설치 장소변경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수산과	신청 공문 17. 활어직판장, 간이 어선수리소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건설관련서류, 건설도급계약서, 회계서류, 영수증철 기타사본 18. '97농어촌 종합개발사업 - 북구강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사업 명세서 - 북구강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사업 회계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	
건 설 과	1. 각 동별 소방도로 개설계획 대비 개설률 현황 2. 가로등 보수업체 계약 관련서류 3. 북구청 개청이후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일정, 업체, 사업비) 4. 북구관내 재해위험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 5. 보수 정비필요 도로현황 및 소요예산 6. 하천, 제방 개·보수현황 및 계획 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내역 8.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현황 및 내역 9. 공유수면 매립지 임대현황과 현임대료 산출 법적근거 10. 지난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으로 응급복구지역의 항구적 재해대책 수립현황 11. 강동지역 포장마차 철거단속 실적현황 12. 각종 투자사업 추진 실적현황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건 설 과	13. 배수시설 수탁공사비 지급내역 14.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지급내역 15.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 16. 건설과 보유 장비현황 및 사용실태, 구입 내역사항 17. 각종 공사감독일지 사본 18.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19. 지하수 개발업무 처리현황 20.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도시교통과	1.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관련서류 2. 농소 강동지역 도시계획 입안작업 진행현황 3. 북구 버스노선 및 운영현황 (좌석 및 일반버스 비율) 4.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5.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6. G.B지역내 행위 허가현황	
건 축 과	1.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2. 이화지역 이화장여관 준공검사의 서류 3. 건축분쟁 조정실적 4.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5. 건축공사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건축물현황 및 조치내역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건 축 과	6. 염포미도아파트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 7. 북구관내 건축허가후 미준공건물 내역 8. 건축허가 때 방음시설 의무화 행정지도, 지시에 따른 업무추가 9. 한국까르푸(주) 울산지점 건축허가 관련 건폐율 용적률 산출내역 및 법령근거 10. 신동아파트 준공서류 11. 경동아파트 준공서류 12. 한라신천지아파트 준공서류	
지 적 과	1. 개발공시지가 이의 신청현황 2.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3. 지적측량 기준점현황 및 개·보수 내역	
보 건 소	1. 농소 매곡진료소 철수에 관한 관계서류 2. 병·의원 적축물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내용 3. 수질검사시 검사건수 및 결과 4. 전염병 예방활동내역 5.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6. 의료기관 관리현황(개소 및 폐업 신고사항등) 7. 약품구매실태 및 관리현황 8. 진료비 조정 및 징수현황 9. 진료현황(월별작성) 10. 순회 진료현황 11. 진료소 진료현황 및 운영실적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보 건 소	12. 보건소 진료이용자 거주별현황	
의회사무과	1. 예산 집행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일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4.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5. '98직원 복무현황 6.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 7.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제3절 '98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1. 시정요구사항 현황

구 분		계	처리내역			비고
			완 결	추 진 중	처리불가	
총 계		25	18	7		
공 통 사 항		2	2			
기획감사실		4	3	1		
문화공보실		2	2			
총무사회국	소 계	8	6	2		
	총 무 과	5	3	2		
	지 방 세 과	1	1			
	시 민 과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	1			
산업건설국	소 계	8	4	4		
	지역경제과	2	2			
	농림수산과	2	1	1		
	건 설 과					
	도시교통과	2	1	1		
	건 축 과	2		2		
	지 적 과					
보 건 소		1	1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공통사항	1. 감사자료 작성 소홀 ○'98년도 북구의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의원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료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근거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불성실한 자료작성과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파악에 혼란을 초래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 앞으로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최종확인과 직무교육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와 처리절차 등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시에는 심도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간부공무원 및 담당자에 이르기 까지 소관사무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회, 직무교육 등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강구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완 결
	2. 예산집행 부적정 ○'98.10.31일 기준 전체 평균예산집행률이 56.2%, 미집행예산이 43.8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공통사항	%됨으로 이를 분석하면 일반업무 추진비, 일반수용비등을 상반기에 60%이상 집행하고 시설비 등 사업예산의 미집행률이 높아 연말에 소나기성 지출예상, 사업의 포기등 집행잔액은 추경시 삭감, 신규사업의 예산편성되어야 하나 이를 방치함은 예산운용에 부적정함으로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계획성 있고 균형있는 집행이 되도록 함과 시설비 등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불편 해소토록 조치.	요인이 없는 한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예산배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월별 균형있는 집행을 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음.	
기획감사실	1. 각종 위원회 운영소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42개로서 난립되고 있으며, 이중 1년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됨으로 위원회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법령상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및 정비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정비결과에 따라 정비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례에 의하여 설	추진중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정리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	치된 위원회도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내지 통폐·합토록하여 앞으로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2. 예비비지출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은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등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98. 6.18 승인 지출한 북구청사 현상공모(안) 작품심사에 11,060천원을 지출한 것은 명백한 예비비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승인에 철저를 기할 것.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예비비의 사용)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엄격히 함은 물론, 향후 관계법규의 연찬으로 지출목적에 부합되도록 예비비 승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결
	3.보건소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북구설치준비단에서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료장비를 구입한 고가 의료장비 12종 중 일반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똑 같은 기종을 30~50% 더 비싸게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 요망.	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법 중 총액입찰로써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의료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북구설치준비단에서 의료장비구입 시장가격을 근거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에 물가가격조사를 다시 의뢰하였으며, 입찰참가업체도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참가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	
	4.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출 부적정 ○ 임의보조금 지급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으나 정액보조단체인 전몰군경농	○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이라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액보조단체에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소유족회의 농소읍 6.25 전몰군경합동위령제 경비 1,000천원과 울산MBC (주) 제1회 해변영화제축제 공동개최에 따른 사업비 5,000천원의 지출은 일회성경비 지원으로, 향후에는 전구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문화행사비로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집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사업의 목적, 타당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시정바람.	임의보조금이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철저한 검토후 지원토록 하겠음.	
문화공보실	1. 일반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에 의거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문화공보실의 '98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상반기에 83%(2,989천	○예산을 집행할 시기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문화공보실의 '98업무추진 3,600천원을 상반기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문화공보실	원) 집행하여 예산집행이 부적정 하였으며, 항목간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기 바람.	83%(2,989천원)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금후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 및 수시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임.	
	2.시책업무특수활동비 지출 부적정 ○문화공보실의 시책추진 특수활동 3,500천원 중 '98상반기에 86%(3,000천원)을 편중 집행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기 바람.	○문화공보실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500천원 중 '98상반기에 86%(3,000천원)을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금후로 예산을 집행할 시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임.	완 결
총 무 과	1.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 운영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총 무 과	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과 초과근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 편중지급 등 예산집행에 부적정함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원인규명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에는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조치.	과 확인 등의 절차를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실제 초과근무한 직원에게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1인 월 73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음.	
	2.주민동향파악 관행시정 ○총무과에서 일선동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주민동향파악 보고에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주민행사, 집회등을 파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건·사고·화재	○긴급한 재난이나 사건·사고 등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치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만을 동향보고토록 조치하였음.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총 무 과	발생 등만 파악하여 신속한 행정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		
	3. 통·반 운영 소홀 ○통·반설치 조례운영에 있어 효문동 등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반이 44%에 달하고, 통도 50%가 조례상과 불일치하여 통·반운영에 소홀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또는 통·반을 조정하여 내실있게 통·반을 운영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8.12.4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방침 시달 ○'98.12.28 관내현황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99.1.15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작업 • 통·반 조정안 -통:167→141(감26) -반:1,136→1,122 (감14) ○'99.2.1 확정 공고 시행	추진중
	4.'98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98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기준의 주 활동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전역으로 다년간 국민운동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단체운영	○'98 지방국민운동사업 보조금 지원단체에 사업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자체충당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무실 소재지와 대표자가 불분명한데도 울산참여자치연대외 2개 단체에 10,000천원을 지원한 것은 지원기준에 부적정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 및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	부를 검토한 후 지원토록 하겠음.	
	5.수의계약방법 개선시정요구 ○'98년도 북구청에서 수의계약한 5,000천원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의 수의계약에 있어 전체 53건중 39건이 예정가의 낙찰률이 95%이상되어 특정업체의 예정가 누출의 의혹과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므로 공개입찰을 추진하여 입찰수수료를 증대하고	○비경쟁방식인 수의계약의 본뜻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며 ○이 방법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	추진중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수의계약시는 2개업체만 통지하지 말고 2개 이상 업체를 응찰토록 하여 최저견적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계약업무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개선.	으로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우리구에서는 이미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현재와 같은 계약방법으로 시행하고, 투명성확보 및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음.	
지방세과	1.체납지방세 관리 및 징수철저 ○고액체납자의 신속한 채권 미확보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체납세를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한 체납자 재산추적시 정확한 근거없이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현 지방세법상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고 체납이 발생할 시 채권확보는 고지후 납부기간 15일, 독촉(최고)기간이 30일로 최소 45일이 경과되어야만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고액납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지방세과	○종토세, 재산세 5년간 계속 체납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부과와 결손의 악순환이 되고 있어 체납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체납발생 즉시 재산압류, 추적조사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토록 할 것.	세자에 대하여는 납기내 미납 발생시 사전 재산조회 등 자료준비로 법적요건 성립 즉시 압류하고, 선순위 채권확보로 체납세 발생을 억제하겠음. ○10만원이상 체납자 4,452명에 대한 일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종토세, 재산세 등 소재가 불분명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거소 및 재산을 추적, 발견되는 재산을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1.사회복지분야 국·시·구비지원단체 사후관리 철저 ○'9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중 태연학원, 메아리복지원에 1,290,489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77,841천원이 지원되었으나 구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으로는 분기별 보조금 신청시 정산서류확인과 분기별 1회 점검하는 수준임으로 사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타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메아리, 태연재활원 점검실시('98.12, '99.1) • 메아리복지원 - '99예산미편성(편성제출조치) • 태연재활원 - '99예산미편성(편성제출조치) - 직원여비지급시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향후 관리운영비에서 여비를 지출치 못하도록 조치) - 법인재무회계규칙 무시 임의적인 목설정(규칙준수 예산편성조치) - 촉탁의사근무일지 미비치(비치 조치) • 향후 계획 - 국·시·구비 보조단체 합동감사를 '99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예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산의 목적외 사용을 사전방지하고자 함.	
환경미화과	1.환경미화원 지도 및 감독철저 ○북구 관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면서 식당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업소로부터 월 3만원씩 받고 수거하는 사례가 있어 구수입이 탈루되고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쓰레기 종량제실시는 이후 생활폐기물은 가정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100㎥이상) 폐기물은 사업장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가처리 또는 축산업자의 사료화, 퇴비화를 위하여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있음. ○관내 130개소 감량의무 사업장인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집·운반업체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직접수거하고 있음. ○북구 관내 폐기물수거 미화원은 직영지역(송정, 효문, 양정, 염포동) 13명과 대행지역(농소 1·2·3, 강동동) 4명 등 17명이 근무하고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환경미화과		있으며 미규격봉투 사용업소에 대하여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적발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적 점검하여 적발될 시 엄중 조치하겠으며 수시 교육 및 복무점검('98. 12월, '99.1월)을 실시하여 업소와 결탁 및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겠음.	
지역경제과	1.주택밀집지역 고압선 자료부실 ○주거밀집지역 고압선 통과로 전자파발생 및 단선 시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이 있어 북구관내 주거 밀집지역에 고압선 통과현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양정동 490-7, 양정동 501-2번지 등 154KV의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없이 해당사항 없다고 의회에	○북구관내 송전철탑 설치현황 파악(한국전력 부산전력처협조) ○주거밀집지역 고압선 통과현황 파악 ○북구관내 설치 송전철탑수 : 107개 ○주거밀집지역 고압선 통과현황 - 양정동(철탑 3개) - 염포동(철탑 2개) ○한국전력에 따르면 기설치된 송전철탑의 이설계획은 없으나 추후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지역경제과	보고하는 것은 감사자료 전체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북구 관내 고압선 통과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주거 밀집지역 고압선에 대한 이설계획을 한전과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설시에는 주택지 인접 철탑을 우선으로 이설토록 협의.	
	2.도시가스 공사후 배관 도면 관리철저 ○도시가스관 배관도면은 지역경제과와 각 아파트 관리실에 비치하여 상수도관 매설공사 등 굴착시에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나 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도면과 실체 시행구간이 변경되어도 정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함으로 도시가스관 매설도면을 재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사발주 시 현장상황과 일치되는 도면 제출 및 현재까지의 공사도면 전면 재확인 후 현장과 불일치되는 도면은 정리하도록 경동도시가스측과 협의 ○추후 공사신고승인 시 시공사와 가스안전공사 현장감리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현장상황과 도면간 상이점 발견시 시정후 시공토록 조치.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농림수산과	1.조림사업지 관리철저 ○'98년도 조림지 중 고사지역 보식 ○조림지 관리 철저	○'98조림지 보식:'99.2~3월(시기사업임) ○조림지 사후관리 철저 • 조림지 점검:2회 (반도복목 바로세우기) • 각종 육림사업 적기 실행:'99.7~8월 중 풀베기 작업 실시	추진중
	2.효문사거리 농경지 오염대책 강구 ○효문사거리의 오·폐수관로 누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으로 추곡수매시에 벼에서 이상한 냄새 발생으로 등외 판정. ○수확벼가 식용 가능한지 수거하여 국립식품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식용여부 판단 등 대책 강구.	○상기 지역은 오·폐수관로 파손으로 오·폐수 유입에 의하여 오염된 상태임. ○추곡수매시 벼에서 이상한 냄새발생에 의한 등외 판정은 아니며 태풍피해로 인해 수발아가 되어 등외 판정. ○이미 수확한 벼는 정부수매로 태화농협창고에 입고되고 일부 잔량은 식용으로 소비.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도시교통과	1.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소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현재까지 3,283건 133,910천원을 부과, 1,675건 65,380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9%로 저조함으로 징수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없어 체납자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 선량한 납부자만 피해를 보고 있음. 앞으로는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미납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운행중지 등 족쇄조치와 자동차 정기검사시 납부확인제도 등 법률개정건의등 조례안 제정으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바람.	○부 과 : 3,283건 133,910천원 ○징 수 : 1,675건 65,380천원 ○체납액 : 1,068건 68,530천원 ○조치 •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 543건 27,720천원 징수 • 독촉장 발부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장 발부 - 1,065건 40,810천원 • 압류예고장 발부후 징수 - 213건, 8,520천원 징수 • 체납자 852건 32,290천원에 대하여 압류조치(자동차 등록원부)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도시교통과	2. 한국까르푸(주)울산점 개점에 따른 교통대란 방안강구 ○'98.12.2 북구청에서 가사용승인한 한국까르푸(주) 울산점은 교통영향평가사 기초자료 부실로 인하여 개점시에는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주민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서동-농소간 4차선 도로의 조기개통과 상안교에서 신답교까지 도로 800m 부분개통 등 교통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교통량 조사 실시:3회 ○아진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2회 ○불법주정차 차량지도 단속 ○서동-호계간 도로 조기개설 촉구(시) ○추가주차장 확보 추구	추진중
건 축 과	1. 재해위험시설 대책 미흡 ○염포동 143번지 미도아파트 C동 16세대는 '78년도에 건립되어 '93년부터 붕괴우려가 있어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기관 안전점검 9회와 전문 안전	○재해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미도아파트 C동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주민의 단합된 재건축 의지 부족으로 문제가 해결되	추진중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건 축 과	진단기관에서 4회에 걸쳐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여 현재까지 방치함으로써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미흡함으로 조속한 시일내 주민이주 및 재건축 등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 못하였으나 구청장의 행정자치부장관 면담시 매입철거비용 지원 요청하는 등 해결책 모색 중에 있음.	
	2.도시계획선내 건축행위 제한 철저 ○소방도로개설 예정부지인 염포동 76-2, 양정동 464-1, 484-55번지에 구청에서 허가 준공처리한 건축물이 현지 확인없이 서류상 검토로 준공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상에 건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법건축물의 단속 소홀로 인하여 불법건축물이 도시계획선내 건축되어 있어 도시계획선	○당시 공사감리자에게 경위서(1월 20일한) 제출 요구 하였으며 당시 내용을 확인 받아 감리자 행정처분예정. ○도시계획선 침범건물에 대하여 선 보상 철거후 감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방안 검토중.	추진중

부서명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비 고
	부지의 관리가 소홀하여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시민의 혈세로 이를 보상해야되므로 준공 당시 담당공무원,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법률적 구상권 확보를 추진하고 추후 현지확인 행정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람.		
보 건 소	1.약품 구매방법 개선 ○약품구매시 부산, 경남지역 약품도매상의 한정적 계약체계의 잘못으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각종 약품구매(입찰, 수의)시 대한의약품 도매협회(서울)에 의뢰하여 전국에 많은 약품 도매업체가 응찰 및 견적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음.	완 결

제4절 '98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1. 건의 사항 현황

구 분		계	처리내역			비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35	24	8	3	
기획감사실		3	1		2	
문화공보실		3	3			
총무사회국	소 계	18	13	5		
	총 무 과	3	1	2		
	지방세과	2	1	1		
	시 민 과	3	3			
	사회복지과	4	3	1		
	환경위생과	4	4			
	환경미화과	2	1	1		
산업건설국	소 계	9	6	2	1	
	지역경제과	2	1	1		
	농림수산과	1	1			
	건 설 과	1	1			
	도시교통과	2	1	1		
	건 축 과	3	2		1	
	지 적 과					
보 건 소		2	1	1		

2.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1.소송업무제도 개선요망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 본안심리도 들어가지 않고 1심에서 승소할 경우와 기각판결로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요망.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차원에서 당해 심급 승소시마다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1심기각 판결 승소 또한 본안사건에 의한 심급별 승소한 경우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건의내용대로 1심 승소의 경우와 기각판결 승소할 경우 사례금 지급 개선여부는 타 구·군 사건위임계약에 의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문제도 있는 만큼 현 실정으로는 개선키 어려운 사정에 있음.	불 가
	2.무선전화기 개인지급방법 개선요망 ○북구청 무선전화기가 의회를 포함해서 24대이며, 월사용료는 50,000원 정도되고 1년 사용	○실·과에서 기 사용중인 무선전화는 통신계에서 일괄 수거후 통합관리(본청 18대중 3대 반납 조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할 때 14,4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최근 무선전화기의 대중화로 개인마다 휴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선전화기를 개인에게 지급할 시 사적 용도로 이용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산불진화 등 꼭 필요시 지급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치) 하고 있으며, ○요금은 추경시 삭감 후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여 ○업무상 필요한 실·과는 기획감사실 사용대장에 등재후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업무상 계속 휴대하여야 할 실·과는 제외(총무과, 농림수산과)하였음.	
	3.구청장 공약사업 재검토 요망 ○효문국가공단을 자동차 부품전문단지로 육성한다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효문국가공단은 62년도에 지정되어 지가상승으로 현재 기업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가에서 공단을 지정해 놓았으나 아직도 전혀 지원도	○효문공단은 현재 입주업체 200개사가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 주종을 이루어 자동차부품단지화로 점차 육성되고 있으며 공장건축 가능 잔여부지는 12,000평정도로 경기 활성화가 되면 잔여부지가 소진될 전망임. ○현재 추진중인 달천농공단지는 260,204㎡	불 가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획감사실	없으며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므로 그동안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 달천농공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도 입주가 불가피한 상태인데 이곳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한다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바람.	(78,712평)으로 입주희망업체인 59개 업체는 기 가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10여개 업체가 입주 요청 중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달천농공단지에 육성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효문공단의 개발 잔여지 376천㎡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산업관리공단과 시에서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인하여 지정한 공단을 일부 주민불편으로 인한 국가사업공단지역 일부분 제척한다는 것은 현재는 불가하나 공단구역의 합리적 재조정등을 장기적으로 건의할 생각임.	
문화공보실	1.양정체육공원 화장실설치에 따른 진상파악 요구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문화공보실	○양정동 체육공원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의회에서 예산 9,500천원을 승인하였는데, 솔라시스템을 하지 않고 발효식 일반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업체에서는 미생물 포함해서 8,600천원에 솔라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중고품의 발효식 화장실을 9,500천원으로 설치되었는데 경위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양정생활체육공원내 설치된 자연발효 화장실은 중고품의 발효식 화장실을 9,500천원에 구입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자연발효 화장실(자동교반 및 투입시스템식 DW-2D : 솔라시스템 포함)을 8,300,600원에 신제품으로 구입설치하였음.	완 결
	2.각종 체육대회 통합개최 요구 ○'98년도에는 구청장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 종목별로 개최일정이 달라 동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앞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북구 주민체육대회로 하여 구민화합을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사	○'99년도 제2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실시종목별 통합개최토록 하겠음.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 지급방법 개선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행사경비가 동별로 20만원 지원되어 유니폼을 구입하여 선수들에게 개인지급 되었으나, 앞으로는 체육행사가 끝나면 이를 회수하여 동에서 보관하였다가 차후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년도 제2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동별 지원금에 대하여 유니폼구입 사용할 때 행사 후 회수하여 차후 행사시 사용토록 하겠음.	완 결
총 무 과	1.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법개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예산 중 도서구입비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부수적인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운영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도서구입시에는 정가대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할인하여	○'98.12.31일자로 "울산광역시북구이동도서관으로의 명칭변경", "직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등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관리비 예산을 대폭 줄이고 위탁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총 무 과	구입하는 도서구입체계를 개선하기 바라며, 이동도서관의 순회코스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도서구입비의 비중을 높였음. ○또한 도서구입시에는 반드시 할인하여 구입하도록 위탁단체인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북구지부에 통보하였으며, ○최대한의 북구주민이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버스순회지역을 확대 재조정 조치하겠음.	
	2.수의계약시 북구지역업체 우선계약 방안 강구 ○북구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북구지역 소재 업체가 아닌 타구 소재 업체로 계약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시 북구지역소재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북구관내업체를 참여토록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의계약에 맞는 건설, 제조, 설비 등의 면허(등록)업종이 적으며 일부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관내업체를 조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추진중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총 무 과	3.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 검토 ○토요일 전일근무 인원에 대한 행정효과가 극히 저조함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 이용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여가선용 기회부여, 차원에서 전실·과·소에서 실시하여 오던 것을 '98. 1월부터 필수 민원부서만 축소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남구, 울주군의 경우 잠정 유보상태에 있음. ○운영의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향후 울산광역시 및 타 구와의 비교검토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추진중
지방세과	1.체납지방세 납부확인시 공무원 의식개선 요구 ○지방세 납부기한 경과시 늦게 영수필통지서가 도	○'98. 12. 22일부터 동 사무소 지방세 LAN망이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지방세과	착되는 관계로 납세자에게 납세확인을 위한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오라고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 요구함.	설치되어 지방세 납부 확인을 전산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체납부 관리를 철저히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예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소득할 주민세 동시부과 검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국세청에서 소득세, 양도세 부과시 주민세도 동시 부과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입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건의 또는 납세자를 위한 세수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강구바람.	○국회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시 민 과	1.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강화 ○최근 언론상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복무이탈, 강·절도,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복무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각 부서에 배치된 공익요원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체감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람.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교육 실시 • 일시:'99.1.13(수) 10:00~11:00 • 장소:8층 대회의실 • 대상:70명 • 내용 -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자세 - 지각, 조퇴 및 결근, 출·퇴근 - 복무 분야별 의무 등 - 친절 신속한 봉사자세 확립 - 친절한 전화응대 요령	완 결
	2. 민방위 교육 실내화 ○민방위 교육시간 운영에 있어 선례답습적 주입식 교육과 VTR상영 등으로 시간보내기 식으로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으로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으며 형식적 교육으로 현실성이 없어 IMF시대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	○IMF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위촉에 있어서는 사회각층의 전문분야 실무자를 실기강사로 위촉하고 소양강사 부문에서는 위촉강사의 구·군간 교체운영으로 연도별 교육의 중복(위촉기한이 2년이므로 2년째인 경우 교육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시 민 과	도록 유능한 강사초빙 및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방위교육 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내용 유사함)을 배제하고, ※소양강사위촉권자:시장 ※실기강사위촉권자:구청장 ○또한 VTR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재구입 및 대원의 복장관리, 시간별 출석확인 등으로 교육분위기 조성에 유의할 계획임. • 전문분야종사자 실기강사로 위촉 - 9명 • 시 주관하에 소양강사를 구·군간 교체 운영키로 하였으며 • 경제, 안보, 자녀교육 등 교육용 테이프 6종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시 복장, 출석 등의 철저한 확인으로 교육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3.동직원 친절교육 실시 ○점심시간에 어느 동이든 방문해 보면 10분전에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민원인이	○동직원 집합교육 및 자체 친절교육 실시 • 집합교육실시 -일시:'99.1.22(금)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시 민 과	방문하여도 민원처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민원담당 교대근무와 각 동에 친절도를 점검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16:00 - 장소:8층 대회의실 - 대상:9명(구1, 동8) - 내용 ┌민원응대의 기본자세 ├전화민원처리 시 지켜야할 자세 ├사무실에서의 민원응대 예절 └주민을 찾아가서 대하는 민원응대 자세 • 동직원 자체 친절교육 실시 - 기간:'99.1.14~1.18	
사회복지과	1.결식학생 파악 및 대책 철저 ○북구관내 결식아동으로 초등학생이 132명이고 중·고교생이 35명으로 구청에서 파악을 하였는데 실제 결식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구청에서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에 결식학생들에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내 초등학교 대상자파악:185명('98.11.3) ○결식아동 생활실태조사 - 기간 : '98.11.18 ~11.30 - 대상 : 185명 ○생활실태조사 결과 - 저소득보호, 실직세대 : 108세대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생활상태양호:81세대 ○저소득아동 지원협조 의뢰 - 대상:북구요식업조합 - 일시:'98.12.30 ○저소득세대중 결손가정으로 도시락 준비가 힘든 세대는 다소 있으나 교육청에서 학기내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학기간내에는 결식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 ○향후 공휴일 및 방학기간동안은 관내 요식업조합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보호세대 중 급식희망 아동을 파악하여 관내 식당과 결연토록 하고자 함.	
	2.고아, 행려자 대책 ○IMF한파로 향후에 북구지역에도 부모가 실직하여 가정파탄으로 고아와 행려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노숙자, 고아, 행려자 대책 • 순찰활동 실시 - 기간 : '97.1.27 ~계속 • 발생시 보호시설 안내 • 의류, 식사비, 목욕비 지원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3.청소년 어울마당 내실화 방안검토 ○울산은 타 시도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행정차원에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야 되나, 구청에서 주관한 청소년어울마당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몇 명 지원하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 형식에 치우쳐 있음. ○앞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청소년의 의식에 맞게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청소년이 다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시 해양레져, 역사탐방, 가족노래자랑, 장기자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완 결
	4.사회복지행정의 현장행정 강화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행정부서이므로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기초 통계자료 등 탁상행정으로는 행정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기초자료조사로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직원 관내출장시 불우세대를 파악하여 적극 지원하고 각동별 통장회의시 보다 많은 불우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	추진중
환경위생과	1.자연보호북구협의회 활성화 ○자연보호북구협의회는 새마을단체 등에 비하여 지원이 적어 사기가 저하되었으므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자연보호북구협의회는 1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사업목적이 구정에 기여할 시 지원가능하며 차후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환경위생과	2.학교급식소 위생점검 강화 ○학교급식소는 교육청 관할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학교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을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연 2회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환위65453-13('99.1.5)호에 의거 학교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위생점검에 적극 협조코자 합동점검 협의.	완 결
	3.합병정화조 홍보강화 ○옛날 정화조를 사용하는 유흥업소에서 허가폐지를 하고 다시 그 업을 하려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음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바람.	○합병정화조는 '97.3.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98.7.1부터 시행되었으며 ○설치대상은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식품접객업, 숙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환경위생과		박업, 목욕탕업을 위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며, ○'97.7.1 이전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정화조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동일 건물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을 폐업후 다시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합병정화조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및 구정홍보지를 이용 홍보하고, 전 동장에게 홍보협조 요청할 것임.	
	4.동천강 정화시설 설치 ○동천강 간이 정화시설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지식과 연구로 효과성을 부각하여 환경적 차	○추경예산 편성시 10,000천원을 요구하여 반영시 간이 정화시설 설치할 계획임.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환경위생과	원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1.쓰레기 종량제 봉투 5ℓ 제작 건의 ○북구에서는 가정용으로 10ℓ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주민으로부터 음식물처리를 위하여 5ℓ봉투가 있어야 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하지 않고 제때에 버릴 수 있다고 건의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5ℓ봉투를 제작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광역시 승격이전 가정용 5ℓ를 사용하여 왔으나 수요량이 많지 않아 광역시 승격시 제정된 구·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시 5ℓ 봉투를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았음. ○소수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주민들이 5ℓ 봉투를 희망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작성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개정이 되면 5ℓ 종량제 봉투를 상반기중 제작 보급할 계획임.	추진중
	2.재활용분리수거 요령 교육 강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요령을 잘 몰라 스티로폴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34,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99년도에는 동별, 아파트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환경미화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환경연합단체의 분리수거 요령과 달라 주민들의 혼란만 초래되므로 재활용분리수거 요령 교육을 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단지별로 순회하며 재활용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1회이상 600명의 주민들에게 재활용 선별장 및 현장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필요성을 중점 인식시키도록 하겠음.	
지역경제과	1.가스체적거래제 시행 연기 검토 ○가스체적거래제는 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12월말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까지 하지 않을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됨으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당위성이 적어 부작용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 또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지경57253-1300('98. 12.7)호에 의거 울산광역시에 LPG 체적거래시설 기한 연기 건의 ○LPG체적거래시설설치 연기 건의에 대한 울산광역시장의 회신(경정 57253-982) 및 산업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의하면 현행 체적거래제 시행시기를 기존건물에 한하여 3년간 연기를 검토중에 있음.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지역경제과	2.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대책 강구 ○달천농공단지의 희망업체들이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이라도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 투자된 자금을 이자없이 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하는 업체가 많아 상당수 탈락업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제공되는 융자금의 조건, 이율, 금액, 상환조건 등 홍보 ○중소기업청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개정 검토중임 ○입주업체에게 각종 융자금제도 홍보	추진중
농림수산과	1.소규모 어항시설 사후관리철저 ○강동 간이 조선수리시설물 전체가 부실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므로, 각종 국·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사후 관리 철저.	○향후 각종 국·시·구비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점검 실시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 결
건 설 과	1.민간기업 도로굴착공사 후 사후확인 철저 ○경동도시가스에서 중산	○본 지역의 도로는 도시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건 설 과	동에 도시가스관 매설 작업 후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면이 고르지 않아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차량 통행에 불편함으로 민간기업에서 도로굴착 공사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가스관을 매설하기 이전부터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써 주변 지역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수가 원활하였으나, 인근 주택의 신축 등으로 주변지역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로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 한라동아아파트 진입로 등을 감안할 시 도로를 더 높이는 것은 불가한 실정으로써 우수시 상습적으로 도로에 물이 고이는 지역인 바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긴급도로복구비로 도로노면수 배수처리를 위한 우수맨홀 및 관로설치공사를 '99년 우수기 전 시행코자 함.	
도시교통과	1.시내버스 노선 운행사항 확인 ○최근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으로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많은 불	○자체지도단속반 편성운영 ○기간:'98.12.12~12.31 (20일간)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도시교통과	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북구에 버스민원이 많은 곳을 지정하여 시내버스가 몇분에 도착, 하루에 몇회 운행되는지 수시로 조사하여 버스결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합동지도단속(시·구) • 시내차량운행 : '98.12.7~12.13 • 밤샘주차단속 : '98.12.14~12.15 • 택시업체점검 : '98.12.18~12.30 ○구 자체 단속 :'98.12.16~12.31 ○실적:시정조치-10건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 사전 해소를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자체 조사계획 추진	
	2.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 ○진장, 효문동 통폐합이후 진장동 주민이 효문동사무소에 갈려면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진장, 명촌에서 효문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 바람.	○'98.12.21 시내버스 노선증설토록 건의 • 강변로↔중앙시장↔명촌↔효문↔연암 • 기존 1대에서 1대 증설로 2대 운영	추진중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건 축 과	1.공동주택 물탱크 개선 방안 강구 ○공동주택의 지하물탱크에 방수처리를 위하여 방수 페인트를 도색함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석회질 같은 것이 벗겨져 오염이 많아 식수로 사용키에는 위생상 문제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북구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범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작한 것같이 스텐레스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시설 대부분은 방수페인트로 방수처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는 스텐레스 설치방안을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임.	완 결
	2.농·어촌 폐가 철거방안 강구 ○북구관내 농어촌에 폐가가 많아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상 보기가 흉함으로 이를 전수 조사하여 구청에서 장비 등을 지원하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1.30일까지 우리구 관내 농·어촌 폐가 전수조사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우리구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철거할 계획임.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건 축 과	3.상수도 시설분담금 인하요구 ○농소, 강동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수도요금은 조례상 5년간 농촌지역으로 혜택을 주면서 수도를 넣는 시설분담금은 13㎜관을 기준할 시 읍면에는 30,000원 부과하고 동지역은 183,000원 부과함으로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시에 건의하여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99.1.7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확장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단위 요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99.1.25)	불 가
보 건 소	1.예방접종 관리카드 관리철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예방접종 중 3차(P.D.T)까지 접종하는 경우 부모들의 예방접종 수첩을 분실할 시 보건소에서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접종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기 바람.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 독려 엽서발송(월 1회)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접종 실시로 영유아 건강관리 철저 -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를 위해 등록	완 결

부서명	건의내용	처리내용	비 고
보 건 소		관리상에 접종일자, 접종백신병, 제조번호, 접종부위를 명확하게 기록 - 접종 누락자:전화연락 등으로 100% 접종토록 유도 - 전출자에 대하여는 등록카드를 관할보건소로 송부하여 지속적인 접종효과의 극대화 도모 ○예방접종수첩을 분실하였거나 미소지한 경우라도 접종상태 확인을 위한 대장열람이 항상 가능함.	
보 건 소	2.동 방역요원 안전 교육 강화 ○하절기방역에 있어 일선동 방역요원과 자율방역요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동마다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역기 작동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현황 • 하절기 방역요원 교육시 안전교육 병행 실시('98.6.8 1회 실시) ○개선사항 • 방역기간중(7월~9월) 매월 1회실시 및 수시교육 실시예정	추진중

제5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개요

가.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99.11.26~'99.12.2(7일간)

다. 감사주체 : 본회의

- ○ 의　　장 : 윤두환
- ○ 부 의 장 : 박춘환
- ○ 의　　원 : 전의원
- ○ 전문위원 : 성낙화
- ○ 사무직원 : 서준영

2.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 고
		직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 청 청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직	현임자	전임자	
	○기획공보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총무사회국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총무과	총무과장	강석희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임정순	신원수(농소 3동장)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실근	임정순(지방세과장)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김찬수(농소 1동장)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신동욱(염포동장)	
	•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김종열(기획공보실장)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김태오(자치행정과장)	
	• 농림수산과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영태		
	•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 건 축 과	건축과장	김환조		
	• 보 건 소	보건소장	박혜경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동장출석 요구 공무원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 (부서)	출석요구공무원		비 고
		직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 동	농소 1동장	김 찬 수	
		농소 2동장	이 상 찬	
		농소 3동장	신 원 수	
		강동동장	박 상 우	
		효문동장	이 차 호	
		송정동장	이 채 석	
		양정동장	정 기 원	
		염포동장	신 동 욱	

3. 감사자료 제출요구현황

○ 제출요구(제28회임시회, '99.11.11)

계	공통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28(건)	14	17	133	47	14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4. 감사실시방법 및 일정

가.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부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고
'99.11.26 (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99.11.27 (토)	10:00	〃	○총무사회국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 사회복지과	
'99.11.28 (일)	10:00	현장	○현장확인 • 전부서	
'99.11.29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무사회국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99.11.30 (화)	10:00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99.12.1 (수)	10:00	〃	○산업건설국 • 건 설 과 • 도시교통과	
'99.12.2 (목)	10:00	〃	○보 건 소 ○산업건설국 • 건 축 과 ○의회사무과	

나. 감사 진행순서

○감사선언(의장)

○의장인사

○증인선서(집행기관)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다. 증인 선서방식

○선서장소 : 소회의실

○선서방법 : 실·국·소단위 실시(현임자, 전임자)

○선 서 문 : 별첨

- 서명 날인후 제출

라. 기타 행정사항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99.11.26~'99.12.2(7일간)

- 출석장소 : 소회의실

- 당일 감사대상 부서외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감사지적사항 당일 작성 제출

○현지확인 활동

- 현장확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반준비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 감사기간 중 12인승 집행부 차량지원 협조(항상 대기)

제6절 '99행정사무감사결과

1. 감사실시개요

가.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99.11.26~'99.12.2(7일간)

다.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 건 소 ○동 ○의회사무과	

2.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의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두환	박춘환	김수헌 강혁진 박광식 류재건 진한걸 윤종오	성낙화	서준영

나. 감사일시 및 장소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99.11.26 (금)	14:00	북구의회 소회의실	○기획공보실 ○총무사회국 • 지방세과	
'99.11.27 (토)	10:00	〃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99.11.28 (일)	10:00	현 장	○현장확인 • 전부서	
'99.11.29 (월)	09:00	전 동사무소	○전 동	
	14: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무사회국 • 민원지적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99.11.30 (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99.12.1 (수)	10:00	〃	○산업건설국 • 건 설 과 • 도시교통과 ○총무사회국 • 자치행정과	
'99.12.2 (목)	10:00	〃	○보 건 소 ○산업건설국 • 건 축 과 ○의회사무과	

다. 감사방법

○증인선서(집행기관)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보고 : 해당 실·과·소장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또는 현지확인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인 원	참고인출석 인 원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30	20	1	230
공통사항	14			14
기획공보실	18	1		18
총무사회국	133	11		133
산업건설국	47	6	1	47
보 건 소	14	1		14
의회사무과	4	1		4

마. 현지확인감사

일 시	현지 확인 감사 내용	비 고
'99.12.26 (1일간)	① 보건소 현 실태 확인 - 각종장비 관리 상태 - 약품관리 상태 ② 관내주유소 연료기 및 미터기(지역경제과) - 강동, 농소, 화봉지역	

바.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28	29
공 통 사 항	2	2	
기 획 공 보 실	5	4	1
총 무 사 회 국	24	16	8
산 업 건 설 국	22	3	19
보 건 소	4	3	1

3. 주요감사실시 내용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작성)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현황 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5.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 6.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203-0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203-03) 10. 관외출장현황 11. 각종기금 출연금 관리 및 운영현황 1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 내역('97년 7월~'99년 현재) 13. 출납장부와 현재 잔액증명서 사본('99년3월 31일, 6월30일, 9월30일 매월 20일 기준) 14. 당초예산 편성 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	
기획공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3. 풀(pool)보조금 집행내역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기획공보실	4.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1,000만원 이상) 5. 예비비 지출내역 6. 21C 북구발전마스터플랜용역 추진현황 7. '99행정법규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8. '98예산 '99년도 이월사업(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9.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서류제출) 10. 단위사업별 심사분석 상황(5,000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진도 • 주민민원 발생사례 • 투자사업의 수정내역 등 11. 비정규직(사무보조원)100%감축에 따른 대책 12. '99예산절감 추진상황 13.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 반영현황 14.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민사)수행사항 15.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감사기간,지적사항,조치사항,징계처분사항) ※수범사례 및 모범공무원 발굴 16.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결과 및 조치사항 17. 대형 공사장 기동 감찰반 운영사항 18. 공무원 직무관련 창안 제안실적('97~'99)	
총무사회국 총 무 과	1. 공무원 정·현원(부서별) 현황('98, '99) 2.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총 무 과	(공사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200만원 이상) ※공개입찰, 수의계약, 공사, 물품, 용역 구분작성 3.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 4. 공무원자녀 학자금대부 및 관리현황 5.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사본 6. 국·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등 관리현황 7. 공유재산 건물점유 실태현황 8. '98.10.1이후 북구공무원 인사 발령현황 (승진, 전보, 전입, 전출, 퇴직현황 등) 9. '99년 북구청직원 복무현황 (연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조퇴, 외출, 휴직 등) 10.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11. 특근급식비 지출현황 12. 년도별 PC, 프린트기 및 소모품 유지보수 구입현황('97~'99) 13. 북구청사, 보건소 개청 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현황 14. 차량정비 정비업소별 집행내역 15. 장애인 고용현황(공무원 중) 16. 청사 부지매입 및 업무추진현황(평당 가격 포함)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총 무 과	〈관련서류제출〉 17.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지급현황 18. 불용물품(자재)현황 및 매각현황 19. 공공건축물 및 화재보험가입 내역 등 관리현황 20. 비품, 차량 등 안전보안대장 〈서류제출〉 21. 기술직 직원현황(부서, 직급, 담당업무 등) 22. 행정전산화 계획 및 추진실적 23. 전산기기 보급실적 및 운영상황 24. 개발 프로그램 보급 실적 25.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현황 26. 전자 신문고 민원처리 실적 (유형별,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사항 등) 27. 컴퓨터 및 통신장비 2000문제(Y2K) 대책현황 28. 각종 통계조사 결과 및 활용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사회지표조사 - 구분작성 29. 문서고 관리실태 및 문서 보관현황 30. 직장예비군 보호장비 확보현황 31.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현황('98, '99년분) 32.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사용일지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년월일, 상태 등) 33. 복사기 수리비 지출내역(20만원 이상) (실·과별, 대수, 수리내역, 수리비, 업체명 등)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총 무 과	34. 각종 공사기간 연기 처리현황 35. 각종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36. 하도급 계약(변경)현황 37. 공무원 파견 근무현황 38. 간부공무원 출장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일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여비지출액등) 39. 업무연락 현황(구→동) 〈자료제출〉 40. '97년이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41. '97년이후 승진자현황 (직, 성명, 근무년수, 승진전 근무지 등)	
자치행정과	1. 체육지원관련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내역 2.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실태현황 3. 동네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현황 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현황 5. 구청장 초도순시시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6. 민방위 장비구입 및 관리현황 7. 북구청 도서구입비 내역(북구이동도서관 포함) 및 관리현황 8. 양정체육공원 경남도에서 울산시로 소유권이전 추진현황 9. 노래방 및 청소년다중 이용시설점검 내역과 단속실적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자치행정과	10. 각동 통장 재직기간 현황 11. 가족생활 체육캠프 실시현황 12.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13.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97. 7~'99년 현재) 및 지적사항 14. 주민만남의 날 운영실적 • 시정소식지 분담금 지출, 배부내역 및 건의사항 처리 15. 학교폭력근절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16.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17. 대학생 아르바이트 알선 실적 (학교명, 성명, 주소, 성별, 알선처, 기간, 소요예산 등) 18. 각종단체 회원 겸직현황 (통정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자연보호, 여성자원 봉사 등) 19. 동별 적십자 회비 수납현황(목표액 및 수납방법) 20. 제2건국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과제별, 추진내용, 추진결과, 효과 등) 21. 동별 우수(특수)시책발굴 추진상황 22. 민원 택배제 운영실적 23. '99민간인(단체)포상자 내역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자치행정과	24. 민방위 교육강사 명단 및 수당 지급현황 25. 민방위 시설물 현황 및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26. 구 주관 체육, 문화행사 개최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부서 등) 27.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현황 28.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29. 동별 통·반 현황	
지방세과	1.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재산압류, 채권확보내역(건당 200만원이상) 2. 사치성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 3. 수입증지 제작 및 판매현황 4. '99자금수급계획 및 배정내역 5. 체납자 거소불명 현황내역(10만원이상) 6.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및 재부과한 건수 내용(건수, 금액, 사유 등)(10만원이상) 7. 지방세 분납 사유별 현황 및 징수내역 8.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및 현황 9.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10. 조세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11.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100만원) 12.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 의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지방세과	무자별 내역 13. 취득세 대상 및 부과현황(세액 100만원이상) 〈서류제출〉 14.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동에 지시한 사항 15.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1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내역(시효소멸, 불납결손액 10만원이상) 17. 과년도 체납세 세목별 현황과 징수실적(시세, 구세구분) 1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19. 체납자 봉급압류 실적 2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실적 21.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실적	
민원지적과	1. '99민원처리현황(월별) 2. 팩스민원발급 실적 및 신청후 미수령현황 3.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개·보수 내역 4. 병역의무 기피자 내역 및 조치사항 5.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적 6.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7.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실적 〈도면제출〉 8. 지적측량 대행법인 현황, 지도단속 실적 9. 개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조치사항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민원지적과	1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11. 구청내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현황(실·과별 취합)	
사회복지과	1. 임시적 생계곤란자 부식비 및 양곡 지급내역 2.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3.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현황 4.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관리현황 5. 아동, 복지지원 사업현황 (결식학생현황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실적현황) 6. 장애인 세대 및 차량 등록현황 7. 의료대불금 내역 및 결손 처분현황 8. 생활보호자 동별현황 및 차량 소유현황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국·시·구비) 및 집행내역 10. 경노당지원 및 운영현황 (지원금 현황 및 운영실적) 11. 노인건강진단실적-65세이상('98, '99) 12. 행려사망자, 부랑인 처리실적(예산지원사항)	
환경위생과	1. 각마을 공공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및 관계서류 사본(우물, 약수터) 2.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불법영업('98, '99) 단속실적 및 불법퇴폐업소 단속실적, 지적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환경위생과	사항처리 관계서류 〈점검일지제출〉 (불법퇴폐업소 단속실적, 지도내역)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사항 〈서류제출〉 4.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사항 및 현황 5.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6. 유통식품 수거 및 처리내역 7. 오염물질 검사의뢰 단속건수 및 결과 조치내역 8.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체육공원,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9. 이·미용업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내역 10. 공동주택 및 중·대형공장 및 상가(연면적 3,300㎡이상 건물) 정화조 '99년도 오물수거 용량 및 관리현황 11. 해양오염물질, 유출현황 및 행정처분사항 1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환경미화과	1. 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 관련현황 - 위탁관리비용 - 위탁업체 미화원현황, 봉급지급내역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 포상금 지급 실적현황 4. 환경미화원 정원(현원) 및 업무 분장현황 ('97.7.15이후)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환경미화과	5. 음식물퇴비화, 사료화 사업 추진실적 6. 각 동별 간이소각장 행정지도현황 7. 세탁업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 세차장 폐기물 처리현황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현황 2. 가스업소 관리현황 3. 공공근로사업 취업자 선정시 적격자 선정확인 증빙서류 확인내역 4. 가스 집단공급시설 현황 5.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6. 지역중소기업 제품판로 촉진, 지원실적 7. '99취업 알선현황	
농림수산과	1. 수산 관련 인허가 현황 2. 수산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3.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현황 4. 산림식재 계약체결 내역과 식재 증빙사진 및 현재 생육실태현황 5. 농지거래허가신청 및 자격취득 발급현황 6. 방치폐어선, 무등록어선 등 범칙어선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7.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현황 8. 무단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지도단속현황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농림수산과	9. 동별놀이터 조성현황 및 관리점검사항 10. 양수기, 계측장비현황(구입년도) 11.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건 설 과	1. 가로등 보수업체 및 보수실적 계약현황 및 법적(신규, 동별 예산 포함) 2.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3.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점 사용허가현황 및 내역 4. 공유수면 매립지 임대현황과 현 임대료산출 법적근거 5.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6. 긴급도로 복구비 사용내역 7. 북구관내 가로등, 공공화장실, 전기료 월별현황 8. 효문동배수장 업무추진현황 〈도면 및 관련서류제출〉 9. 동천초등학교 진입로공사 추진현황 10.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내역 11. 토목직 공무원 과별현황 및 직접설계건수 - 인원 증원대책 12. 북구지역 지진과 관련한 지진발생 가능성 조사실적 및 향후대책 13. 침수예상지역 하수구 정비실적	
도시교통과	1.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동별현황) 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자 조치사항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도시교통과	3. 진장구획정리 민원사항 등 문제점 및 대책 현황(관련자료 제출) ①배수시설 ②항공기소음 ③고도제한 ④교통소통 4. 도시계획수립 후 미개발 소방도로, 공원 등 동별내역(10년이상 방치, 8년이상 방치 등 연도별 구분 기재) 5. 호계,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척내역 및 문제점 등 업무추진현황 6.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무 번호판 차량 포함) 및 노숙화물차량 단속현황	
건 축 과	1.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내역 2.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3. 건축허가후 미준공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4. 노후 건축물 재건축 필요 시설물 현황과 행정지원대책('99.8.12 서울MBC 보도) 5. 도시계획예정지 건축물 준공검사 잘못으로 구 예산 집행에 따른 구상권 확보추진 현황 6. 메가마켓 건축허가 내역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지하 저수조시설 현황(스텐레스, 방수페인트시공현황) ['98감사 건의사항]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건 축 과	8. 건물,시설 가사용 승인현황 9. 가설건축물 허가내역 10.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현황	
보 건 소	1.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2.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3. 전염병 예방활동 내역 및 법정 전염병환자 관리실태(1, 2, 3종) 4.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5. 약국, 병·의원 현황 및 의료기관 관리현황 (개소 및 폐업사항 등) 6.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7. 보건소 진료이용자 거주별 현황 및 동별 순회 진료 운영실적(월별현황) 8. 주요약품 구입내역(단가) 및 관리현황 9. 동별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 및 하절기 방역 소독 실시 실적 10.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 11.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 12.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13.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환자 관리실태 14.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백신 구입현황 및 예방 접종실적	

대상기관(부서)	주요감사사항	비고
의회사무과	1.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시간외 근무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 3. 의회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 4. 회의록 발간 및 배부현황	

제7절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1. 시정요구사항 현황

구 분		시정요구사항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29	27	1	1	
공 통		2	2			
기 획 공 보 실		4	4			
총무사회국	계	17	15	1	1	
	총 무 과	8	8			
	자치행정과	4	4			
	지 방 세 과	1	1			
	민원지적과	2	2			
	사회복지과	0				
	환경위생과	1		1		
	환경미화과	1			1	
산업건설국	계	3	3			
	지역경제과	0				
	농림수산과	1	1			
	건 설 과	0				
	도시교통과	1	1			
	건 축 과	1	1			
보 건 소		3	3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 통	1.감사자료 작성소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9년11월13일 통보하였으나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근거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총무과에서는 전실·과 취합요구 자료인 특근 급식비 지출현황, 관외 출장여비현황 등 동일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감사당일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하여 의원들의 감사자료파악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특히 기획공보실에서는 취합과정에서 감사요구	○감사자료 및 각종 안건 제출시 관련자료에 대한 현황 및 추진사항, 근거서류 등 일목요연하게 작성 제출하고 ○향후 각종 제반규정사항 준수 및 정확한 자료작성을 위한 부서별 교육실시로 같은 사례가 사전 예방되도록 하고 자료취합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시정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공 통	자료를 확인치 않고 실·과의 자료를 의회 제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간부공무원들이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뢰성있고 정확한 자료 작성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시정 요구함.		
	2.예산집행 부적정 ○'99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기획공보실 풀여비를 타 실·과에 고루 배분치 않고 일부 실·과 특히, 기획공보실, 총무과 등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만 사용한 것은 부당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과별로 편차가 많은 편이고, 농림수산과는 직원 관외 출장여비는 한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99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계획성있고, 형평성 있도록 예비비 지출승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풀여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로 지원코자 일괄 계상된 예산으로 고루 배분하여 집행토록 지원하는 것과 힘있는 부서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과 여비는 지급완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공보실	1.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부적정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동사무소도 감사대상기관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99년11월16일 통보된 '99년 행정사무감가계획서에 동사무소는 필요시 감사하기 위하여 전 동장을 출석요구 하였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9년11월29일 실시한 동사무소 감사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문제제기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 요구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동령 제16조제3항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동령 제17조의2제3항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 제반규정에 의거 준수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공보실	2.북구 21세기 기본계획 용역사업추진 부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지방화시대 민주적인 자치구로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바 G·B지역 조정은 북구전체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겠으며 납품기간을 2개월 계약('99.11.24~2000.1.4)연장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차후 여타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요구함.	○'99.7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 정부의 G.B 재조정정책이 계속 지연되어 계획수립 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었고, 대학 동계방학을 이용한 좀 더 심도깊은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했으나 추후 용역이 있을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임.	완 결
	3.특정업체 상호지정 ○구민의 대회의실에 세일즈 구정홍보를 위해서 특산물 사진전시에 따라 특정업체의 상호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사료되며 이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구청 대회의실에 특산품 촬영 게시하였으나 특정업체 상호가 사진에 표시가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공보실	부분을 지우거나 모자이크로 처리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나, 특정회사 상품이 보이게끔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요구함.	되도록 의도적으로 홍보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며 차후 홍보사진 촬영시 주의해서 찍도록 하겠음 ○ '99.11.30일자로 특정업체 상호를 지워서 게시하였음.	
	4.일상감사 소홀 ○감사업무에 있어 울산광역시종합감사 등에서 추징 21,082천원, 회수 15,394천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추징 3,923천원, 감사원 감사에서 추징 18,932천원, 변상금 1,580천원으로 추징 또는 회수가 많은데 비하여 자체감사에서는 추징 2,649천원, 회수 268천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우리구 자체감사가 너무 형식적임으로 시정을 요구함.	○추징금 및 회수금 발생의 주된 사유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착오가 대부분으로, ○상반기중 감사사례집을 발간, 전직원이 숙지토록 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자금추징 또는 회수요인을 격감토록 하고 ○추징금 또는 회수금 발생소지가 높은 취약분야(공사비산정, 부담금부과 등)에 대해서는 기초회계검사시 중점 점검토록할 계획임.	완 결
총 무 과	1.인사위원회 서면개최 ○지난 10월 1일자 인사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승진 임용시에는 사전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통보없이 서면심의는 잘못이며 6급 승진인사에서 특정과 직원 3명이 승진했으며, 특히 특정자리에 있던 자를 6급으로 승진시켜 핵심요직 인사담당으로 임명하는 것은 독선적인 인사로 북구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또한 '98년10월1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 정원 374명에 526명을 인사 발령하여 업무공백과 연속성, 전문성을 결여한 인사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형평성있는 인사행정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시정 요구함.	정원조례, 규칙 등이 '99. 10.1자로 공포되어 인사위원회위원중 외부위원에게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내부위원만으로 서면 심의를 하였으며, ○ 차후부터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인사행정을 실시하겠음. ○ '98.10.1일 이후 인사발령 526명은 제1·2차 조직개편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과명칭 변경 및 폐지, 계장직위 폐지, 담당조정이 포함된 인사발령으로 정원보다 많은 인사발령으로 보이나, 위의 사항을 제외한 실제의 승진임용·전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되나, ○ 금후부터는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감안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음.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2.해외출장 부적정 ○'99년10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12일간 유럽지역 시장개척 및 공업역사 박물관 유치견학 해외출장시 구청장이 비서실장을 수행한 것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붙일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면서, 또한 관계 과장을 동행하면서 수행한 것은 열악한 북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에 부적정하므로 시정을 요구함.	○공업역사박물관 견학은 우리구에서 유치할 목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고, 수행원 및 해당 과장을 동행한 것은 많은 견문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특별히 수행하였으며, 향후 우리구 재정을 감안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음.	완 결
	3.전산화장비 구입 및 전산행정 미흡 ○전 공무원 367명인데 불구하고 컴퓨터는 391대로 제대로 관리를 해야할 것이며 컴퓨터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	○전체 공무원수보다 PC 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486PC(17대)와 특수업무 및 민원업무용 PC를 제외하면 1인 1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한지, 전자결재 등 형식적인 사유로 많이 구입되었다고 보아지며, 행정의 능률향상을 가져왔다고 보는지 의문이 되며 컴퓨터 교육후 자격취득은 얼마나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산장비 구입 및 전산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	PC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구청은 일반직 기준으로 1인 1PC로 보급하였으나 공공근로자 및 공익요원의 증가로 PC가 부족하며, ○동사무소는 팩스민원, 주민등록단말기, 지방세단말기, 화상단말기 등의 민원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가 많아 일반업무용 PC가 부족한 실정임. ○PC보급,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실시, 업체위탁교육 등에 힘입어 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위탁교육실시로 인해 자격증 취득수는 45명이며 추후에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컴퓨터 보급시 환경이 열악한 동사무소에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우선 보급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보급된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산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4.관외여비지급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외출장을 실무자가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간부공무원 출장 횟수는 61회 22,406천원이 집행되었고, 하위직 공무원은 약73건 7,355천원 정도 집행되어, 관외출장비의 배정이라든지 지출내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간부공무원들의 과다한 출장이 많아 하위직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행정 수행시 장애를 초래하였고, 특히 농림수산과 관외출장시 여비 미지급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함.	○국내여비는 관내출장과 관외출장공무원에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중앙단위 회의 참석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장정도에 따라 많은 여비가 집행되었으며, 앞으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가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음. ○농림수산과 여비 '99.12.30 지급완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5.특근 근무자 식당 지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단가계약 체결후 집행토록 하여야 하나 당초에 지정식당을 1개소만 지정하여 직원 후생복리에 불편사항을 초래하여, 차후 2~3개소 업소와 단가계약 체결하여 야간급식을 실시하는데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 요구함.	○각 실과 분임경리관이 직원 후생복지에 불편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계약토록 하고 있음.	완 결
	6.사무인수인계 철저 요망 ○'97.7.15일 북구청이 신설되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 중구, 울산군의 관계 서류가 인계되지 않아 문서확인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사무인수인계규칙 제10조에 의거 중구, 울주군의 보존문서(30년, 준영구, 영구) 누락분에 대하여 인수를 철저히 하여 북구 행정발전에 철저를 기할 것.	○우리구 신설 당시 북구설치준비단에서 문서이관을 하였으며, 이관문서에 대하여 현재 각 실·과에서 보관중임. ○2000년 보존문서 이관시 중구와 울주군과 협의하여 누락분에 대하여 인수조치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무과	7.심벌, 캐릭터 선정 용역 신중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심벌, 캐릭터 용역비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심벌, 캐릭터 용역비는 타구청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지만 전문용역업체와 매뉴얼, 인쇄비, 기본용역비로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였음. ○예산 15,000천원중 14,980천원으로 용역, 2000.1.25완료.	완 결
	8.문화재 시굴, 발굴 용역 신중 검토 ○북구청 신축부지 내 유적조사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개정은 '99.7.1일부터 건설공사시 사업면적 30,000㎡이상일 경우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 청사부지는 문화재 분포 지역이 아닌데도, 시청 학예사의 의견만 듣고 시굴, 발굴 용역	○매장문화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후 사업시행토록 되어 있고, 시 문화관광과 소속 학예연구사 임의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이 많은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의뢰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시굴, 발굴 용역비를 지방비(시굴:17,238천원, 발굴:116,577천원)로 부담케 하면서 중앙정부의 권고나 지시를 꼭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 검토가 요구됨.	지역이라 판단되어 시굴 조사한 후 공사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시굴조사하게 되었음. 향후 관련 법령 검토후 건의토록 하겠음.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의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판단은 공인된 학예연구사 및 문화재연구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함. ○ 시굴조사면적:30,883㎡	
자치행정과	1.통·반 조정 운영 소홀 ○ 울산광역시북구 통·반 설치 운영에 있어 강동동 10통, 11통, 12통은 2개반으로 1개통으로 구성되어 조례와 불일치하여 통·반을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 울산광역시북구통·반 설치조례의 통반설치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통·반 재조정 및 조례개정.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자치행정과	2.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철저 ○새마을금고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을 하여 새마을금고 육성과 금고의 어려운 사항을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의 합병, 해산, 정관변경 등의 허가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지도감독은 미흡하였으며, 향후 새마을금고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3.열린글방 효율적 운영 ○열린글방이라하면 마치 12만 북구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여, 동단위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여 편리하게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문고를 갖춘 동에는 도서를 순환 비치하고 있으나, ○동인력 및 공간부족으로 동단위 또는 권역별 신규 문고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북구이동도서관과 협의하여 구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완 결
	4.동 행정 지도단속업무 철저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규칙 제6조의2규정에 의하면 자치행정과	○전동 확인('99.12.22) 및 동 총무담당 회의시(2000.1.4) 지적사항에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자치행정과	동 행정에 대하여 지도 단속 업무토록 되어 있으나, '99년11월30일 실시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지도 단속업무 철저 요망. ①창고 및 문서고 정리정돈 등 관리부실(전동) ②민방위장비, 재해대책장비, 산불진화대장 및 관리상태가 소홀함(전동) ③동 직원 관내 출장명령부를 형식적으로 관리하여 근무지가 불일치함(전동) ④효문동과 진장동이 '99년10월1일자로 합치되어 효문동사무소로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장동 명의의 계좌통장을 관리하고 있음(효문동) ⑤담당자 교체시 인수인계시 망원경 물품은 인계받지 못하고, 장부상만 관리하고 있음(양정동)	에 대한 시정조치 및 교육을 통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음. ○진장동 일상경비통장이자 발생분 반납('99.12.2)하고 폐기처분. ○장부와 불일치한 물품 변상조치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자치행정과	⑥민원실에서 약 4~5백만원 정도의 수입증지를 이중금고에 보관치 않고 일반금고에 보관 사용하고 있음(염포동)		
지방세과	1.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대책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계획을 세워 합동단속을 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 단호하게 세입을 거둬 들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000.2.1~12.31까지 합동영치반 1개반 4명(지방세과2, 도시교통과2)으로 구성 영치계획 ○전용차량 1대 확보 ○영치일시:매주화요일 ○소유자 행불일 때 강제처리	완 결
민원지적과	1.표준지 선정 문제점 ○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표준지 분포가 제대로 되고, 선정도 객관성있게 선정을 요망함.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우리구 담당 감정평가업자와 협의하여 표준지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18개 표준지를 위치변경 등 조치할 계획임.	완 결
	2.관외출장명령 시정 ○병무청 업무를 이관 민원행정봉사를 최우선적	○병무업무상 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민원지적과	으로 하여야 하는 병무담당 직원 4명 중 3명이 4일간 서울 출장하여 병무행정 민원에 대하여 소홀한 사실이 지적되므로 자체 감사하여 시정조치 바람.	등의 법적기한 사무인 관계로 불이행시 개인 신상문제와 연관되므로 잦은 출장이 부득이 하나, 향후 출장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출장토록 통제 등 조치하겠음.	
환경위생과	1.정화조 요금부과 문제점 대책 강화 ○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강구 및 부피를 무게로 계산하는 것은 부피로 통일하여 사용함을 요구함.	○ 정화조 청소처리비는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10ℓ당 10원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천위생처리장에서 '94년 울산광역시의회 지적사항으로 청소대행업자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계근대를 설치하므로 주민들에게 부피단위로 처리비를 징수하여 여천위생처리장 반입시 무게단위로 처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질량차이 발생, 1t당 60원정도	불 가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차이가 나며 이는 주민에게는 적법하게 징수되었으며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질양차이에 따른 1t당 60원정도를 청소대행업자로부터 적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 사항을 울산광역시에 건의('99.11.1)하여 협의중임.	
환경미화과	1.인력감축에 따른 결원 대책 강구 촉구 ○'99년 정원 59명에서 현재 48명의 인력이 약 20% 감소에 따른 가로변 청소, 환경미화원 1인당 가로변 청소담당거리 현실태, 가로변 청소시 문제점, 인력배치 전지역 확대시 소요인원, 민간위탁시 소요인원 등을 진단하여 가장 소외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현재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자 12명을 대체 투입하여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중 환경미화원 결원에 따른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인력수급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추진중 2000. 하반기까지 완료예정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림수산과	1.조림사업지 묘목식재 관리 철저 ○'99년 농림수산과의 임도 및 육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여 잣나무, 해송 등 20ha를 식재하였으나 현지 확인하여 생육상태를 점검한 바 식재수량이 부족하고 일부 고사하는 등 생육이 부실함으로 조림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임도 작업후 폐목과 잡석이 무단 방치되어 있으며 배수로 정비와 풀씨 안착이 미흡하므로 하자보수기간내 정비토록 시정 요구함.	○큰나무 조림지의 묘목간 거리는 2.5×2.5m로 1ha당 1,500본 식재되며 천곡동 산54, 산55번지에 식재된 큰나무 조림지 2ha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조림목 3,000본중 생육중인 2,818본(94%)이며 고사목은 182본(6%)으로 조림 성공지역으로 판단되며(확착률 80%미만지역 보식대상지), 향후 육림작업(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제림으로 조성할 것임.	완 결
도시교통과	1.도시계획 재정비협조체제 강화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의결된 사항은 상부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	○도시재정비계획은 광역시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나 우리구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시교통과	며, 타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함으로 시정 요구함.	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타기관과의 사전의견 조율을 거쳐 협조체계를 강화토록 할 것임.	
건 축 과	1.가설건축물 허가시 신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제1항(가설건축물) 목적에 의거 가설건축물 불허가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에 안맞아 민원에게 불편 초래함은 물론 가설건축물이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다면 처벌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체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에 있어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부지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건축법 및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99.11.25)되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지의 경우라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므로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과		○ 울산광역시건축조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분양 및 임대가 불가함에도 임대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의 조치에 대하여는 동 조례가 '99.11.25자로 개정되면서 분양 및 임대를 규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임대 등은 건축물의 사용에 따른 확인 및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 발생된 것으로 향후로는 법령에 준한 사항의 점검 및 관련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임.	
보 건 소	1.약품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는 각종 육아예방접종시 P.D.T, 간염 예방접종, 결핵약 등 약품보관 창고에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약품을 일반문서고에 보관하는 등 문제가 발생	○ 보관창고로 이동조치하였으며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시정요구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보 건 소	됨으로 보건소에서는 약품구매시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장비를 문서고에 보관한데 대하여 시정 요구됨.		
	2.시책업무추진비 효율적 집행 ○보건소에서는 일상경비 평잔액 1억~2억원을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이자 소득을 작게 발생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추후 예산자금 운용을 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자금배정에 있어 매주 단위로 요구하되 꼭 필요한 경비를 청구하여 집행함으로써 통장의 잔액을 최소화하며 구금고 이자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음.	완 결
	3.상안진료소 근무직원 면직조치 부당 ○제1차 구조조정때 과원 별정6급 2명에 대하여 면직조치에 대한('99.12.31) 사유를 명백히 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상안진료소 폐지로 인한 면직조치임.	완 결

제8절 '99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1. 건의사항 현황

구 분		건의사항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29	22	4	3	
공 통		0				
기획공보실		1	1			
총무사회국	계	8	7		1	
	총 무 과	4	4			
	자치행정과	2	2			
	지 방 세 과	0				
	민원지적과	0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1	1			
	환경미화과	0				
산업건설국	계	19	13	4	2	
	지역경제과	4	4			
	농림수산과	4	2	1	1	
	건 설 과	5	2	2	1	
	도시교통과	2	2			
	건 축 과	4	3	1		
보 건 소		1	1			

2. 건의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기획공보실	1.구청장 공약사항 2부제 수업해소 재검토 요망 ○구청장 공약사항 중 2부제 수업을 없애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청 등에 협의를 하지도 않고 억지로 2부제수업 해소를 하다 보니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35명→60명)만 늘고 있으며 당초 공약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교육청의 업무로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부제 수업 해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총 무 과	1.동사무소 결원 인력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보충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현재 전반적인 동 직원의 결원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청에 직원을 일선 동사무소에 전보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결원 13명으로 '99.12월~2000.1월 사회복지직 7명 충원, 결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동구청 임용유예자 2명과 우리구 임용유예자 1명을 임용하였으며, ○광역시에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중으로 전부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타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2.국·공유지 관리체계 재검토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경지를 계속 같은 사람이 대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소액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되므로 국·공유지 263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부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관내 30년이상 국유지를 경작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하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국·공유지 매각 가능분을 연중 조사(국유지: 1,100필지, 공유지:860필지)하여 매각가능 토지중 매수신청이 있을시 적극 매각 추진할 것임.	완 결
	3.관내업체 수의계약검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관내소재 사업장을 둔 업체의 종류와 규모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타 구 소재업체로 계약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북구관내 업소 현황 - 일반건설업 2 전문건설업 19 전기업 2 인쇄업 1 ○일반·전문건설업:공사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수의계약할 시 북구지역 소재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북구업체만 한정하여 계약할 수 없는 실정이며, ○ 전기공사업 : 2개업체와 수의계약 시행중 ○ 인쇄업 : 계약 시행중임 ○ 법령 및 조례의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북구업체와 각종 물품 및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계속 이행하겠음.	
	4. 전산장비 유지보수체계 개선 ○ 년간 전산장비 유지비를 91,236천원을 들여 유지보수하고 있는 바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전문보수기관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 계약하는 등 전산장비유지보수 체계를 개선토록 건의함.	○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총 12종 있으며 이 모두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 전문가를 채용한다 하더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총 무 과		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유지보수를 할 수 없으며, ○ 전산장비의 경우는 장애발생시 부품 또는 장비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공급사 및 제조사의 유지비보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 향후 유지보수계약시에는 전문보수기관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자치행정과	1.적십자회비 자율적 납부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2000년도부터 자율적 납부방식으로 구민이 금융기관에 자율적 납부토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납부 독려 등을 억제하	○ 2000년도에는 개인별 은행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자율적 납부토록 모금방식이 변경되었고, 다만 인도주의 활동목적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납부독려 및 홍보를 하고 있음.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자치행정과	여야 자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 하기 바람.		
	2.모니터요원 활성화 ○민원행정시책이나 제도개선 구민여론수렴 등 주민불편사항 의견제출 등 행정참여방안 강구하여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분위기를 조성하여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함.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 접수는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현재 운영하는 시책 - 120기동대, 민원상담의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 직소민원제도, 민원모니터	완 결
사회복지과	1.편의시설 설치 지정 ○현재까지 각 동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본 사례가 1건도 없으며, 민원택배제를 활용하여 장애인 민원처리에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상급기관에 의무규정 개정을 건의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근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생활참여를 높이고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임.	불 가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1.약수터 수질검사 철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주변청결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식수사용 인근주민에게 홍보계도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하여 공동우물약수터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안심하고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바람.	○전체 먹는물 공동시설 6개소에 대한 점검표작성, 소독약배포, 주변청결 유지, 매분기 2회이상 수질검사실시 및 채수과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계속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올시는 음용수로 사용불가함을 주민홍보하고 사용금지 안내판 설치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 지정취소 할 것임.	완 결
지역경제과	1.도시가스 내진설계 관리철저 ○도시가스 내진설계 도면은 지역경제과 신규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보다는 유관기관과의 상호체계유지 및 공조관계가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으며 내진설계 도면은 재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가스설비 내진설계 기준 제2-1-23조9(적용범위)에 의하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3톤이상의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가 설치되어 있는 지지구조물(신규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관내 경동도시가스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주요시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역경제과		설물 설계도면을 재정리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지구내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음.	
	2.담배판매소 지정에 따른 검토 ○담배판매소 지정을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형평성, 공정성 등을 건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가능여부를 조사, 적합성 여부를 구에 통보하면 신청인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있으며, 공사의 불합리한 결정통보로 민원발생시 재검토토록 하겠음. (2000.1.10 담배인삼공사에 위 내용 통보)	완 결
	3.공공근로자 선정기준 재조정 ○공공근로 신청기준을 농지 0.1ha이하를 경작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 요구함.	○공공근로 참여자격 기준이 되는 농지면적이 2000년 1단계사업부터 0.1ha에서 0.5ha로 상향 조정되었음.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지역경제과	4.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강구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어려울 때 전기의 필요성, 산업의 동력화를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송전탑은 한전에 이전 요구라든지 보완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부분들을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워 지원방안 모색 건의함.	○양정동 5통 일원을 통과하고 있는 전기시설물은 154,000V 현대송전선로로서 1973년 현대계열사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하여 현재까지 전기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설비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법규 및 기준에 저촉됨이 없이 안전하게 시설되어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보상 및 이전이 불가하며, TV 난시청에 관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형적 특수성에 의한 난시청 지역으로 판단됨.	완 결
농림수산과	1.강동간이조선수리시설 사후관리철저 ○'97년 설치한 강동 간이조선수리시설을 의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시설물 전체가 부실로 드러나, 향후 국·시·구비로 추진되는 모든 사	○와이어로프 절단시 안전사고 대책 - 어선인양시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지점 보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림수산과	업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 점검 실시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호철근 설치(2000.1.19 완료) ○수리소 수중 사석유실 관리 수중사석 확인결과 (2000.1.19수중 확인) - 해양수산청 물양장공사 전단하부 수중 침하로 콘크리트 바닥 내부 유실→해양수산청에 조치 요청 - 수중 30m지점 파도에 의하여 레일 하부 사석이 육지로 밀려 있는 상태→어촌계 자체 보완토록 통보 ○울산광역시 어선간이수리소 공사 하자보수내역-별첨(p32~52)	
	2.유류창고 이전대책 ○북구 대안동 26번지 효원아스콘 공장내 유류저장창고 허가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대지로 이 위치는 임야와 연접지 지역으로 산불발생 우려가 되고 행정적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없는지 대책 강구가 필요함.	○허가지역은 준보전임지로서 허가면적 775㎡ 중 체육시설부지 면적이 665㎡이고 유류창고 면적을 120㎡로써 지목상 임야이나 나대지 상태이고 하천(대안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아스콘공장내에서 소비하는 유류를 사용	불 가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농림수산과		하기 전에 저장하는 창고로서 산불발생 위험이나 인가에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며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허가임.	
	3.수목이식시 대책강구 ○농림수산과에서는 임도 개설시 좋은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장수목 굴취, 이식을 할 시에 임지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아까운 수목이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임도개설시 발생하는 지장목굴취 이식시 분을 만들어 굴취를 하여야 하나 임지의 여건상 불가능하며 그 외 인허가지 및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제반사항 검토하여 조경수로 사용토록 할 것임.	완 결
	4.어린이공원 명칭변경 검토 ○북구관내 화봉택지 지구내 어린이 공원 7개소,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하여 고유의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검토 바람.	○시의 공원명칭개정계획에 의거 '99.11.11 ~ 2000.1.31까지 의견제출하여 시민공청회(2000. 2.4~3.15)를 거쳐 공람(2000.4.21~5.15) 후 2000.7.30 확정예정	추진중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과	1.도로굴착공사후 사후관리 철저 ○관내 상수도사업시 굴착후 재포장 공사시 도로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 운행시 비만 오면 고여있는 물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므로 도로굴착공사후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각종 관로시설 관리 7개기관에 공문발송 - 별첨(p53) - 공사시 철저를 기하고 - 준공검측시 부실할 경우 재시공 방침	완 결
	2.도로시설관리 주체 변경 ○20m미만 도로는 설치관리를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시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함.	○20m미만 도시계획도로 역시 관리주체를 시장 명의로 하고 사업 또한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건의 -별첨(p54)	추진중
	3.보안등 보수업체 교체 ○보안등 수리업체가 3개밖에 없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즉시 보수가 되지 않아 보수업체 교체 검토 건의함.	○'99년 보안등 유지관리가 연간 3개업체 단가계약으로 책임보수체계로 조치하였으나 업체관리 및 업체의 수리 기동성에 많은 문제점 발생함.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과		○2000년도에는 보안등을 전문적으로 설치 및 수리사항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지정, 동담당자 및 통·반장 과의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 주민이 고장 보안등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4.산업로 확장시 공항앞 육교설치 검토 ○현 울산공항 앞의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확장시에는 육교 설치가 절대 필요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 시행부서인 시 도로과 건의 - 현재 시행중인 산업로 확포장 공사중 울산공항앞 육교설치 요망 ○회신→별첨(p55~59) - 소통증대와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육교설치가 바람직하나 육교설치시 어린이, 노약자, 여자 등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초래, 도로확장후는 현행보다 교차로 소통이 크게 개선되므로 평면교차로 운영 바람직함.	불 가 (시 회신공문 참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설 과	5.과적차량 단속업무와 도로관리업무 일원화 ○현장 행정사무감사시 과적차량 단속은 구청에서 대부분 20m이상 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관리부서(종합개발본부)에서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는 일원화가 필요하여 건의함.	○시에 조례개정 건의 공문 발송, 현재 조례상 도로관리 주체가 폭20m 미만 도로만 구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20m이상 및 국도 등 대형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부당함. 도로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건의 (별첨 p54)	추진중
도시교통과	1.진장·명촌 구획정리지구 효문로타리 등 대책강구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와 효문로타리의 침수대책과 오·폐수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회에 종합보고 요망함.	○구획정리조합과 울산광역시와 협의중이며 협의완료되는 즉시 의회에 종합보고토록 할 것임.	완 결
	2.시내버스노선 신설건의 ○화봉이북지구에서 삼산방향 시내버스노선설치 화봉지구 주민이 삼산방향으로 시내버스가	○기 건의된 내용에 의거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99년 제2차 시내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	완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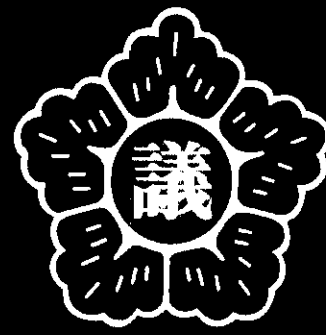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도시교통과	없어 주민 불편함으로 진장, 명촌, 효문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하기 바람.	('99.12.14)에서 모화→울산역→무거를 운행하는 126번 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1일 6대 운행하고 있음.	
건 축 과	1.조례건의 ○울산광역시 조례에 건축물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은 300%→250%로 개정하였는데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용적률을 재건축시에는 350%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기 바람.	○용적률 350%완화 건의(2000.1.18) ○시 회시(2000.1.21) (별첨 p60) -도심지에 20~25층 규모의 초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한 조망권, 도시미관저해, 도시교통문제 등 각종 도심문제의 발생과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일반주거지역이 확대 보급되고 현재 울산의 주택보급률대비 택지공급이 풍부하여 양보다 질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된 건축물이 20~30년후 다시 재건축시는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어 재건축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거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과		환경개선 및 주거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용적률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2.공동주택 전력사용량 현실 맞게 방안강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1가구 전력 사용량을 3KW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보통은 1.5KW~1.8KW정도 사용함으로 실지사항을 북구관내의 APT를 확인한 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대책 강구하기 바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 3KW 이상은 각 세대내에서 내선 등 전기시설이 최소 3KW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며 수배전설비의 용량은 3KW×세대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률(약 50%)을 곱하여 수배전설비를 설계함. (전기내선규정 제205절) ○계약전력의 경우 수배전설비 용량대로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요금절감 등을 위하여 적정량으로 DOWN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음.(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9조 및 제20조)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과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며 자율적 결정사항임.	
	3.염포 미도APT 특단조치 강구 ○북구관내 염포 미도APT는 상태가 아주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저리의 융자지원을 하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어 재건축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시 예산지원으로 매수도 고려될 사안임. ○재건축시 융자조건 - 세대당 3천만원 저리융자(연리3% 5년거치 15년상환) - 이주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1천만원(연리 3% 2년 정기상환)	추진중
	4.집중게시대 설치 문제점 ○건축과에서는 관내 민자유치를 통합하여 현수막 집중게시대 11개소를 신설 설치 하였으나, 광고효과의 핵심부분은 후원업체가 선정	○현수막 집중게시대는 순수민자유치로 설치한 것으로 당초 설치시의 계약조건상 시공자가 상업광고를 1/5범위 내에서 지정광고를 할 수 있도	완 결

처리부서	건의내용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 축 과	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게시대 설치 행정의 전반적인 재검토 요망함.	록 되어 있어 현상태에서의 게시대의 변경은 계약파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3년후 재계약시는 구 마크 설치 위치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간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보 건 소	1. 예방접종 홍보 철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시 구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접종기간 등을 홍보하여 (유선자막 등) 노약자 등 예방접종에 차질없이 건강한 구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동을 통한 동 앰프방송 및 지역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음.	완 결

제5장



행정사무조사 (울산공항실태)

- 제1절 울산공항관련 행정사무조사 사항
- 제2절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제3절 울산공항현황
- 제4절 주민피해실태 조사
- 제5절 기타실태조사
- 제6절 실태조사 검토 및 분석
- 제7절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제8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회신내용
- 제9절 전국공항현황

제1절 울산공항관련 실태조사 사항

1. 행정사무조사 배경

○울산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종 피해상황을 연구, 조사, 비교,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원해소 및 중·장기적인 지원방안과 해결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2. 행정사무조사개요

일 자	건 명	내 용
'99. 8. 21	○행정사무조사의건 발의	○발의자:김수헌의원 외 2명
'99. 8. 23	○행정사무조사의건 의결	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99. 8. 2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6명:(류재건, 강혁진, 김수헌,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의원)
'99. 9. 1 ~ 9.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조사특별위원회)	○기간:'99.9.1~11.20(80일간)
'99. 9. 4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제25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99. 9. 6 ~ 11.9	○행정사무조사 실시	○주민피해 실태조사 ○타 의회 비교조사 ○대한항공공단 방문조사
'99. 11.10 ~ 11.1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조사특별위원회)	
'99. 11.15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제28회임시회 제8차본회의

제2절 울산공항관련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1.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일 시 : '99.8.23 [제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명 칭 :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류재건

○위 원 : 강혁진(간사), 김수헌,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 실태조사계획서

가. 조사기간

○1999.9.1 ~ 1999.11.20(80일간)

나. 조사대상기관

○북구청, 중앙관련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울산공항, 타 지역 공항

다. 조사대상

○울산공항에 따른 소음피해 상황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고도제한

○소음진동 규제방안 모색

○공항주변 현지 피해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 방문 및 기타

라. 조사범위

○울산공항 관련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

마. 조사방법

○현지방문 조사

○주민면담 및 의견수렴

○공항관계기관 및 실무자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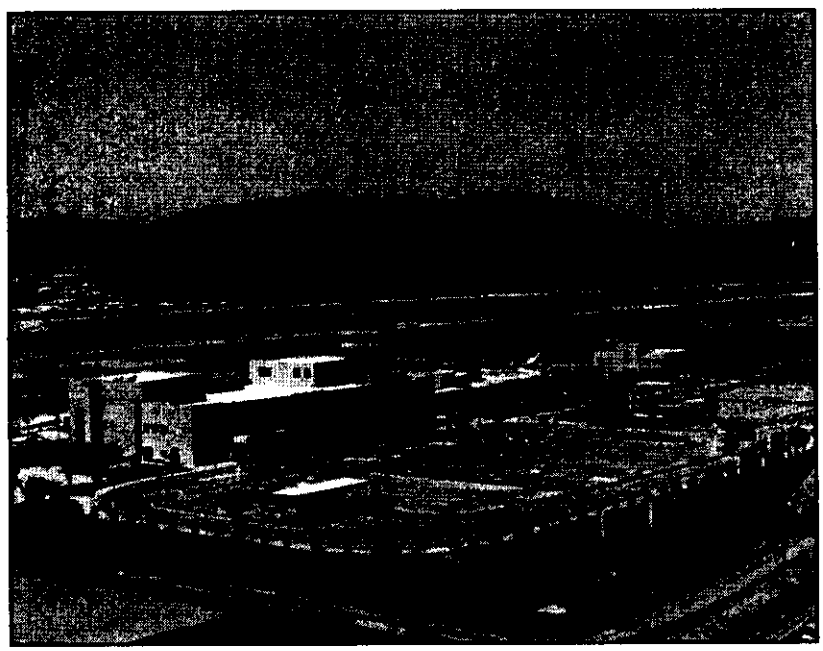
○실증적 조사 등

3. 실태조사 의사일정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99.9.1~11.14(75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9.9.1 (수) 본회의 산회후	1	1.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울산공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3. 울산공항실태조사 계획서 작성 협의	소회의실
		◆울산공항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요청 (본회의 제출)→'99.9.4승인	
'99.9.6 ~9.11	2~7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수집 분석	〈현장〉
'99.9.13	8	○한국공항공단울산지사 방문	〈현장〉
'99.9.27 ~9.28	9~10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현장〉
'99.10.4	11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주민의견 수렴)	〈현장〉
'99.10.14 ~10.15	12~13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및 주민의견 수렴) - 농소1동, 구 진장동, 송정동 - 대한항공 항공기장 면담(경주)	〈현장〉
'99.10.16	14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 농소2, 3동	〈현장〉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9.10.19 ~10.20	15~16	○타 의회 비교 실태조사 계획서 협의	소회의실
'99.10.22	17	○피해실태 현장활동(소음측정)	〈현장〉
'99.10.28 ~10.30	18~20	○타 의회 비교시찰 [김해시, 사천시, 여수시, 강서구(서울), 김포시, 항공조종사협회(김포)]	
99.11.9	21	○피해현장 활동(소음측정)	〈현장〉
'99.11.10 ~11.13	22~24	○울산공항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건	소회의실
'99.11.15	25	◆울산공항실태조사 결과보고(본회의) →'99.11.15 의결처리	



〈울산공항 전경〉

제3절 울산공항현황

1.울산공항 기본현황

공 항 소재지	개항일 (인수일)	활주로(m)		공항면적 (㎡) (천평)	'98년 이용자수 (천명)	1일 운항편수	비 고
		길이	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70.11.20 ('90.6.28)	2,000	45	883,740 (267)	1,199	39	'73.1.23~ '84.7.21 휴항

2. 울산공항 약사

- ○ 1970. 11. 23 울산비행장 개항정기노선 취항
- ○ 1984. 1. 23 휴항
- ○ 1984. 7. 21 정기노선 재취항
- ○ 1990. 6. 21 한국공항공단 인수운영
- ○ 1992. 3. 16 아시아나항공 취항(복수민항)
- ○ 1993. 2. 6 대한항공 제주노선 취항
- ○ 1993. 5. 8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 취항
- ○ 1995. 9. 15 활주로 확장공사에 따라 일시 중단
- ○ 1995. 12. 27 항공기 재취항
- ○ 1997. 12. 22 신 여객청사로 이전

3. 시설현황

시설명	규 모	능 력	비 고
부지(㎡)	917,487		
활주로(m)	2,00×45	6만회/년	
계류장(㎡)	33,480	동시주기: MD82 기준 4대	
여객청사(㎡)	8,651	230만명/년	
동력동(㎡)	991		
주차장(㎡)	26,860	동시주차:534대	무인주차장비설치
항행안전시설	LLZ/DME, VOR/DME, G/P, M/M	정밀계기 운항으로 결항률 감소	
항공등화시설	ALS 1식 PAPI 2식		
기계설비	탑승교 2기 콘베어등		
소방대 및 토목장비고	887㎡		
관리동(㎡)	1,197	'98.7 개량공사완공	

4. 운송현황

구 분	계	서울	제주	비 고
대한항공	22	20	2	MD82(164인승), F100(109인승)
아시아나	18	18		B737-400(149인승)

5. 연도별 수송실적

구분 \ 연도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6월)
운항(편)	6,140	9,270	10,290	6,833	12,392	15,392	14,189	5,929
증가율(%)		51	11	△33	81	24	△7.8	△20.3
여객(명)	544,091	804,393	991,379	690,088	1,426,585	1,691,279	1,199,313	622,030
증가율(%)		48	23	△30	107	18	△29	5.5
화물(톤)	1,354	2,647	3,323	2,158	3,015	3,744	2,281	1,720
증가율(%)		93	26	△35	40	24	△39	48.8

※ 연평균 증가율 : 운항(27%), 여객(18%), 화물(24%)

※ '95년 감소는 활주로 확장공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기간 : '95.9.15~'95.12.26

6. 한국공항공단 울산지사 방문 면담 내용

○장기적인 울산공항 이전대책 - 한국공항공단 결정사항에 따라 결정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따른 국제공항이 바람직함.

○지역주민 이용률은 공업도시로서 출장이 65%정도이고, 경주 관광객은 20% 공항이용

제4절 주민피해 실태조사

1. 제1, 2차 피해실태 현장조사(소음측정)

가. 측정일시 : '99.9.27~28(2일간) 06:40~20:00

나. 측정장소 : 농소1동(성우현대APT 앞), 농소3동(원동현대APT 옆)
효문동(구 진장동사무소 옥상), 송정동(구 동울산세무서)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자)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데시벨(dB)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항공기 소음은 일상의 환경소음에 비해 특이하고 소음원이 상공을 통과하고 계속시간이 20초 내지 수십초의 소음이 단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는 항공기 소음에 부적당하여 196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WECPNL(웨클)을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국제단위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

다. 항공소음 측정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 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성우현대 APT	'99.9.27	11:38	대한항공(이륙)	85.3dB(A)	81.9dB(A)	72 WECPNL (웨클)
		12:44	아시아나(이륙)	81.1dB(A)		
		15.32	대한항공(착륙)	81.9dB(A)		
		15:50	아시아나(착륙)	75.9dB(A)		
		16:00	대한항공(착륙)	83.9dB(A)		
		16:26	대한항공(착륙)	75.7dB(A)		
		18:52	아시아나(이륙)	82.0dB(A)		
		19:06	대한항공(이륙)	81.3dB(A)		
		19:38	아시아나(이륙)	82.1dB(A)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현대원동 APT	'99.9.27	11:38	대한항공(이륙)	82.8dB(A)	84.4dB(A)	74 WECPNL (웨클)
		12:44	아시아나(이륙)	79.2dB(A)		
		15:32	대한항공(착륙)	75.3dB(A)		
		15:49	아시아나(착륙)	72.9dB(A)		
		15:57	대한항공(착륙)	70.6dB(A)		
		16:26	대한항공(착륙)	91.6dB(A)		
		17:06	대한항공(이륙)	81.1dB(A)		
		19:38	아시아나(이륙)	80.5dB(A)		
구 동울산 세무서	'99.9.28	07:00	대한항공(이륙)	78.8dB(A)	74.2dB(A)	64 WECPNL (웨클)
		07:30	아시아나(이륙)	71.6dB(A)		
		10:10	대한항공(이륙)	75.3dB(A)		
		10:38	아시아나(이륙)	71.8dB(A)		
		11:43	대한항공(이륙)	71.4dB(A)		
		12:58	아시아나(이륙)	65.0dB(A)		
		13:10	대한항공(이륙)	74.8dB(A)		
		16:18	대한항공(이륙)	73.5dB(A)		
구 진장동 사무소	'99.9.28	07:52	아시아나(착륙)	90.4dB(A)	88.5dB(A)	78 WECPNL (웨클)
		08:08	대한항공(착륙)	85.2dB(A)		
		09:58	아시아나(착륙)	88.2dB(A)		
		12:14	아시아나(착륙)	90.5dB(A)		
		12:27	대한항공(착륙)	84.3dB(A)		
		12:58	아시아나(착륙)	87.7dB(A)		
		15:26	대한항공(착륙)	88.0dB(A)		
		15:45	아시아나(착륙)	89.6dB(A)		

2. 제3차 피해실태 현장조사(소음측정 및 초등학교장 면담)

가. 측정일시 : '99.10.4(월) 09:30

나. 측정장소 : 농소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교실, 운동장, 옥상)

구분	면적(㎡)	교실수	학생수(명)	교사수(명)	비고
농소초등학교	11,934	58	27,000	54	295-4012
약수초등학교	13,476	52	2,861	58	282-1291

다. 학교장 면담

- 매주 월요일 아침조회시 소음이 심각하여 일시적 중단 후 계속 조회 실시(항공기, 이·착륙시)
- 학생들의 목청이 높아짐.
- 하절기 수업에 많은 지장을 줌.(창문 개방시)

라. 항공소음 측정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측정지점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약수초등학교	'99.10.4	10:16	옥상	대한항공(이륙)	83.8dB(A)	79.5dB(A)	69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74.4dB(A)		
		11:51		대한항공(이륙)	81.0dB(A)		
		14:10		대한항공(이륙)	81.9dB(A)		
		15:39	교실 (6-4)	아시아나(이륙)	65.3dB(A)		
		16:10		대한항공(이륙)	70.6dB(A)		
		16:37		아시아나(이륙)	69.2dB(A)		
		17:07	운동장	대한항공(이륙)	81.7dB(A)		
농소초등학교	'99.10.4	10:16	옥상	대한항공(이륙)	85.2dB(A)	79.6dB(A)	69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79.2dB(A)		
		11:51		대한항공(이륙)	83.4dB(A)		
		13:09	운동장	대한항공(이륙)	74.9dB(A)		
		13.40		아시아나(이륙)	78.8dB(A)		
		14:15		대한항공(이륙)	82.0dB(A)		
		15:39	교실 (6-1)	아시아나(이륙)	64.8dB(A)		
		16:10		대한항공(이륙)	68.6dB(A)		
		16:37	교실 (5-1)	아시아나(이륙)	68.1dB(A)		
		16:42		대한항공(이륙)	67.9dB(A)		

3. 제4차 피해실태 현장조사(소음측정 및 주민피해)

가. 측정일시 : '99.10.14~15(2일간)

나. 측정장소 및 주민면담 : 농소1동(매곡입구), 농소2동, 농소3동(성혜원), 효문동, 송정동

다. 주요면담 - 주민피해 상황

○ 가축 성장지장

- 과도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면 심장박동수와 호흡수의 변화, 말초신경이 축소되어 배란횟수가 줄어들며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기립부진 및 성장이 지연된다고 함.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거의 매일 최대 소음도에 달할 경우 회화장애, 수면장애, 짜증, 불안으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음.
- 전화, TV이용시 항공기 소음피해로 통화가 중단되고 화면이 떨리고 소리가 안 들림.

라. 항공소음 측정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매곡현대 아파트앞	'99.10.14	10:09	대한항공(이륙)	75.9dB(A)	76.1dB(A)	66 WECPNL (웨클)
		10:36	아시아나(이륙)	76.2dB(A)		
		11:38	대한항공(이륙)	71.6dB(A)		
		12:38	아시아나(이륙)	75.6dB(A)		
		13:08	대한항공(이륙)	70.7dB(A)		
		13:39	아시아나(이륙)	76.4dB(A)		
		14:11	대한항공(이륙)	78.6dB(A)		
		15:40	아시아나(이륙)	78.4dB(A)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시례마을	'99.10.14	10:58	대한항공(착륙)	60.9dB(A)	82.6dB(A)	72 WECPNL (웨클)
		11:35	대한항공(이륙)	89.4dB(A)		
		11:54	아시아나(착륙)	69.1dB(A)		
		12:22	대한항공(착륙)	76.3dB(A)		
		12:37	아시아나(이륙)	78.7dB(A)		
		12:52	아시아나(착륙)	63.9dB(A)		
		13:07	대한항공(이륙)	81.2dB(A)		
		13:24	대한항공(착륙)	71.9dB(A)		
		13:38	아시아나(이륙)	78.7dB(A)		
		14:11	대한항공(이륙)	86.7dB(A)		
		14:49	아시아나(착륙)	81.1dB(A)		
		15:21	대한항공(착륙)	85.8dB(A)		

4. 제5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가. 측정일시 : '99.10.16 14:00

나. 측정장소 : 구 진장동 사무소, 강북교육청 앞

다. 소음측정 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강북교육청앞	'99.10.16	10:08	대한항공(이륙)	80.2dB(A)	84.5dB(A)	74 WECPNL (웨클)
		10:38	아시아나(이륙)	83.7dB(A)		
		11:00	대한항공(착륙)	68.6dB(A)		
		11:38	대한항공(이륙)	88.3dB(A)		
		12:39	아시아나(이륙)	85.5dB(A)		
		13:10	대한항공(이륙)	83.9dB(A)		
		13:38	아시아나(이륙)	86.4dB(A)		
		14:02	대한항공(이륙)	82.2dB(A)		
		15:42	아시아나(이륙)	85.2dB(A)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구 진장동 사무소	'99.10.16	10:56	대한항공(착륙)	90.2dB(A)	87.9dB(A)	77 WECPNL (웨클)
		11:54	아시아나(착륙)	87.1dB(A)		
		12:26	대한항공(착륙)	83.2dB(A)		
		12:51	아시아나(착륙)	90.7dB(A)		
		13:26	대한항공(착륙)	81.3dB(A)		
		15:03	아시아나(착륙)	88.0dB(A)		

5. 제6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가. 측정일시 : '99.10.22 10:00

나. 측정장소 : 농소중학교 옥상, 쌍용아진 아파트 옥상

다. 항공소음 측정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농소 중학교	'99.10.22	10:38	아시아나(이륙)	82.6dB(A)	83.3dB(A)	73 WECPNL (웨클)
		12:27	대한항공(이륙)	86.2dB(A)		
		12:38	아시아나(이륙)	79.6dB(A)		
		13:43	아시아나(이륙)	82.3dB(A)		
		15:54	아시아나(이륙)	83.3dB(A)		
쌍용아진 아파트	'99.10.22	10:30	대한항공(이륙)	83.0dB(A)	80.2dB(A)	70 WECPNL (웨클)
		12:27	대한항공(이륙)	80.6dB(A)		
		12:39	아시아나(이륙)	76.7dB(A)		
		13:44	아시아나(이륙)	79.7dB(A)		
		15:54	아시아나(이륙)	78.8dB(A)		

6. 제7차 피해실태 현장조사

가. 측정일시 : '99.11.9 07:00~21:00

나. 측정장소 : 구 진장동사무소, 강북교육청앞 원지삼거리

다. 항공소음 측정결과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 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 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구 진장동 사무소	'99.11.10	07:46	아시아나(착륙)	87.4dB(A)	85.9dB(A)	76 WECPNL (웨클)
		08:06	대한항공(착륙)	87.5dB(A)		
		09:29	대한항공(착륙)	85.1dB(A)		
		09:54	아시아나(착륙)	87.1dB(A)		
		11:52	대한항공(착륙)	84.0dB(A)		
		12:20	아시아나(착륙)	86.8dB(A)		
		13:07	아시아나(착륙)	86.1dB(A)		
		15:02	아시아나(착륙)	86.3dB(A)		
		15:49	대한항공(착륙)	80.9dB(A)		
		16:03	아시아나(착륙)	86.1dB(A)		
		16:33	대한항공(착륙)	86.6dB(A)		
		17:26	대한항공(착륙)	84.8dB(A)		
		17:53	아시아나(착륙)	87.0dB(A)		
		18:30	대한항공(착륙)	83.4dB(A)		
		19:03	아시아나(착륙)	87.7dB(A)		
		20:52	대한항공(착륙)	81.3dB(A)		
		21:09	아시아나(착륙)	85.7dB(A)		

측정장소	측정일시	측정시간	항공사	항공기통과시 소음최고치	평균최고소음도	항공기 소음영향도
강북교육청앞 원지삼거리	'99.11.10	07:00	대한항공(이륙)	85.1dB(A)	89.9dB(A)	80 WECPNL (웨클)
		07:30	아시아나(이륙)	84.3dB(A)		
		08:36	아시아나(이륙)	83.5dB(A)		
		09:06	대한항공(이륙)	86.3dB(A)		
		10:07	대한항공(이륙)	89.7dB(A)		
		10:37	아시아나(이륙)	89.6dB(A)		
		12:30	대한항공(이륙)	87.6dB(A)		
		13:40	아시아나(이륙)	88.4dB(A)		
		14:15	대한항공(이륙)	85.8dB(A)		
		15:37	아시아나(이륙)	88.5dB(A)		
		16:40	아시아나(이륙)	87.4dB(A)		
		17:10	대한항공(이륙)	94.2dB(A)		
		18:10	대한항공(이륙)	95.7dB(A)		
		18:40	아시아나(이륙)	88.1dB(A)		
		19:17	대한항공(이륙)	93.7dB(A)		
		19:40	아시아나(이륙)	86.2dB(A)		

7. 불편사항 설문조사 실시

가. 조사기간 : '99.10.25~11.6

나. 조사지역 : 농소1,2,3동, 효문동, 송정동(5개동)

다. 조사방법 : 해당동(통장회의시 설문지 배부)

라. 조사대상 : 5개동 관내 (통장 89명)

(농소1동 15명, 농소2동 20명, 농소3동 20명, 효문동 21명, 효문동 13명)

마. 공항관련피해 실태상황 분석(67명)

1) 울산공항 이용해 본 수

○울산공항 이용자(통장) 수 - 39명

○울산공항 미이용자(통장) 수 - 25명

○울산공항 이용 무응답 수 - 3명

2) 울산공항 친절도

○울산공항 친절도 만족 - 27명

○울산공항 친절도 불만족 - 26명

○무응답 - 14명

3) 현 울산공항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위치 만족 - 8명

○다소 불만족 - 9명

○이전요구 - 38명

○무응답 - 12명

○이전요구시 적당한 지역

(울산·경주 중간지점, 해상공항, 해안주변, 문화, 상북)

4) 비행기 이·착륙 「소음피해」 사항

①텔레비젼 시청 장애에 관하여(유선방송 설치한 경우)

- 전혀 볼 수 없음 - 일부화면이 흐린 상태임 : 21명

- 영향이 전혀 없음 - 조금 영향을 미치나 시청가능 : 29명
- 기타 : 17명

② 텔레비전 시청 장애에 관하여(안테나 설치한 경우)

- 전혀 볼 수 없음 - 일부화면이 흐린 상태임 : 26명
- 영향이 전혀 없음 : 3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시청가능 : 29명
- 기타 : 19명

③ 전화통화 장애에 관하여(무선)

- 통화불량 상태임 : 7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통화가능 : 21명
- 통화에 영향 없음 : 32명 - 기타 : 7명

④전화통화 장애에 관하여(유선)

- 전화불량 상태임 : 4명 - 조금 영향을 미치나 통화가능
- 통화에 영향 없음 : 19명
- 기타 : 9명

⑤ 정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소아, 청각, 대화 등)

- 청각 및 대화시 큰 문제점이 발생
- 각종 회의 및 반상회시 소음으로 회의중단 실태
-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 놀랐을 정도

⑥ 농작물 및 가축피해 사항

- 농작물 성장 지장
- 가축 소음 불안
- 가축이 경기하는 사례 종종 발생

⑦ 기타 피해 및 불편사항

- 울산화학공단으로 항로 경유하기 때문에 불안
- 공항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심각(무단주차)

8. 공항소재에 따른 피해사항

가. 사유재산권 침해사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소음·진동으로 인해 집값 하락 영향이 심각

○부동산 하락 등

나. 도로여건 및 교통 유발

○공항이 있어 7호 국도가 정체됨.

○공항입구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음.

다. 도시발전 저해관련 사항

○고도제한에 의한 놀이공원 및 유락시설이 불가능

○북구의 중심지로 발전 저해

○공항문제로 부동산 매매 저하

라. 비행기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

○활주로 짧은 관계로 주변지역으로 이탈 가능성

○이·착륙시 고도가 너무 낮아 APT가 날아가는 것 같음.

○APT옥상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

마. 기타 피해 및 불편사항

○화봉일대 APT, 농로 주위엔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

○국도 7호선 조기확장 촉구

9. 항공기 소음 동별 피해실태사례

구 분	피 해 사 례	비고
농소1동	- 전화, 혼선, TV난시청, 라디오 청취 지장 초래 -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등 지장 초래 - 외부 친인척이 방문 시 어린아이들이 잠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 주민불편 초래(야간 비행기 운행에 따른 수면방해, 스트레스 누적, 사생활 침해 가중)	
농소2동	-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으나 소음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이·착륙 및 상공비행시 전화, TV라디오 청취를 못하고 정신집중 방해로 학업지장 초래	
농소3동	- 쌍용아진APT단지는 층수에 따라 다소 소음이 높은 편임. - 항공기 노선에 따라 다소 소음측정이 차이가 있다. - 부동산거래 불이익(개발제한구역, 소음발생지역) - 가축사육 성장 저해 및 불임(시례동 닭사육농가 감소)	
효문동 (구 진장동)	- 전화 혼선, TV, 라디오 청취 지장 초래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집값 하락 및 전세입주자 기피현상 항공기 소음으로 투자기피 현상 - 임산부 및 유아피해 - 불편 초래(수면방해, 스트레스 누적, 사생활 침해) - 농산물 수확량 5~10% 감소(이·착륙시 분진발생)	
송정동	- 수면방해, 전화 통화시 대화가 안됨. - TV시청시 화면이 떨리고 소리가 안들림. - 이·착륙시 아기들 잠에서 깨어나 우는 피해 - 항로에 따라 소음 차이가 많다.	

제5절 기타 실태조사

1. 항공기장 면담

가. 일 시 : '99.10.14 21:30~22:50

나. 장 소 : 경주 코오롱 호텔 커피숍

다. 면담자 : 대한항공 F100기장 김기봉

라. 의문사항 질의 및 답변

① 항공기 이·착륙시 기계조작을 통하여 소음 강약 가능한지?

→현재 울산공항 활주로 6,500피트로는 이·착륙시 최대출력을 요하므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없으나 활주로 확장시는 다소 감소 가능함.

② 항공기 노선의 폭변경은 기장의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착륙시 풍향에 따라 폭을 변경하므로 기장 마음대로 변경 불가

③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기는 이·착륙시 노선이 다른 이유는?

→대한항공은 MD80, MD82, F100 3종이고, 아시아나는 보잉 737로 기종이 다르므로 회전반경의 차이로 인해 노선변경

④ 울산공항의 시설 규모 등과 노면의 안전성은?

→울산공항은 6,500피트로 김포 12,700피트(군용 9,000피트) 보다는 짧으나 여수, 목포의 5,000피트 보다 길고 시야가 넓어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 다음으로 안전하며, 노면은 그르브(미끄럼방지)를 설치하면 좋겠음.(군산만 설치)

⑤ 현재 울산공항은 이·착륙시 노선을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없는지?

→이·착륙시 풍향에 따라 비행기가 바람을 안고 착륙해야 하므로 일관성이 있을 수 없음.

⑥ 현재 노선을 보면 착륙시 울산화학단지 상공으로 경유하는데 안정성은

고려하는지 여부?

→홍콩같은 데는 빌딩 위를 지나고 있으며 비행기는 현대사회의 필요악으로 불편이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

※ • 국제공항은 8,000피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대형항공기 취항이 어려워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울산공항에는 북쪽편에 가이드라이트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성을 도모할 것임.

2. 공항관련 법률 분석

□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공항 대상으로는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국제공항(정기 국제공항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271조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 영향도에 따라 구역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단위:WECPNL)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	설치제한
소음피해 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이주대책 (신축, 증·개축금지)
	제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신축금지 증·개축허가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구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신축, 증·개축허가 (방음시설설치조건)
		"나"지구 80이상 85미만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때는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및 소음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은 정기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부분은 항공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항공법 관련 규정에 의하며 항공소음피해지역 또는 예상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소음피해 방지대책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오히려 「재산권」을 규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3. 항공법 적용대상지역 업무처리절차

가. 정부공인기관에 소음의 측정을 의뢰하여 소음도 「등고선」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항공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고시함.

나. 고시지역 안에 시설물 설치제한과 함께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 안에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

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시행자가 공항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항공법 제100조)

4. 타 시·도 피해 대책활동 사례

가. 대구동구의회

○대구공항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활주로	비고
대구 동구 지정동 400번지	67,474㎡	7,809㎡	264㎡	470㎡	2,740×45	군·민항 겸용

※ 1일 평균 42회(국제노선 주2편, 일본)

○주요활동사항

- 대구국제공항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제1대('94. 5.30~'94.10.24) : 16명
  - 제2대('95.12.29~'97.12.29) : 19명

○대구공항은 군용과 민간 범용으로 국제정기노선이 일부 취항하고 있으나, 국제공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군용항공기는 항공법 적용을 받지 않음.

- 실제 대구공항 소음측정 결과(최고 98/최저 81 WECPNL) 기준치 이상의 피해지역이 많고, 주민피해 상황도 극심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 대책 마련
- 공항주변 현지 피해조사 및 민원실태 파악 수렴
- 주민불편사항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비 예산요청
  - 요구액 : 506억(사장 3회 면담결과 특별교부사업 약속)
  - 확보액 : 373억('96년도부터 단계별 연차별 확보)
  - 지원내역
    · 공항주변 23개 학교 냉·난방기 설치 - 880개 교실 40억원
    · 도로 및 교량, 하수구 등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 주요특위활동

현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나 소음피해, 항공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며,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반대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나. 강릉시의회

○강릉공항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주차대수	활주로	비고
강원도 강릉시 난항 진동	69,727㎡	3,321㎡	172대	2,740×45	군·민항 겸용

※ 1일 평균 20회(국제 비정기 노선)

○주요활동사항

• 강릉시에서 「비행기 주변지역 지원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25명(실·국장, 시의원, 주민대표 등)

○'98.6 : 항공소음 측정 및 피해조사 용역실시

• 용 역 비 : 62백만원

• 조사기간 : 200일간

• 조사내용

- 소음측정결과 : 최대 123dB/최저 65dB
- 피해지역 면적 : 579.6ha
- 총 피해액 : 7,359백만원
- 주요소음피해는 민항기보다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발생 극심
- 비행장소재 자치단체 합동건의문 발송
  · 해당 18개 자치단체 지역연계 중앙건의
- 비행장주변 지역숙원사업비 지원 : 370백만원(시비)
  · '98년 210백만원
  · '99년 160백만원

- 군용항공기 엔진 테스트장 방음시설 건의 - 공군부대

다. 예천군의회

○예천공항 현황

위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주차대수	활주로	비고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시 88	15,883㎡	1,318㎡	64대	2,740×45	군·민항 겸용

○주요활동사항

- 피해보상 실적 및 공항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 대상마을 : 3개면 21개리(1,246가구)
- 주민숙원사업 : 7종 7,762백만원(융자금 3,216백만원)
  - 군도 확·포장 (7호 21호) : 2,500m, 1,650백만원
  - 농촌도로 : 2,500m, 87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종 5,237백만원

- 마을 진입로 포장(10개 마을) : 5,130m, 513백만원
- 마을안길포장(19개 마을) : 10,140m, 1,014백만원
- 하수구 설치(9개 마을) : 1,970m, 394백만원
- 소교량 설치(2개소) : 36m, 100백만원
-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21개 마을) : 205동 3,216백만원

※ 항공기 소음예방대책 추진사항

- 도 및 중앙정부와 국방부 등 관련법규개정 및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 건의

라. 제주시 의회

○제주공항 현황

위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주차대수	활주로	비고
제주시 용담2동 2002	3,004.816㎡	46,648㎡	1,500대	2본 3,000×45m 2,000×45m	군·민항 겸용

○주요활동사항

• 제1종 구역 : '82~'85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지 건설교통부 항공건설사무소에서 제주시로 이주 보상 위탁시행완료

• 제2종 구역(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 주체)

- 주택방음공사

·'94~'95 : 5가옥 공사완료

·'99.6 : 1가옥신청(2000년 공사요구)

- TV수신시설 설치

·'96~'99 : 18세대 설치완료

• 제3종 구역

- '96. 8~'99.9 : 도리초등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 '96.12~'97.5 : 제주사대부중학교 냉방시설 설치

- '99. 1~'99.3 : 마을회관 6개소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제주시 위탁추진)

○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주민숙원사업

• 민간

구분	제1종구역	제2~3종 구역	비고
시행기관	제주시청	한국공항단 제주지사	

구분	제1종구역	제2~3종 구역	비고
대 상	88WECPNL이상 410가옥	80~90EWCPNL 1,500가옥	
보상유형	이주보상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시설 설치사업	
재원조달방법	국 비	한국공항공단 일반예산인 소음대책비	

※항공소음 피해지역 확대, 2~3종 구역 이주대책 강구, 전화, TV, 시청료감면, 냉방시설설치(방음시설과 병행), 주민복지사업, 사회기반 시설지원, 냉방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 관련 항공법 개정 요구

마. 원주시의회

○원주공항 현황

위치	부지면적	여객청사	화물청사	활주로	비고
율촌면 신풍리 979	396,748㎡	1,517㎡	9,500㎡	1500×30	

※국내선 왕복 26회선(대한항공 14회선, 아시아나 12회선)

○주요활동사항

• 소음피해지역

- 지역별 세대수 : 186세대
- 공항확장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보상 완료 : 1,427백만원 (보상비 693, 공사비 661, 기타 127)

바. 부산시 강서구의회

○주요활동사항

• 소음 및 지역개발 대책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 : 강서구청,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단부산지사, 대한항공 김해지역본부, 김해농지개량조합, 주민대표(대규2동 구의원)

• 소음대책 사업비 확보 : 700백만원

※소음대책사업

- 배영초등학교 방음, 냉방시설 : 200백만원
- 주택방음시설 설치(32호) : 455백만원
- 마을회관 방음, 냉방시설(중덕, 월포) : 30백만원
- TV수신장애 대책 : 15백만원

○소음도 기준치(3종구역 80웨클)이하 지역 대책

• 현황

- 공항주변 3개 초등학교 : 3개학교 752명
- 수업장애, 집중력저하 등 환경에 저해

• 문제점

- 소음도 기준이하이므로 사업추진 불가

• 대책협의사항

-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산정방법 개선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항공기 소음이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학교 시설에 소음대책 사업추진

사. 경남 사천시의회

○사천시 기본현황

면 적	인구	의원수	재정규모	공무원수	사천공항	비고
395.92㎢	120,145명	14명	1,409억원	866명	1일 16편운항	

○주요활동사항

• 소음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으므로, 소음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음. 요금이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우회하므로(사천-여수-광주-서울)과다하여 인하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음.

아. 여수시의회

○여수공항 현황

부지	활주로	계류장	여객청사	주차장	1일운항편수	비고
396,748㎡	1500×30m	13,590㎡	1,517㎡	5,500㎡ 140대	26회선	민간

○주요활동사항

• 소음에 대한 민원 및 대책은 없는 사정임.

• 공항확정(1,500m→2,100m)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199,369백만원으로 2002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계획 완료 상태임.

자. 서울 강서구의회

○강서구 기본현황

면적	인구	의원수	재정규모	공무원수	김포공항	비고
41.42㎢	519,501명	22명	1,202억원	1,284명	1일 566회 (국내 327 국제 239)	국제공항

○강서구의회 의원 면담사항

- 강서구는 공항이 주는 불편만큼 장점도 있음.
- 강서구 재산세의 56%가 항공기 기적(200대)에 의한 세입임.
-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이주대책, 보상대책)가 활동중임.
- 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음.

차. 경기도 김포시의회

○김포시 기본현황

면적	인구	의원수	재정규모	공무원수	비고
277.11㎢	129,056명	9명	1,600억원	589	

○김포시 항공소음 피해지역 고시현황

구분	구역	소음도 (WECPNL)	피해지역			대책
			지역명	면적(천㎡)	가구수	
소음피해 예상지역	3종	80이상 90이하	김포3동	1,945	2,051	냉방시설, 방음시설, TV수신대책

○주요활동사항

- 관계기관(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서울 지방항공청)에 소음피해 해소 대책 건의 : 10회(서면 6회, 방문 4회)

○주요건의 내용

대책 / 건의기관	근본적인 대책	수혜적인 대책	비고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고소음항공기 운항감축 ○항공기 이·착륙절차 개선(급상승, 급하강) ○항공기 항로변경 및 운항 규제 ○지방항공으로 항공기 수요분산 ○자동소음측정망 운용방법 개선 ○항공기 운항시간단축 (23:00⇒22:00)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개최 ○3종구역 피해대책사업 가시화 ○소음피해지역 외 실제피해 지역의 공동시설(학교, 노인정 등)지원 포함 ○소음자동측정전광판 설치 ○소음대책위 주민대표 참여 요망	
환경부		○정기적인 소음측정지역 확대 - 민원다발지역 2개소	
경기도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수혜대책의 가시화 협조 요망		

• 대책

- 시와 공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음피해실태 및 정밀측정 용역을 의뢰하고
- 소음 상시측정망 추가설치를 환경부에 지속 요청

5. 울산공항 문제점(조종사협회 자료)

① 바람은 주로 북동풍이 불며, 활주로 양방향 공히 접근시 낮은 고도에서 순간돌풍(Wind Shear)이 발생함(우측의 높은 산으로부터 내리치는 바람 영향임)으로 접지 조작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② 풍향·풍속 감지기 위치를 활주로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관제사가

조종사들에게 정확한 바람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함.

③ 야간 접근시 비행장 인근의 운동장 밝은 불빛이 조종사들에게 시각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음.

④ 울산 VOR 통과 후 울산공항 관제탑으로 이관되며, 공항 자체 RADAR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RADAR 유도가 불가능하여 조종사들이 "접근절차 차트"를 보면서 접근해야 함.

⑤ 공항 자체의 연료보급이 불가능함.

⑥ 활주로 길이 6,562피트로 MD82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공항임.
(포항공항은 7,000피트)

⑦ 시각선회접근(Circling Approach)으로 활주로 방향 18 접근시, 최저강하고도(MDA)가 1800피트로 3선회 이후 고도처리를 바쁘게 해야되며, 접근로상 고압선 때문에 접근각 조명장치(PAPI)의 각도가 3.3도로 높게 설정 되었음. (ICAO 표준 접근각은 3.0도임)

⑧ 울산 관제탑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⑨ '99.3.15 포항공항사고 이후 우천시의 바람 제한치가 "측풍 30놋트, 배풍 10놋트"에서 "측풍 15노트, 배충 9놋트"로 상향조정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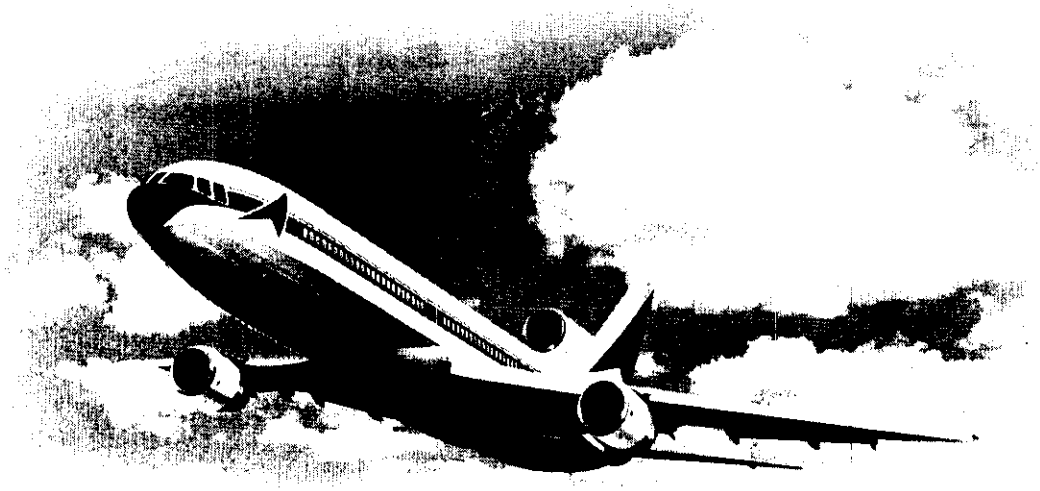
⑩ 결론

울산공항은 MD82 치항공항 중 가장 짧은 활주로이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접근저고도에서 순간돌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공항임.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첫째, 활주로 길이를 확장해야 함.

둘째, 활주로 방향 18 접근시 접근 조명시설(Approach Light)을 설치하여 야간 및 악 기상시 조정사들이 활주로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활주로 부근(적절한 위치) 관제사 조종사 가시 거리 지점에 풍향·풍속 감지기 설치.



제6절 실태조사 검토 및 분석

1. 소음측정 및 분석결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지점 중에서 항공기 운항패턴에 따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개동(농소1,2,3동, 효문동, 송정동) 지점에서 기종과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측정횟수에 대한 평균소음도(LmaxdB(A))를 구하고 각 지점에서의 기종별 이·착륙 및 운항횟수에 다른 WECPNL을 산출하여 측정한 결과 법정 항공소음 기준치(80WECPNL)에는 근접하나(최고 80WECPNL, 최저 64WECPNL) 체감소음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로 높음.

○항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소음측정) 불규칙한 기상현상으로 비행시간이 다소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주변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심리적인 안정속에 하루를 마감하고 새벽의 일을 준비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수면방해 및 불안감 조성과 학생들에게는 학습방해 등 주간대의 비행소음과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2. 공항주변의 피해 실태분석

울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청각 및 정신장애 증상(난청, 스트레스, 수면방해 등)

○가축피해(가축성장 저해 및 불임 등)

○학교수업 및 학습방해(조회시간, 하절기 창문개방시)

○토지지가 하락(전세세입자 입주기피)

○생활상의 불편(전파장애 - 전화통화, TV시청, 라이오 청취 곤란)

-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항공기 소음뿐만 아니라 어떤 소음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여부는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후, 비료, 토양환경, 종자종류와 소음정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전문가와 공동으로 관측연구해야 하며 항공기 소음 때문에 물이나 비료주기 등 관리측면이 소홀해 진다면 품질과 수확량에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소음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더불어 주민들의 근원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음으로 인한 인체, 가축,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소음으로 인한 인체, 가축과 농작물 등의 피해는 장기간의 소음노출에 의해서 일어나 일정공간에서의 장기간 관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밀한 현지조사 및 실태분석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임.

3. 울산공항 문제점 분석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국도 7호선에 인접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

○이·착륙시 남쪽에는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대단위 APT단지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울산공항 자체의 레이다(Radar)시설이 없고, 포항공항의 레이다 관제를 받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접근절차 차트"를 이용하여 이·착륙하므로 위

험 상존.

○공항자체의 연료 보급소가 없어 순간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착륙이나 빠른 회항으로 결항이 많음.

○활주로 길이가 6,562피트로 MD82기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은 공항이므로 활주로를 확장하든지 미끄럼방지시설(GROOVING) 설치가 요망됨. (500피트 활주로 연장효과 있음)

※'98.9.30 09:30 서울발 울산행 KE1603편(MD82기종) 이 활주로 초과하여 정지하여 3명이 부상한 사고 발생

- 국회 건설교통위 보도자료('99.9)참조

○공항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이 없어 남풍이 부는 하절기에는 약간의 궂은 날씨에도 결항이 많음.

제7절 실태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공항입지의 문제점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국도 7호선에 인접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

○항공기 이·착륙시 남쪽에는 석유화학 공단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대단위 APT단지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대책

○울산·경주·포항·대구 등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립 이전

2. 공항시설의 문제점

○울산공항의 자체 레이다(Radar)시설이 없고, 포항공항 레이다(Radar)관제를 받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접근절차 차트"를 이용하여 이·착륙하므로 사고위험 상존

○공항자체의 연료 보급소가 없어 순간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착륙이나 빠른 회항으로 결항이 많음.

○활주로 길이가 6,562피트로 MD82기 취항공항 중 가장 짧음.

※98.9.30 서울발 울산행 KE1603편(MD82기종)이 활주로를 초과하여 정지하여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

○울산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혼선이 발생할 경우가 있음.

○공항 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이 없어 착륙시 어려움이 있으며 남풍이 부는 하절기에는 약간의 궂은 날씨에도 결항이 많음.

⇒대책

○울산공항 레이다(Radar)시설 설치

○활주로 확장 또는 미끄럼 방지시설(Grooving)시설 설치
(500피트 활주로 연장 효과)

○울산관제탑과 부산 출발허가 관제소(Clearance Delivery) 주파수 변경

○공항 북측에 조명시설(Approach Light)설치

3. 지역주민정서의 문제점

○항공법상의 소음피해 영향도(WECPNL) 기준치(80WECPNL)를 비교하면 측정치는 최고 80WECPNL에서 64WECPNL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소음피해 사례

- 청각 및 정신장애(난청, 스트레스, 수면방해, 유아의 경기 등)
- 가축성장 저해(불임, 사산 등)
- 학교 학생수업 지장(조회시 지장, 하절기 창문개방 곤란 등)
- 토지 및 건물 값 하락(세입자 입주기피)
- 일상생활의 불편(전화통화 곤란, TV, 라디오 청취 곤란)

○공항으로 인하여 많은 강우시 침수피해 우려

⇒대책

○소음피해 실태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공인된 기관)

○학교시설(2중창, 냉·난방시설)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지원

4. 항공법의 문제점

○항공법 제107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동법시행령 및 규칙에 소음 방지대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1항 : 소음대책 수립 등

- 항공법 제10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방지대책은 국제공항(정기 국제 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수립시행하므로 울산공항은 해당되지 않음.

○항공법 시행령 제41조 : 항공소음 피해지역 등의 지정고시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개정

-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소음 기준 80WECPNL은 1993.2.3개정

⇒대책

○항공법 제107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의 기준을 명확이 함을 촉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의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국제공항에만 한정하는 것을 일반공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항공법 시행령 제41조의 공항피해 지역 등의 지정고시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지정을 2년마다로 개정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소음피해예상 소음기준을 현행 80WECPNL을 75WECPNL로 상향조정하여 소음피해대책 수립의 개정

5. 개선대책

○이상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울산광역시, 건설교통부, 환경부, 한국공항공단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였음.

제8절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내용

1. 건의사항 회신 주요내용

건의사항	회신기관 (회신일자)	회 신 내 용	비고
고소음 항공기 운항감축	• 건설교통부 (2000.1.4) • 공항공단 (2000.3.10)	• 국내공항(울산)저소음 항공기인 chapter3 기종이 운항하고 있음 • 울산공항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5조에 의한 5등급 저소음 항공기(B737, MD82, F100등)가 운항하고 있음.	
울산공항 자체 레이다 시설설치	• 건설교통부 (2000.1.4) • 공항공단 (2000.3.10)	• 2000년~2002년 사업비 202억원을 투자하여 레이다 시설도입 설치 예정 •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2000~2003년까지 레이다 설치 추진중에 있음.	
주파수 혼선 문제	• 건설교통부 (2000.1.4)	• '99.9.22 울산공항과 김해공항 주파수 혼선문제 해결	
활주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건설교통부 (2000.1.4)	• 미끄럼방지시설(GROOVING)은 2000년도에 한국공항공단에서 안전성 확보가능 여부와 기술적 검토를 위한 시험시공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될 경우 GROOVING을 설치 추진할 계획임.	
항공법 시행규칙 소음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조정	• 건설교통부 (2000.1.4) • 공항공단 (2000.3.10)	• 현재의 소음기준 80웨클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 형편상 소음기준의 하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현재의 80웨클의 경우에도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만의 소음대책에 5,2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75웨클로 조정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회신기관 (회신일자)	회 신 내 용	비고
활주로 확장	• 건설교통부 (2000.1.4)	• 북측의 하천과 남측의 도로시설 등의 지형여건으로 확장이 곤란한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임.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문기관 실태조사 용역	• 건설교통부 (2000.1.4) • 공항공단 (2000.3.10) • 울산광역시 ('99.12.28)	• 2000년도에 소음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 소음자동측정망, 전광판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임. • 2000년 중에 울산공항주변소음피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 • '98.5월부터 울산공항주변 10개 지점에 항공기 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2000년도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울산공항주변 소음분석 및 대책방안 강구"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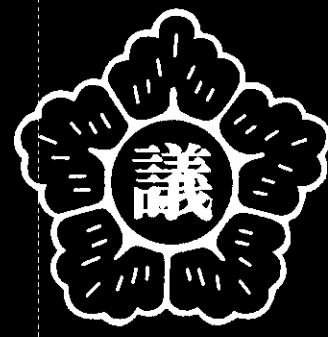
제9절 전국 공항현황

(조사일:'99.8)

연번	공항명 (공항전화번호)	공항 소재지	개방일 (인수일)	활주로 (m) 길이	활주로 (m) 폭	공항면적 (㎡) (천평)	'98년 이용자수 (천명)	1일 운항 편수	비고
1	김포국제공항 02-660-211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3	'58.1.30 ('80.7.1)	3,600 3,200	45 60	7,317,640 (2,214)	29,296	575	
2	김해국제공항 051-972-3010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76.8.1 ('83.5.6)	2,740	45	1,373,936 (416)	7,600	145	
3	제주국제공항 064-742-3011	제주시 용담2동 2002	'58.1 ('85.9.1)	3,000 2,000	45 45	3,014,816 (912)	7,470	140	
4	대구공항 053-982-1459	대구시 동구 지저동 400-1	'62.7.4 ('90.6.28)	2,755	45	67,474 (204)	1,800	43	
5	광주공항 062-940-0214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704-13	'64.1.10 ('90.6.28)	2,740	45	116,564 (35)	2,172	35	
6	울산공항 052-288-7011	울산시 북구 송정동 522	'70.22.20 ('90.6.28)	2,000	45	883,740 (267)	1,199	39	'73.1.23 - '84.7.21 휴항
7	원주공항 0372-344-331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97.2.28 (〃)	2,740	45	31,391 (10)	87	4	부산3회운항, 군사용
8	속초공항 0396-671-0802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30	'70.2.3 ('90.6.28)	1,560	30	140,588 (42)	319	11	국제공항건설중
9	강릉공항 0391-653-1035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 113-4	'61.10.2 ('90.6.28)	2,740	45	69,727 (21)	627	17	
10	청주공항 0431-210-63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97.4.28 (〃)	2,740 2,740	60 45	1,313,481 (397)	300	5	
11	포항공항 0562-284-4767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402-1	'70.3.13 ('90.6.28)	2,100	45	61,937 (19)	785	27	
12	예천공항 0584-653-9301	경북 예천군 유천면 대산리 88	'89.12.16 ('90.6.28)	2,740	45	3,576 (1)	217	8	확장계획

연번	공항명 (공항전화번호)	공항 소재지	개방일 (인수일)	활주로 (m) 길이	활주로 (m) 폭	공항면적 (㎡) (천평)	'98년 이용자수 (천명)	1일 운항 편수	비고
13	사천공항 0593-852-0768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720-1	'70.2.13 ('90.6.28)	2,740 2,740	45 45	16,422 (5)	765	17	
14	군산공항 0654-471-5051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5-54	'71.3 ('92.11.14)	2,740 2,440	45 23	94,448 (3)	288	11	
15	여수공항 0662-683-7997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72.5.23 ('90.6.28)	1,550	30	396,748 (120)	684	25	
16	목포공항 0693-464-0086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374-20	'92.5.25 (〃)	1,600	30	112,255 (34)	377	14	

제 6 장



예산결산심의사항

- 제 1 절 '98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 2 절 '97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건
- 제 3 절 '97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제 4 절 '99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 5 절 '98 제3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 6 절 '99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 7 절 '99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 8 절 '98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 제 9 절 '9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10절 2000 세입 · 세출 예산안
- 제11절 '99 제3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12절 '99 제4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13절 2000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 제14절 2000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

제1절 '98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9.16(구청장)

나. 심의기간 : '98.9.24 ~ 9.30

다. 의결일자 : '98.9.30(제14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2.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98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42,654,199	37,975,720	4,678,479	12.3
일 반 회 계	40,245,799	35,588,205	4,657,594	13.1
특 별 회 계	2,408,400	2,387,515	20,885	0.8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2,408,400	2,387,515		0.8

○기정예산액은 '98당초예산임.

3.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출어 주신 윤두환의장님과 박춘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5억2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400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8,800만원보다 45억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5개의 특별회계는 24억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3억8,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당초 379억7,500만원보다 10.6%가 증가한 42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는 IMF한파에 의한 사업소세의 대폭 감소로 3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진료비수입, 이자수입 등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총26억5,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 등록세의 급격한 감소로 자치구재원 조정교부금이 45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추가 내시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장애인복지시설비 등 121건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57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200만원과 관서운영비 1억1,500만원, 경상적경비 3억3,3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시 삭감조치하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98억6,500만원보다 59억3,500만원이 증가된 158억, 자체사업이 당초 59억8,200만원보다 3억8,300만원 삭감된 55억9,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 158억4,700만원보다 55억5,300만원이 증가된 총 2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관별로는 일반행정비는 184억8,800만원, 사회개발비는 90억4,100만원, 경제개발비는 105억3,100만원, 민방위

6 (제14회-본회의 제1차)

비는 12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7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후 지난 98년9월5일자 보건복지부소관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비 및 자녀학비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총 1억3,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700만원으로 총 1억5,20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에 1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7억4,3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성립 후 불가피하게 경정 하여야할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정리하는 제2회 예산임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단위:천원)

회계별		기정예산액(당초)	금회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7,975,720	42,654,199		317,623	0.7	814,857	1,132,480	42,654,199	100	1,275,052
일반회계		35,588,205	40,245,799		315,823	0.8	743,724	1,059,547	40,245,799	94.3	1,202,809
특별회계		2,387,515	2,408,400		1,800	0.1	71,133	72,933	2,408,400	5.7	72,24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7,380	87,380		0	0	36,681	36,681	87,380		2,621
	의료보호기금	933,952	1,079,861		0	0	0	0	1,079,861		32,395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8,300	149,020		0	0	31,456	31,456	149,020		4,470
	주차장	124,830	122,106		1,800	1.5	2,996	4,796	122,106		3,663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970,033		0	0	0	0	970,033		29,094

제2절 '97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9.2(구청장)

나. 의결일자 : '98.11.4(제15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 심사기간 : '98.10.26 ~ 10.29

○ 심사결과 : 원안 승인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진한걸	강혁진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 세입 결산액 : 25,834,674천원

○ 세출 결산액 : 20,149,994천원

○ 세계 잉여금 : 5,684,680천원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 세입에 있어

- '97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52,02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5,987,173천원의 4.0%로써 그 내용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79,927천원, 무재산이 65,535천원, 거소불명이 40,041천원, 고질적 체납이 83,737천

원, 기타가 782,788천원임.

- 당해 연도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10% 정도이고 과년도수입 중 지방세 미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4%로 매우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의 미수율은 징수결정액대비 35.3%이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중 잡수입 계정에 포함된 개발부담금이며 이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은 544,900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33,179천원으로 미수율이 98%에 달함으로,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수율은 높여가나 결손처리 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입장부를 관리함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관련 장부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의 재산임대 수입 잡수입 계정관련 장부의 관리가 다소 미흡함으로 특히 해당 실·과와 징수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북구청이 신설구청이다 보니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미수납액이 장부에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었으므로 경리계의 장부뿐만 아니라 다른계의 장부도 중요하므로 장부 수정시나 월 마감, 년 마감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자금운용 상황에 있어 '97년도 신종환매체에 예치한 금액은 월평균 1,763백만원 정도이며, 발생된 수입이자를 79,616천원임.

  그러나 월평균잔액 10%로 계산해보면 약 6개월에 90,820천원 정도의 수입이자가 발생되어야 함. 즉 기대 수입이자와 실제 수입이자가 약 11,204천원 정도 차이가 남. 이는 '97년도 중 3건을 중도 해약함으로 인하여 상실된 수입이자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각 실·과에 배정된 자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를 살펴보면 28,56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계좌에서 발생된 수입이자가 6,465천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좌에서 발생된 수입이자가

17,588천원임.

이 수입이자도 평균잔액을 환산해보면 세입계좌 평균잔액이 1,293,156천원 세출계좌 평균잔액이 3,511,590천원 정도임.

이 유휴자금을 보다 금리가 높은 예금에 예치하였으면 발생되는 이자가 지금보다 2억 정도는 더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에 집중적으로 예치하고 자금배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세출예산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일시 차입금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세출에 있어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 사업집행부서,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에도 수시로 검토하여 미집행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기타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지출과목에 사용하여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

- 결산서와 실 · 과 추산부 및 경리계 수기장부를 대사해 본 결과 실 · 과 추산부와 경리계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원인은 각 부서간 또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각종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대조작업 소홀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대조확인 함으로써 장부 및 전산입력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서의 예산액 산출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다르게 지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

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실지 사용이 예상되는 내역과 금액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5. 심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에 있어

- 지방세 부과 시에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과된 세금은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25,987,173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24,895,062천원으로 95.8%의 수납률로 높은 편이나 미수납액이 1,092,111천원이며 미수납액 중 세무공무원이 이중부과나 부과착오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되돌려 준 과오납액 3,961천원과 결손처분액 26,132천원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1,065,979천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 예산 운용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의견요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금리 예금을 예치하지 않고 각 실·과에 배정된 자금으로 '97년도 신종 환매채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2억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자금관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오히려 감소 하였는 바 앞으로는 자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음.

○ 세출에 있어

- 총무과 예산에 있어 사회진흥의 민간이전 예산중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자산 취득비 예산집행에 있어 1,333,190원을 불용예산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신간도서 등을 구입하여 도서 대여사업을 활성화하여야 되고, 또한 도서구입시 일반기업에서 단체로 구입하면 15%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민방위 유공자 산업시찰 취소로 4,000,000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예산절감으로 3,132,820원과 민방위 교육반수 감소로 6,806,000원이 불용액 처리와 '97년도 을지훈련 미실시로 일반수용비 중 2,528,360원이 불용되어 총 16,467,180원이 불용 처리한 것은 열악한 북구재정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례이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사회복지과 소관 부분에서 구체적인 표기 및 설명이 없어 위원들의 자료파악에 혼돈을 초래하고 결산서 내역상 오자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는 형식적인 결재 관행으로 업무숙지와 연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있어 간부공무원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 북구청 공무원의 급량비 지출에 있어 각 부서에 전체 30건에 40,39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 38,355,000원 지출하고 3,002,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선거관리급량비 등 6건은 집행을 할 수 없어 3,002,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24건은 잔액없이 처리 100% 집행되어 이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예산 즉, 국내여비, 급량비를 잔액없이 집행한 것은 예산절약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공무원부터 예산을 1원이라도 아끼는 예산절감의 의지가 부족함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촉구함.

제3절 '97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9.16(구청장)

나. 의결일자 : '98.11.4(제15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8.10.26 ~ 10.29

○심사결과 : 원안 승인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진한걸	강혁진	김수헌, 박춘환, 박광식, 류재건, 윤종오

2. 주요골자

○지출 결정액 : 93,017,710천원

○지출원인행위액 : 89,710,390천원

○지출액 : 89,710,390천원

○불용액 : 3,307,320천원

○지출건수 : 벼멸구 긴급방제 외 12건

3. 심의결과 : 원안 승인

4. 심사의견 요지

1) 예비비 지출은 총13건으로 이중 벼멸구긴급방제비 1,620,000원이 지출된 1건은 예비비로 지출함은 적정함.

2) 보건소의 방역활동인부임, 청사관리, 직급보조비 24,991,000원과 사회복지과의 4/4분기 노인활동비 1,200,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것과 건설도시과의 보안등 전기요금 9건 16,230,710원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3) 이와 같은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예산 운용 기본방침에 부적정함.

4)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97년10월2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4일 의결되었음에도 사회복지과의 4/4분기 경로승차요금교부금 45,668,680원과, 4/4분기 노인활동비 1,200,000원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97년10월6일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승인요구 하였고, 10월14일자로 지출승인되어 11월21일 지출된 것은 추경예산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어떤 행정행위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예산집행이며

5) 보안등 전기료 9건 16,230,710원의 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97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되었으며

6)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집행하고 보건소의 방역활동인부임 2,979,000원과 4/4분기 경로승차요금 교부금 328,32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으로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정집행임.

7) 예산 편성운용에 있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간부공무원들

은 신중하고 철저한 결재로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시정촉구와 동시 향후 이와 같은 사례 발생시는 승인불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함.

제4절 '99 세입 · 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11.20(구청장)

나. 의결일자 : '98.12.18(제17회정기회 제3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8.12.4 ~ 12.17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박춘환	류재건	김수헌, 강혁진,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 '99년도 일반 · 특별회계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99예산액 (A)	'98예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율(%) C/B
합 계	39,428,806	37,973,702	1,455,104	3.83%
일 반 회 계	37,803,631	35,586,187	2,217,444	6.23%
특 별 회 계	1,625,175	2,387,515	△762,340	△31.9%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625,175	2,387,515	△762,340	△31.9%

3. 제안설명

○**북구청장 조승수** :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선자치 원년의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해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주요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신설 북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구정에 대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신설된 우리 북구로서는 올 한해 동안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구정기반을 나름대로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는 21C 환경에 대비하는 새로운 자치경영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안팎의 급변하는 자치환경과 유례없는 변화가 요구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아 주민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과 일회적인 일만을 골라하는 인기행정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으며, 모든 구정을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더디더라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의원 여러분 및 주민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추세를 앞서 인식하고 지방화시대의 마인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짧았던 지난 5개월여 동안 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결과 이젠 행정 스스로의 자발적 개혁분위기가 상당부분 확산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행정개혁은 개혁자체가 목적가치가 아니라 이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 지방행정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뒤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주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자치행정의 새로운 위상을 대 내외에 과시하였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취임 전부터 견지해 온 주민참여에서 비롯되고 주민참여로 종결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철학을 그 동안의 일관된 이념적 가치로 고수하면서 주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편,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추세와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선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 아래 자치구로서는 가장 적은 인력의 신설 구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키 위해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체계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정개혁의 구체화와 함께 올해 우리 구정의 핵심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경제문제라고 하겠습니다. IMF

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입은 우리지역의 근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을 겪고 있는 바, 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회생 지원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지만, 대책 없는 정리해고를 반대해 온 사실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저의 지론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기업의 정리해고는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 나아가 우리 산업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문제와 관련, 재정운영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는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본계획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 및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전체 주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명실상부한 주민 속의 자치공동체를 구체화하는 자치행정의 미래를 타진코자 합니다.

한편, 21세기의 이슈는 단연 환경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 속에 주거문화도시, 중추산업도시, 관광해양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구현돼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 교육, 복지환경은 그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기업의 도태유형이 이젠 우리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년 반의 짧은 연륜의 우리 북구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는 길은 바로 경쟁력입니다.

향후 지난 시절 관행적인 구호성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가능한 행정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21세기 자치구정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선구정의 3대 방침으로 설정한 자치, 환경, 복지 공동체구현을 정점으로 행정전반의 실천목표를 가시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고감도의 감동행정을 펼칠 것임을 의원 및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주민 우선의 의정상을 구현키 위해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상담실 개설, 휴일회의수당 반납 등 주민 및 언론 등의 호평 속에 선진의회의 위상을 새로이 창출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IMF구제금융의 체감지수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한 가운데, 경제위축심리의 지속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됨과 함께 자치재정의 존립마저 새로이 가늠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고

귀한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불황을 반영하듯 99년도 세입은 지방세 2억2,000만원의 감소와 특별회계 5억원의 감액, 광역시 조정교부금의 36억원의 감소 등 대폭적인 감소요인이 생겼으나, 북구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40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376억원, 특별회계 18억원, 총 394억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건전 재정과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 인건비는 기본급 동결과 함께 체력단련비 250% 7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의 구비 부담 분으로 충당하고 93억4,0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는 '98대비 20% 절감운영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체 반영치 않고, 일부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8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달천농공단지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작업 투자와 함께 북구청사 신축에 시비보조금을 전적으로 반영했음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 신규사업을 한정하여 총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구의 기반마련에 계속 주력하여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북구창출에 매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북구청사 신축에 시비 38억원 지방채 40억원 등 7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당초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투자계획은 139억원이 집행되야만 예정대로 청사건립이 추진될 수 있어 보조금 확보에 큰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 21C를 앞두고 지역적 특성을 역동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최적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발전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투입의 기초를 마련코자 북구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구정운영의 지향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는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인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밀착행정의 구현을 위한 무료 장례지원시책 관련예산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99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수,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규제제도를 과감히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0억원 중 국비 11억원,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최근 실직자 대량 양산

으로 노숙자에 대한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지역 어물동에 금천교 재가설공사 3억2,000만원, 효문동사무소 앞 외 4곳에 버스승강장 설치 6,500만원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비롯 내년도 각종 공사비에 총 18억원의 한정된 예산을 6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역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재원절감과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증진을 동시에 취하는 새로운 사업시행방안을 전국 최초로 시도키 위해, 공공근로자를 자체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코자 사업직영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예비비 3억8,000만원 등 예산 전 부문에 심도 높은 자체심의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99당초예산 편성과 관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유의 경기침체로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이 대폭 격감된 반면, 신설자치구에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는 너무나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민선자치구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전반적으로 수용치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시비등 의존재원의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내부적으로 경영마인드 확립을 통해 최대한 경비절감을 기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그 시기적 상징성과 함께 우리 구정이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구축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 속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저 자신이 먼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구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쾌적하고 살맛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비판어린 충고 속에 구정주요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구정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는 지혜로 자생력과 경쟁력있는 자치북구 건설만이 작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신념아래, 우리주민의 세금으로 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전 북구공무원은 선진북구의 새로운 장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금회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9,428,806		1,233,438	3.1%	666,813	1,872,751	39,428,806	1,182,924
일반회계		37,803,631		1,226,684	3.2%	636,013	1,835,197	37,803,631	1,134,169
특별회계		1,625,175		6,754	0.4%	30,800	37,554	1,625,175	48,755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24,332	24,332	126,178	3,785
	의료보호기금	1,042,301				-		1,042,301	31,270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89,695		400	0.4%	1,140	1,540	89,695	2,690
	주차장	140,001		6,354	4.5%	5,328	11,682	140,001	4,200
	농공단지조성사업	227,000				-		227,000	6,810

제5절 '98 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8.12.14(구청장)

나. 의결일자 : '98.12.26(제17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8.12.21 ~ 12.24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박춘환	류재건	김수헌, 강혁진,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 '9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98예산액	기정예산액 (제2회)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45,613,554	42,654,199	2,959,355	6.9
일 반 회 계	43,034,696	40,245,799	2,788,897	6.9
특 별 회 계	2,578,858	2,408,400	170,458	7.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2,578,858	2,408,400	0	0

○기정예산액은 '98 제2회 추경예산임.

3.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9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5,935만5,000원이 늘어난 456억1,355만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8,897만7,000원이 늘어난 430억3,46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로 1억7,045만8,000원이 늘어난 25억7,8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3억9,802만4,000원이 늘어난 105억6,2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1,615만9,000원이 늘어난 56억5,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7,471만4,000원이 늘어난 158억7,3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27억8,889만7,000원이 늘어난 430억3,4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8,373만2,000원을 삭감한 161억2,2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4,774만1,000원이 늘어난 235억2,8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21억8,246만8,000원이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6,52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2,488만8,000원이 늘어난 33억8,4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83억4,466만5,000원 편성하여 전체의 4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9억1,435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0.7%를 점하고 있고, 경제개발비는 111억5,369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5.9%를 점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12억3,75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8,443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삭감조치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98예산액	기정예산액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계		45,613,554	42,654,199		46,590	3,323,364	3,369,954	45,613,554	100	1,368,339
일반회계		43,034,696	40,245,799		46,590	3,242,825	3,289,415	43,034,696	93.7	1,291,040
특별회계		2,578,858	2,408,400			80,539	80,539	2,578,858	6.3	77,299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7,380	87,380			36,681	36,681	87,380	0.2	2,621
	의료보호기금	745,070	1,079,864			7,606	7,606	745,070	2.5	22,352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49,020	149,020			31,456	31,456	149,020	0.3	4,470
	주차장	122,106	122,106			4,796	4,796	122,106	0.3	3,663
	농공단지조성사업	1,475,282	970,033			-	-	1,475,282	3.0	44,193

제6절 '99 제1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4.21(구청장)

나. 심의기간 : '99.4.26 ~ 4.30

다. 의결일자 : '99.4.30(제21회정기회 제5차본회의)

2. '99년도 제1회 일반 ·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99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비고
합 계		46,148,070	100.0	39,428,806	100.0	6,719,264	
일 반 회 계		43,846,518	95.0	37,803,631	95.9	6,042,887	
특 별 회 계		2,301,552	5.0	1,625,175	4.1	676,377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0.3	126,178	0.3	-	
	의료보호기금	1,184,411	2.6	1,042,301	2.6	142,110	
	생보자생활안정자금	92,087	0.2	89,695	0.2	2,392	
	주 차 장	140,001	0.3	140,001	0.4	-	
	농공단지조성사업	758,875	1.6	227,000	0.6	531,875	

3.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억1,926만4,000원이 늘어난 461억4,80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4,288만7,000원이 늘어난 438억4,65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7,637만7,000원이 늘어난 23억1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41억9,219만3,000원이 늘어난 69억9,954만7,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 지방행정 인센티브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억1,062만3,000원이 증액된 49억1,656만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8억8,007만1,000원이 증액된 65억6,151만8,000원으로서 총 16억9,069만4,000원이 늘어난 114억7,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60억4,288만7,000원이 늘어난 438억4,6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1,056만2,000원이 증액된 185억5,505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9억4,675만7,000원이 늘어난 236억7,069만4,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19억8,427만6,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29억6,248만1,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1,038만5,000원이 감소된 10억9,5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억7,637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3억155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39만2,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변경분 1억4,2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융자금이자수입 487만1,000원과 지방채발행승인액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99예산액	기정예산액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계		46,148,070	39,428,806		777,609	1,662,858	2,432,967	46,148,070	100	1,384,442
일반회계		43,846,518	37,803,631		777,609	1,620,765	2,390,874	43,846,518	95.0	1,315,396
특별회계		2,301,552	1,625,175			42,093	42,093	2,301,552	5.0	69,046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126,278			24,332	24,332	126,178	0.3	3,785
	의료보호기금	1,184,411	1,042,301			2,147	2,147	1,184,411	2.6	35,532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2,087	89,695			3,932	3,932	92,087	0.2	2,762
	주차장	140,001	140,001			11,682	11,682	140,001	0.3	4,200
	농공단지조성사업	758,875	227,000			-	-	758,875	1.6	22,767

제7절 '99 제2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8.18(구청장)

○수정안 제출 : '99.8.31

나. 심의기간 : '99.9.1 ~ 9.4

다. 의결일자 : '99.9.4(제25회정기회 제4차본회의)

2. '99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99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비고
합 계		51,222,914	100.0	51,157,453	100.0	65,461	
일 반 회 계		48,684,041	95.1	48,684,041	95.2	-	
특 별 회 계		2,538,873	4.9	2,473,412	4.8	65,461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0.2	126,178	0.2	-	
	의료보호기금	1,320,271	2.6	1,320,271	2.6	-	
	생보자생활안정자금	92,087	0.2	92,087	0.2	-	
	주 차 장	176,001	0.3	176,001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824,336	1.6	758,875	1.5	65,461	

3. 제안설명

4 (第25回-本會議 第1次)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 기획감사실장 이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 하시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억938만3,000원이 늘어난 511억5,745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억3,752만3,000원이 늘어난 486억8,40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186만원이 늘어난 24억7,3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수수료수입 등 2억3,491만5,000원이 늘어난 72억3,446만2,000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로 양정동 소방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10억7,138만8,000원이 늘어난 119억9,32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비 11억3,794만7,000원을 포함하여 14억5,670만1,000원이 증액된 63억7,326만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상안교 ~ 달천농공단지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원과 동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 등을 포함하여 15억7,451만9,000원이 증액된 81억3,603만7,000원으로서 총 30억3,122만원이 늘어난 145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48억3,752만3,000원이 늘어난 486억8,40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3,679만원이 증액된 189억3,912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7억2,516만1,000원이 늘어난 286억7,846만9,000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33억7,934만8,000원 증액하고 자체사업비는 23억4,581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억5,345만3,000원이 감소된 5억1,9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7,186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4억7,341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3,586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수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년8월18일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액이 부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차입이자 6,546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99예산액	기정예산액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계		51,222,914	46,148,070		548,005	599,002	1,147,007	51,222,914		1,534,724
일반회계		48,684,041	43,846,518		548,005	519,771	1,067,776	48,684,041		1,460,522
특별회계		2,538,873	2,301,552			79,231	79,231	2,538,873		74,202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126,178			24,332	24,332	126,178		3,785
	의료보호기금	1,320,271	1,184,411			2,147	2,147	1,320,271		39,608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2,087	92,087			3,932	3,932	92,087		2,762
	주차장	176,001	140,001			15,482	15,482	176,001		5,280
	농공단지조성사업	824,336	758,875			35,485	35,485	824,336		22,767

제8절 '98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10.4(구청장)

나. 의결기간 : '99.10.16(제2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9.10.8 ~ 10.13

○심사결과 : 원안승인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박광식	윤종오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진한걸

2. 주요골자

○세입 결산액 : 48,559,179,136원

○세출 결산액 : 34,620,699,030원

○세계 잉여금 : 13,938,480,106원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 요지

○세입에 있어

- 세입장부를 관리함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관련 장부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의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계정관련 장부의 관리가 다소 미흡함으로 특히 해당 실·과는 징수계와 의사소

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미수납액이, 장부에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었으므로 경리계의 장부뿐만 아니라 다른 계의 장부도 중요하므로 수정시나 월 마감, 연 마감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세출에 있어

-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 사업집행부서,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중에도 수시로 검토하여 미 집행될 것이 확실한 사업 및 지출과목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지출과목에 사용하여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실·과 추산부 및 경리계의 원인행위부를 결산서와 상호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금액이 예산보다 지출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등 장부기록의 부실함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예산편성시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실제 사용이 예상되는 내역과 금액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5. 심사의견 요지

○ 세입부문에 있어

- 지방세 부과 시에는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부과된 세금은 당해 연도에 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11,408,268,29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676,649,690원으로 93.6%의 수납률로 높은 편이

나 미수납액이 731,618,600원이며 미수납액 중 세무공무원이 이중부과나 부과착오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세금을 되돌려 준 과오납액 25,663,660원이며, 결손처분액 54,255,380원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77,363,220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 예산 운용상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의견요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외수입의 미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7.5%이며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 중 잡수입 계정에 포함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의 미수율이 99%에 달하며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수율을 높이거나 결손처리할 것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앞으로는 자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음.

○세출에 있어

-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에서 구체적인 표기 및 설명이 없어 위원들의 자료파악에 혼돈을 초래하고 결산서 내역상 오자가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는 형식적인 결재 관행으로 업무숙지와 연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난 '99년10월11일 13:50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설명시 다른 자료를 보고하여 정회 소동이 벌어져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예산절감 및 불용액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실과 예산결산 승인서 없이 의회에 보고 하는가 하면,

  회기 중에 총무사회국장 공식사과 하는 등 특히 간부 공무원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관리 186,583,000원 중 지출액 180,521,230원 불용액 6,061,770원 예산운영 5,641,644,000원 중 지출액 5,627,109,840원 불용액 14,534,160원, 총무관리 365,367,000원 중 지출액 357,772,820원

불용액 7,594,180원, 자치행정 2,873,856,000원 중 지출액 2,053,150,170원 불용액 1,093,500원, 사회진흥 497,707,000원 중 지출액 479,260,570원이고 불용액 18,446,430원, 사업예산 476,531,000원 중 462,642,070원이고 불용액 13,883,930원 등

- 열악한 북구재정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사례이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 예산전용사항 중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산정용역에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발생 되었으며 앞으로는 구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함.

제9절 '98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10.4(구청장)

나. 의결일자 : '99.10.16(제2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9.10.8 ~ 10.13

○심사결과 : 원안승인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박광식	윤종오	김수헌,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진한걸

2. 주요골자

○예산액 : 420,697,000원

○지출액 : 271,510,140원

○이월액 : 73,863,450원

○불용액 : 75,323,410원

○지출건수 :염포동 편입경비외 10건

3. 심의결과 : 원안승인

4. 심사의견 요지

1) 예비비 지출은 총12건으로 이중 폭풍·설 피해복구 사업 579,000원이 지출된 1건은 예비비로 지출함은 적정함.

2) 염포동 편입 경비, 북구청사 현상공모 심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사례, 잠수교 및 국도 31호선 복구공사, 매곡동 마동부락 진입 소교량 복구공사, 민방위의 날 경비지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농소1동 호계천 석축 복구공사건 등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 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예산 운용 기본방침에 부적정함.

4) '98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어떤 행정행위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집행임.

5) 예비비 지출을 결정, 집행하고 시례잠수교 및 국도 31호선 복구공사 33,000,030원, 세균성 이질환자 치료비 및 사시약구입비 31,711,9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으로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정 집행임.

6) 예산 편성운용에 있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전공무원들이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시정 촉구함.

제10절 2000 세입 · 세출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11.20(구청장)

○수정안 제출 : '99.12.2

나. 의결일자 : '99.11.20(제29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9.12.4 ~ 12.18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 2000년도 일반 · 특별회계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0예산액(수정) (A)	2000당초(안) (B)	증 감	
				금 액 C(B-A)	비율(%) C/B
합 계		39,297,461	39,230,442	67,019	0.17
일 반 회 계		37,773,701	37,706,682	67,019	0.17
특 별 회 계		1,523,760	1,523,760	-	-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	-
	의료보호기금	1,084,037	1,084,037	-	-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6,131	96,131	-	-
	주 차 장	141,998	141,998	-	-
	농공단지조성사업	101,484	101,484	-	-

3. 제안설명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항상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토로하며 구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가운데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북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 한해는 실로 하루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지역이 조속히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진지하게 우리 구정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이며, 어떻게 주민과의 공동체 구정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 온 날들이었습니다.

짧은 자치구정의 이력 속에 열악한 도시기반, 산만한 듯한 지역특성, 희박한 정체의식, 저하되어 있는 문화수준 등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각종 기반의 낙후성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자람은 동시에 희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1세기 우리북구는 희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을 터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꿈이 있는 자치공간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당장의 다급함과 편의를 위한 즉흥적인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작은데서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그동안 우리 구정의 기조로 설정해 왔던 자치, 환경, 복지 공동체의 구체적 모습들이 가시화 되는 새로운 자치공간의 초석은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구민 여러분!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20세기 우리 지방사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가 거보를 내딛었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의 큰 흐름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주민본위의 행정을 요구하는 행정대변혁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지방자치의 연륜 속에 다소의 부작용도 없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일부의 부작용을 확대 부각시켜 자치 회의론까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보완의 대상이지, 폐기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20세기가 가기 전에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우리 북구가 자치 구로 출발케 된 것은 큰 축복이며, 21세기를 우리의 의지로 열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제도적 토대로만 지방자치

의 미래가 보장될 수는 없으며, 우리 모두의 내적인 결집과 자치역량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행정도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발빠른 행정, 신속 정확한 기업적 경영마인드만이 자치시대 경쟁력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민도의 수준은, 행정이 잠시라도 안이함과 관행의 타성으로 역행할 경우, 냉혹한 질책과 외면만이 기다리고 있음은 물론, 행정이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추락할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계층과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지역의 높은 주민의식 수준은 우리 구정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은 물론, 합리적 정책결정과 주민의사의 굴절없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명분과 합리성을 겸비한 행정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역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울산 핵발전소 추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이슈는 단연 환경입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는 더더욱 환경문제가 지역의 장래를 결정짓는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직시할 때, 비록 우리 구의 직접적인 현안은 아니지만, 북구의회 의원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전 의원님들께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민의사를 결집하여, 원전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서 울산원전 전면 재검토의 계기를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을 불과 수Km 가까이 두고 있어 지난여름 강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역학조사까지 실시된 바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는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해의 대명사로 얼룩진 울산의 이미지를 급기야 핵위험지역, 방사능오염의 위협 속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결코 지역이기주의의 논리는 아닙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절전기술과 설비를 개발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전력의 독점생산 · 독점판매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및 구민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바쁜 일정 속에 우리 북구는 나름대로 내실 있는 자치기반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 모두의 여망을 담은 신청사가 첫 삽을 옮겨, 오는 2001년이면 편리한 용도와 시설로 만남의 장, 휴게공간으로서 주민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북구의 요람이 마련되어 북구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 현재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90%이상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달천농공단지가 내일이면 최종준공식을 가지게

되어, 조만간 우리지역에 건립될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16만여평 규모의 매곡지방산업단지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중추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우리북구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내는 장기발전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내년 1월 완료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구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민의 꿈을 현실화시키는 부문별, 단계별 기본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과 계획들은 의원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민 여러분들의 결집된 성원 없이는 결코 타진조차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행정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외국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업무보다는 사람의 수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수여곡절 끝에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인력을 유지케 되어, 향후 끊임없는 조직효율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조직효율성은 바로 구성원 역량의 육성에 귀착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제반여건으로 출발한 자치단체의 최종 우열의 차이는 결국 인적자원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실시한 직원해외배낭여행과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학원 위탁교육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내년에도 더욱더 전문가형 공무원육성에 역력을 쏟아 선진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구청장까지 전면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행정생산성을 높이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부터 타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끌며 시행해 온 구 직영 공사는 올해도 계속 시행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말 북구 CIP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심벌 및 캐릭터의 상표등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함은 물론, 우리지역 생산물에 대한 구차원의 품질보증제 등을 비롯한 캐릭터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역량 제고와 경영행정의 새로운 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새 천년의 여명을 여는 해맞이 축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연례화하여 강동해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북구의 상징적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

립 기본구상 용역이 올해 중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공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종합산업박물관으로,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하여 21세기 우리북구의 대표적 산업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99년을 보내면서 막상 아쉬움이 먼저 앞서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자신감을 가진 것 또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좌절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우리로서는, 이제 20세기의 경험을 딛고 자치초년기의 값진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세기, 새로운 환경의 자치행정을 열고자 합니다.

앞서 심각한 경제위기 영향 속에서 고통받는 구민들의 현실에 자치단체로서 실질적인 고통분담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지난 한 해 구민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던 행정이 오히려 그 거리감을 넓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온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과 자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0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21세기 자치행정의 참된 의미를 모색코자 합니다.

신설 3년의 미완의 자치구, 20세기의 북구의 모습이 가능성으로 대변되었다면, 21세기 북구의 모습은 진정한 참여자치의 장, 공동체 구정의 모범을 통한, 가능성이 현실로 체화 되는 일류자치구를 지향하는 바입니다.

21세기 망망대해에서 우리 북구호의 순항을 위해 의원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동대의 역할을 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먼저 의원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라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초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듯이, 새해에도 의원여러분들의 적시적재의 지적과 애정 어린 비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방법의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인식하는 일부 편협된 시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까지 외부에 비쳐졌던 시간들은 보다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여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21세기를 개척하기 위해 전 구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21세기의 서막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우리 공동체를 가꾸면서 3개의 권역별 특성이 제대로 어우러지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의 바

탕 위에서 역동적인 자치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범한 행정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새해 살림에 대해,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7억1,000여만원, 특별회계 15억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여원이 적은 총 392억3,000여만원입니다.

지난해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4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8억원 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10억8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이며, 조정교부금이 131억200만원, 보조금이 102억9,0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물건비에 각각 92억3,000만원, 98억7,000여만원, 주민복지 및 사회보장 등 각종 민간활동 지원을 위한 이전경비는 86억2,000여만원을,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93억2,0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융자금 등을 포함하여 9,900여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이 1억8,400여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이 9,600여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4,200여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지방채 상환 등을 포함하여 1억1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21세기에도 우리 지방행정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는 구정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인식아래, 우리 구는 특히 이를 위한 자치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우선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차질 없는 공정을 확보키 위해 잔여부지 매입비등 시비 33억여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광역시에서 발행해 오던 시정소식지 대신 자체 구정홍보지 발행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과 행정기관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코자 합니다.

21세기 자치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정보화의 저변을 확대코자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 사업 시스템 도입을 위해 2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며, 정보화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북구홈페이지의 활용방안을 높여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운용, 주민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의 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생활문화공간의 창출로 이는 주민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로 2000년을 북구 문화·체육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관문성 정비에 3억원, 우가산 유포봉수대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역사교육의 장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간을 이용한 야외순회공연 등을 수시로 기획하여 주민들이 쉽게 문화적 공간을 접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문화관광을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지원, 마을문고 육성지원 등으로 문화북구의 기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생태 복원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먼저 1억원을 계상하여 동천 생태공원화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북구문화원 건립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001년 신청사 개청에 맞춰 북구 향토지 발간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푸른 잔디구장을 조성코자 농소미니 운동장과 잔디구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비롯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총 5,300만원을 올렸으며, 시차원의 실업팀 육성에 맞춰 우리도 내년 사격실업팀을 창단코자 소요예산의 50%인 1억1,000만원을 비롯 각종 체육행사의 민간보조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공간은 환경이 살아 숨쉬는 녹색주거공간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계 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원, 무룡고개 소공원 정비에 7,200만원, 염포로 가로수 갱신에 7,100만원, 강동산하 소공원 조성을 비롯 공원녹지 조성에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푸른 북구를 위해 매진코자 합니다.

도시 녹화사업을 위한 임도신설 및 보수, 23ha에 이르는 각종 조림사업, 2km 우리꽃길조성, 기타 육림 등에 총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 구입에도 약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거공간의 각종 폐기물 관리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활용의 활성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재활용 상설교환 판매장 건립에 2억5,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전 공동주

택의 90%까지 확대하여 전량 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사료화 시설의 건립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로포장 5건에 1억원, 벼공동육묘장 설치를 비롯한 농가지원 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체 소규모 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원, 수산자원의 기반조성 1억2,000만원, 기타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모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호계동 및 양정동 소방도로 개설, 달천동 및 화봉동 소교량가설, 등 도로정비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정비 등에 6억5,000만원, 특히, 관내 27개 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3억원 투입하여 국·시비 보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책은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각종 복지기반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광역시 차원의 배려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기반시설 유치에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의 대응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 염포 어린이집 신축 1억9,000만원을 비롯한 제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 1,400만원 등 민간보조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자,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1,700여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보조에 국·시비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복지를 비롯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가능한한 다양한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코자 합니다.

한편, 기초단체의 대부분 사회복지업무가 국·시비 지원보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발굴 등 새로운 복지시책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상태이지만 자치단체로서 교육지원의 책무에도 눈을 돌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코자 3억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 보건행정은 보건사업 위주로 업무방향을 검토하여, 환자진료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도로 실시하고, 여력을 구민보건증진에 치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자치단체의 주민만족행정에 있어 예산집행

을 통한 각종 사업은 부차적 요소이며, 이에 앞서 가장 선결의 과제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짧은 기간에 우리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의식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저 자신이 앞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의식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실로 주민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지역별로 편중됨이 없이 세심한 배려를 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 속에 북구공동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施政)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금회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39,297,461		882,571		571,576	1,454,147	39,297,461	1,178,000
일반회계		37,773,701		882,571		538,292	1,420,863	37,773,701	1,733,000
특별회계		1,523,760				33,284	33,284	1,523,760	45,000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0	1,000	100,110	3,000
	의료보호기금	1,084,037						1,084,037	33,000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6,131						96,131	2,000
	주차장	141,998						141,998	4,000
	농공단지조성사업	101,484				32,284	32,284	101,484	3,000

제11절 '99 제3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11.8(구청장)

나. 의결일자 : '99.11.11(제2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다. 심의기간 : '99.11.8 ~ 11.11

2. '99년도 제3회 일반 ·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99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합계		52,153,400	100.0	51,222,914	100.0	930,486	
일반회계		49,614,527	95.1	48,684,041	95.1	930,486	
특별회계		2,538,873	4.9	2,538,873	4.9	-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0.2	126,178	0.2	-	
	의료보호기금	1,320,271	2.6	1,320,271	2.6	-	
	생보자생활안정자금	92,087	0.2	92,087	0.2	-	
	주차장	176,001	0.3	176,001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824,336	1.6	824,336	1.5	-	

3. 제안설명

4 (第28回-本會議 第1次)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 해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3,048만6,000원이 늘어난 521억5,34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4억원 증가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는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원 감소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244만원이 증액된 125억9,5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6,855만1,000원이 감소된 61억471만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159만7,000원이 증가된 81억4,763만4,000원으로 총2억5,695만4,000원이 감소되어 142억5,2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는 9억3,048만6,000원이 늘어난 496억1,45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운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9,828만3,000원이 감소된 186억6,732만8,000원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3억3,799만7,000원이 늘어난 296억4,1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는 3억3,000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등으로 16억6,804천원이 늘어난 89억3,110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922만8,000원을 감액하여 7억5,854만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을 1,956만2,000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2절 '99 제4회세입 · 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12.15(구청장)

나. 의결일자 : '99.12.24(제29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심사기간 : '99.12.21 ~ 12.23

○심사결과 : 수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장	간 사	위 원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박춘환, 박광식, 진한걸, 윤종오

2. '99년도 제4회 일반 ·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99예산액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	증 감	비 고
합 계		53,860,433	52,153,400	1,707,033	
일 반 회 계		51,398,127	49,614,527	1,783,600	
특 별 회 계		2,462,306	2,538,873	△76,567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126,178		
	의료보호기금	1,243,704	1,320,271	△76,567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2,087	92,087		
	주 차 장	176,601	176,001		
	농공단지조성사업	824,336	824,336		

3. 제안설명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29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당초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회추경 예산액 대비 17억703만3,000원이 늘어난 538억6,043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8,360만원이 늘어난 513억9,81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외 4개 특별회계로 7,656만7,000원이 감액된 24억6,23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이 106억2,200만원으로 3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188만7,000원이 늘어난 74억7,63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3회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는 6억6,000만원과 125억9,571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 보조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0억9,386만2,000원 등 총 17억4,171만3,000원이 늘어난 159억9,4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7억8,360만원이 늘어난 513억9,81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회추경 예산 대비 9억8,309만원이 감액된 176억8,4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억9,182만3,000원과 경상적경비 4억9,126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4,230만8,000원이 늘어난 311억8,4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를 16억8,816만2,000원을 증액하고 자체 사업비는 1억4,58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2억2,438만2,000원이 늘어난 25억2,960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가 20억1,502만6,000원, 국시비집행잔액 반환금, 출연금 등 기타예산이 5억1,4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22억7,544만7,000원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3.3%, 사회개발비는 101억6,092만4,000원으로 19.8%, 경제개발비는 163억9,140만9,000원으로 31.9%, 민방위비는 2억6,768만6,000원으로 0.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266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증액편성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는 등 '99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9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세입	세출		예비비			
			증액	삭감	증액	편성액	확정액		
합계		53,860,433	4,603	10,260	511	2,015,026	2,146,494	53,865,036	1,615,000
일반회계		51,398,127	4,603	10,260	511	2,015,026	2,024,775	51,402,730	1,541,000
특별회계		2,462,306					121,719	2,462,306	73,000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26,178					69,820	126,178	3,000
	의료보호기금	1,243,704						1,243,704	37,000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2,087					3,932	92,087	2,000
	주차장	176,001					12,482	176,001	5,000
	농공단지조성사업	824,336					35,485	824,336	24,000

제13절 2000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3.21(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0.3.28 ~ 4.3

다. 의결일자 : 2000.4.3(제31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2.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회계별		2000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합계		43,299,555	100.0	39,297,461	100.0	4,002,094	
일반회계		40,868,618	94.4	37,773,701	95.1	3,094,917	
특별회계		2,430,937	5.6	1,523,760	3.9	907,177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0.2	100,110	0.3	-	
	의료보호기금	1,084,037	2.5	1,084,037	2.8	-	
	생보자생활안정자금	96,131	0.2	96,131	0.2	-	
	주차장	169,175	0.4	141,998	0.4	27,177	
	농공단지조성사업	981,484	2.3	101,484	0.2	880,000	

3. 제안설명

4 (제31회-본회의 제1차)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기획공보실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432억9,955만5,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40억20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억9,491만7,000원이 늘어난 408억6,8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717만7,000원이 증가된 24억3,093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억5,460만3,000원이 늘어난 59억6,292만6,000원이며, 이중 '99순세계잉여금 25억1,828만4,000원과 '99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31만9,000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1,512만9,000원, 시비보조금 3억2,518만5,000원이 증가된 107억9,6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97억8,061만3,000원의 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4%, 사회개발비는 116억488만5,000원으로 28.4%, 경제개발비는 75억2,767만2,000원으로 18.4%, 민방위비는 1억9,226만2,000원으로 0.5%,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6,318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9,173만5,000원이 늘어난 199억4,7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 132만9,000원, 경상적경비 4억9,04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2억8,394만9,000원이 늘어난 188억9,150만8,000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 4억1,619만원, 자체사업비 18억6,77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1,923만3,000원이 늘어난 20억2,918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 예비비가 16억4,427만7,000원,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출연금 등 기타예산은 3억8,4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9순세계잉여금 2,717만7,000원이 증액되어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사업비로 세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채발행 원금 상환으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부득이 하게 꼭 필요한 경상경비 일부와 당면한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코자 우선 시급한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시에 반영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금회요구액 (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43,299,555		182,264		1677,561	1,735,446	43,299,555	1,298,987
일반회계		40,868,618		182,264		1,644,277	1,702,162	40,868,618	1,226,059
특별회계		2,430,937				33,284	33,284	2,430,937	72,928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3,003
	의료보호기금	1,084,037						1,084,037	32,521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6,131						96,131	2,884
	주차장	169,175						169,175	5,075
	농공단지조성사업	981,484						981,484	29,445

제14절 2000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6.19(구청장)

나. 심의기간 : 2000.6.27 ~ 6.30

다. 의결일자 : 2000.6.30(제33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괄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0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51,126,743	43,299,555	7,827,188	
일 반 회 계		48,792,189	40,868,618	7,923,571	
특 별 회 계		2,334,554	2,430,937	-96,38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	
	의료보호기금	98,829	1,084,037	-118,069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96,131	2,698	
	주 차 장	188,163	169,175	18,988	
	농공단지조성사업	981,484	981,484		

3.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춘환 의장님, 그리고 진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19일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북구청사신축 30억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4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고,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일부 증액이 예상되어 지역현안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변동내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사업소세를 당초목표액 49억9,900만원에서 64억2,300만원으로 14억2,4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8억1,300만원에서 9억5,705만9,000원으로 1억4,31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4억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7억7,632만9,000원의 세외수입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 또는 추가확정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총 57억2,32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32억9,955만5,000원에서 18.1%인 78억2,71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규모는 511억2,6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2,357만1,000원을 증액하여 487억9,218만9,000원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9.638만3,000원을 감액하여 23억3,4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필수법정경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을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시비보조 등의 의존사업은 세입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으며, 자체투자사업은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 증액조정이 불가피한 경상경비는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2,244만4,000원을 계상하고, 이

재민구호비 4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99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필수 경상사업에는 문화재정비사업 풀베기 및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 등 각종 인부임 6,011만8,000원, 제3회 정자해변 신년해맞이 축제행사비 5,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궁도장 조성사업 1,000만원 등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일부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 청사내 절전용 수신기 구입, 염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5,7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설치비 200만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보수비 1,000만원, 상방경로당 신축 부족분 2,5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원, 장애인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770만원, 도로변 수벽식재공사비 1,000만원 등과 그리고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사무실설치, 테니스장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마을회관 보수, 동사무소 방송시설 설치 등 동예산에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추경반영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북구청사 신축사업비 30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3억6,000만원, 농소운동장 조성사업비 11억원, 달천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억원, 약수마을 철도 및 횡단박스 확장공사비 부족분 3억3,000만원, 양정동 603-4번지일원 소방도로개설비 3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무궁화심기사업 8,000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 상사업비로 현수막 걸이대 교체공사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기타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부족경비 3억500만원, 호계시장 재건축에 따른 포장 및 측구공사비 8,500만원, 대하그린아파트앞 소하천정비 등 상하수·치수공사비가 1억800만원, 신현~당사간 농어촌 정비사업 도로편입부지 보상외 각종 보상금 2,9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 농업용 관정 등 농업기반 시설정비, 마을안길 포장, 교량설치 및 재가설, 소방도로개설 등에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4억3,093만7,000원에서 4% 감액된 23억3,4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1,806만9,000원이 감액되어 9억6,596만8,000원이며,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이 9,882만9,000원으로 269만8,000원이 증

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1,898만8,000원이 증액된 1억8,816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및 교통시설물 설치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액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북구청사 신축, 농소운동장 조성 등 보조금이 지원되어 지역현안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게 됨으로써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 건설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이 의결되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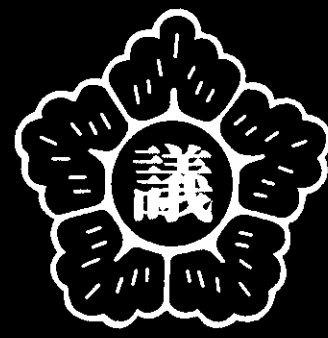
4. 심의결과 : 수정가결

5.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A)	기정예산액(제1회추경)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계		51,126,743	43,299,555		172,703	1,326,540	1,499,243	51,126,743		1,533,802
일반회계		48,792,189	40,868,618		172,703	1,290,558	1,463,261	48,792,189		1,463,766
특별회계		2,334,554	2,430,937		-	35,982	35,982	2,334,554		70,036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110	100,110		-	1,000	1,000	100,110		3,003
	의료보호기금	965,968	1,084,037		-	2,147	2,147	965,968		28,979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98,829	96,131		-	2,698	2,698	98,829		2,965
	주차장	188,163	169,175		-	15,482	15,482	188,163		5,644
	농공단지조성사업	981,484	981,484		-	32,284	32,284	981,484		29,445

제 7 장



기타의정활동

○ 제1절 구정질문

○ 제2절 4분자유발언

○ 제3절 진정 · 건의서 처리사항

○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제5절 주요의정활동일지

제1절 구정질문

1.구정질문현황

일 시	회 순	의 원	질 문 요 지
계	9회		21건
'98. 10. 26	제15회임시회	김수헌 의원	○구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
'98. 12. 18	제17회정기회	진한걸 의원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 ○북구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 ○작고 강한 지방정부 구현 ○북구 특산품 특화사업
'99. 1. 25	제18회임시회	윤종오 의원	○북구청 발주 각종 공사계약 ○울산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염포 미도아파트 향후대책
'99. 4. 26	제21회임시회	김수헌 의원	○북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
〃	〃	박광식 의원	○21C 북구발전 마스터플랜 ○북구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 제외안의 문제점
'99. 9. 30	제26회임시회	김수헌 의원	○각종 도급공사 하자관리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관리 ○상안교 개통 및 잠수교 긴급 복구공사
2000. 4. 3	제31회임시회	진한걸 의원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 ○지역산업 공동화
〃	〃	윤종오 의원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 ○쓰레기봉투값 단일화 대책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계획 철회
2000. 6. 27	제33회임시회	김수헌 의원	○노래방 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위법조치사항

2.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구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 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1998. 10. 26(제1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구 진장동사무소에 울산 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가 구실업극복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북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무상사용 결정한 과정과 무상사용 대부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공공근로사업과 재취업 및 교육사업은 북구청이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실업자 관리"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시민단체가 추진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북구청 실업대책 추진 사업과 병행 서로 협조 보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함으로 무상 이용토록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단체는 협조와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유재산을 행정목적 및 공익적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진장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진장동사무소를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는데는 동의를 하나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자체가 동을 변화 개선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사용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김수헌의원 질문〉 ○동천강 모래를 채취하여 구청 수익사업과 수해시 침수방지 및 제방붕괴 위험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며 구청장님의 견해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건설경기 부진으로 판매가 저조할 경우 장비임대료 과다지출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하천정비상 불가피한 지역만 일부 준설하여 공공시설의 골재원으로 활용토록 광역시로부터 검토된 바 있음. 동천강 모래를 이용한 세수증대 사업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후 검토할 것임.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진한걸 의원　　○1998. 12. 18(제17회정기회 제3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진한걸의원 질문〉 ○도시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소방도로 예정부지에 신축 건축물 준공 및 개교를 앞둔 학교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등 북구관내에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행정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려 신상필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저촉되는 건축물은 총 7건 중 준공이 6건, 미준공이 1건으로 이는 광역시 승격 이전 중구청에서 허가 내지 준공처리 된 것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당시 처리과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 조치 및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농소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문제는 학교 개교일인 내년 3월 이전까지 교량공사 부분부터 우선 준공토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진한걸의원 질문〉 ○북구 실직자 고용창출 대책에 따른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실업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조승수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항구적 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체의 조업률 제고 노력과 함께 창업 및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임시적 실업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실직자고용창출대책 내용을 참고로 시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진한걸의원 질문〉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조직의 혁신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 조직은 여전한 실정임으로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먼저 권위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경쟁력 있는 북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태어날 의향은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직 진단을 의뢰하여 경쟁력 있는 북구청으로, 작고 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시켜 좀더 구민들의 가까이에서 구민들의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진한걸의원 질문〉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부천시를 복식부기 도입 시범단체로 선정해 2000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열악한 북구재정을 고려하여 기금과 특별회계 정도는 당장 복식부기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기업 등에서 다루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당장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일시적인 제도변화로 회계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방식이 아닌 우리 행정제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우리구도 부천시의 시범 실시결과 장·단점을 판단한 이후에 본 제도의 도입여부를 고려하겠음.
〈진한걸의원 질문〉 ○청정해역인 강동지역의 젓갈과 미역은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강동지역 특산품을 공신력 있는 식품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대책이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내년부터는 지역 특산물의 특화를 위해 성분분석 및 특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 포장단위개선, 다양한 홍보, 특산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으로 생산에서 출하시 까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임.

북구청 발주 각종 공사계약등에 관한질문

○질문의원 : 윤종오 의원　　○1999. 1.25(제1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북구청 발주 각종공사 계약방식은 단순 수의계약에 형식적으로 1개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한 것에 불과해서 특정업체에게 특정공사가 계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각종 공사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과 입찰시 3~5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케 한 수의계약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 결과 3~5개 업체의 입찰 참여시 장점으로는 공사계약시 투명성 확보와 동등한 업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타업체의 불만의 소지가 있으며 불성실한 사업자 낙찰시 부실공사 우려로 완벽한 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예상되고, 건설업체의 빈번한 부도등이 예상될 때 건실한 업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되는 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2개 업체의 최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제도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울산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해 '99년도 예산금액 1억 8,000만원중 1억원이 특별 취로사업이고 8,000만원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정되었는지 주요사업계획인 공동작업장운영 등이 현재 예산규모로 가능한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자활지원센터 지원예산은 총 1억 8천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등 운영비 8천만원이 국비 5,600만원, 시비 1천2백만원, 구비 1천2백만원으로 70%, 15%, 15%의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그리고 특별취로사업비 1억원으로, 현재로서는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이 사업비의 성격상 어려운 실정임.
〈윤종오의원 질문〉 ○남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사업을 북구에도 개설하여 자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금년 상반기 중 연암동 1049-4번지 구유지에 200평 정도의 재활용상설판매장과 교육장을 건립키로 계획하여 소요사업비 약 3억원 중 50%를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나 시자체 신규사업예산 삭감 원칙에 따라 보조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다소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시비지원요청 등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여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공공근로사업중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자활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유기적 협조를 하여 시행해야 실질적 자활지원 사업이 될 것이며, 주요사업계획인 용역사업이나 부업 공동체사업은 구청의 각별한 지원이나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금년도 우리 구의 자활지원센터 지원은 특별취로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앞으로 센터의 기능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윤종오의원 질문〉 ○염포 미도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요청 후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은?	〈조승수구청장 답변〉 ○지난 1월7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미도아파드 매입비 및 철거비 5억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10억원 해서 총 15억원을 지원토록 요청한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철거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북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1999. 4. 26(제2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 북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지급 대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우리 구의 경우 시간외수당 4억 7,800여만원과 국내여비는 5억 700만원, 급량비 2억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다소 좋은 남구의 경우 시간외수당 11억원, 여비 8억원, 급량비 5억원으로 부분적으로 배가 되는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김수헌의원 질문〉 ○일반 국영기업체 임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보수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의 처우수준은 어떠한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대기업과 비교할 때 5급 이상 공무원은 67.3%, 6급 이하는 79.5% 수준이며 중소기업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보수는 전직급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국영기업체 임금과 비교했을 때 5급 이상은 84.2%, 6급 이하는 89.2% 수준으로 향후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보수 삭감으로 인한 북구 공무원들의 부채 파악 및 생계대책은 어떠한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구청 전체직원 380명 중 가계자금대출은 82명에 9억 5,860만원을 대출하였고, 주택구입자금은 1명에 4,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농협 외 4개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거친 후, 퇴직금을 담보로 지난 2월부터 가계안정자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11.25%로 대출을 해주고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공무원보수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삭감된 인건비 정상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에서 5개 구·군 공히 현재와 같은 공공근로 예산편성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분담 분 중에서 현재 구·군에서 70% 시비 30%로 되어 있는 기준을 바꾸어서 구·군에서 30%, 시비 70%로 편성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은?	〈조승수구청장 답변〉 ○구청장의 권한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수인상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계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희망하는 직원 모두에게 대출 알선을 해 주겠으며, 일한 만큼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지급, 규정된 출장여비 전액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구청사 건립시 탁아시설을 지어서 직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21C 북구발전마스터플랜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박광식 의원　　1999. 4. 26(제21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광식의원 질문〉 ○울산북구21C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99년 2월중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이 시점까지 묵묵부답인 실정인데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용역발주 시기를 일부 조정하여 오는 5~6월경에 용역계약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오는 7월경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그린벨트 관련 정책방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박광식의원 질문〉 ○북구발전21C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것인지 만일 양자가 동일하다면 왜 의원들은 배제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인사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자문위원회도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21세기위원회와 또 용역이 수행된 다음에 시·구 의원과 지역주민까지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계획을 세웠음.
〈박광식의원 질문〉 ○'98년 정기회에서 당해 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문서로 제출하고 설명한 후 '99년 1월 26일 업무보고 시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한 이유는?	〈조승수구청장 답변〉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박광식의원 질문〉 ○북구발전21C마스터플랜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위상적 측면에서 실효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조승수구청장 답변〉 ○이 계획이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거나 혹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구 단위의 계획은 신설 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음.
〈박광식의원 질문〉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재원조달 방안제시, 민자유치 및 제3섹터에 의한 재정조달방안이라는 단두 줄로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계획은?	〈조승수구청장 답변〉 ○지역개발 부분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이 용역에 담아 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예산의 편성과 배정,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박광식의원 질문〉 ○강동권의 광역시 도시재정비계획 제외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답변 바람.	〈조승수구청장 답변〉 ○도시재정비 작업에서 강동지역의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따른 관광단지개발계획 수립이 뒤따르지 않아 향후 관광단지 조성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5월중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입안되고 9월중에 재정비사항이 결정되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구체적 계획수립 일정 및 실현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강동권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일정이 광역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일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각종도급공사하자관리및점검표 작성관리 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1999. 9. 30(제26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구청 도급공사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는 공사건수 및 공사금액은 총 얼마인지?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시설 공사기준으로 총116건 63억8,500만원임.
〈김수헌의원 질문〉 ○구청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여부 및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1~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여 준공을 내어주는 지? 만약 준공 후 부실공사로 판정될 시 관계공무원 및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해당업체에서 총무과로 준공계가 접수되면 해당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공무원의 임명을 요청하고, 임명받은 공무원은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현장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준공검사시 부실공사나 설계서 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보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완 또는 재시공 명령하여 준공예정일을 초과한 기간동안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거나, 부실정도에 따라 계약사항이행불가로 판단될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 및 부적당업체로 통보하여 제재조치함.
〈김수헌의원 질문〉 ○공사 시공사항과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 업체를 상대평가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 차후 업체선정 시 참고자료 및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업체 기술향상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2항에 의거 3천만원이상인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체도산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증금 직접사용 등의 방법으로 하자불이행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또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으며,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자체의 계약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 개선방안에 품질 및 공정관리, 안전 및 기술인력관리, 공사마무리 및 외관상태, 시공열의도 및 하도급관리 등 배점항목을 정하여 시공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신설 상안교 개통이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신설 중인 상안교가 언제쯤 우회 임시개통 예정인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김수헌의원 질문〉 ○개통 지연되는 이유 중 "난"집 보상금은 지급되었는지, "난"집 이전시 고사율에 의한 보상금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상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2,453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지장물 및 이전비는 감정가인 3,435만원에 대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주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난"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화훼협회에 재감정을 의뢰 중에 있다고 하며,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고사율을 감안해 볼 때 당초 감정가액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상안교 및 우회도로(잠수교)를 당초에 있던 길보다 확장하게 된 이유와 시행주체가 어디였는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잠수교는 '94년 4월 상안교에 대한 5.5t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이 실시되면서 중차량의 우회통행을 위해 울주군이 설치하였으며, '97년 1월 6일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회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울주군에서 확장하였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확장된 잠수교 파손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잦은 강우로 인해 하상바닥이 세굴되고 중차량들의 통행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김수헌의원 질문〉 ○'97년 1월 6일부터 차량통행제한이 된 상안교의 교량노후위험 판정이 몇 등급인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94년2월부터 울산대학교 기술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 상안교의 위험등급을 C급으로 분류해서 시에서 관리해 왔으며, 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금년도 7월에 교량 전산화시스템기초입력자료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 D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상안교를 일부 보수하면 경운기, 승용차 통행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울산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울주군에서 상안교의 보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가설하는 비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재가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향후 신 상안교가 개통되면 역전들 신답, 상안들의 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 등 안전운행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잠수교를 이용한 농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답변〉 ○집중호우의 경우 박스를 통해 강물이 유입되어 재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기술적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진한걸 의원　　○2000. 4. 3(제31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진한걸의원 질문〉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조정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공단인근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답변〉 ○주민이 희망하는 연리 3% 세대당 3,000만원의 융자는 건물의 심각한 노후와 단면 손실이 발생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곧 붕괴가 예상되는 상태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시설물 E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위험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 아파트는 융자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는 새마을아파트 주민의 민원내용을 광역시에 전달하여 G/B조성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진한걸의원 질문〉 ○땀흘리는 자가 소외되지 않는 직렬간 승진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직렬조정협의 또는 기술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정원 감축시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였으며, 현업부서는 충분한 실비 보상은 되지 않지만 다소나마 현실적인 여비를 2000년도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기회를 행정직렬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려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진한걸의원 질문〉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차 물리학적 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시설과 고도처리시설 후 가동이 된다고 하지만, 향후 야기되는 울산만 수질오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승수 구청장 답변〉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만의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염포동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울산광역시와 해당부서인 하수관리과에 건의하여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진한걸의원 질문〉 ○북구에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북구지역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대우차 해외매각반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2만 북구민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에게 매각의 방식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수 있음을 공유하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반대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조승수 구청장 답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민대책위에 개인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음.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등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윤종오 의원　　○2000. 4. 3(제31회임시회 제7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은?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답변〉 ○정부의 시책이 청소관련 업무 등 민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2001년부터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 환경미화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조조정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음.
〈윤종오의원 질문〉 ○현행 쓰레기 봉투 값은 업소, 아파트, 주택이 같은 ℓ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각기 다르게 판매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값의 단일화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일정은?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답변〉 ○2000년5월경 울산광역시 성암매립장 소각시설이 준공예정에 있어 이후로는 현재의 쓰레기 배출체계를 변경하여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함으로, 타는 쓰레기는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신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일화 할 계획임.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윤종오의원 질문〉 ○현재 재활용품 상설판매장을 건설해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종 홍보와 재활용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조승수구청장 답변〉 ○재활용제품에 대한 이용고객의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잔존하고 있지만, 무상배출에 대한 이점에 호의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고, 운영주체자의 의지나 운영방법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토록 할 계획이며, 공모계획서를 엄정 심사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판매방법, 인센티브, 임대료 산정비율 등을 보완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

노래방 영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 김수헌 의원　　○2000. 6. 27(제3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북구관내 현재 노래방 업소현황에 대한 동별 현황은 어떤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북구관내에는 총8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농소1동 20개소, 농소2동 13개소, 농소3동 1개소, 강동동 11개소, 효문동 10개소, 송정동 6개소, 양정동 10개소, 염포동 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북구 신설후 현재까지 노래방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조치 내역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로부터 총66개소의 노래연습장을 이관 받았으며 이관 전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98년과 '99년 2년 동안 총6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7개소, 시정·경고 7개소이며 업무이관 후 총21개소 적발하여 영업정자 17개소, 시정명령은 4개소에 한 바 있음. 업무이관 전·후 전체를 동별로 보면 농소1동 24개소, 농소2동 5개소, 농소3동 1개소, 강동동 15개소, 효문동 9개소, 송정동 9개소, 양정동 14개소, 염포동 8개소로 총85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74개소, 시정·경고 처분은 11개소에 한 바 있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위법조치 받은 업소는 다른 업소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단속업무의 문제점은 없는지, 형평성에 맞게 전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는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단속의 문제점은 전업소가 협회구성을 통한 비상연락 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첫 업소 단속후 다음업소의 단속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심야에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관내를 일제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손님과 업주로부터 잦은 시비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음.
〈김수헌의원 질문〉 ○법대로 정상영업시 적자가 나고 불법영업을 해야만 경영수지가 맞다고 하는데 그 실태와 대책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허용(18세미만은 22:00까지) 및 '99년3월 1일자로 심야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등 노래연습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유사업종 급증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용객이 유흥주점으로 혼동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실정임.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 건전영업 유도를 위해 업주교육 연2회, 월1회 이상 수시단속과 분기 1회 이상 사법기관과 합동단속하는 등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헌의원 질문〉 ○일명 삐삐걸에 대한 현황과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대책방안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일부 업주들이 돈만 벌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과 이용객도 유흥업소 접대부 이용경비보다 적게 든다는 이유로 소위 삐삐걸이 소개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강화와 수시 및 불시로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수헌의원 질문〉 ○현실에 맞는 법개정으로 시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김종우 총무국장 답변〉 ○노래연습장을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유흥주점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바 법 취지에 맞게 건전한 방향으로 업주가 노래연습장을 잘 운영해야 할 사항이며 현행 관련법규와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법개정 내지는 운영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음.

제2절 4분자유발언

□ 김수헌의원

○ 발언일시 : 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1998. 9. 1)

○ 건　　명 :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자세

○ 발언내용

2 (第 13 回 - 本會議第1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신설 북구청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정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북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4일부터 7월21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듣고 난 느낀 바와, 그 동안 지켜본 공직사회의 근무자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장의 의회에 대한 무관심, 둘째 업무보고 중 북구기구현황에 의회사무국이 구청장 직속으로 편재된 사항, 셋째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의 자질문제, 넷째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과 관련한 과태료가 구세인지 시세인지에 대한 질문에 구청세입을 총괄하는 지방세과에서 구세가 아닌 주차장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수입이라고 답변하는 넌센스 사항, 다섯째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농소지역아파트 상수도공급, 북구청 의회에 허위보고"라는 '98년7월25일자 한울신문지상보도 사항, 여섯째 "대통령 울산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장의 차량을 사전협의없이 사용키로한 계획, 일곱째 7월1일부로 취임한 구청장은 실·과·별 업무파악, 동 초도순시, 관계기관순회 등 두루 공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구청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구청장은 8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장에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었던 점, 일련의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편향적인 곱지 않은 인식과 대충 얼버무려 버리면 된다는 식의 업무보고에 임하는 공무원 자세는 물론 의회와 의원들을 보는 눈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

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자, 탈자는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결재자의 결심을 얻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의 관리자인 과장은 한 번 정도 확인도 아니하고 보고서가 올라온 그대로 여과과정없이 통과하는 선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관계공무원은 보고서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사전검토와 관계법규 등 업무연찬이라는 사전준비없이 대충 넘어가겠다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역역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이 신문에 지상보도 되었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을 들은 의원을 만나 진상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우리북구는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지역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고, 국가 발전과 더불어 복지북구를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고 조화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북구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속에 조화있고 슬기로운 집행부의 역할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만 보고 느낀점을 일방적으로 발언하여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많은 북구청 직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식의원

○ 발언일시 : 제1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1998. 9. 1)

○ 건　　명 :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 및 자세

○ 발언내용

(第 13 回 - 本會議第1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선거구 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작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 북구가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로 최초로 민선구청장과 사실상의 초대의원들이 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98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과 99년도당초예산편성에 앞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4분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말 우리나라를 엄습한 이른바, IMF사태에 우리나라 국민전부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불경기와 대량실업 및 도산이 민간부문 즉 기업과 가계를 강타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붕괴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위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부문의 위기로 발전하여 세수의 격감과 그에 따른 재정 및 예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시대상황하에서 신생 북구가 처한 입장은 더더욱 어렵고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변한 청사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하는 형편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구·군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내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폭주하는 행정수요는 북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위급공무원들에게 집행부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과 기타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도 IMF주름살이 깊어갈수록 더더욱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금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금년도 예산세입중 사업소세의 10억원 가까운 감소와 조정교부금 45억원 감소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

4 (第 13 回 - 本會議第1次)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동안 IMF사태가 완화·호전될 때까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구자체 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할지라도 신규 세외수입의 발굴로 부족한 세입의 일부를 보충하고, 의존재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이 적극적 노력과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획예산위원회(종전의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대한 피나는 로비와 읍소를 하여왔고, 또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직접 기획예산위원회 담당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 부탁과 로비를 하는가 하면, 개인적 연줄을 동원하여 읍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우리 북구청공무원들은 중앙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시본청 및 시의회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나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탁상공론으로 부지세월로 시간만 때운다거나, 과거의 관례대로 당연히 국고에서, 시에서 내려보내겠지 하는 무사안일의 근무자세로 임하지 아니할까하여 본인은 심히 우려의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영명한 우리 조승수구청장님께서 구의회, 시의회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도움의 필요성이 있으실 때, 3선의 오랜 의정경력과 그 동안 쌓아온 경륜과 시의회에 대한 인맥관계가 돈독한, 존경하는 우리 윤두환북구의장님과 더불어 예산확보에 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의 수장인 윤두환 의장님과 집행부의 수장인 조승수구청장님께서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예산확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구의 발전을 선도한다면 저를 포함한 북구의원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과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혁진의원

○ 발언일시 : 제15회임시회 제1차본회의(1998.10.26)

○ 건　　명 : 개혁을 바란다

○ 발언내용

2 (第 15 回 - 本會議第1次)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인은 농소2동의원 강혁진 입니다.

의원이 된지도 벌써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의욕이 앞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개혁을 진심으로 바라는 심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의 불신을 지나 정치인이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의원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입니다. 올 9월 KBS에서 국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 국민의 83%가 정치인을 불신임을 하고, 공무원 68%를 불신한다는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북구에서는 어려운 여건과 실업난으로 구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정어린 마음으로 개혁을 바라는 본의원으로서 올 추가경정예산 때 의회 위상을 높인다고 의장 단상과 무궁화 마크를 수정하는데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 위상은 단상을 높이고, 의회 마크를 바꾼다고 의원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 스스로가 인정할 때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 재정은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원들이 앞서 단 한푼 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새로운 구청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제모습을 갖추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의원을 위한 의회가 아닌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가 되어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북구의회가 앞장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절 진정 및 건의서 처리사항

1.진정서 처리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결 과				비고
		계	완 료	추진중	불 가	
1998	3	3	3			
1999	10	10	10			
2000	10	10	10			

2. '98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98.9.3 ○노인복지운영기금조성과노인복지기금조례제정 건의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장	○기조성된 노인회육성자금 구·군이관 조치 및 육성자금 조성 요망	○'98.9.11 ○울산광역시 이전 구 이관건의 및 기금이 구로 이관될 시 기금운영조례 제정함.
○'98.9.3 ○보훈3단체(상이군경회,유족,미망인회)사무실 관련 건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 지부북구 지회장	○보훈3단체가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98.1.1부터 구·군지회가 설립되었으나 사무실이 없어 불편함으로 사무실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98.9.15 ○사무실 마련 및 임차료 예산확보 검토 추진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98.9.8 ○천곡초등학교진입로개설건의(교량신설)	북구상안동 쌍용아진입주자대표회의회장김영도외 23명	○천곡초등학교진입도로개설요망 ○전체 개설불가시 초등학교 앞 교량신설요망	○'98.11.7 ○재정여건상 곤란 재원확보후 적극 추진 ○집행부 이첩

3. '99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99.1.12 ○실업자 재취업훈련기관 자격훈련 요건 완화	북구 염포동 260-30 박정숙	○선경홈패션 양재학원은 '97.12월 고용촉진훈련기관 실업자 재취업 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운영하다가 '98.12.29 노동부령에 의해 "학원경력이 3년이 안된 학원은 실업훈련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제외됨.	○'99.2.3 ○'99.1.12 노동부가 민원서류를 동일사안으로 접수 ○일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충분한 훈련 노하우를 쌓은 후 훈련에 참여토록 하였음. ○노동부 이첩
○'99.2.25 ○농소1동 원지마을진입로 지하통로 확대공사	북구 창평동 665번지 박종수외	○창평천 제방으로 진입로 사용에 따른 문제된 점은 동해	○'99.3.24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

접수일자 및 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건의	10명	남부 철교가 가로막혀 승용차만 통과되므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	토록 촉구 ○진입도로는 창평천 제방이므로 낮출 수 없으며, 대형차량 진입은 기존 우회도로 이용 ○의회에서 철도청 및 집행부와 재협의 2000년도에 제방을 넓혀 대형차량도 통과 가능하도록 조치 ○집행부 이첩
○'99.3.10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에 대한 건의	북구 호계동 856-3번지 조윤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국·공유재산법, 공유재산시·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대부료가 용도에 따른 실소득에 맞는 과표로 부과 및 서민사용 공유재산대부료 분할납부 토록 건의	○'99.3.22 ○잡종재산은 수익재산이므로 대부자의 소득여부와 결부시켜 부과할 수 없으며, 서민사용 공유재산 대부료 50만원이하의 경우는 기존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료가 매년 증액부과된 과표기준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없이는 조례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개정이 불가능하며 특례조항이 적용됨에도 매년 인상 불가피함.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을 행정자치부 건의 답변 없음. ○집행부 이첩
○'99.4.26 ○천곡동 최상단에 한우목장 신축 반대건의	북구 천곡동 829번지 김춘걸외 39명	○천곡동 상단에 기존 상수도가 있으며 향후 기존의 상수도 부족으로 인하여 일명 못안저수지 식수용으로 전환 및 대단위 축사 신축시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 미침.	○'99.5.18 ○천곡동 979-1번지외 2필지상에 건립중인 축사에 대하여 적법여부는 동감사시 재확인 및 오·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설치,허가,준공은 구청에서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사항 발생치 않도록 조치 ○'99.8.10 업무보고 실시등 의정활동으로 '99.8.19 한우목장포기, 매도 (신천동 476-3 이종락)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99.11 현재 주택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음.
○'99.5.25 ○건축폐기물 및 폐아스콘 재생업체설치 반대 건의	북구 매곡동 396-1 조상욱외 61명	○청룡암으로부터 50m 위에 입주한 한국스텐엔지니어링(주)와 (주)강원은 아스콘 및 폐기물재생업체로서 가동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되어 대응전 및 사찰 전체의 균열 발생우려	○'99.5.29 ○향후 공장가동시 먼지,소음,분진,수질오염등 환경 저해요인 지도점검 및 마을 진입시 서행운전등 피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음.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허가 및 신고처리 되었으나 '99.11 현재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지않아 가동하지 않고 있음. ○집행부 이첩
○'99.6.25 ○농소삼우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상수도공급 및 예산확보 건의	북구 중산동 730번지 제해액외 입주자일동	○농소 삼우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상수도공급 및 예산확보 조치요망	○'99.7.1 ○제2회추경예산편성하였음. - 급수지원차량임차료 10,500천원 ○인근 벽산아파트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와 협의 상수도 공급 차질없음. - 가뭄시 급수고갈의 경우 급수차량 지원 ○ 집행부 이첩
○ '99.9.3 ○ 호계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내 상수도 식수공급 건의	북구 호계동 661-1번지 이언외외 91명	○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엄청난 주민불편 -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단계에 있고 건축행위가 허가 되면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불편함.	○ '99.9.7 ○ 당초계획은 2001년 농소지역에 상수도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000년 상반기까지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집행부 이첩
○ '99.9.16 ○ 농소·강동주민 권리찾기	농소·강동 주민권리찾기추진위원회 김수헌 외 7명	○ 광역시승격으로 농소·강동지역이 농촌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이익 사항과 광역시 승격시 시장약속사항 이행촉구	○ '99.10.4 ○ 광역시승격으로 일부지역 농어민의 불이익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직접 광역시의회에 방문하여 해결조치 약속받음.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99.11.4 ○중산지구 철로 밑 진입로, 높이, 폭 불편사항 해소 건의	북구 중산동 갓안마을 윤주호외 135명	○현재높이 2m, 폭 2m, 철로밑 마을 진입로를 높이 5m, 폭 8m로 넓혀 주민불편사항 해소 요망	○'99.11.5 ○집행부에 동일사안으로 10.27일 접수되어 10.29일 민원에게 처리 회신된 사항임. ○울산광역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 적극검토 ○부산지방철도청 회신 -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부담 및 공법선택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음.
○'99.12.28 ○소방도로 미개설에 따른 진정	북구 양정동 567-7번지 홍순만외 115명	○북구양정동 603번지에서 동북방향 565-6, 15번지 관통되는 도시계획선이 30년전 확정으로 아직까지도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진정	○'99.12.31 ○미개설도로로 인한 기초생활 불편에 대하여 통감하고, 현재 양정동 미개설도로는 32건이나 되며, 북구전체 202건은 열악한 재정 규모로 현재로는 불가한 실정임.

4. 2000년 접수 및 처리내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0.1.7 ○호계시장 신축도로확장 건의	북구 호계동 681-1번지 우도곤외 25명	○호계시장 신축설계 시공함에 있어 남측에는 추가로 2m를 확장하면서 북쪽편은 기존도로보다 통행로가 협소하여 시공시에 상품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장 요청	○2000.1.11 ○호계시장 신축공사 도로 8m을 2m 더 확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 주민여론 수렴하여 1.1m이상 이격시켜 설계 - 호계시장 착공전재 건축설계 설명회등을 개최 주민의견 수렴 ○집행부 이첩
○2000.1.28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급적용에 대한 요청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그린타운 3단지 대표자치 회장	○북구 쌍용아진아파트 3단지 입주민이 지하수 고갈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원하는 바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급적용하여 인하된 공사분담금을 적용	○2000.2.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쌍용아진3차아파트에 불이익 발생되지 않기 위해 인상전 금액으로 인입토록 4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으며 소급 적용할 수 없음. ○상수도사업본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0.4.1 ○울산광역시북구 도서관 건립 건의	북구 중산동 522-1번지 곽경석외 753명	○전국 광역시 자치구중 5번째 규모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북구 도서관 조속 건립 요망	○2000.4.6 ○신설구로서 도시기반 시설 부족하여 문화기반확충을 위한 북구문예회관 건립은 2001년 연말 완공예정 추진등 다각적으로 사업추진중임. ○집행부 이첩
○2000.4.4 ○상수도시설 분담금선처에 대한 탄원	북구 상안동 773-13번지 쌍용3단지 배두환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군지역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민불편	○2000.4.11 ○농소·강동지역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 부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상수도 급수신청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조치 ○상수도사업본부 이첩
○2000.4.6 ○가대~성안동 청구아파트 연결도	중구 성안동 25번지	○중구 성안동에서 북구 가대동 1,500m	○2000.4.11 ○북구 달천에서 가대 중구 성안을 연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로 개설 건의	손장호외 176명	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조속히 개설 요망	결하는 15m 계획도로 있으나 울산도시계획 재정비('98.5.11)시 30m 도로로 도로선형 및 폭의 변경 개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집행부 이첩
○2000.5.2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장비 사용료 추가 지급 건의	북구 화봉동 674-12번지 권태수	○'99년도 대행계약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계약하였으나 '98. 보다 배출량이 많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 증가로 피해보상 요구	○2000.6.11 ○'97, '98년 대행계약시 박스와 박스운반차량에 대한 추가 보상은 원가산출내역에 포함되어 기지급 되었으므로 추가 피해보상은 불가함. ○집행부 이첩
○2000.5.26 ○우수기대비 천곡천 침수 방지대책 건의	북구 천곡동 208번지 원동아파트 입주자대표 김수영외 427명	○원동현대아파트 우수기를 대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천을 신설하고 아파트 외곽에 1.5m콘크리트 옹벽설치 요망	○2000.5.31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원동아파트의 담장(옹벽) 설치로 우수기 범람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집행부 이첩

접수일자 및 민원명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2000.5.29 ○신명부락 국유지 사용 및 불하 탄원	북구 신명마을 김영학외 11명	○신명마을회관 건립 부지로 활용토록 계속사용 및 허가, 주거지로 불하 건의	○2000.6.9 ○국유재산법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해 준다거나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국유지 관리차원에서 불법축양장등 정리하고 이주대책 불가함. ○집행부 이첩
○2000.5.30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요망	북구 성안동 358-1번지 쌍용아진1차 관리사무소 박용동	○쌍용아진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한국까르푸 후문에서 농소3동사무소 앞까지의 주차금지 구역을 해제 요망.	○2000.6.5 ○주·정차금지구역 해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주·정차단속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임. ○집행부 이첩
○2000.6.24 ○호계구획정리지구 상수도 시설 설치 건의	북구 호계동 구획정리지구 26B4N 이춘해외 75명	○현재 지하수개발로 구획정리지구 식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경제적부담이 많으므로 조속히 상수도시설 인입이	○2000.6.29 ○호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수돗물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는 2000년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계획으로

접수일자 및 민원명	관할관	민원내용	처리일자 및 내용
		되도록 건의	사업추진 중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이첩

제4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과 여론을 청취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가. 운영개요

○운영일시 : '98.10.12부터 연중 계속 실시

나. 운영방법

○기간 : 년 중(매일실시)

○장소 : 소회의실 내(의회민원상담실)

○일일근무조 편성운영

• 일일근무조 편성운영(의장단 매일 출근, 의원1명 윤번제 근무)

• 근무시간 : 하절기 - 10:00~17:00, 동절기 - 10:00~16:00

• 상담보좌 : 전문위원 1명

※민원접수방법 : TEL(052-257-4490~2), FAX(052-257-4496)

• .상담내용 : 각종 민원불편 및 애로사항 상담·처리, 여론수렴

다. 운영실적

구분	운영기간	접수건수	처리건수	기 타	비고
계		189	180	9	
'98년도	'98.10.12~12.31	46	42	4	
'99년도	'99. 1. 1~12.31	115	110	5	
2000년도	2000.1.1~ 7. 6	28	28	0	

○운영반응 :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처리하므로써 대의기관의 기능 수행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며, 특히, 개소 1주년('99.10.12)을 맞아 지방언론사로부터 호평을 받았음.

라. 기대효과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주민복리증진 기여 → 친근감 있는 의회분위기 조성

○집행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불편사항을 의회에서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민원 조기해결 도모

경상일보 1999년 10월 19일 화요일

북구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1주년

주민불편 200여건 처리 '해결사'

"주민 생활불편을 즉시 해소해 드립니다"

울산시 북구의회(의장 윤두환)가 지난해 기초의회에서 처음 도입한 '의회민원상담실'이 운영 1주년을 맞아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민원 해결창구' 역할을 하고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북구청 7층 의회 소회의실에 의회민원상담실을 설치해 그동안 200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자체처리 불가능한 10여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결했다.

의회민원상담실에서는 김수헌 박광식 진한걸 유재건 윤종오 강혁진 등 6명의 의원이 매일 윤번제로 돌아가며 공무원 업무시간과 똑같이 근무하며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다 윤두환 의장과 박춘환 부의장은 매일 의회에 출근해 민원상담실 당직 의원 격려는 물론 민원해결 사항을 챙기고 때론 직업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의회민원상담실은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생활불편을 제기하면 의원들이 직접 해당 실·과를 발로 뛰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을 처음 제안한 김수헌 의원(농소1)은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해결해 주기위해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2.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방안 추진

가. 현대자동차 사측 및 노조방문

○일　　시 : '98.7.13 09:30

○방문의원 : 전의원(8명)

○방문목적 : 현대자동차 파업사태의 조속해결 촉구

- 회사측 : 정리해고 철회 및 협상을 통한 해결 촉구
- 노조측 : 파업철회로 평화적 해결 촉구

나. 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

○일　　시 : '98.7.14(제12회 임시회)

○내　　용

- 발　　의 : 김수헌의원 외 2명
- 주요내용 : 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울산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회사는 정리해고 신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여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
-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안이송 : 현대자동차 노사대표 등 6개 관계기관 이송

다. 현대자동차 사태관련 성명서 발표

○일　　시 : '98.7.20

○장　　소 : 소회의실

○내　　용 : 결의문 촉구에 대한 노사이행 촉구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성명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몰고올 파장을 우려하여 98년 7월 13일 현대자동차 노·사를 방문하고 7월 14일 북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축적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성실한 협상에 임할 것과 정부차원의 긴급한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IMF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수가 부진하고 자동차산업의 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노·사가 성실한 대화와 협상으로 희생을 줄이고 파국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임금삭감안을 포함한 사태해결안을 사측에 제시하여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였으나 많은 사회단체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7일 현대자동차에서는 무려 3,578명에 달하는 대량정리해고 방침을 확정발표하고 개별통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부인이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고, 아들 돌잔치에 해고통지서가 날아들어 온가족이 눈물로 울부짖고, 간부사원과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계속적으로 파생될 것을 심히 우려하며 충분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에 대해 북구민의 민의를 대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노·사가 공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릴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를 반대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한 번 노·사 양측의 성실한 협상과 현대자동차 사측의 진지한 재고를 촉구하며 정부가 긴급히 나서야 할 것을 아울러 촉구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직시하고 파국을 막을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도 11만 북구 구민을 대표해서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1998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경상일보 1998년 7월 21일 화요일



정리해고 반대 성명 울산시 북구의회는 20일 오전 의회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규동기자

3.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 관련 업무추진상황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99.1.25 (제18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 관련 교통대책 등 추 진상황보고	○보고자:도시교통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주요내용 • 의회 요구사항 · 의회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8.12.2 가사용 승인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함. · 까르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회사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바람. · 구청과 중부경찰서, 아진건설 대표, 까르푸측과 간담회시 합의사항 이행 촉구 - 버스, 택시 승강장 조기설치로 주민불편 해소 - 버스노선 재조정 건의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도록 조치 · 현재 개설중인 서동-아진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시청과 해당부서에 촉구 건의 바람.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99.3.2	한국까르푸(주) 관련 질의	○건설교통부에 질의 • 회신내용 - 2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는 없으나 당초 건축허가의 행정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승인시까지 적합한 대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99.3.18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에 따른 사항	○추가부지(835㎡)합병	
'99.3.29 (제2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한국까르푸(주) 가사용승인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보고	○보고자 : 산업건설국장 ○한국까르푸(주) 관련 업무추진 경과보고 • 사용승인 신청 : '99.3.20 ○문제점 및 조치사항 • 문제점 - 설계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처분의 부적절성 (행정착오로 건폐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행정행위로 조건을 부여하여 설계변경 허가 및 가사용승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은 아니나 부득이한 조치였음.) • 조치사항 - 관계공무원의 책임문제 (건축허가시 건폐율 적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공무원 문책조치.)	

4.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 건의

가.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 건의문 채택

○ 채택일시 : '99.3.29 제20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 조치내용 : 12만 구민을 대표하여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건의문 채택하여 청와대, 산업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주) 발송

나.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유치 건의문 관련 간담회

○ 일　　시 : '99.4.1 의원간담회

○ 주요내용 : 세수관련, 현대자동차 울산본사, 기아자동차 경기도 본사유치 관계 등 세부자료 조사 후 기자회견 등을 통한 울산광역시의회의 안일한 자세 추궁

다. 현대자동차(주) 본사 등 방문·견학

○ 기　　간 : '99.5.14 ~ 5.15(2일간)

○ 주요내용

• 현대자동차(주) 본사 방문 건의 간담회

- 일　시 : '99.5.14 10:00 ~ 11:00
- 장　소 : 사장접견실
- 참석자 : 회사측(4명)-사장(이계안), 상무이사(이종우), 총무이사(이종연), 울산공장이사(서재천)
  북구의회 : 의원 7명
- 내　용
  · 현대자동차(주) 본사 울산이전
  · 국제적인 모터쇼 울산유치
  · 현대자동차 근로자 밀집지역 문화시설 설치
- 답　변

· 현대자동차 공장이 울산뿐만 아니고 전주, 아산, 광명, 화성 등 여러 곳에 있어 경제적, 법률적, 지역적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이전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울산이전 검토 및 지방에 있을시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도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의제로 삼아 상호 추진하기로 함.

· 현재 '99 서울모터쇼에도 외국업체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개최시 대우자동차도 불참 가능하며 참관인원 등 개최목적 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음.

· 회장께서도 복지시책에는 인색하지 않지만 '98년도 1조원 적자로 법인세도 납부치 못한 상태에서 복지시설은 맞지 않음.

※본사 지방이전 등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하여 신중히 검토

5. 북구청사 건립추진

□ 청사건립개요

○위　　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대지면적 : 36,410.00㎡(11,014.03평)

○건물면적 : 3,819.33㎡(1,155.34평)

○연 면 적 : 13,735.27㎡(4,154평)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주차대수 : 옥외주차 268대

○공사기간 : 21개월('99.8.23 ~ 2001.5.22)

○사 업 비 : 29,998백만원

(부지매입비 9,773, 공사비 18,512, 기타 1,713)

○설 계 자 : (주)성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감 리 사 :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 : 대림산업(주)외 2개사

□ 추진현황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99.1.26 (제1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북구청사 신축사업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보고자 :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보고내용 • 사업개요 · 위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97.9~2000.12 · 부지면적 : 44,288㎡(13,397평) - 청사부지 : 32,809㎡(9,925평) (구청+보건소) - 도로부지 : 7,308㎡(2,211평) - 완충녹지 : 4,171㎡(1,261평)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연 면 적 : 11,887㎡(3,595평) · 사 업 비 : 29,998백만원 (부지매입비9,773, 공사비18,512, 기타1,713) ○부지3차매입비 42필지 13,405㎡(4,055평) 3,297백만원이 시지원이 안되어 부지이용계획 전면 수정변경되어야 함. ◈사업기간 : '97.9 ~ 2000.12 ◈착공예정 : '99.5월중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99.2.1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관 련 대책협의	○참석자 • 의회 : 의원 8, 의회사무과장외2 • 집행부 : 구청장, 총무과장외3 ○협의내용 • 청사 신축사업 추진개요 설명 - 구청장 - 현재까지 계획된 13,397평에 대해 추진가능한 것으로 인지 ※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3차 매입분이 누락되었음. - '98.7.31 시장에게 업무보고 내용 배부 설명 • 주요협의사항 - 북구청사 신축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분담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함. ○의원 시장방문 협의사항(14:10 ~ 15:00) • 전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면담 • 청사 신축부지 3차 매입토지 약 4,000평에 대하여 "시장 임기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 받음. • 예산편성 하더라도 시의회에 의결을 받지 못함을 시사함. ○차후대책방안(15:00~15:30) • 광역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역할분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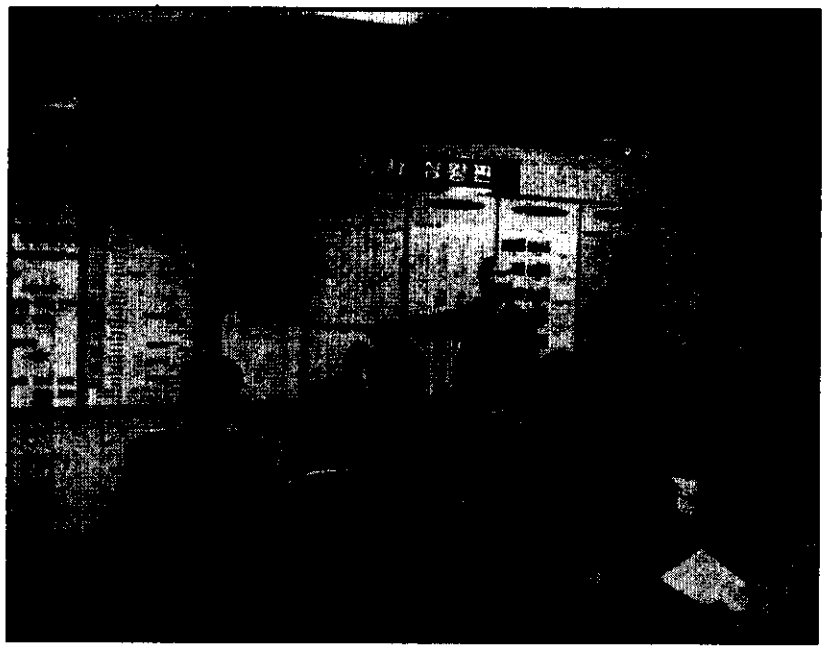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 집행부 결과 통보, 업무추진 강행조치 ◈사업기간 : '97.9 ~ 2000.12 ◈착공예정 : '99.6월 중	
'99.3.4 (간담회)	북구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변 경 안 보 고	○설명장소 : 의회 소회의실 ○개최배경 • 당초 기본설계가 외관이 너무 단조롭고 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민원인의 동선이 부적절하여 기본계획을 개선하는 중간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개선된 기본계획안 설명 ○의회자문사항 및 지적사항 중간보고 후 조치 •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에 반영 ○의회 최종계획안 보고 • '99.3.19경 최종 확정안 보고 예정	
'99.3.25 (간담회)	청사기본 계 획 안 최 종 설 명 회	○설명장소 : 북구청 8층 회의실 ○개최배경 • 기본계획 기술심의회의시 의원의 지적사항 시정 - '99.3.4 의회에 기본계획 개선 중간설명시 의회동 별동으로 하는 대안제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후 최종적으로 설계계획안을 확정 - 2가지 대안에 대한 집행부, 의회 협의를 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되는 안을 신청사 설계안으로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확정 -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전 최종설명회 실시	
'99.5.4 (간담회)	청사신축부지내문화재조사결과보고	○현장확인 : '99.5.4 10:00 ○시굴조사 현황 • 위치 : 연암동 1081-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0,883㎡(9,342평) • 조사단체 : 부경대학교 박물관 • 조 사 단 : 부경대학교 책임조사원 이원균외 5명 • 시굴조사기간 : '99.4.7 ~ 4.26 ○시굴조사결과 • 청사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결과 전체 조사면적 9,342평 중 청사부지 남쪽 철길옆 약 1,300여평에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로 추측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정밀검토 결과에 따른 발굴여부 결정 • 이 지구는 청사설계도상 공원 등 조경부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하여도 무방 • 문화재관리국의 판단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음.	
'99.7.7 (간담회)	북구청사신축사업추진상황보고	○당초 일정 변경사유 설명 • '99.5.21 실시설계도서 납품완료후 추진기획단에서 설계상의 물량 과대, 과소요인을 검토하여 '99.6.7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공사입찰 공고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조기에 선정 재검토작업을 19일간 실시함으로써 당초 일정이 변경 • 신청사 신축사업비는 시 '99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청(3,297백만원) ○ 의원 지적 · 요구사항 • 청사 착공시기가 자주 변경이 없도록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할 것 • 관급공사대금 지급시 원청업체, 1차 하도급업체 등을 막론하고 현금을 지급토록 촉구 (원청업체 현금지급시 1차 하도급업체에 어음지급이 되는 것을 막고 공사부실 사전방지) • 1,2차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시 명시하는 방법 검토 • 공사부실을 막기 위하여 공사실명제 실시(담당자로부터 구청장, 책임자 명시) • 북구청사 신축부지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뒤 시굴한 구덩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촉구	
'99.11.12 (제28회 임시회)	북구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	○ 북구청사 건립추진현황(공사현장 점검) ○ 현재 주요 진행사항 • 본관동 건물기초 터파기 - 실시 : 60% • 대강당(식당) 건물기초 터파기 - 실시 : 95%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 매입부지에 대한 도로 1,2호선 노체, 노상다짐공사-실시40% ○ 예상문제점 • 미매입부지에 따른 토공량 적치공간 협소로 작업능률 저하 • 기초 굴토시 지하수 처리 • 문화재 발굴 조사지역과 본관 터파기 접촉부분 공간부족 ○ 향후 추진계획 • 1999년 : 공정누계 5.22% - 11~12월 : 본동 기초공사 완료, 매입부지내 주변도로 보조기층 조성 • 2000년 : 공정누계 74.5% • 2001년 5월 : 공정누계 100%	
2000.5.22 (간담회)	북구청사 인테리어 설 명 (보고)회	○ 주요내용 • 민원실, 회관동, 대회의실, 의회의사당 등 인테리어 방향에 대한 설명(보고) • 장 소 : 8층 대회의실 • 보고자 : 서울소재 대해건축 송근호 설계실장 ○ 조치사항 • 민원실(1층)휴게실 설치할 경우 민원업무 공간이 협소하므로 넓은 공간 확보 • 지역특산물 전시공간 마련 • 본회의장내 의원석과 집행부석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행부 공무	

일 시	건 명	내 용	비고
		원석 일자형으로 조정 등 향후 재조정 • 의사당 방청객석 - 20석→50석정도 자리확보	
2000.6.28 (제3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건물증축 승 인	○당초 : 지하1층, 지상 5층 12,983.15㎡(3,927평) ○변경 : 지하1층, 지상6층 13,735.27㎡(4,154평) ○증축내용 : 옥상층(증축) 752.12㎡	



〈신축청사 현장방문〉

제5절 주요의정활동일지

1998년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7.7(수) 09:30	임시회 개회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의장:윤두환, 부의장:박춘환)	
11:00	개원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대북구의회 개원식(전의원참석)	
12:00	대과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제2대 북구의회 개원기념 다과회	
7.10(금) 12:00	간담회	○장소 : 터미널식당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 •각 기관 방문관련 회의(의장, 부의장 참석)	
7.12(일) 10:00	생활체육대회	○장소 : 종하체육관외 6개소 ○내용 : 제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북구선수단격려(의장)	
7.13(월) 09:00	현대자동차울산공장노조및경영진방문	○장소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내용 : 현대자동차(주)노조방문 격려 및 본관방문, 경영진과 정리해고 관련간담회(전의원참석)	
18:30	간담회	○장소 : 이가한정식 ○내용 : 광역시의원과 간부공무원 상견례 및 만찬간담회(의장, 부의장참석)	
7.14(화) 10:00	임시회 개회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2회 북구의회 임시회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7.14(화) ~ 7.21(화) 8일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7.14(화) 12:30	오 찬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북구의회 출입기자와 상견례 및 오찬간담회(전의원)	
14:00	언 론 사 방 문	○장소 : 경상일보외 6개 언론사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경상일보외 6개 언론사 방문(의장, 부의장)	
7.15(수) 19:00	만 찬 간 담 회	○장소 : 이조한정식 ○내용 : 울산광역시 승격 추진 회고 만찬간담회(의장)	
7.19(일) 10:00	축 구 장 개 장 식	○장소 : 강동축구장 ○내용 : 강동축구장 개장식 및 기념축구 대회(의장외 3명의원참석)	
7.20(월) 11:00	성 명 서 발 표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현대자동차(주) 정리해고와 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전의원)	
7.23(목) 11:30	위 촉 장 수 여	○장소 : 의장실 ○내용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3명) (김수헌의원, 서상길, 김선익회계사)	
7.27(월) 18:00	전 진 대 회	○장소 : 동해초등학교(강동동) ○내용 : 제1회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전진대회(의장상장수여, 축사)	
7.31(금) 14:00	창 간 기 념 식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내용 : 울산매일 창간7주년 기념식 (의장참석)	
8.3(월) 09:50	태 극 기 이 어 달 리 기	○장소 : 울산문화원 ~ 번영교 끝까지 ○내용 : 건국 50주년 전국일주 태극기 이어달리기 (의장, 구청장동행)	
8.5(수) 10:00	의 원 간 담 회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북구청사 공모당선작 기본설계 보완사항 보고 및 간담회(전의원참석)	

월 일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8.6(목) 18: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의장,부의장)	
8.7(금) 19:00	바다문학 축 제	○장소 : 정자해변 ○내용 : MBC주최 바다문학영화축제 (의장축사)	
8.12(월) 09:30	결 의 대 회	○장소 : 쌍용아진아파트앞 동천강 ○내용 : 북구새마을협의회 동천강 살리기 실천결의대회 및 쓰레기 줍기 (의장격려사)	
10:00	통일정세 보 고 회	○장소 : 시 신관3층 회의실 ○내용 : 울산광역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정세 보고회	
8.13(목) 10:00	통합방위 협 의 회	○장소 : 시 신관3층 회의실 ○내용 : 상반기 통합방위협의회	
19:00	동 창 회 이 사 회	○장소 : 강남가든 ○내용 :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	
8.15(토) 10:00	광 복 절 경 축 식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내용 : 제53주년 광복절 경축식	
11:00	체 육 대 회	○장소 : 농소중학교 ○내용 : 광복절기념 농소1,2,3동 친선체육 대회(의장축사)	
8.16(일) 09:00	축구대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용 : 제19회 송정초등학교장배 부락별 축구대회(의장축사)	
8.17(월) 14:00	통합방위 협 의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19:00	축구협회 이 사 회	○장소 : 다아야몬드호텔 ○내용 : 울산축구협회 정기이사회	
8.18(화)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새마을협의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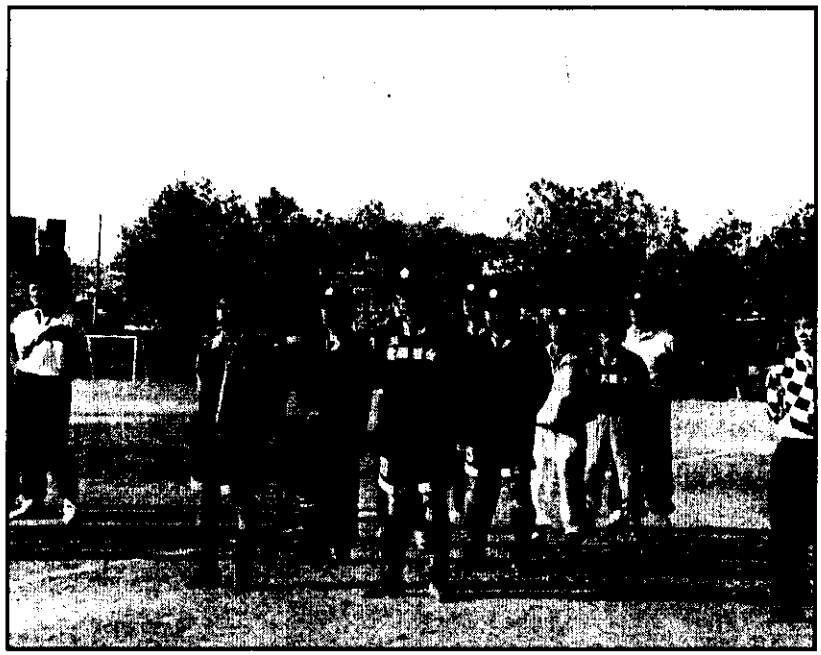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8.18(화) 21:00	을지연습 상황실격려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을지연습상황실 격려차방문	
8.20(목) 15:00	을지연습 참 관	○장소 : 8층 회의실 ○내용 : 을지연습상황실 참관	
8.21(금) 11:00	을지연습 실제훈련	○장소 : 상안교앞 ○내용 : '98을지연습 실제훈련참관	
8.23(일) 11:20	한 일 청 소 년 축 구	○장소 : 일본 ○내용 : 한일청소년축구단 인솔(의장) (8.28귀국)	
8.28(금) 14:00	의원연수	○장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내용 : 시·구·군의원 합동연수교육	
9.1(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3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9.1(화) ~ 9.3(목) 3일간	
19:00	음 악 회	○장소 : 울산대학교 운동장 ○내용 : 울산방송국 개국1주년 기념 가을맞이 음악캠프	
9.3(목) 12:00	오찬행사	○장소 : 시 신관 1층로비 ○내용 : 대통령 울산광역시청 방문 각급기관단체장 등 지역유지와 오찬	
9.4(금) 18: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의장,부의장)	
9.8(화) 11:30	민주평통 월 례 회	○장소 : 보경쉼터 ○내용 : 북구민주평통위원회 월례회	
9.14(월) 12:00	임 명 장 수 여 식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호텔 ○내용 : 민주평통북구협의회장 임명장 수여식(의장참석)	
9.15(화) 09:00	업 무 연 찬 회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호텔 ○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연찬회	
9.23(수) 14:00	전체회의	○장소 : 서울 올림픽체조 경기장 ○내용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9.24(목)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4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9.24(목) ~ 9.30(수) 7일간	
9.25(금)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울산중부경찰서간부와 오찬간담회	
10.1(목) 10:00	현 판 식	○장소 : 동구의료보험조합 ○내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울산동부지사 현판식	
10.2(금) 10:30	기 념 식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노인의날 기념식(의장축사)	
10.10(토) 09:30	처 용 문 화 제	○장소 : 태화강 고수부지 야구장 ○내용 : 제32회 처용문화제 처용촌개장식	
10:00	간 담 회	○장소 : 태화호텔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	
10.14(수) 14:00	합 동 결 혼 식	○장소 : MBC 공개홀 ○내용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16(금) 11:00	바르게살기 회장취임식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윤진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장 취임식	
10.20(화) 11:00	현 대 자 동 차 초청방문	○장소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내용 : 현대자동차(주) 초청방문 본관에서 현황설명 청취후 생산라인 견학 및 영빈관 오찬간담회	
10.23(금) 18:3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	
10.26(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5회 북구의회 임시회 •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10.26(월) ~ 11.4(수) 10일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0.26(월) 19: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울산정책연구소 간담회	
10.27(화) 11:00	통합방위 협 의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11.11(수) 11:00	간 담 회	○장소 : 광역시의회 의장실 ○내용 : 민주평통회의관련 간담회	
11.14(토) 10:00	합 동 결 혼 식	○장소 : 남구청 회의실 ○내용 : 새마을운동 광역시지부 주관 제6회 합동결혼식	
10:00	체육대회	○장소 :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용 : 제1회 구·군의회 체육대회	
11.15(일) 10:00	테 니 스 대 회	○장소 : 효정테니스장 ○내용 : 제1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의장축사)	
11.17(화) 10:30	개 소 식	○장소 : 북부신협 천곡지소 ○내용 : 북부신협 천곡지소 개소식	
11.18(수) 14:00	연 찬 회	○장소 : 올림피아호텔 ○내용 : 민주평통협의회 지역대표위원 연찬회(시·구·군의원)	
11.19(목) 10:0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6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11.19(목) ~ 11.20(금) 2일간	
11.25(수) 11:00	정 기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회기 : 11.25(수) ~ 12.29(화) 35일간	
11.27(금) 12:00	개 업 식	○장소 : (주)성보식품 ○내용 : (주)성보식품 참사랑도시락 개업식	
18:00	간 담 회	○장소 : 삼산아구탕 ○내용 : 구·군의장단 협의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2.4(금) 14:00	선 포 식	○장소 : 울산대학교 실내체육관 ○내용 : "푸른울산21" 선포식	
12.7(월) 10:00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장소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내용 : 제1회 북구여성자원봉사자대회 (의장축사)	
12.10(목) 14:00	바르게살기 의식개혁 다짐대회	○장소 : 농소농협 3층회의실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의식개혁다짐대회(의장상장수여, 축사)	
16:00	북한실상 보 고 회	○장소 : 다아야몬드호텔 ○내용 : 민주평통울산광역시협의회주관 최근 북한실상 보고회	
12.15(목) 10:00	새 마 을 부 녀 회 격려방문	○장소 : 효문동사무소 옆 공터 ○내용 : 실직가정 및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행사 격려방문	
12.16(수) 10:00	활 동 평 가 회	○장소 : 코리아나호텔 ○내용 : 민주평통협의회 '98활동평가회	
13:40	방문접견	○장소 : 의장실 ○내용 : 북구선관위 사무과장 내방	
12.18(금) 12:00	오 찬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명예퇴직자와 오찬간담회 (전의원참석)	
12.19(토) 11:00	결의대회	○장소 : 시 신관3층 회의실 ○내용 : 정치인 등 상시제한행위 자율준수 결의대회(전의원참석)	
12.22(화) 18:30	정 기 이 사 회	○장소 : 낙송정한정식 ○내용 : 울산광역시축구협회 12월정기이사회	
12.24(목) 12:00	간 담 회	○장소 : 윤주한정식 ○내용 : 출입기자와 간담회(전의원참석)	
18:00	만 찬 간 담 회	○장소 : 삼산아구탕 ○내용 : 시장과 구·군의장단 간담회	
12.28(월) 12:3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과 간담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2.28(월) 14:00	개 소 식	○장소 : 염포새마을금고 회의실 ○내용 : 울산자활지원센터 개소식	
12.29(화) 10:30	표 창 수 여 식	○장소 : 서울타워호텔 ○내용 : 의장 대통령표창 수여	



〈구·군의회 체육대회〉

1999년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5(화) 11:00	신 년 인 사 회	○장소 : KBS울산공개홀 ○내용 : 울산광역시 각급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의장외3명 의원참석)	
1.6(수) 18:00	간 담 회	○장소 : 강동초장집 ○내용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장과 간담회(의장참석)	
1.19(화) 14:00	구 청 장 동 방 문	○장소 : 송정동사무소 ○내용 : 구청장 동순회 송정동사무소 방문 (의장참석)	
1.20(수) 13:30	방문접견	○장소 : 의장실 ○내용 :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북구의회 방문접견(의장단참석)	
1.22(금) 11:00	사업실적 평 가 회	○장소 : 농소화훼단지 ○내용 : 농소화훼단지 사업실적 평가회 (전의원참석)	
1.25(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8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1.25(월) ~ 1.26(화) 2일간	
12:30	간 담 회	○장소 : 정일품 ○내용 : 여성자원봉사회원과 간담회 (전의원참석)	
1.26(화) 14:00	정기총회	○장소 : 농소1동사무소 ○내용 :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와 부녀회 정기총회(의장상장수여 및 축사)	
1.27(수) 10:30	정 년 퇴 임 식	○장소 : 송정동사무소 ○내용 : 송정동장 정년퇴임식(의장축사)	
1.28(목) 11: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전의원참석)	

1999년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29(금) 11:00	기 공 식	○장소 : 진장동 기공식현장 ○내용 :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사업기공식	
2.1(월)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전의원참석)	
2.2(화) 11:00	개 소 식	○장소 : 농소2파출소 ○내용 : 농소2파출소 개소식 참석	
2.5(금) 10: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송정동민 간담회(의장참석)	
2.8(월) 15:00	간 담 회	○장소 : 화봉회관 ○내용 : 화봉동 영농회의(의장참석)	
18:3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관내농협조합장(농소,강동,병영,양정)과 의원간담회	
2.9(화) 11:00	정기총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정기총회(의장축사)	
14:00	개 서 식	○장소 : 동부소방서 ○내용 : 동부소방서 개서식 (염포, 양정, 효문, 강동관할)	
2.10(수) 14:00	방 위 협 의 회	○장소 : 시 신관 3층회의실 ○내용 : 통합방위지방회의	
2.11(목) 10:00	졸 업 식	○장소 : 화봉공고 운동장 ○내용 : 화봉공고 졸업식(의장축사)	
16:00	동 정 자 문 회	○장소 : 송정동사무소 ○내용 : 송정동 동정자문회의	
18: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북구관내 전·현직의원 간담회 (전의원참석)	
2.12(금) 10:00	졸 업 식	○장소 : 화봉중학교 ○내용 : 화봉중학교 졸업식	
2.18(목)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구·군의장단, 운영위원장 간담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2.19(금) 14:0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19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2.19(금) ~ 2.25(금) 7일간	
2.24(수) 18:00	간 담 회	○장소 : 초원가든 ○내용 : 울산광역시 의정회 간담회	
2.25(목) 10:00	울산지검 방 문	○장소 : 울산지검 ○내용 : 구·군의장단 울산지검방문	
12:00	월 례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월례회	
2.26(금) 10:00	간 담 회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실 ○내용 : 시·구·군의장단 간담회	
2.28(일) 14:00	정기총회	○장소 : 화봉아람마트 지하 ○내용 : 북부신협 정기총회	
3.1(월) 10:00	기 념 식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내용 : 3·1절 기념식	
3.4(목) 11:00	간 담 회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청사 기본설계 변경관련 의원간담회	
3.5(금) 11:00	개 소 식	○장소 : 무룡신협 염포지소 ○내용 : 무룡신협 염포지소 개소식	
3.9(화) 15:00	간 담 회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실 ○내용 : 원전반대관련 시·구·군의장간담회	
3.10(수) 11: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19:00	간 담 회	○장소 : 언양감나무집 ○내용 : 구·군의장단, 각구청장, 군수, 부단체장 연석간담회	
3.15(월) 10:30	궐기대회	○장소 : 시 신관 3층회의실 ○내용 : 원전반대 시·구·군의원 궐기대회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의원과 각동자생단체장(7개) 간담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3.16(화) 10:00	서명운동	○장소 : 호계, 화봉, 신전시장 ○내용 : 원전건설반대 시민서명운동	
3.17(수) 11:30	기자회견	○장소 : 시의회 의원휴게실 ○내용 : 원전건설반대 시·구·군의장단 기자회견	
3.18(목) 10:00	개 소 식	○장소 : 농소1동사무소 ○내용 : 보훈3단체 사무실 개소식	
16:00	콘 서 트	○장소 : 공업탑 템포10층 ○내용 : UBC 실직기금마련 콘서트 출연(3.26일 19:15방송)	
3.19(금) 14:00	궐기대회	○장소 : 태화강 고수부지 ○내용 : 원전건설반대 시민궐기대회	
3.25(목) 16:00	간 담 회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청사신축 기본설계 설명회	
19:00	간 담 회	○장소 : 정자제일초장집 ○내용 : 국장이상 간부공무원과 의원간담회	
3.26(금) 14:30	기자회견	○장소 : 시의회 의원휴게실 ○내용 : 원전건설 반대기자회견	
3.27(토) 11:00	장 학 금 전 달 식	○장소 : 강동농협2층 회의실 ○내용 : 유포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이사장:초대김성보의장)	
3.29(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0회 북구의회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등 ○회기 : 3.29(월) ~ 3.30(화) 2일간	
4.1(목)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4.6(화) 11:30	월 례 회	○장소 : 보경가든 ○내용 :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월례회	
4.7(수) 14:00	발 대 식	○장소 : 동부소방서 ○내용 :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발대식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4.8(목) 12:00	개 업 식	○장소 : 백두산진달래관 ○내용 : 백두산진달래관 개업식참석 (중구 전경환의원)	
4.9(금) 17:30	개 소 식	○장소 : 염포동 ○내용 : 윤종오의원 사무실 개소식 (의장축사)	
4.12(월) 13:30	타 의 회 방 문	○장소 : 대구 동구의회 ○내용 : 공항소재 타시·구의회 방문 비교시찰(구청10:00출발)	
4.13(화) 10:00	타 의 회 방 문	○장소 : 강릉시의회 ○내용 : 공항소재 타시·구의회 방문 비교시찰(강릉에서 숙박)	
4.17(토) 11:00	기 공 식	○장소 : 화정동 ○내용 : 울산과학대 제2캠프스 기공식 참석	
4.19(월) 11:00	간 담 회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실 ○내용 : 시·구·군의장 간담회	
4.20(화) 10:00	체육대회	○장소 : 공설운동장 ○내용 : 제2회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	
4.22(목) 14:00	보 고 회	○장소 : 농소새마을금고 ○내용 :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주관 '99통일정세보고회	
4.24(토) 14:00	개 소 식	○장소 : 화봉동 ○내용 : 북구자원봉사센터 개소식	
4.26(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1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4.26(월) ~ 4.30(금) 5일간	
12:00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시장초청 시·구·군의장 오찬간담회	
4.28(수) 10:30	증진대회	○장소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내용 : 제1회 북구장애인 증진대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4.28(수) 11:00	알뜰마당	○장소 : 화봉동 제1소공원 ○내용 :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주관 알뜰마당 운영참석 격려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광역시의원과 오찬간담회(북구출신)	
5.1(토) 12:00	간 담 회	○장소 : 청와대 ○내용 : 전국시·군·구의장초청 청와대오찬	
19:00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시장초청시·군·구의장 만찬간담회	
5.2(일) 09:30	체육대회	○장소 : 화봉중학교 ○내용 : 청우그린파크아파트 주민친선체육 대회참석(의장축사)	
10:00	체육대회	○장소 : 농소고등학교 ○내용 : 농소3동 주민친선 체육대회 (의장축사)	
5.4(화) 17:30	신 차 발 표 회	○장소 : 다이야몬드호텔 ○내용 : 현대자동차 "에쿠스" 신차 발표회	
5.6(목) 10:00	개 소 식	○장소 : 북부신협 아진지소 ○내용 : 북부신협 아진지소 개소식	
14:00	항의방문	○장소 : 과천종합청사 산자부 ○내용 : 원전반대 전시·구·군의원 산자부 항의방문	
5.7(금) 08:30	항의방문 및 궐기대회	○장소 : 정부제1청사, 국회, 민주당사 ○내용 : 정부제1청사후문에서 원전반대궐기 대회 및 국회방문청원서 제출, 차수명국회의원과 면담, 민주당사 항의방문	
5.9(일) 10:00	경로잔치	○장소 : 화봉동회관 ○내용 : 화봉동 경로잔치	
10:00	체육대회	○장소 : 농소중학교 ○내용 : 농소1동동민체육대회(의장축사)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5.14(금) 07:30	방 문 및 견 학	○장소 : 현대자동차본사, 박람회장 ○내용 : 본사이전 건의관련 현대자동차 본사방문 사장면담 및 자동차 박람회견학	
5.18(화) 10: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5.22(토) 10:00	축구대회	○장소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운동장 ○내용 : 제1회 북구조기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의장대회사)	
5.24(월) 12:00	간 담 회	○장소 : 남구의회 의장실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5.25(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2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5.25(화) ~ 5.26(수) 2일간	
5.30(일) 10:00	테 니 스 대 회	○장소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테니스장 ○내용 : 제2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5.31(월) 12:30	시 상 식	○장소 : 코리아나호텔 ○내용 : 울산매일주관 오영수문학상 시상식	
6.1(화) 10:00	개 교 식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이전신축 개교식 (의장축사)	
6.18(금) 15: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6.21(월) 12:00	오찬행사	○장소 : 다이야몬드호텔 ○내용 : '99행정개혁보고회(대통령방문) 관련오찬행사	
13:00	간 담 회	○장소 : 다이야몬드호텔 커피숍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6.25(금) 11:3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6.28(월) 11: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6.29(화) 18:00	간 담 회	○장소 : 백두산진달래관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7.3(토) 10:00	체육대회	○장소 : 반천학생체육관 ○내용 : 제2회 구·군의회 체육대회	
7.7(수) 10:30	항의방문	○장소 : 시장실 ○내용 : 구조조정관련 시장항의방문 (구·군의장단협의회)	
13:30	간 담 회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의원간담회	
14:00	업무보고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청사신축관련 업무보고	
7.8(목) 16:00	경기대회	○장소 : 울산직업전문학교 ○내용 : 울산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7.9(금) 12:00	간 담 회	○장소 : 이가한정식 ○내용 : 의원과 기자간담회	
7.14(수) 10:30	보 고 회	○장소 : 소회의실 ○내용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전의원참석)	
7.19(월) 11:30	기 념 식	○장소 : 로얄예식장 ○내용 : 울산매일 창간8주년 기념식	
7.24(토) 10:00	농장방문	○장소 : 농소1,2동, 강동동 ○내용 :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농장방문	
12:00	준 공 식	○장소 : 송정동 곡리마을 ○내용 : 송정동 곡리마을 경로당 준공식	
7.27(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3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7.27(화) 1일간	
12:00	창 단 식	○장소 : 코리아나 호텔 ○내용 : 경동도시가스 테니스선수단 창단식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7.28(수) 18:00	간 담 회	○장소 : 일번지횟집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7.29(목) 18:00	전진대회	○장소 : 산하해변 ○내용 : 제2회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전진대회(의장상장수여및축사)	
8.15(일) 09:00	축구대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용 : 송정초등학교장배 부락별 축구대회 (의장축사)	
10:00	경 축 식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내용 :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식	
11:00	체육대회	○장소 : 약수초등학교 ○내용 : 광복절기념 농소1,2,3동 동민 친선체육대회(의장축사)	
8.17(화) 15:00	방문접견	○장소 : 의장실 ○내용 :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북구의회 방문접견	
17:00	격려방문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99을지연습상황실 격려방문	
8.18(수) 10:00	간 담 회	○장소 : 시의회 의장실 ○내용 : 원전반대관련 시·구·군의장 간담회	
8.19(목) 11:00	연습견학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99을지연습상황청취 및 연습장견학	
8.23(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4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8.23(월) ~ 8.26(목) 4일간	
14:00	발 표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21세기 기본계획관련 과업수행 기본방향발표회	
8.25(수) 08:00	식전행사	○장소 : 연암동 신축현장 ○내용 : 북구청사기공식 식전행사(고사)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8.25(수) 10:30	기 공 식	○장소 : 연암동 신축현장 ○내용 : 북구청사기공식(의장축사)	
8.28(토) 10:00	정 년 퇴 임 식	○장소 : 강북교육청 ○내용 : 강북교육청장 정년퇴임식 및 출판기념회	
8.28(토) 11:00	위 문	○장소 : 울산보육원 ○내용 : 울산보육원 개원기념식 참석	
8.30(월) 11:00	발 대 식	○장소 : 상공회의소 ○내용 : 전국그린환경감시단 울산광역시 지부발대식(의장축사)	
8.31(화) 12:00	간 담 회	○장소 : 언양산전숯불갈비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9.1(수)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5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9.1(수) ~ 9.4(토) 4일간	
9.2(목) 10: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상수도사업본부간부와 간담회	
9.5(일) 10:00	축구대회	○장소 : 화봉중학교 ○내용 : 화봉·연암 연합조기축구대회 (의장축사)	
9.10(금) 10:00	수련대회	○장소 : 구 신명초등학교 ○내용 : 새마을운동북구지회 하계수련대회 (의장상장수여 및 축사)	
9.11(토) 10:00	축구대회	○장소 : 고수부지 축구장 ○내용 : 제1회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9.13(월) 10:30	방 문	○장소 : 울산공항 ○내용 : 공항특위 울산공항방문	
11:30	월 례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월례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9.15(수) 10:00	면 담	○장소 : 의장실 ○내용 : 농소1동 주민권리찾기관련 주민과 면담	
12:00	간 담 회	○장소 : 태화나루 ○내용 : 시장 및 기관단체장 오찬간담회	
13:00	체험현장	○장소 : 태연학원 ○내용 : 시장 및 기관단체장 자원봉사현장 체험 행사	
9.17(금) 06:30	소음측정	○장소 : 성우현대아파트 앞 ○내용 : 공항특위 항공기소음측정	
9.20(월)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9.28(화) 10: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9.29(수) 09:00	운 동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용 : 송정초등학교 신나는어울한마당 어린이체육대회(의장축사)	
9.30(목) 10: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구청장과 의원간담회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6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9.30(목) 1일간	
10.2(토) 11:30	체육대회	○장소 : 울산직업전문학교 ○내용 : 제1회 지체장애인 자활체육대회	
14:00	수련대회	○장소 : 송림자연농원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하계수련대회(의장축사)	
10.3(일) 10:00	체육대회	○장소 : 종하체육관 ○내용 : 제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2:00	오 찬	○장소 : 아오이일식집 ○내용 : 각급기관장 오찬행사(시장주재)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0.4(월) 10:00	간 담 회	○장소 : 시의회 의장실 ○내용 : 광역시의회의장과 간담회	
15:00	간 담 회	○장소 : 울산관광호텔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19: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북구연합조기회회의	
19:30	간 담 회	○장소 : 진장동천가든 ○내용 : 범죄예방관련 간담회	
10.5(화) 14:00	전체회의	○장소 : 서울 올림픽체육관 ○내용 : 제9기 민주평통전체회의	
10.7(목) 10:00	개 소 식	○장소 : 농소1동사무소 ○내용 :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11:00	개 장 식	○장소 : 태화강 고수부지 ○내용 : 처용문화제 처용촌 개장식	
18:00	개 막 식	○장소 : 태화강 고수부지 ○내용 : 처용문화제 개막식	
10.8(금)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7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공항특위활동 등 ○회기 : 10.8(금) ~ 10.16(토) 9일간	
10.13(수) 11:00	평 의 회	○장소 : 삼호신협 ○내용 : 신협 평의회	
10.15(금) 10:30	의견청취	○장소 : 진장동사무소 ○내용 : 공항특위 현장조사활동 진장동주민과 면담	
10.17(일) 09:00	축구대회	○장소 : 양정중학교 ○내용 : 제2회 북구조기축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의장축사)	
10.18(월) 14:00	발 대 식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북구사랑통신원 발대식(의장축사)	
10.28(목) 08:30	공항특위 타 시 구 의회방문	○장소 : 부산강서구의회, 사천시의회 ○내용 : 부산강서구의회, 김해공항주변시찰 사천시의회방문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0.29(금) 10:00	공항특위 타 시 구 의회방문	○장소 : 여수시의회 ○내용 : 여수시의회방문 공항관련 간담회	
10.30(토) 10:00	공항특위 타 시 구 의회방문	○장소 : 서울강서구의회, 김포공항 ○내용 : 서울강서구의회방문 공항관련 간담회	
11.3(수)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11.7(일) 10:00	축구대회	○장소 : 양정중학교 ○내용 : 제2회구청장배 생활체육 동별 축구대회	
11.8(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8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11.8(월) ~ 11.15(월) 8일간	
11.12(금) 16: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11.18(목) 10:00	의원연수	○장소 : 베네골 상공회의소 연수원 ○내용 : 시·구·군의원합동연수	
11.23(화) 14:00	간 담 회	○장소 : 간담회 ○내용 : 의원간담회	
11.24(수) 10:30	여성자원 봉사자대회	○장소 : 자동차 문화회관 ○내용 : 북구여성자원봉사자대회	
11.25(목) 11:00	정 기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9회 북구의회 정기회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11.25(목)~12.29(수) 35일간	
11.26(금) 11:00	준 공 식	○장소 : 달천농공단지 ○내용 : 달천농공단지 준공식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1.30(화) 11:00	발 대 식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농구단 발대식	
11.30(화) 18: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울산축구협회 간담회	
12.8(수) 12:00	간 담 회	○장소 : 백두산 진달래관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12.14(화) 11:00	지 도 자 대 회	○장소 : 종하체육관 ○내용 : '99울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12.16(목) 12:3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송정동통장, 자생단체장과 간담회	
12.17(금) 12:00	간 담 회	○장소 : 코리아나호텔 ○내용 : 병영농협간부와 간담회	
12.18(토) 13:30	결 혼 식	○장소 : 목화예식장 ○내용 : 사무과장장녀 결혼식	
18:00	이 사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북구조기축구연합회 이사회	
12.19(일) 10:00	테 니 스 대 회	○장소 : 메아리코트 ○내용 : 제2회 북구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	
12.20(월) 11:00	준 공 식	○장소 : 호계공영주차장 ○내용 : 호계공영주차장 준공식(의장축사)	
15:00	토 론 회	○장소 : 울산뷔페 ○내용 : 강북교육청주관 토론회	
12.21(화) 12:30	간 담 회	○장소 : 윤주한정식 ○내용 : 북구출신광역시의원과 오찬간담회	
12.23(목) 13:30	공 청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북구21세기기본계획 공청회	
18:30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구청장과 의원간담회	
12.31(금) 22:00	해 맞 이	○장소 : 정자해변 ○내용 : 새천년 해맞이축제	

2000년도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1(토) 05:00	해 맞 이 행 사	○장소 : 정자해변 ○내용 : 새천년 해맞이행사(의장새해인사)	
1.4(화) 11:00	신 년 인 사 회	○장소 : KBS공개홀 ○내용 : 울산광역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시·구·군의원 신년인사회	
1.6(목) 18:00	간 담 회	○장소 : 염포횟집(남구 삼산동)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1.7(금) 14:00	창립대회	○장소 : 시의회동 3층 회의실 ○내용 :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광역시지회창립대회	
1.8(토) 11:00	준 공 식	○장소 : 공설운동장 태권도전용도장 ○내용 : 태권도전용도장 준공기념식	
1.14(금) 10: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14: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북울산청년회의소 회장단일행 내방 간담회	
1.15(토) 10:30	이·취임식	○장소 : 동천초등학교 ○내용 : 농소3동체육회장 이·취임식 (의장축사)	
1.17(월) 18:3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전·현직의원 간담회	
1.18(화) 11:00	창 단 식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북구사격운동경기부 창단식(의장축사)	
1.20(목) 10:30	정기총회	○장소 : 농소농협3층 회의실 ○내용 : 농소농협 정기총회(의장축사)	
1.22(토) 14:00	개편대회	○장소 : 종하체육관 ○내용 : 한나라당 남구갑지구당 개편대회	
1.25(화) 10:30	정기총회	○장소 : 농소농협 3층 회의실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정기총회(의장상장수여및축사)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28(금) 12:00	간 담 회	○장소 : 달동회센터 ○내용 : 의원과 간부공무원 오찬간담회	
14:00	전 달 식	○장소 : 효문동사무소 ○내용 : 효문동 민간사회안전망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전달식(의장축사)	
15:00	발 대 식	○장소 : 농소농협 3층 회의실 ○내용 : 북구풍물연합회 발대식(의장축사)	
1.29(토) 10:30	이·취임식	○장소 : 농소2동사무소 2층회의실 ○내용 : 농소2동체육회장 이·취임식 (의장축사)	
14:00	개 소 식	○장소 : 벽산늘푸른아파트 ○내용 : 벽산늘푸른아파트 열린문화공간 개소식(의장축사)	
1.31(월) 10:30	기 념 식	○장소 : 덕양산업(주) ○내용 : 덕양산업(주)노동조합 제13차 정기대의원대회참석	
2.11(금) 10:00	졸 업 식	○장소 : 화봉공고 ○내용 : 화봉공고 졸업식(의장축사)	
2.12(토) 11:0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30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2.12(토) ~ 2.21(월) 10일간	
2.15(화) 10:00	운 영 위 원 회	○장소 : 학성여중 ○내용 : 학교운영위원장회의(사랑의매전달식)	
11:00	간 담 회	○장소 : 장날마당 ○내용 :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와 간담회	
2.16(수) 10:00	졸 업 식	○장소 : 송정초등학교 ○내용 : 송정초등학교 졸업식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2.21(월) 10:30	임 시 회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윤두환의장은 북구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처리 되었으며 박춘환의장이 신임의장에 당선되었음. (부의장:진한걸)	
12:00	간 담 회	○장소 : 일번지횟집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18:00	월 례 회	○장소 : 코리아나호텔 ○내용 :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월례회	
2.29(화) 12:00	간 담 회	○장소 : 일번지횟집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3.3(금) 11:00	기 념 식	○장소 : 올림피아호텔 ○내용 : 울산아침일보 창간기념식	
3.8(수)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의원과 간부공무원 오찬간담회	
14:00	방문접견	○장소 : 의장실 ○내용 : 대구서구의회 북구의회 내방	
16:00	개 소 식	○장소 : 북구보건소 ○내용 : 구강보건교육실 개소식(의장축사)	
3.10(금) 14:00	창당대회	○장소 : 농소농협 3층회의실 ○내용 : 한나라당 북구지구당 창당대회 (윤두환전의장 지구당위원장으로선출, 박춘환의장 공동선거 대책본부장)	
3.14(화) 12:00	간 담 회	○장소 : 또진고개 ○내용 : 구청장과 오찬간담회	
3.15(수) 10:00	식목행사	○장소 : 화봉사거리 시장입구 ○내용 : 생명의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3.16(목) 11:00	이·취임식	○장소 : 농소새마을금고 회의실 ○내용 : 농소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취임식(의장축사)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3.17(금)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14:00	준 공 식	○장소 :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내용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준공식	
3.22(수) 12:00	간 담 회	○장소 : 두꺼비고기방(효문동) ○내용 : 각동예비군중대장과 의원간담회	
3.24(금) 11:00	의원총회	○장소 : 무영쌈밥(농소1동) ○내용 : 구·군전의원총회	
14:00	창립총회	○장소 : 강동농협 2층회의실 ○내용 : 강동생활체육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3.27(월) 19:00	후 원 회	○장소 : 화봉사거리 경남은행 2층 ○내용 : 윤두환전의장 후원회	
3.28(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31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3.28(화) ~ 4.3(월) 7일간	
4.18(화) 10:30	준 공 식	○장소 : 달천마을회관 ○내용 : 달천마을회관 준공식	
14: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해외연수설명회)	
4.19(수) 12:00	추 모 식	○장소 : 천곡속도 ○내용 : 4·19순국열사 정임석 추모식	
4.20(목) 09:00	유럽6개국 해외시찰	○장소 : 독일외 5개국 ○내용 : 북구의회 의원 해외시찰 • 일시 : 4.20(목)~4.30(일) 11일간 • 인원 : 10명 • 방문국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5.2(화) 14:00	캠 페 인	○장소 : 농소3동사무소 주변도로 ○내용 : 주정차계도 캠페인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5.3(수) 10:00	꽃 축 제	○장소 : 태화강 고수부지 ○내용 : 현대자동차주최 꽃축제 개막식	
16:00	정기대회	○장소 : 목화예식장 7층 ○내용 : 한나라당시지부 정기대회 및 운영위원회회의	
5.9(화) 14:00	준 공 식	○장소 : 농소농협 미곡처리장 ○내용 : 벼자동화육묘센터 준공식	
5.10(수) 11: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감담회	
14:00	창립총회	○장소 : 무룡신협 2층회의실 ○내용 : 여성유권자연맹북구지회 창립총회(의장축사)	
5.15(월) 14:30	기 념 식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내용 : 경상일보 창간11주년 기념식	
5.17(수) 10:00	현장확인	○장소 : 정자항 ○내용 : 전복지패방류사업 현장확인(의장,부의장,김수헌,박광식의원 참석)	
5.19(금) 11:30	기 념 식	○장소 : (주)진산선무 ○내용 : 진산선무 창사10주년 기념식(대표이사:강석구시의원)	
12:00	간 담 회	○장소 : 화봉생고기 ○내용 : 윤두환전의장(국회의원)과 직원 오찬간담회	
5.20(토)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메가마켓 울산지점장 내방	
5.22(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북구의회 ○내용 : 제32회 북구의회 임시회 • 조례개정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5.22(월) ~ 5.23(화) 2일간	
12:00	간 담 회	○장소 : 이조한정식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내용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주관 의원과 오찬간담회	
5.25(목) 10:30	개 점 식	○장소 : 메가마켓 울산점 ○내용 : 메가마켓 울산점 개점식	
5.26(금) 10:30	준 공 식	○장소 : 폐기물소각장(남구 성암동) ○내용 : 폐기물소각장 준공식	
5.27(토) 10:30	간 담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5.27(토) 12:00	결 혼 식	○장소 : 무거동 극동프라자 ○내용 : 엄현주 결혼식 참석	
5.29(월) 11:30	전 달 식	○장소 : 의장실 ○내용 : 윤두환전의장 국회의원 순금 뺏지전달식	
5.30(화) 11:30	시 상 식	○장소 : 올림피아호텔 ○내용 : 울산매일주관 오영수문학상 시상식	
6.5(월) 12:00	간 담 회	○장소 : 태화정(남구 삼산동) ○내용 : 구·군의장단협의회	
6.6(화) 09:40	추모행사	○장소 : 울산대공원내 현충탑 ○내용 : 현충일 추모행사	
6.9(금) 14:00	시 상 식	○장소 : 농소농협 3층회의실 ○내용 : 바르게살기운동주관 2000년효자효부시상식 및 도덕성회복을 위한 위원연수교육(의장상장수여및축사)	
6.10(토) 10:3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6.13(화) 11:00	새 마 을 자선행사	○장소 : 무룡문화예술원(강동) ○내용 : 새마을사랑나눔 홀로노인보살피기 행사(의장외 2명의원참석)	
6.15(목) 15:30	연수교육	○장소 : 상공회의소 6층 ○내용 : 시·구·군의원 합동연수교육	
6.20(화) 11:00	간 담 회	○장소 : 의장실 ○내용 : 의원간담회	

일 시	행사명	주 요 내 용	비고
14:00	현장확인	○장소 : 청사신축현장(연암동) ○내용 : 북구청사 신축 현장확인	
6.23(금) 19:00	열린마당	○장소 : 농소고등학교 ○내용 : 울산포럼주최 "함께하는열린마당" 문화행사	
6.25(일) 10:00	볼링대회	○장소 : 금강볼링장(농소1동) ○내용 : 제1회 구청장배볼링대회	
6.26(월) 12:00	간 담 회	○장소 : 이조한정식 ○내용 : 이종영 전국장과 오찬간담회	
16:00	협 의 회	○장소 : 8층회의실 ○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6.27(화) 10:30	임 시 회 개 회 식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회기 : 6.27(화) ~ 7.1(토) 5일간	
12:30	간 담 회	○장소 : 이가한정식 ○내용 : 북구출신 광역시의원과 오찬간담회	
6.29(목) 12:30	간 담 회	○장소 : 윤주한정식 ○내용 :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의원 오찬간담회	
7.1(토) 10:30	임 시 회	○장소 : 본회의장 ○내용 : 제2대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의장:진한걸, 부의장:박광식) 7/7일부터 신임의장단 임기 시작	
7.6(목) 14:00	준 공 식	○장소 : 농소1동사무소 ○내용 : 농소1동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사업 준공식	

부 록



- 역대 의장단 명단
- 초대의원 명단
- 초대의원 사진
- 북구지역 역대의원 명단
- 역대 구청장 명단
-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 역대 전문위원 명단
- 구청간부공무원 명단
- 사무과직원 명단
- 지방선거현황(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 문화재 현황

역대 의장단 명단

□ 의장명단

구 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초 대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8.7.7 ~2000.2.21	
〃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2000.2.22 ~2000.7.6	

□ 부의장명단

구 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초 대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제2대 전반기	농소3동	박춘환	1952. 1.11	1998.7.7 ~2000.2.21	
〃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2000.2.22 ~2000.7.6	

초대의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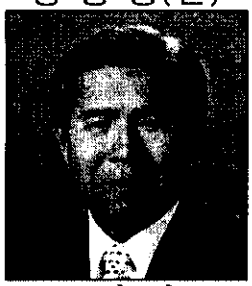
연번	직 위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시의회상임위 & 소속
1	의 장	강동동	김성보	1937. 4. 4	1997.7.15 ~1998.6.30	환경수도
2	부의장	송정동	윤두환	1955. 3. 5	1997.7.15 ~1998.6.30	교육사회
3	의 원	진장동	정석수	1937. 4.15	1997.7.15 ~1998.6.30	건설교통
4	의 원	농소동	한성두	1941. 3.31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5	의 원	농소·강동 (제10선거구)	이상원	1941. 8.29	1997.7.15 ~1998.6.30	내 무
6	의 원	효문동	이병우	1942. 2. 8	1997.7.15 ~1998.6.30	내무위원장
7	의 원	양정동	진한걸	1953.11.15	1997.7.15 ~1998.6.30	도시·경제 (간사)
8	의 원	염포동	조승수	1963. 1.22	1998.3.2 ~1998.6.30	환경수도 (간사)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겸직

초대의원 사진

□ 의장단

강 동 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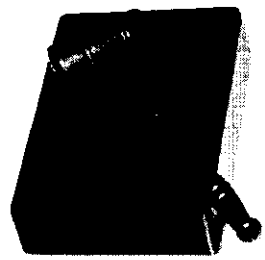


의장 김 성 보

송 정 동



부의장 윤 두 환



□ 의 원

제10선거구



이 상 원

농소동(읍)



한 성 두

진 장 동



정 석 수

효 문 동



이 병 우

양 정 동



진 한 걸

염 포 동



조 승 수

북구지역 역대의원 명단

2000.6.30현재

연번	선거구	성 명 (생년월일)	재직사항	주소	비고
1	제10 선거구 (농소읍)	이상원 ('41.8.29)	○제5대 경상남도의회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호계동 576-2	운영위원 내무위원
2	농소읍	한성두 ('41.3.31)	○초대 울산군의회 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창평동 1047	울주군의회의장, 통합시의회 부의장
3	강동면	김성보 ('37.4.4)	○초대 울산군의회 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구유동 318	환경수도위원
4	송정동	윤두환 ('55.3.5)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통합·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화봉동 971-1	도시경제위간사 교육사회위원
5	진장동	김두헌 ('36.4.15)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명촌동 701	도시경제위원
6	효문동	한기찬 ('38.4.3)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연암동 430-1	건설위원
7	양정동	류재락 ('45.8.15)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양정동 437	운영위원장
8	염포동	김춘길 ('42.10.10)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염포동 167	내무위원
9	진장동	정석수 ('37.4.15)	○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진장동 348-1	운영위원 건설위원
10	효문동	이병우 ('42.2.8)	○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연암동 415	내무위원장
11	양정동	진한걸 ('53.11.15)	○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양정동 523	도시경제위간사, 운영위원
12	염포동	조승수 ('63.1.22)	○제2대 울산시의회 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염포동 현대2차 APT 3/501	'98.3.1동구에서 전입 현 북구청장

역대 구청장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직무대행	황성환	1948.2.29	1997.7.15 ~1998.6.30	
2	민선초대	조승수	1963.1.22	1998.7.1 ~현재	

역대 사무(국)과장 명단

연번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1	사무국장	지방서기관	이종영	1939. 9.27	1997.7.15 ~1998.9.30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
2	사무과장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 ~현재	

역대 전문위원 명단

연번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1	전문위원	지방행정 사 무 관	백용한	1946.12.30	1997.7.15 ~1998.9.30	
2	〃	〃	이차호	1960.10.26	1998.10.1 ~1999.9.30	
3	〃	〃	성낙화	1952. 5. 5	1999.10.1 ~현재	

간부공무원 명단

(재임기간:1997.7.15 ~ 2000.7.6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구청장	서기관	황성환	'97.7.15~'98.6.30	직무대행
	정무직	조승수	'98.7.1~현재	
부구청장	지방서기관	황성환	'97.7.1~'98.9.25	울산광역시전출
	〃	이수석	'98.9.26~2000.7.5	울산광역시전출
	〃	서관규	2000.7.6~현재	
총무사회국장	지방서기관	한용규	'97.7.15~'98.4.23	울산광역시전출
	〃	김기열	'98.4.24~'98.9.25	퇴 임
	〃	윤성태	'98.9.26~2000.1.24	중구전출
	〃	김종우	2000.1.24~2000.3.31	2000.4.1직제폐지
총무국장	지방서기관	김종우	2000.4.1~2000.7.5	남구청 전출
	〃	강종철	2000.7.6~현재	
산업건설국장	지방농업서기관	강한원	'97.7.15~'99.1.20	울산광역시전출
	지방서기관	조기수	'99.1.21~2000.1.23	동구전출
	〃	강종철	2000.1.24~2000.3.31	2000.4.1직제폐지
경제사회국장	지방서기관	강종철	2000.4.1~2000.7.5	
	〃	정대경	2000.7.6~현재	
도시개발국장	지방시설서기관	김병규	2000.4.1~현재	2000.4.1직제신설
보건소장	지방의무서기관	박혜경	'97.7.15~현재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용국	'97.7.15~'98.1.13	퇴 임
	〃	강석희	'98.1.14~'98.9.30	
	〃	이동훈	'98.10.1~'99.9.30	'99.10.1직제폐지
기획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열	'99.10.1~2000.3.31	2000.4.1직제폐지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열	2000.4.1~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오	'97.7.15~'98.1.13	
	〃	이수식	'98.1.14~'98.9.25	울산광역시전출
	〃	황재영	'98.10.1~'99.2.1	
	〃	박원희	'99.2.2~'99.9.30	'99.10.1직제폐지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병태	'97.7.15~'98.9.25	
	〃	강석희	'98.10.1~현재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오	'99.10.1~현재	'99.10.1직제신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의준	'97.7.15~'98.9.30	'98.10.1직제폐지
지방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강함순	'97.7.15~'98.1.13	
	〃	박용국	'98.1.14~'98.9.30	퇴 임
	〃	강함순	'98.10.1~'99.1.20	
	〃	신원수	'99.1.21~'99.9.30	
	〃	임정순	'99.10.1~현재	
시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동훈	'97.7.15~'98.9.30	
	〃	임정순	'98.10.1~'99.9.30	'99.10.1직제폐지
지적과장	지방지적사무관	김실근	'97.7.15~'99.9.30	'99.10.1직제폐지
민원지적과장	지방지적사무관	김실근	'99.10.1~2000.3.31	2000.4.1직제폐지
민원봉사과장	지방지적사무관	김실근	2000.4.1~현재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배성무	'97.7.15~'98.1.13	퇴 임
	〃	김태오	'98.1.14~'99.9.30	
	〃	박원희	'99.10.1~현재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순	'97.7.15~'98.9.30	
	〃	이채석	'98.10.1~'99.2.1	
	〃	김찬수	'99.2.2~'99.9.30	
	〃	최종석	'99.10.1~현재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석희	'97.7.15~'98.1.13	
	〃	배성무	'98.1.14~'98.9.30	퇴 임

부록

직 위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신동욱	'98.10.1~'99.9.30	
	〃	이동훈	'99.10.1~현재	
환경미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연수	'97.7.15~'98.9.30	
	〃	김종열	'98.10.1~'99.9.30	
	〃	김현옥	'99.10.1~현재	
도시교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우	'98.10.1~'99.2.1	'98.10.1직제신설
	〃	황재영	'99.2.2~현재	
건설도시과장	지방토목사무관	김영태	'97.7.15~'98.9.30	'98.10.1직제폐지
건설과장	지방토목사무관	김영태	'98.10.1~2000.3.31	울주군전출
	〃	임용균	2000.4.1~현재	
농림수산과장	지방농림사무관	이완식	'97.7.15~'98.9.15	퇴 임
	〃	서광문	'98.12.1~현재	
건축과장	지방건축사무관	유병옥	'97.7.15~'99.1.20	중구전출
	〃	김환조	'99.1.21~현재	
농소 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정기원	'97.7.15~'98.9.30	
	〃	김현옥	'98.10.1~'99.9.30	
	〃	김찬수	'99.10.1~현재	
농소 2동장	〃	이수식	'97.7.15~'98.1.13	
	〃	김종열	'98.1.14~'98.9.30	
	〃	최종식	'98.10.1~'99.9.30	
	〃	이상찬	'99.10.1~현재	
농소 3동장	〃	신동욱	'97.7.15~'98.1.13	
	〃	강함순	'98.1.14~'98.9.30	
	〃	송의준	'98.10.1~'99.9.30	
	〃	신원수	'99.10.1~현재	
강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열	'97.7.15~'98.1.13	
	〃	최종식	'98.1.14~'98.9.30	

직 위	직 급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강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원희	'98.10.1~'99.2.1	
	〃	박상우	'99.2.2~현재	
진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원희	'97.7.15~'98.1.13	
	〃	신동욱	'98.1.14~'98.9.30	'98.10.1 효문동폐치분합
효문동장	지방별정5급상당	윤준곤	'97.7.15~'97.12.31	퇴 임
	지방행정사무관	박원희	'98.1.14~'98.9.30	
	〃	김연수	'98.10.1~'99.9.30	퇴 임
	〃	이차호	'99.10.1~현재	
송정동장	지방별정5급상당	정환고	'97.7.15~'99.2.1	퇴 임
	지방행정사무관	이채석	'99.2.2~현재	
양정동장	지방별정5급상당	손진필	'97.7.15~'98.6.30	퇴 임
	지방행정사무관	정기원	'98.10.1~현재	
염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옥	'98.3.1~'98.9.30	'98.3.1북구편입
	〃	성낙화	'98.10.1~'99.9.30	
	〃	신동욱	'99.10.1~현재	

사무과직원 명단

□ 사무과장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지방행정사무관	백용한	1946.12.30	1998.10.1~현재	

□ 전문위원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고
지방행정사무관	성낙화	1952.5.5	1999.10.1~현재	

□ 사무직원

연번	직위(급)	성 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1	의사담당	강수상	의사, 의정업무, 종합계획 추진	1997. 7.15~현재	
2	지방행정주사보	하헌주	의사업무, 회의개최	1997.7.15 ~1999.4.1	6급 승진전보
3	〃	김남희	의정업무, 예산, 보안	1997. 7.15~현재	
4	〃	이석원	의정업무, 의전, 대외협력	1997. 7.29~현재	
5	〃	서준영	의사업무, 회의개최	1999. 4. 1~현재	
6	지방행정서기보	이상호	서무, 청사 및 물품	1998.1.13 ~1999.10.1	8급 승진전보
7	〃	김용회	서무, 청사 및 물품	1999.10. 1~현재	
8	지방기능9급	김은영	의안처리, 의회홍보	1997.11.15~현재	
9	〃	허순자	속기, 녹음	1997. 7.15~현재	
10	지방기능10급	이동천	차량관리	1997. 7.15~현재	
11	〃	엄현주	속기, 녹음	1997. 7.29~현재	

지방선거현황(의원,구청장,국회의원)

□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1998.6.4) 기초의원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농소2동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강혁진	김수호	박종구	김재근			
	13,280	8,617	2,677	2,210	936	2,614	8,437	180	4,663
농소3동			무소속	무소속					
			박춘환	홍정익					
	11,364	6,976	3,875	2,973			6,848	128	4,388
강동동			무소속	무소속					
			윤임지	박광식					
	4,112	2,928	1,415	1,418			2,833	95	1,184
진장동 효문동			무소속	무소속					
			정윤석	류재건					
	10,329	6,457	2,639	3,656			6,295	162	3,872
송정동			무소속	무소속					
			신성봉	윤두환					
	7,799	5,161	2,137	2,953			5,090	71	2,638
양정동			무소속	무소속					
			이경호	진한걸					
	8,761	5,817	1,918	3,832			5,750	67	2,944
염포동			무소속	무소속					
			이홍우	윤종오					
	6,884	4,422	1,955	2,400			4,355	67	2,462

※ 농소1동은 무투표 당선 : 무소속 김수헌

□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1998.6.4) 기초단체장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중 구			한나라당	자민련	무소속					
			전나명	정갑윤	이철수					
	156,208	85,155	37,928	30,900	14,483			83.311	1,844	71,053
남 구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이채익	김진영	이 복	이민규				
	207,568	111,524	46,783	12,319	26,193	24,513		109,808	1,716	96,044
동 구			국민회의	무소속	무소속					
			정천석	김창현	변재규					
	118,910	76,651	20,669	28,436	26,528			75,633	1,018	42,259
북 구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정재룡	손달송	이채헌	이상원	조승수			
	73,340	46,771	12,959	3,232	3,518	6,782	19,555	46,046	725	26,569
울주군			한나라당	국민회의	무소속					
			박진구	강인수	서진기					
	103,939	59,928	30,583	12,478	15,455			58,516	1,412	44,011

□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200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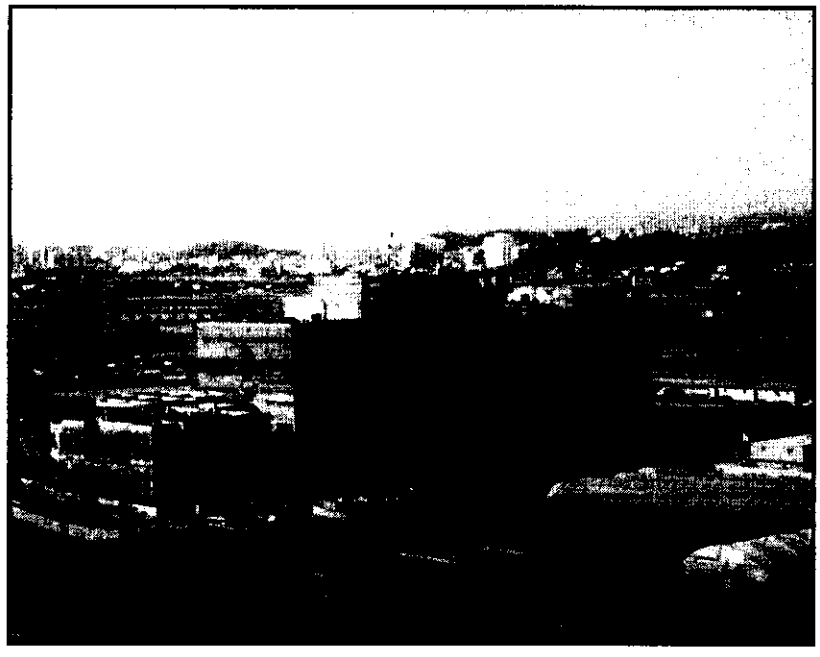
선거구명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자수 (부재자)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중구 (울산)			한나라당	민주당	민국당	무소속	무소속			
			김태호	문병원	유송근	박삼주	송철호			
	155,973 (3,909)	88,904 (3,609)	42,144	5,150	5,463	1,598	33,548	87,903	1,001	67,069
남구 (울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민주노동당			
			최병국	이규정	차수명	한만우	윤인섭			
	216,271 (5,282)	123,813 (4,827)	64,152	18,251	12,277	7,588	20,594	122,862	951	92,458
동구 (울산)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서용학	이갑용	정몽준					
	122,027 (3,005)	84,201 (2,845)	2,882	29,288	51,346			83,516	685	37,826
북구 (울산)			한나라당	민주당	민국당	민주노동당				
			윤두환	이상헌	서동우	최용규				
	75,413 (1,157)	45,700 (1,067)	19,430	4,170	2,684	18,867		45,151	549	29,713
울주군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권기술	윤광일	박정근					
	112,034 (2,077)	60,371 (1,873)	40,460	7,736	10,906			59,102	1,269	51,663

□ 제2대울산광역시의회의원 보궐선거(2000.6.8)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개표계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표차	개표율(%)
				한나라당		무소속				
				이병우	%	김주회	%			
제2선거구	36,849	13,681	13,681	7,050	51.5	6,459	47.21	172	591	

□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2000.6.8)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표인수	개표계	후보자별득표수				무효투표수	표차	개표율(%)
				김진영	%	이명숙	%			
송정동	8,163	3,096	3,096	2,001	64.63	1,033	33.37	62	968	



〈공사중인 북구청 신축청사, 2000.9.〉